

통관  
192

# WTO 뉴라운드에 대비한 관세율정책의 현황과 개편방향

1999.12

장근호 · 이명현

## 서 언

우리나라는 지난 경제 성장기에 수출진흥, 선별적 수입정책으로 요약되는 대외 경제정책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산업의 고도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1983년과 1988년 두 차례에 걸친 관세율인하예시제를 단행하여 관세율을 인하하고 공산품 분야에 균등관세율체제를 도입하였다. 그 이후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은 대(對)산업 중립성을 대체로 잘 유지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을 충실히 견지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균등관세율체제가 도입되고 16년이 흘러 지금에 이르는 동안 대내외적 경제환경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우선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분야의 비약적인 과학기술 진보에 따라 정보화와 산업의 지식화가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이래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편성되어온 우리의 산업구조도 향후에 큰 폭으로 개편되어 갈 것으로 예견된다.

한편, UR 협상의 결과로 시작된 WTO체제는 단순한 관세율의 인하에 머물지 않고, 국내보조에 대한 강한 제약의 설정, 비관세장벽의 철폐, 강력한 무역분쟁해결기구, 서비스 개방의 추진을 통해 '경제의 세계화'를 이끄는 견인차로 작용하고 있다. 비록 1999년 12월 시애틀 각료회의가 결렬되기는 했으나 새로운 WTO 라운드가 개시될 가능성이 크며 이렇게 되면 '경제의 세계화'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특히 WTO 체제에서는 농업분야가, 이전의 GATT 체제에서 사실상 예외부문으로 남아있던 것과는 달리, 예외 없는 관세화와 국내

보조 및 수출보조에 대한 제약의 설정을 통해 자유무역의 원칙에 포함되었다. 더욱이 2000년부터 농업분야의 협상이 '기설정 의제'로서 새로운 전반적 라운드의 시작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된다. 이에 따라 우리 농업과 농업정책은 더욱 강해져 가는 시장개방과 국내농정개혁의 압력 속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농업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WTO에서의 다자간 협상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무역자유화를 위하여 다양한 양자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정보기술(ITA)협정과 APEC에서의 조기자유화(EVSL) 등이 이에 속한다. 특히 전자의 경우 비록 품목 수는 적지만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20%에 가까운 제품이 협상 품목으로 첨단산업에 속하는 전기 및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인쇄·복제, 화학, 정밀기계 등을 포함하고 여타 산업의 부분품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ITA협정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관련 산업에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경제의 지식화와 세계화로 인해 규제적이고 재량적인 무역정책수단과 산업정책수단들은 점차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관세정책은 가장 투명한 대외정책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은 지난 날의 관세율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일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금까지 균등관세율체제가 자원배분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또한 관세율정책이 앞으로 지식중심형 경제체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평가하고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은 수정·보완하고 잘된 부분은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관세율체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라운드에 대비한 관세율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관세율체제의 현황을 가공도별 그리고 산업별로 파악한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상을 통해 WTO체제에 확실하게 편입된 농산물 분야 관세정책의 현황과 의의

를 검토한다. 이 밖에도 관세율체계와 관세의 중요성에 대하여 국제 비교를 통하여 점검한 후 한국은행의 IO 405개 산업에 관한 실효 관세율을 도출한다. 이어서 WTO의 새로운 라운드에서의 협상전망과 우리 입장을 검토한 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의 기본입장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 보고서는 장근호 박사와 이명현 박사가 집필하였다. 두 사람은 자료제공을 포함하여 많은 도움을 준 재정경제부 김교식 과장, 진양현 서기관, 탁윤성 사무관, 농림부 배상두 사무관, 그리고 한국은행과 관세청의 관계자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한 저자들은 자료수집, 전산처리 및 원고정리에 수고한 김용대 주임연구원, 김근영 연구원과 안상숙, 변경숙 연구조원, 그리고 출판과 직원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1999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유 일 호

# 목 차

I. 서 론 .....	19
II. 우리나라 관세율구조의 특징과 현황 .....	22
1. 관세율구조 현황.....	22
2. 가공단계 및 산업별 관세율구조 현황 .....	32
3. 2000년도 관세율 개편안 .....	56
III. 농산물 관세의 현황과 개선방향 .....	64
1. 서 론.....	64
2. 농산물 관세의 특징 .....	64
3. 정책환경 .....	76
4. 개선방향 .....	86
IV. 탄력관세 적용현황과 정비방향 .....	91
1. 조정관세 .....	91
2. 할당관세 .....	98
V. 관세율체계의 국제비교 .....	108
1. 경제적 변수에 따른 적정 관세율 .....	108
2. 경제적 변수에 따른 적정 관세율구조 .....	110
VI. 실효관세율(1998년)과 관세율정책 .....	128
1. 개 요.....	128
2. 실효관세율의 개념 .....	129
3. 실효관세율 추정결과 .....	149

VII. ITA 협정과 실효관세율의 변화 .....	205
1. ITA 협상내용과 수출입동향 .....	205
2. ITA 협정으로 인한 과급효과: 2000년 .....	215
3. ITA 협정으로 인한 과급효과: 2004년 .....	226
VIII. 차기 라운드와 관세율정책 .....	235
1. 차기 라운드의 관세율 관련 협상전망 .....	235
2. 차기 라운드 관세율 인하협상이 실효관세율 분포에 미칠 영향 .....	247
IX. 요약 .....	259
1. 개요 .....	259
2. 요약 .....	260
X. 결론 .....	295
참고문헌 .....	310

## 표 목 차

〈표 II - 1〉 관세율구조 개편원칙 .....	22
〈표 II - 2〉 1997년 산업별 관세율 조정내역 .....	24
〈표 II - 3〉 1999년 평균관세율 현황(HSK10단위 기준) ...	25
〈표 II - 4〉 농산물과 공산품의 고관세(Tariff Peak) 품목 (HS 10단위 기준).....	26
〈표 II - 5〉 우리나라 관세율구조와 연도별 변화추이 (명목관세율) .....	32
〈표 II - 6〉 가공도별 수입품 분류표와 실행관세율 (1999년) .....	34
〈표 II - 7〉 가공도별 수입액의 변화추이 .....	37
〈표 II - 8〉 소비자재, 원자재, 자본재의 가중평균(단순평균) 실적관세율 변화 .....	39
〈표 II - 9〉 가공도별 관세율구조 현황(1998~9년) .....	45
〈표 II -10〉 가공도별 실적관세율 구조의 변화 .....	50
〈표 II -11〉 IO 28산업의 실행(1999년) 및 실적(1998년) 관세율 .....	52
〈표 II -12〉 산업별 실적관세율의 단순평균과 표준편차 변화 추이(1990~1994, 1998).....	53
〈표 II -13〉 IO 28산업 실적관세율의 단순평균과 표준편차 변화추이(1990, 1994, 1998년) .....	54
〈표 II -14〉 2000년 품목별 기본관세율 조정(안) .....	57
〈표 II -15〉 2000년 관세율 조정에 따른 실효관세율의 변화 (단순평균 기준).....	62

〈표 II-16〉 2000년 관세율 조정에 따른 실효관세율의 변화 (가중평균 기준).....	63
〈표 III-1〉 평균양허세율 .....	65
〈표 III-2〉 할당외 양허관세 180% 이상 품목의 관세율 ...	67
〈표 III-3〉 OECD국가의 평균 양허 관세율 회귀분석 결과...	68
〈표 III-4〉 OECD국가의 MFN 관세율 회귀분석 결과 .....	69
〈표 III-5〉 기본관세율 분포 .....	70
〈표 III-6〉 시장접근물량 있는 품목의 양허세율 분포 (접근물량 외).....	70
〈표 III-7〉 양허세율 180% 이상인 품목.....	71
〈표 III-8〉 국별 비종가세 비율 및 분포 .....	73
〈표 III-9〉 특별긴급관세 발동현황 .....	74
〈표 III-10〉 농림수산물 및 음·식료품 실효관세율 분포 .....	75
〈표 III-11〉 품목별 수입 증대 현황 .....	79
〈표 III-12-1〉 시장접근세율이 있는 품목의 수입액 증대 현황 .....	80
〈표 III-12-2〉 시장접근세율이 있는 품목의 수입량 증대 현황 .....	81
〈표 III-13〉 시장접근물량 품목들의 관세할당 충족 상황 .....	82
〈표 III-14〉 농업, 농가소득의 변화 .....	84
〈표 III-15〉 1994~1997년간 식품자급도의 변화 .....	85
〈표 III-16〉 참깨(1207400000)의 국별 수입현황 (1998년) .....	90
〈표 III-17〉 오렌지(1805100000)의 국별 수입현황 (1998년) .....	90
〈표 IV-1〉 조정관세 적용현황 .....	92
〈표 IV-2〉 조정관세적용 농수산물의 국내생산 및 수입추이 ...	93

〈표 IV - 3〉	1999년도 조정관세를 포함한 기본관세 및 실효 관세율의 변화 .....	94
〈표 IV - 4〉	할당관세 적용현황.....	99
〈표 IV - 5〉	주요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관세지원액 추정 .....	102
〈표 IV - 6〉	1999년도 할당관세를 포함한 기본관세 및 실효 관세율의 변화 .....	104
〈표 V - 1〉	1995년 관세부담률 추정 결과(국제비교) .....	109
〈표 V - 2〉	OECD 표본국가의 관세율구조 분포 (1988, 93, 96년) .....	111
〈표 V - 3〉	QUAD 국가의 가공단계별 MFN 관세율구조...	112
〈표 V - 4〉	여타 OECD 국가의 가공단계별 MFN 관세율 구조 .....	113
〈표 V - 5〉	OECD 국가에 기반한 가공도별 관세율구조 추정 .....	115
〈표 V - 6〉	우리나라 가공도별 관세율구조 추정 .....	115
〈표 V - 7〉	QUAD 국가의 산업별 관세율 구조 (생산량 가중평균) .....	118
〈표 V - 8〉	OECD 국가의 산업별 관세율(생산량 가중평균)과 14개국 평균관세율 .....	120
〈표 V - 9〉	OECD 국가에 기초한 산업별 관세율 추정식 ...	122
〈표 V -10〉	OECD국가에 기초한 우리나라 산업별 관세율 구조 추정 .....	125
〈표 V -11〉	OECD 국가의 가중평균 산업별 관세율 (1988, 93, 96년) .....	126
〈표 VI - 1〉	우리나라 산업의 실효관세율 분포: 요약 (1998년, Corden 방식) .....	155

〈표 VI - 2〉	제1차 산업, 경공업과 중공업의 명목·실효관세율 분포(1998년 실적관세율) .....	158
〈표 VI - 3〉	실효관세율의 산업별 분포 .....	162
〈표 VI - 4〉	우리나라 농림수산품의 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Corden 방식) .....	168
〈표 VI - 5〉	우리나라 광산품의 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Corden 방식) .....	171
〈표 VI - 6〉	우리나라 음·식료품의 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Corden 방식) .....	172
〈표 VI - 7〉	우리나라 섬유·가죽제품의 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Corden 방식) .....	179
〈표 VI - 8〉	우리나라 목재·종이제품의 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Corden 방식) .....	181
〈표 VI - 9〉	우리나라 인쇄·출판 및 복제의 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Corden 방식) .....	182
〈표 VI - 10〉	우리나라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의 실효관세율 분포(1998년, Corden 방식) .....	183
〈표 VI - 11〉	우리나라 석유·석탄제품의 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Corden 방식) .....	184
〈표 VI - 12〉	우리나라 화학제품의 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Corden 방식) .....	186
〈표 VI - 13〉	우리나라 비금속광물제품의 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Corden 방식) .....	190
〈표 VI - 14〉	우리나라 제1차금속품의 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Corden 방식) .....	193
〈표 VI - 15〉	우리나라 금속제품의 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Corden 방식) .....	194

〈표 VI-16〉	우리나라 일반기계의 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Corden 방식) .....	196
〈표 VI-17〉	우리나라 전기·전자기계의 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Corden 방식) .....	200
〈표 VI-18〉	우리나라 정밀기계의 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Corden 방식) .....	201
〈표 VI-19〉	우리나라 수송장비의 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Corden 방식) .....	202
〈표 VII-1〉	정보기술협정(ITA) 등 UR 분야별 협정의 우리나라 참여내용 .....	206
〈표 VII-2〉	정보기술협정(ITA) 품목의 연도별 가중평균 관세율(1998년 수입액 기준) .....	207
〈표 VII-3〉	정보기술협정(ITA) 품목의 수출입액 및 관세율(1998년) .....	208
〈표 VII-4〉	정보기술협정(ITA) 품목의 수·출입액과 관세율(1998년) .....	212
〈표 VII-5〉	ITA에 따른 2000년도 명목·실효관세율의 변화(가중평균 실행관세율 기준) .....	218
〈표 VII-6〉	ITA에 따른 2000년도 명목·실효관세율의 변화(가중평균 실행관세율 기준) .....	219
〈표 VII-7〉	ITA에 따른 2000년도 명목·실효관세율의 변화(단순평균 실행관세율 기준) .....	223
〈표 VII-8〉	ITA에 따른 2000년도 명목·실효관세율의 변화(단순평균 실행관세율 기준) .....	224
〈표 VII-9〉	ITA에 따른 2004년도 명목·실효관세율의 변화(가중평균 실행관세율 기준) .....	227
〈표 VII-10〉	ITA에 따른 2004년도 명목·실효관세율의 변화(가중평균 실행관세율 기준) .....	228

〈표 VII-11〉 ITA에 따른 2004년도 명목·실효관세율의 변화(단순평균 실행관세율 기준) .....	231
〈표 VII-12〉 ITA에 따른 2004년도 명목·실효관세율의 변화(단순평균 실행관세율 기준) .....	232
〈표 VIII-1〉 UR 전후 양허품목 비중 .....	236
〈표 VIII-2〉 우리나라의 미양허품목 .....	238
〈표 VIII-3〉 QUAD국과 우리나라의 고율관세 품목수 .....	240
〈표 VIII-4〉 미소관세의 분포 .....	242
〈표 VIII-5〉 비종가세의 분포 .....	248
〈표 VIII-6〉 현행 양허세율과 실행세율 .....	250
〈표 VIII-7〉 시나리오에 따른 실행관세율의 변화 .....	251
〈표 VIII-8〉 시나리오하에서의 실행관세율의 분포 .....	252
〈부표 1〉 QUAD국의 HS 4단위별 고율관세 분포 (1996년, MFN 기준) .....	314
〈부표 2〉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농림수산물) .....	323
〈부표 3〉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광산물) .....	324
〈부표 4〉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음·식료품) .....	325
〈부표 5〉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섬유·가죽제품) .....	327
〈부표 6〉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목재·종이제품) .....	328
〈부표 7〉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인쇄·출판 및 복제) .....	328

〈부표 8〉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석유·석탄제품) .....	329
〈부표 9〉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화학제품) .....	330
〈부표 10〉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비금속광물제품) .....	331
〈부표 11〉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제1차금속) .....	332
〈부표 12〉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금속제품) .....	333
〈부표 13〉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일반기계) .....	334
〈부표 14〉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전기·전자기기) .....	335
〈부표 15〉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정밀기기) .....	336
〈부표 16〉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수송장비) .....	336
〈부표 17〉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가구 및 기타제조업 제품) .....	337

## 그림 목차

[그림 II - 1]	1999년 실행관세율의 분포도 (HS 10단위 기준).....	27
[그림 II - 2]	1999년 공산품의 실행관세율 분포도 (HS 10단위 기준).....	28
[그림 II - 3]	1998년 실적관세율의 분포도 (HS 10단위 기준).....	29
[그림 II - 4]	1998년 공산품의 실적관세율 분포도 (HS 10단위 기준).....	30
[그림 II - 5]	1999년 농수산물의 실행관세율 분포도 (HS 10단위 기준).....	31
[그림 II - 6]	1998년 농수산물의 실적관세율 분포도 (HS 10단위 기준).....	31
[그림 II - 7]	수입재 성격에 따른 수입추이 (1990~1998년) .....	35
[그림 II - 8]	수입 단순평균관세율의 연도별 변화 .....	39
[그림 II - 9]	1999년 가공도별 실행관세율 구조 .....	41
[그림 II - 10]	1998년 가공도별 실적관세율 구조 .....	41
[그림 II - 11]	단순평균 실적관세율의 변화 (1990, 94, 98년) .....	47
[그림 II - 12]	가중평균 실적관세율의 변화 (1990, 94, 98년) .....	47
[그림 III - 1]	생산자소득 최저수준 유지하에서 비효율 최소화 .....	87

[그림 VI- 1]	단순평균 실적관세율 .....	150
[그림 VI- 2]	가중평균 실적관세율 .....	150
[그림 VI- 3]	단순평균 실행관세율 .....	153
[그림 VI- 4]	가중평균 실행관세율 .....	153
[그림 VI- 5]	단순평균 실적관세율의 분포 (경공업 및 중공업) .....	159
[그림 VI- 6]	가중평균 실적관세율의 분포 (경공업과 중공업) .....	159

## I. 서 론

지난 1984년 균등관세율체제를 시행한 이래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은 대(對)산업 중립성을 대체로 잘 유지하여 왔다. 물론 그 동안 사양산업을 위한 관세율 조정 등 부분적인 관세율 개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관세율정책이 갖는 정치경제학적 의미를 감안할 때 관세율정책에 관한 한 정부가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을 충실히 견지하여 왔다고 평가된다.

한편 균등관세율체제가 도입되고 난 지 16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그 동안 대내외적 경제환경은 상당한 변화와 부침을 거듭해 왔다. 우선 균등관세율체제의 원칙이 정립된 1984년에 비하여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중공업 중심의 경제로 재편되어 왔다. 경제발전단계로 볼 때 고부가가치의 경제구조를 창출하기 위하여 중공업 중심의 경제발전이 불가피하였지만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 정보화나 산업의 지식화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 틀림없다.

특히,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급격한 산업구조의 개편을 예고하고 있는바, 현재야말로 지난날의 관세율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즉, 지금까지 균등관세율체제가 자원배분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또는 관세율정책이 앞으로 지식중심형 경제체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평가하고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수정·보완하고 잘된 점은 강화하는 일이 2000년대의 지식형·개방형 경제를 임하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두 번째로 UR협상 결과로 WTO체제가 1993년에 성립되고 난 후 시애틀에서 New Round가 또 다시 출범하여 공산품에 관한 시

장접근협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현행 관세율체계를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뉴라운드에서 논의될 공산품협상은 여타 부문에 비하여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협상분야이므로 동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WTO협상을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관세율체계의 현황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책 현황과 입장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협상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WTO에서의 다자간 협상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무역자유화를 위하여 다양한 양자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ITA협상과 이외 APEC에서의 조기자유화(EVSL) 등이 이에 속한다. 특히 전자의 경우 비록 품목수는 적지만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약 19%(24조 7천억원, 1998년 기준)에 달하는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는 협상으로서 전기 및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인쇄·복제, 화학, 정밀기계 등의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등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증대될 것을 감안하면 ITA협상에 따른 보완조치와 향후 정책방향을 심사 숙고하여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New Round에서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기협상의제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농산품에 관한 수입을 지연하고 싶지만 일본이 쌀의 관세화를 조기 시행하는 등 농산품의 수입자유화가 불가피한 대세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과제의 핵심은 어떻게 개방에 따른 정치적 압력을 순화시키면서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수입 확대와 관세화 협상을 도출해내고 대내적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농업구조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는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개방 압력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시에 무역자유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제가 전 산업에서 자립형 경제를 성취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성장산업에 유인될 수 있는지를 연구·분석하고 이를 관세율정책을 통하여 입안하는 일이 2000년대에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본 연구의 핵심적인 논의이기도 하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제 II 장에서 우리나라 관세율체제의 현황을 가공도별 그리고 산업별로 파악해 보고 특히 제 III 장에서는 농산물 관세정책의 현황과 의의를 검토한다. 제 V 장에서는 관세율 체계에 관한 국제비교를 통하여 그 시사점을 논의한 후 제 VI 장에서는 한국은행의 IO 405개 산업에 관한 실효관세율을 도출한다. 이어서 제 VII 장과 제 VIII 장에서는 ITA 협상의 시사점과 WTO New Round에서의 협상전망과 우리 입장을 간략히 검토한 후 제 IX 장에서 요약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의 기본입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II. 우리나라 관세율구조의 특징과 현황

### 1. 관세율구조 현황

#### 가. 관세율구조의 원칙

우리나라는 지난 1984년 이후 10년간 두 차례에 걸쳐서 관세율 인하예시제를 시행하여 원료 1~3%, 중간재 5%, 그리고 완제품 관세율 8%의 균등관세율체제를 지난 1994년에 완료한 바 있다. 관세인하예시제는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을 통하여 내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산업으로의 자원유입을 촉진하는 등 선진형 경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관세율인하예시제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평균관세율은 7.9%로서 선진국 평균관세율과 큰 차이가 없으며 같은 가공단계 내에서는 품

〈표 II-1〉 관세율구조 개편원칙

(단위: %)

		1988	1989	1990/91	1992	1993	1994~
원료	비경쟁원료	5	1~2	1~2	1~2	1~2	1~2
	경쟁원료	10	5	5	5	4	3
중간재 및	중심세율	20	15	13	11	9	8
	경쟁력 확립 및	10~20	10	10	10	9	8
	국산화 곤란 품목 (1차 가공품)	(10~20)	(10)	(10)	(9)	(7)	(5)
완제품	사치성 소비재	30~50	20	16	13	10	8
	자동차	50	25	20	17	15	10

('95:협8)

자료: 재정경제부.

목별로 차별이 없는 관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산품의 경우 원자재에 원칙적으로 2.8%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중간재와 완제품의 평균관세율은 각각 7.0%, 7.1%에 이르며 농산품 평균관세율은 16.6%에 달한다.

그러나 농산품 수입장벽의 관세화, 식료품과 섬유산업 등 취약산업의 보호를 위한 관세율 조정 그리고 ITA 등 국제협상에 따른 관세율 개편으로 균등관세율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가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탈바꿈하면서 관세율체계도 그와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되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원자재를 무세화하는 문제, 각종 협약에 따른 산업별 과급효과를 내재화하는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앞으로 중장기적 관세율체제의 개편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균등관세율체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구조조정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1997년 당시 총 257개 품목에 관한 관세율 조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우선 에너지·원료를 제외한 일부 원자재와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간재에 대하여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지원하고, 둘째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관세율이 낮아 경쟁국에 비해 공정한 경쟁이 어렵고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섬유·신발 등에 대하여 관세율을 부분 인상하며 3년 이상 장기적으로 탄력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기본관세화하였다.

상기 기준에 따라 1997년 당시 가공식품과 수산물, 화학, 철강·금속, 기계·전자 그리고 고무와 목제품 등 182개 품목에 관한 관세율이 인하되었고 섬유·의복과 신발 등 75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율을 인상하였다. 특히 원자재 및 중간재의 경우 8% 적용품목은 5%로, 5% 적용품목은 3%로 관세율을 인하하였고 섬유 등은 경쟁국 관세율과 양허세율에 따라 10%, 13%, 16%의 세가지 기준으로 관세율을 조정, 인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표 II-2〉 1997년 산업별 관세율 조정내역

(단위 : %)

구 분	세율인하	세율인상	조 정 내 역
가공식품 및 종자용 수산물	10(3, 6)	1	· 커피두(3→2) · 조주정(30→10) · 코코아 분말(8→5) · 양식용김(50→10) · 종자용 굴(20→5) · 조당(5→3)
화 학	32(4, 28)	-	· 메탄올(5→3) · 오산화바나듐(8→3) · 나프틸아민, 향료원료, 글루탐산(8→5) · 윤활기유, 윤활유(8→7)
섬유·의류	30(29, 1)	65	· 양모, 원면(2→1) · 초산셀룰로스(8→5) · 편, 면직물, 합성직물, 양탄자(8→10) · 가죽의류, 편·직물제 의류(8→13) · 커튼, 텐트(8→13)·모피의류(8→16)
신 발	-	4	· 가죽신발(8→13) · 고무신발(8→13) · 직물제 신발(8→13)
철강·비철금속	47(14, 16)	-	· 고철, 해면철, 산화니켈(2→1) · 니켈괴, 주석괴, 합금철(5→3) · 스텐레스강, 고속도강, 철강봉(8→5)
기계·전자	32(-, 32)	3	· 항공기용 엔진(5→3) · 항공기용 자동제어기기(8→5) · 시계 무브먼트(8→5)
고무·피혁	17(16, 1)	-	· 천연고무(2→1) · 합성고무(8→5) · 원피(3→2)
목재·제지	14(-, 2)	-	· 우유, 쥬스팩원지(8→5) · 원목(2→1)
기 타	-	2	· 우산(8→13) · 볼베어링, 건전지(8→13)
합 계	182	75	

자료 : 재정경제부, 「1997 관세법 개정내용」.

나. 관세율구조의 현황과 변화

1) 평균관세율과 고관세 품목

이러한 일련의 관세율 개편과 조정작업을 거쳐 우리나라는 1999년 현재 기본세율과 이보다 낮은 양허세율을 포함한 단순평균 실행 관세율을 기준할 때 평균관세율이 8.9%에 달하고 수입액 가중평균 실행세율은 5.0%에 이르고 있다(〈표 II-3〉 참조). 공산품의 경우 단순평균과 수입액 가중평균세율이 이보다 낮은 7.3%, 4.6%에 달하며 농산물은 각각 17.9%, 10.9%에 이른다(HS 10단위 기준).

〈표 II-3〉 1999년 평균관세율 현황(HSK 10단위 기준)

(단위: 개, %)

구 분	품 목 수	기본평균 세 율	실행평균 세 율	기본가중 평균세율	실행가중 평균세율
전 체	11,075	9.37	8.87	6.31	4.97
농 산 물 (HS1~24류)	1,655	18.93	17.85	11.80	10.94
공 산 품 (HS25~97류)	9,420	7.70	7.30	5.95	4.58

- 주: 1. 실행평균세율은 기본세율보다 양허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양허세율을, 기본세율보다 양허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실행관세율의 평균임(할당, 조정세율은 제외)  
 2. 종량세 대상 21개 품목은 평균세율산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가중평균은 1998년 1~11월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함.  
 3.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농산물은 시장접근물량 이내 실행세율을 적용함.  
 자료: 재정경제부 및 관세청 전산자료.

또한 국제기준(관세율 15% 이상)에 의하여 고관세(tariff peak)에 해당하는 제품은 840개 품목으로 전체 품목의 7.86%에 이르고 국내기준에 따라 평균관세율 8%보다 3배(24%)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422개 품목으로 전체의 3.95%에 달한다. 특히 고관세 품목은 거의 대부분 농수산물에 집중되어 국제 및 국내기준으로 각각 813개와 421개 품목이 이에 해당되는 반면 공산품에서 고관세 품목은 국제기준으로는 단지 27개 품목, 국내기준으로는 단 1개 품목에 불과하다<sup>1)</sup>.

한편 관세할당과 탄력관세 등을 포함하여 실제 부과된 실적관세율(관세징수액/수입액)<sup>2)</sup>을 기준으로 하면 1998년 당시 고관세에 해당되는 품목이 국제기준으로 605개(6.46%), 국내기준으로는 337개(3.60%)로서 실행관세율보다 그 수가 적은데 공산품의 경우 음·식료품에 대한 관세할당의 적용으로 고관세 품목이 국제기준으로

〈표 II-4〉 농산물과 공산품의 고관세(Tariff Peak) 품목  
(HS 10단위 기준)

(단위 : 개, %)

		기본관세율		실행관세율		실적관세율	
		개 수	구성비	개 수	구성비	개 수	구성비
15% 이상	농수산물	828	7.74	813	7.60	535	5.71
	공산품	27	0.25	27	0.25	70	0.75
	전체	855	8.00	840	7.86	605	6.46
24% 이상	농수산물	498	4.66	421	3.94	327	3.49
	공산품	1	0.01	1	0.01	10	0.11
	전체	499	4.67	422	3.95	337	3.60
7~9%		7,354	68.79	6,702	62.69	5,115	54.61

자료 : 재정경제부 및 관세청 전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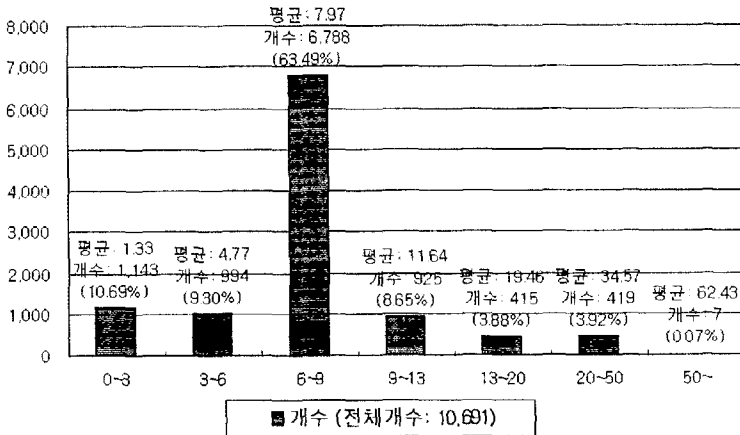
- 1) 공산품 고관세 품목은 알콜성 합성조제품(HS 3302102011)으로 3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 2) 실적관세율은 1998년 평균환율(1,396.8원)로 달러 표시 수입액을 원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 표시 관세징수액으로 나눈 수치로서 수입시점의 환율변화에 따라 실제 부과된 관세율과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70개, 국내기준으로 10개에 달한다<sup>3)</sup>.

2) 관세율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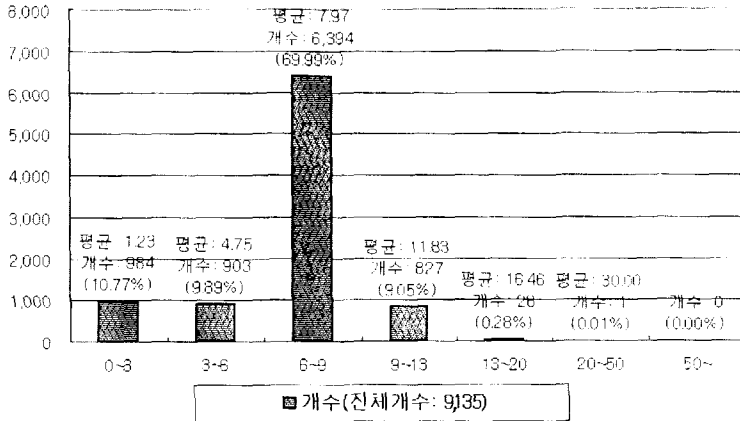
1999년 실행관세율의 분포를 [그림 II-1]로 살펴보면 HS 10단위 품목 10,691개 중 6,788개 품목, 전체 비중으로는 약 63.5%에 달하는 제품이 6~9% 중심관세율 구간에 집중되어 이들 수입품의 평균세율이 8.0%에 이르며 정확히 8.0%가 적용되는 품목수는 6,593개(62%)에 달한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품목이 중간세율인 8%에 몰려 있는 데 비하여 미소관세(nuisance tariff)에 해당하는 3% 이하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1,143개로서 전체 품목의 10.7%를 차지하며 평균세율이 1.33%이다. 반면 20%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품은 주로 농수산물로 426개 제품, 전체 비중이 약 3.97%에 이르는데 평균세율은 35.0%이다.

[그림 II-1] 1999년 실행관세율의 분포도(HS 10단위 기준)



3) 국제기준에 따른 고관세 품목의 실행(실적) 평균세율은 농산품의 경우 27.7%(35%), 공산품의 경우 17%(29.3%)이며 국내기준에 따른 고관세 품목은 농산품이 35.1%(44.6%) 그리고 공산품이 30%(101.8%)이다.

[그림 II-2] 1999년 공산품의 실행관세율 분포도(HS 10단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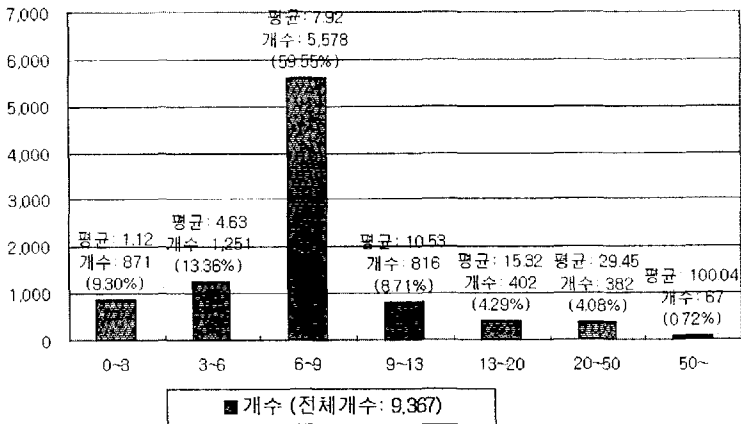
즉, 공산품에 국한하여 [그림 II-2]에서 관세율의 분포를 보면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율 9% 이하로서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는 수입품이 농수산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체 9,135개 품목 중에서 약 70%에 달하는 수입품이 중심세율 구간(6~9%)에 있는데 비하여 관세율이 13% 이상인 품목은 극히 미미하여 27개 품목에 불과하다. 관세율 9% 이상의 실행 관세율을 적용받는 제품은 주로 경공업제품으로 9% 이상의 품목은 전체 9,135개 품목 중 854개 품목(9.37% 비율)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관세율이 13% 이하인 수입품이 대부분으로 827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공산품에서 미소관세에 해당하는 품목은 다수로서 984개(10.8%)에 이르는데 농수산물에서 미소관세 품목은 159개 품목이다.

한편, [그림 II-3]에서 보듯이 관세할당과 탄력관세 등을 포함하여 1998년에 실제 적용된 실적관세율은 중심세율(6~9%)에 5,578개 품목이 모여 있어 전체 품목의 약 60%에 이른다. 실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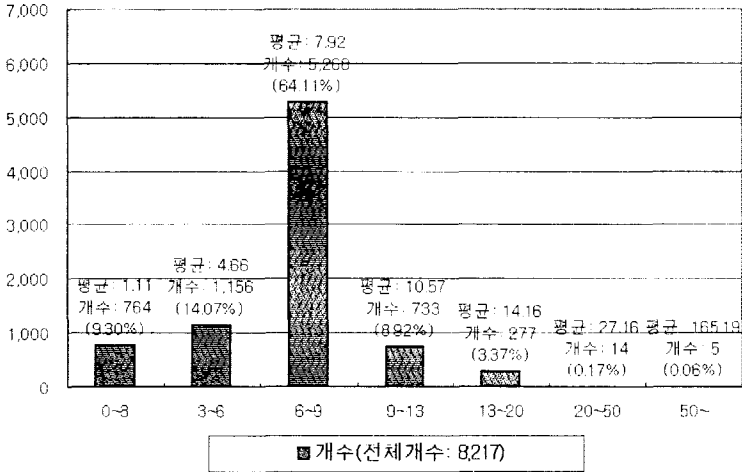
세율은 수입실적이 있는 품목 9,367개를 대상으로 하여 전체 품목 수가 실행관세율보다 약 1,300개 정도 적다. 실적관세율에서 미소 관세에 해당하는 품목은 871개(9.3%)로 평균세율이 1.12%에 이른다. 또한 관세율이 6% 이하인 품목의 비율은 실행세율과 실적세율에서 각각 20%, 22.7%에 달하며 반대로 9.0% 이상 품목은 각각 17.1%, 17.8%이다. 이와 같이 실적세율의 분포는 실행세율보다 널리 퍼져 있는데 구간별 평균 관세율도 관세율 50% 구간을 제외하면 실행세율이 실적세율보다 높은 편이다.

공산품의 경우에도 실적관세율의 분포가 이와 유사한 모습을 띠어 실행관세율보다 대체로 완만한 형태를 취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음·식료품에 관한 조정관세와 관세할당 등의 적용으로 실적관세율이 13% 이상인 수입품은 296개 품목에 달한다. 이를 실행관세율 기준의 27개 품목에 비교하면 월등히 많은 269개 품목이 추가적으로 13%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표 II-4〉 참조).

[그림 II-3] 1998년 실적관세율의 분포도(HS 10단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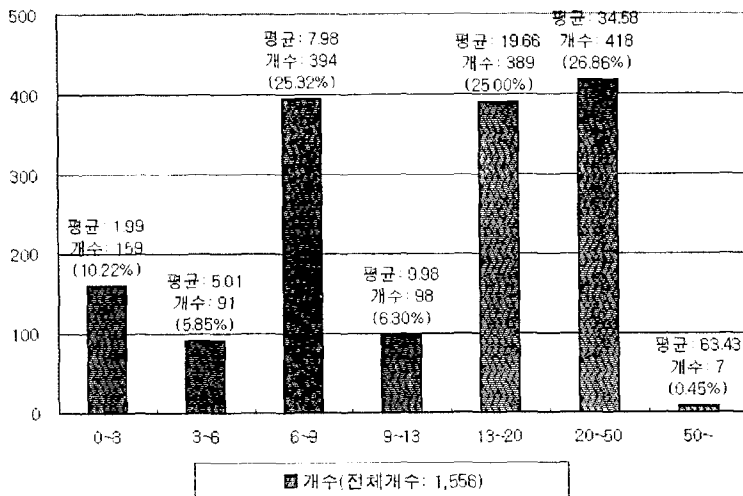


[그림 II-4] 1998년 공산품의 실적관세율 분포도(HS 10단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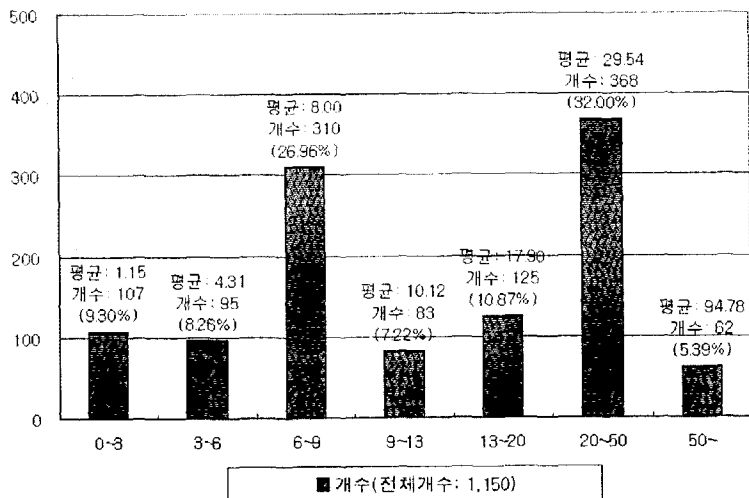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농·수산품의 경우 그 분포도가 공산품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중간세율 구간에 전체 1,556개 수입품의 25~27%에 해당하는 품목만이 존재할 뿐이며 특히 13%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이 대부분으로 전체 품목의 48~54%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세율이 13~20% 사이에 있는 품목은 실행관세율의 경우 그 비율이 25%에 이르는데 이에 비하여 실적관세율에서는 그 비율이 매우 적어서 전체 품목의 약 11%에 불과하다. 반면 후자의 경우 관세율이 20% 이상인 수입품이 전체 품목의 37.4%로 실행관세율보다 약 10% 정도 더 많다. 따라서 농수산물의 경우 기본관세에 대비할 때 관세할당 등의 적용으로 20% 이상의 고율 관세를 실제 적용받는 품목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I-5] 1999년 농수산물의 실행관세율 분포도(HS 10단위 기준)



[그림 II-6] 1998년 농수산물의 실적관세율 분포도(HS 10단위 기준)



## 2. 가공단계 및 산업별 관세율구조 현황

### 가. 가공단계별 제품분류와 수입구조

#### 1) 1990년대 관세율구조

우리나라는 <표 II-5>에서 보듯이 관세율인하예시체의 시행으로 1994년 당시 공산품에 6.2% 그리고 농산품에는 16.6%의 평균 관세율을 유지하여 왔다. 특히, 공산품의 경우 원자재는 2.8%, 중간재는 7.1% 그리고 완제품에는 7.2%의 관세율을 적용해 왔는데 1997년 관세율 개편 등 부분적인 세율 조정으로 가공단계별 관세율이 일부 변화하게 되었다.

<표 II-5> 우리나라 관세율구조와 연도별 변화추이(명목관세율)

(단위 : %)

	1982	1984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이후
평균관세율	23.7	21.9	18.1	12.7	11.4	10.1	8.9	7.9
농 산 물	31.4	29.6	25.2	20.6	19.9	18.5	17.8	16.6
공 산 품	22.6	20.6	16.9	11.2	9.7	8.4	7.1	6.2
원 자 재	15.5	11.9	10.6	3.9	3.9	3.3	3.2	2.8
중 간 재	25.4	21.5	18.7	11.7	10.7	9.3	7.8	7.0
최 종 재	33.1	26.4	24.7	13.3	11.2	9.4	7.9	7.1

자료 : 재정경제원 보도자료, 1996.

가공도별 관세율구조는 관세율정책의 기본 골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1998년에 새로 개정된 관세청의 '수출입품목동향 분류체계'<sup>4)</sup>에 의거하여 약 9,000~10,000개에 달하는 HS 10단위 수입품을 소비재·원자재·자본재로 구분하고 이들 수입품의 평균관세율을 산출하고자 한다. 다만 수출입동향 품목분류

4) 관세청 관세연구소, 1998.

는 기초원료와 중간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원자재’로 통합하고 있으므로 원자재 중에서 소위 유사중간재(pseudo intermediate good)를 따로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sup>5)</sup>. 그런데 HS 10단위 수입품을 대상으로 원자재에서 중간재를 구분하는 작업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소요되므로 본고에서는 관세청의 분류체계에서 세세분류를 대상으로 중간재를 판별하였다.

소비재·원자재·자본재 중에서 소비재는 곡물과 음·식료품이 주종인 직접 소비재 그리고 전자제품과 보석류 등의 내구소비재와 의류와 같은 비내구소비재로 구성된다. 소비재의 평균관세율은 1999년 실행관세율을 기준할 때 7.9%에 불과하지만 품목별로는 곡물 3.7%, 내구소비재 4.2%<sup>6)</sup>, 직접소비재 21.2%, 비내구소비재 10.0%로 제품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한편 원자재의 관세율은 4.8%이지만 기초원료는 3.4%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중간재는 이보다 높은 6.6%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전기·전자기기(2.8%), 기계류(6.9%) 등으로 구성된 자본재는 평균 4.1%의 낮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다(가중평균 기준).

5) HS 10단위 품목을 기준할 때 1998년 당시 총 9,503개 품목 중에서 소비재는 2,597개의 품목이 있으며 이는 다시 곡물(83개 품목), 직접소비재(841개 품목), 내구소비재(936개 품목), 비내구소비재((737개 품목)로 구성된다. 중간재는 4,615개 품목이 있는데 이는 기초원료(492개 품목)와 중간재(4,123개 품목)로 분류되고 자본재에는 2,291개 품목이 있다.

6) 추후에 논의되겠지만 내구소비재의 경우 금 수입을 제외하면 평균관세율은 7%대를 유지한다.

〈표 II - 6〉 가공도별 수입품 분류표와 실행관세율(1999년)

(단위 : %)

소비재(7.9)		곡물(3.7), 직접소비재(21.2), 내구소비재(4.2) 비내구소비재(10.0)
원자재(4.8)	기초원료(3.4)	연료(3.8), 광물(1.2), 경공업원료(2.9)
	중 간 재(6.6)	유지(5.1), 석유류(8.9), 화공품(7.2), 철강재(5.8) 비철금속(4.7), 기타(6.5)
자본재(4.1)		기계류 및 정밀기기(6.9), 전기·전자기기(2.8) 수송장비(3.7), 기타(4.5)

주 : 괄호 안에 제시된 실행관세율은 수입액 가중평균치임.

자료 : 재정경제부 전산자료 ; 관세청 관세연구소, 『수출입동향 품목분류』, 1998.

## 2) 가공도별 수입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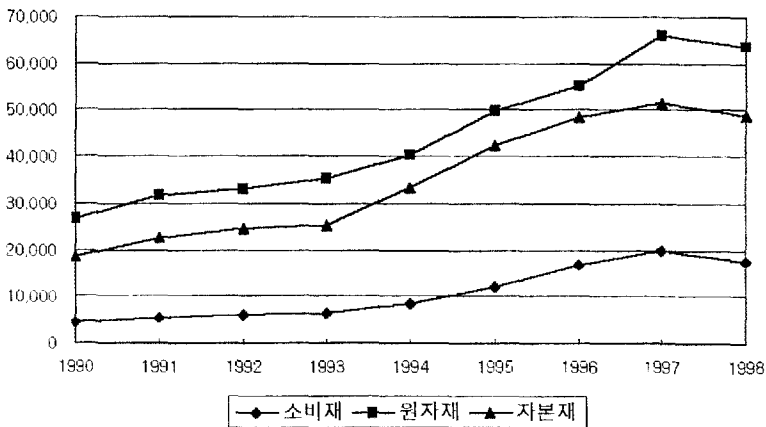
가공도별 관세율구조를 논하기 앞서서 가공도별 수입구조의 추이를 살펴보면 총수입액은 1990년 당시 약 49조 4천억원에서 IMF 사태 직후인 1997년 당시 137조 3천억원으로 약 1.8배 증가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총수입뿐만 아니라 가공도별 수입도 1993년 이후 급증하였다는 사실이다(〈표 II - 7〉 참조)<sup>7)</sup>. 수입품 중에서 특히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여 1990년 당시 4조 3천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약 8.7%가 소비재였으나 1997년에는 19조 8천억원으로 약 14.4%를 차지하여 약 3.6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소비재 중에는 연지급수입 기간 동안 내외 금리차를 이용하려는 기업들의 변칙적인 금 수입이 1995년부터 성행하여 내구소비재로 처리된 금이 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 소비재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1994년 금 수입은 5,700억원에 불과하

7) 1998년은 경제위기가 발생하였고 평균환율이 1,396.8원으로 전년(949.9원) 대비 약 48%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인 연도이므로 1997년의 수입동향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였으나 1997년의 경우 금 수입액이 무려 6조 1천억원에 달하여 이 기간 동안 금 수입은 약 10.8배 증가하였다(달러화로는 9.1배). 이러한 금의 대량 수입은 달러화 기준으로 1997년 약 65억 2천만달러에서 1998년 45억 1천만달러, 1999년 11월 현재 32억 3천만달러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만약 금 수입을 제외할 경우 소비재 수입은 1990년~1997년 사이에 4조 1천억원에서 13조 8천억원으로 늘어 약 2.4배 증가하였고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에서 10.5%로 늘었다.

[그림 II-7] 수입재 성격에 따른 수입추이(1990~1998년)



〈표 II-7〉에서 보듯이 금을 제외하고 전자제품 등을 포함한 내구소비재의 수입을 살펴보면 1990~1997년 사이에 수입액은 약 4조 1천억원으로 1.9배 증가하였고 이는 전체 소비재 수입액의 30.2%에 해당한다. 반면 음·식료품과 같은 직접소비재와 의류 등의 비내구소비재 수입은 대략 6조 5천억원 정도가 수입되었다. 특히 직

접소비재 수입은 1990년 당시 1조원에 비하여 1997년 현재 약 2조 9천억원 정도 늘어 2.9배 증가하였으나 비내구소비재 수입은 1990년 4천억원에서 1997년 2조 6천억원으로 5.5배의 대폭적인 증가율을 보인다. 한편 IMF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1997년의 경우 전체 소비재 수입액은 19조 8천억원(금 제외, 13조 6천억원)으로 1998년에 비하여 2조 2천억원이 많은데 IMF 사태는 주로 금을 제외한 내구소비재와 비내구소비재의 수입 감소(2조 1천억원)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곡물과 직접 소비재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절대액으로는 아직 중간재를 포함한 원자재의 비중이 상당하여 원자재 수입은 1990년 당시 26조 6천억원에서 1997년 65조 9천억원으로 1.5배 증가하였는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8%에서 48.0%로 감소하였다. 자본재의 경우 같은 기간에 18조 5천억원에서 51조 6천억원으로 1.8배 증가하였으나 수입비중은 37.5%에서 변화가 없다. 이와 같이 1990년대에 들어오면 수입비중으로 볼 때 원자재 대신 소비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자본재에서는 변화가 없다.

원자재의 경우 수입증가율이 소비재에 미치지 못하지만 절대액수로는 전체 수입의 대략 절반인 약 66조원으로 1997년까지 7년간 39조원에 달하는 수입증가가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제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원료 수입이 2.3배나 증가하여, 1997년 현재 25조 8천억원 상당의 제품이 수입되었지만 광물과 경공업 원료 수입은 평균 수입증가율을 하회하는 증가율을 보인다. 이에 비하여 중간재에 속하는 비철금속 수입은 그 동안 2.1배 증가하여 4조 4천억원 정도 수입되었고 중간재의 상당 부분(35%)을 차지하는 화공품 수입은 1.3배 증가하여 10조 9천억원이 수입되는 등 중간재에서는 비철금속을 제외하면 큰 폭의 수입 증가를 보이는 품목은 없다.

〈표 II-7〉 가공도별 수입액의 변화추이

(단위 : 조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 소비재	4.3	5.4	6.1	6.5	8.4	12.0	17.0	19.8	17.6
곡물	1.3	1.4	1.7	1.7	1.8	2.2	3.1	2.9	3.5
직접소비재	1.0	1.7	1.7	1.7	2.3	2.8	3.3	3.9	3.3
내구소비재	1.6	1.9	2.1	2.4	3.1	5.4	8.3	10.3	9.3
비내구소비재	0.4	0.5	0.6	0.7	1.1	1.6	2.3	2.6	1.5
간이세율적용분	-	-	-	-	-	-	-	-	-
2. 원자재	26.6	31.7	33.0	35.3	40.3	49.8	55.1	65.9	63.7
기초원료	13.5	15.4	17.4	18.7	19.3	23.0	27.5	34.9	35.0
연료	7.8	9.4	11.4	12.1	12.4	14.6	19.5	25.8	25.4
광물	1.9	2.2	2.1	2.4	2.5	2.9	2.8	3.7	4.4
경공업연료	3.8	3.8	3.9	4.2	4.4	5.4	5.2	5.4	5.2
중간재	13.0	16.2	15.6	16.6	21.0	26.8	27.6	31.0	28.7
유지	0.1	0.2	0.2	0.2	0.2	0.3	0.3	0.3	0.4
섬유류	1.5	1.9	2.1	2.2	2.8	3.1	3.1	3.3	3.1
화공품	4.8	5.5	5.4	5.9	7.0	9.1	9.2	10.9	11.1
철강재	2.5	3.7	2.9	2.8	4.1	5.5	5.8	5.9	4.6
비철금속	1.4	1.7	1.7	1.9	2.6	3.7	3.5	4.4	4.7
기타	2.5	3.3	3.3	3.6	4.4	5.2	5.8	6.1	4.7
3. 자본재	18.5	22.7	24.6	25.4	33.5	42.3	48.3	51.6	48.9
기계류와 정밀기기	8.5	10.6	10.9	11.1	14.7	18.9	20.5	19.4	14.6
전기전자기기	7.4	8.9	9.8	10.6	13.8	17.9	21.3	27.3	30.2
수송장비	1.9	2.3	3.0	2.9	4.2	4.6	5.3	3.8	3.0
기타	0.7	0.9	0.9	0.7	0.8	0.8	1.2	1.3	1.1
총 계	49.4	59.7	63.8	67.2	82.2	104.1	120.4	137.3	130.3

자료 : 재정경제부 전산자료, 관세청 관세연구소 『수출입동향 품목분류』, 1998.

자본재의 경우 주로 전기·전자기기의 수입이 급증하여 1997년 현재 27조 3천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1990년에 비하여 약 2.7배 증가한 것이며 기계류는 1.3배 증가하여 19조 4천억원의 수입이 발생하

였다. 요컨대, 우리나라 수입은 1993년 이후 대폭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증가율이 큰 품목은 전기·전자기기, 비내구소비재와 연료이며 이외 비철금속과 직접 소비재의 수입도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절대액수로는 연료 및 화공품과 전기·전자기기 그리고 일반기계 및 정밀기기가 수입액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 나. 가공단계별 관세율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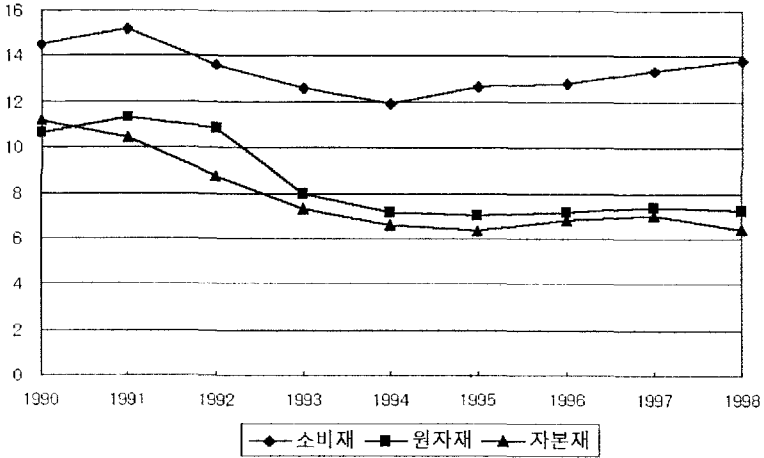
##### 1) 가공도별 관세율구조의 변화추이 : 개요

전술한 대로 수입품은 크게 소비재와 원자재 그리고 자본재로 분류되는데 관세율인하예시제의 시행을 전후하여 발생한 관세율 인하의 폭은 사용 용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림 II-8]에서 보듯이 1990~1998년 사이에 단순평균 실적관세율은 11.8%에서 9.0%로 하락하였는데 그 중 소비재 관세율은 14.5%에서 14.1%로 0.4% 포인트만 감소하였다. 그러나 원자재와 중간재 관세율은 10.6%에서 7.4%로 3.2% 포인트가 하락하였고 자본재 관세율은 11.2%에서 6.6%로 4.6% 포인트나 감소, 더욱 큰 폭으로 관세율이 떨어졌다. 한편 그 추세로 보면 소비재 관세율은 1994년 11.9%를 전후하여 인상되는 추세에 있으며 원자재와 자본재는 1994년 평균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수입가중 평균관세율도 1990년 당시 7.4%에서 1998년 5.0%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데 단순평균 관세율과 달리 대부분의 용도별 평균실적관세율도 이와 유사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특히 소비재 관세율의 경우 같은 기간에 10.1%에서 8.1%로 하락하여 3%의 관세가 부과되는 금을 포함한 수입액이 많은 제품의 관세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자본재와 원자재의 관세율도 많이 감소하여 대략 소비재 실적관세율의 2분의 1에 불과한 4%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단순평균 관세율과 마찬가지로 원자재(6.4%→4.4%)에 비해 자본재의 관세율이 8.2%에서 4.8%로 대폭 하락하였다.

[그림 II-8] 수입 단순평균관세율의 연도별 변화

(단위 : %)



<표 II-8>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의 가중평균(단순평균) 실적관세율 변화

(단위 : %)

연도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전체
1990	10.1(14.5)	6.4(10.6)	8.2(11.2)	7.4(11.8)
1991	13.4(15.2)	5.7(11.3)	8.3(10.4)	7.4(12.1)
1992	11.3(13.6)	5.2(10.8)	6.6( 8.7)	6.3(11.1)
1993	9.8(12.6)	4.7( 8.0)	5.8( 7.3)	5.6( 9.1)
1994	9.7(11.9)	4.6( 7.2)	5.3( 6.6)	5.4( 8.3)
1995	9.6(12.7)	4.6( 7.0)	5.2( 6.4)	5.4( 8.4)
1996	8.6(12.9)	5.0( 7.2)	6.2( 6.8)	6.0( 8.6)
1997	8.8(13.0)	4.7( 7.2)	6.5( 6.8)	5.9( 8.7)
1998	8.1(14.1)	4.4( 7.4)	4.8( 6.6)	5.0( 9.0)

주 : 가중평균은 관세징수액/수입액이며 단순평균은 품목수 평균으로 소비재와 원자재 등의 구분은 수출입동향 품목구분 체계개편(관세청)의 신분류에 따른 것임.

자료 : 관세청, 전산자료.

## 2) 가공도별 관세율구조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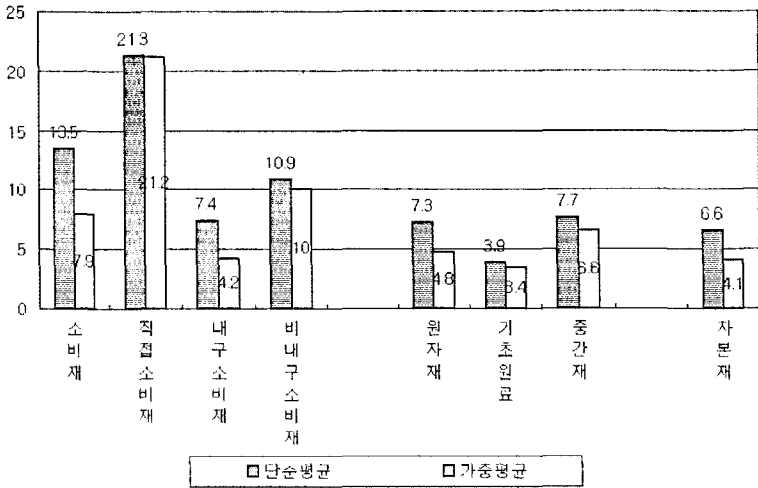
1998년 실적관세율(관세징수액/수입액)은 관세할당, 탄력관세 등을 감안한 평균세율로서 수입이 없는 품목의 경우 관세율을 환산할 수 없어 평균관세율 산정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된 관세율이라는 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하여 양허세율을 포함한 기본세율이 반영된 실행관세율은 수입이 없는 이유가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일종의 ‘잠재세율’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실행관세율은 개별 품목에 관한 수입제한적인 관세율정책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실행관세율(1999년)과 실적관세율(1998년)을 비교하면 서로 유사하여 단순평균 세율은 모두 8.9%이고 가중평균 세율은 각각 5.0%, 5.2%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관세율이 실행치인지 아니면 실적치인지보다는 가중치인지 또는 단순치인지에 따라 평균 관세율이 변모한다. 구체적으로 1999년 실행관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소비재의 단순평균(수입 가중평균) 관세율은 13.5%(7.9%), 원자재는 7.3%(4.8%) 그리고 자본재 관세율은 6.6%(4.1%)이다. 그러므로 단순평균 관세율이 가중평균 관세율보다 높고 특히, 소비재의 경우 더욱 그러한데 이밖에도 소비재의 평균세율은 원자재와 자본재에 비하여 거의 2배에 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원자재는 연료와 광물과 같은 기초원료뿐만 아니라 섬유·유지·화학품·철강재 등의 중간재를 포함하여 실제 원자재 관세율은 기초원료와 소위 ‘유사 중간재’의 합성세율로서 이들 품목을 구분하여 평균세율을 구하면 각각 3.4%(3.9%), 7.7%(6.6%)이다. 따라서 소위 유사 중간재 관세율에 비하여 자본재 관세율은 단순평균으로는 1.1% 포인트, 가중평균으로는 약 2.5% 포인트나 낮은 것이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의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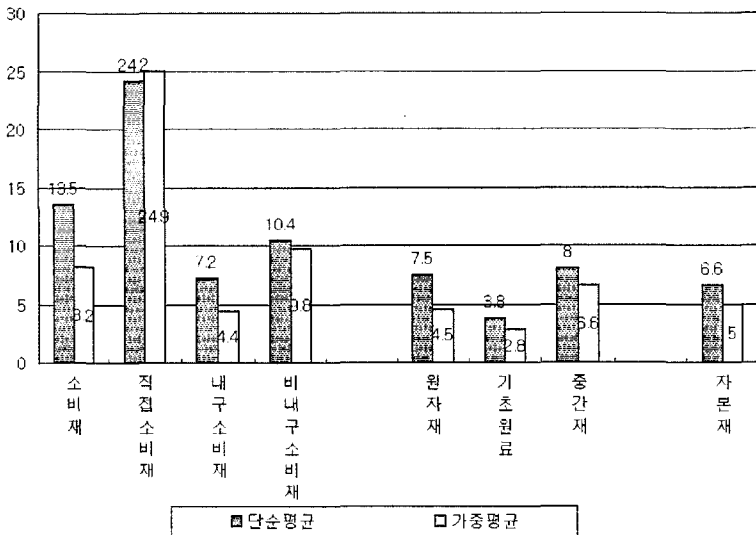
[그림 II-9] 1999년 가공도별 실행관세율 구조

(단위 : %)



[그림 II-10] 1998년 가공도별 실적관세율 구조

(단위 : %)



가중평균과 단순평균 관세율이 큰 차이가 없는 품목은 음·식료품과 농수산물 등의 직접소비재로서 이들 제품의 평균세율은 20% 이상으로 매우 높은데 특히 실적세율이 약 24%로 실행세율 21%보다 고율을 부과받고 가중평균 세율과 단순평균세율이 유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접 소비재에 대하여 수입제한적 관세율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류 중심의 비내구소비재도 수입액과 상관없이 대체로 10%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렇듯이 가중평균과 단순평균 관세율이 유사한 품목은 중간재에서 섬유류, 화공품, 기계류와 정밀기기가 있는데 특히 섬유류의 경우 가중평균세율(9.2%)이 단순평균세율(8.8%)보다 높아 이들 품목의 관세율에도 수입제한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상당수 품목에서는 단순평균 세율이 가중평균세율보다 높은 편이다. 우선 세율이 낮은 품목은 기초원료로서 광물에 대한 낮은 세율(1% 미만)로 인하여 기초원료의 가중평균 실행세율은 3.4%, 실적세율은 이보다 낮은 2.8%에 불과하다. 단순평균 세율보다 가중평균 세율이 2~3% 포인트 정도 크게 낮은 품목은 우선 내구소비재와 유지 그리고 전기·전자기기가 있는데 이들 품목의 1999년 가중평균(단순평균) 실행세율은 각각 7.4%(4.2%), 11.2%(5.2%), 6.3%(2.8%)이다. 이 밖에도 자본재 중 기타 품목과 비철금속의 단순평균 실행세율도 가중평균보다 낮아 각각 4.5%, 4.7%에 이른다. 따라서 이들 품목의 경우 수입액이 많은 제품의 관세율이 같은 부류에 속하는 다른 수입품에 비하여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내구소비재의 관세율이 자본재와 유사한 4%대에 불과한 이유는 전술한 대로 상당액이 수입되는 금에 대한 관세율이 3%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금 이외에는 약 7%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곡물도 가중평균세율이 3.7%로 단순평균세율 6.7%에 비하여 매우 낮는데 곡물의 경우 물론 관세 이외의 수입규제를 감안하여야 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1999년 실행관세율을 기준할 때 소비재의 경우 단순평균 세율이 13.5%이고 가중평균 세율은 7.9%로 소비재는 단순평균에 비하여 가중평균 세율이 매우 낮다. 그 내용에 있어서 곡물이 6.7%(3.7%), 직접소비재 21.3%(21.2%), 내구소비재 7.4%(4.2%) 그리고 비내구소비재가 10.9%(10.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소비재의 평균세율이 높은 이유는 직접소비재(주로 음·식료품과 곡물을 제외한 농수산물)와 비내구소비재(주로 의류)의 세율이 각각 20%, 10%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들 제품들은 또한 가중평균과 단순평균 세율이 차이가 없어 수입액과 상관없이 모든 품목이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는 반면 곡물은 평균 세율도 낮고 수입이 많은 품목에는 저율의 관세가 적용중이다. 그러나 수입구조의 변화에서 보았듯이 비내구소비재와 직접소비재는 경기동향에 민감하고 내구소비재는 금 수입을 제외하면 수입증가율은 곡물과 비슷하다.

수입비중이 상당한 원자재의 경우 단순(가중)평균 세율은 자본재와 큰 차이가 없는 7.3%(4.8%)이지만 실질적인 '기초원료'의 평균세율은 3.4%(3.9%)로 원유를 포함한 연료는 5.6%(3.8%), 광물 2.8%(1.2%) 그리고 경공업 원료는 4.1%(2.9%)의 관세율이 적용된다<sup>8)</sup>. 그러나 할당관세까지 포함한 이들 기초원료의 1998년 실적세율은 3.8%(2.8%)로서 5% 관세율이 적용되는 원유를 제외하면 세율은 더욱 낮아진다(광물 0.6%, 경공업 원료 2.1%).

기초원료를 제외한 유사중간재(pseudo intermediate good)에 해당하는 유지·섬유·금속재 등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7.7%(6.6%)이다. 유지는 단순평균 세율이 높아서 11.2%이지만 수입액을 가중하면 5.1%에 불과하며 1997년 세율 개편으로 섬유류 중간재(섬유

8) 연료에는 원유와 석유제품, 광물은 조광물과 비철금속광 그리고 경공업 원료는 원당, 당밀, 원피, 각종 고무, 목재, 원목, 펄프, 원모, 원면 등이 있다.

사, 직물)는 가중평균과 단순평균을 막론하고 거의 9%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화공품 중간재(스티렌, 가성소다, 화학비료, 염료)는 7%를, 철강재(무쇠, 철판, 강판)와 비철금속(동, 연)은 각각 6.9%(5.8%), 6.3%(4.8%)의 관세율을, 그리고 기타 중간재(시멘트, 고무제품, 종이, 유리)는 8.0%(6.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자본재의 경우 평균세율이 6.6%(4.1%)인데 기계류와 정밀기기는 이보다 높은 6.9%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6.3%의 단순평균 관세율을 적용받는 전기·전자기기는 ITA협정으로 가중평균 세율이 2.8%에 불과하고 수송장비와 기타 자본재는 이보다 높은 5.4%(3.7%), 7.0%(4.5%)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8%의 평균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직접소비재(약 21%)와 비내구소비재(약 10%)로 주로 음·식료품과 의류 등 경공업제품이다. 이 밖에도 섬유류가 8.7%의 세율을 적용받고 유지(11.2%)와 기타 중간재(8.0%) 품목의 세율도 높지만 섬유에 비하여 이들 두 제품의 수입가중 세율은 낮다. 내구소비재의 경우 단순평균 세율에 비하여 가중평균 세율이 4%밖에 안되는 이유는 3%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금 때문이며 금을 제외하면 가중평균 세율은 7%에 이른다. 한편 자본재의 단순평균 세율은 대체로 6~7%에 이르면 상당 품목의 수입가중 세율은 이보다 낮은 4% 수준이며 예외적으로 기계류와 정밀기기의 세율만이 7%에 달하고 이 밖에 화공품, 철강재, 기타 중간재의 가중평균 세율이 이와 유사하다. 반면 전기·전자기기와 수송장비 등은 3~4%의 낮은 가중평균 세율을 유지한다.

〈표 II-9〉 가공도별 관세율구조 현황(1998~9년)

(단위 : 개, 조원, %)

	품목수	1998년			1999년			
		수입액	품목수	단순	가중	품목수	단순	가중
1. 소비재	2,791	17.6	2,549	13.5	8.2	3,075	13.5	7.9
곡물	97	3.5	80	5.5	2.0	118	6.7	3.7
직접소비재	962	3.3	814	24.2	24.9	1,158	21.3	21.2
내구소비재	970	9.3	927	7.2	4.4	1,016	7.4	4.2
비내구소비재	762	1.5	728	10.4	9.8	783	10.9	10.0
간이세율 적용분	-	-	-	-	-	-	-	-
2. 원자재	4,794	63.7	4,543	7.5	4.5	5,501	7.3	4.8
기초원료	515	35.0	482	3.8	2.8	625	3.9	3.4
연료	105	25.4	103	5.8	3.3	118	5.6	3.8
광물	182	4.4	162	3.3	0.6	229	2.8	1.2
경공업연료	228	5.2	217	3.3	2.1	278	4.1	2.9
중간재	4,279	28.7	4,061	8.0	6.6	4,876	7.7	6.6
유지	79	0.4	70	10.5	4.8	93	11.2	5.1
섬유류	753	3.1	708	8.8	9.2	809	8.7	8.9
화공품	1,698	11.1	1,642	8.0	7.3	2,008	7.4	7.2
철강재	335	4.6	321	7.0	5.5	343	6.9	5.8
비철금속	251	4.7	240	6.2	4.3	272	6.3	4.7
기타	1,163	4.7	1,080	7.8	6.7	1,351	8.0	6.5
3. 자본재	2,386	48.9	2,282	6.6	5.0	2,483	6.6	4.1
기계류와 정밀기기	1,258	14.6	1,211	6.7	6.6	1,283	6.9	6.9
전기전자기기	688	30.2	680	6.7	4.5	703	6.3	2.8
수송장비	200	3.0	157	4.8	3.5	248	5.4	3.7
기타	240	1.1	234	7.1	4.1	249	7.0	4.5
총 계	9,971	130.3	9,374	8.9	5.2	11,059	8.9	5.0

주 : 1. 1998년수치는 실적관세율(관세징수액/수입액)이며 1999년 수치는 양허세율을 포함한 실행관세율임.

2. 내구소비재의 경우 금을 제외하면 가중평균 관세율이 1998년 7.1%로 대폭 증가함.

자료 : 재정경제부 전산자료 ; 관세청 관세연구소, 『수출입동향 품목분류』, 1998.

### 3) 가공도별 관세율구조의 변화 : 실적관세율 기준

1990년 이후 각 연도의 가공도별 실적관세율을 『수출입동향 품목분류』에 준하여 구할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HS 품목이 기존 신분류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품목은 10단위별로 검토하여 신분류체계에 알맞게 조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들 관세율을 연도별로 제시하지 않고 그 추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1990년과 1994년 및 1998년 수치를 그림과 표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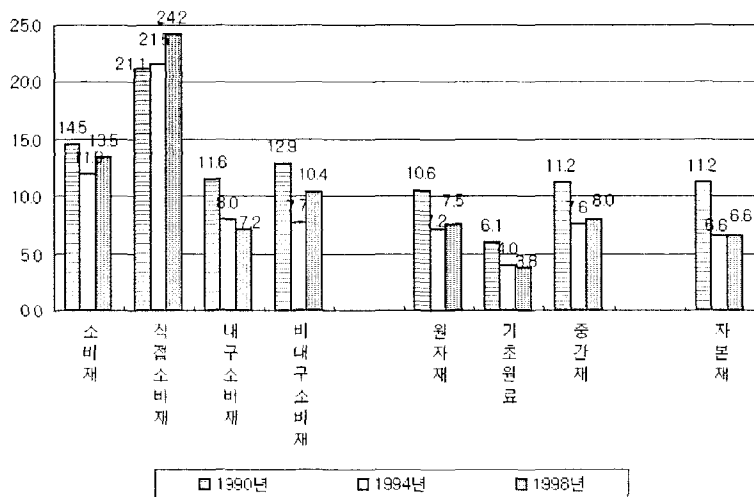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실적관세율의 경우 단순평균 세율은 1990년 11.8%에서 1994년과 1998년 8.3%, 8.9%로 약 3% 포인트 인하되었고 가중평균 세율은 7.4%→5.4%→5.2%로 약 2% 포인트 하락하여 관세율인하예시제로 인하여 단순평균 세율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소비재는 가중평균(단순평균)이 약 2%(1%) 포인트 하락한 데 비하여 원자재는 약 2%(3%) 포인트 하락하였고 자본재는 이보다 많은 3%(5%) 포인트대의 인하폭을 보여 품목에 따라 인하율의 차이가 많이 있으며 소비재의 경우 특히 단순평균세율의 하락폭이 가중평균보다 낮다.

즉, 1990~1998년 사이에 평균세율은 대체로 하락추세이지만 소비재의 경우 24% 이상의 상당히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직접 소비재와 10%대 관세율의 비내구소비재로 인하여 단순평균 세율은 14.5%에서 13.5%로 소폭 인하되었고 가중평균 세율이 이보다 낮은 10.1%에서 8.2%의 세율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원자재는 1990년 이후 평균관세율이 계속 하락하여 가중평균과 단순평균이 각각 6.4%→4.5%, 10.6%→7.5%로 인하되었고 자본재에서는 하락폭이 더욱 커서 각각 8.1%→5.0%, 11.2%→6.6%로 관세율이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소비재의 경우 다른 품목과 달리 단순평균 관세율이 1990년 14.5%에서 관세율인하예시제가 종료된 1994년 당시 11.9%로 감소하였으나 1995년 이후에는 관세율이 인상되어 199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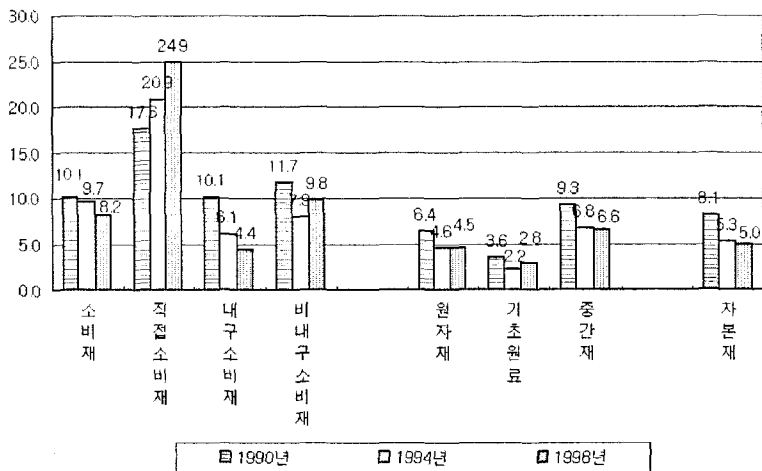
[그림 II-11] 단순평균 실적관세율의 변화(1990, 94, 98년)

(단위 : %)



[그림 II-12] 기중평균 실적관세율의 변화(1990, 94, 98년)

(단위 : %)



현재 단순평균 관세율이 13.5%로 증가된 데 비해 가중평균 세율은 변함없이 꾸준히 감소하였다(10.1%→9.7%→8.2%). 단순평균 세율의 경우 음·식료품 등 직접 소비재와 섬유류 등 비내구소비재의 세율인상에 따라 평균세율도 1995년을 전후하여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직접소비재의 가중평균 세율이 17.6%에서 24.9%로 증가하였고 비내구소비재 세율은 1990년 약 12%에서 1994년 8%대로 하락하였다가 그 이후 1997년에는 추세가 반전, 약 10%대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재 세율이 계속 감소하였던 이유는 전술한 대로 내구소비재의 가중평균(단순평균) 관세율이 10.1%(11.6%)에서 4.4%(7.2%)로 대폭 감소하였고 곡물도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가중평균 : 3.8%→2.0%, 단순평균 : 8.1%→5.5%). 특히 내구소비재에서는 금을 제외하면 가중평균 세율은 10.9%에서 7.1%로 감소하게 되어 금을 포함한 가중평균 세율 4.4%를 크게 상회한다.

한편 원자재는 가중평균 세율이 1990년 당시 6.4%에서 1998년에는 4.5%로 약 2% 포인트 감소하였고 단순평균 세율은 10.6%에서 7.5%로 약 3% 포인트 떨어졌다. 그 중에서 기초원료의 가중평균 관세율이 3.6%에서 2.8%로 하락하였고 단순평균은 6.1%에서 3.8%로 감소하여 수입되지 않는 품목의 관세율이 관세율인하에 시제로 많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간재의 경우, 가중평균 세율은 9.3%에서 6.6%로, 단순평균 세율은 11.2%에서 8.0%로 하락하여 중간재의 세율이 기초원료보다 더 많이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초원료에 있어서는 연료의 경우 가중(단순)평균 세율이 4.2%(8.5%)에서 3.3%(5.8%)로 하락하여 평균세율이 약 1.0%(2.7%) 포인트 감소하였다. 광물과 경공업원료의 경우 단순평균 세율이 아직 3.3%에 달하지만 가중평균 세율은 광물이 0.6%, 경공업 원료가 2.1%에 불과하다. 특히 광물에 비하여 경공업 원료의 단순평균 세율은 1990년 당시 6.1%에서 1998년에 3.3%

로 많이 떨어졌다.

한편 유사 중간재의 평균세율은 대략 2~3% 포인트 정도 감소하여 1998년 당시 6.6%(8.0%)의 가중평균(단순평균)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 가중평균 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섬유류와 화공품이 비교적 높은 9.2%, 7.3%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단순평균과 가중평균 세율도 서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이들 두 제품은 1990년 당시 각각 11.5%, 10.1%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으므로 평균세율이 약 2~3% 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이에 비하여 유지는 단순평균(10.5%)에 비하여 가중평균이 매우 낮은 4.8%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고 금속제품의 세율도 약 2%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 유지와 비철금속의 관세율은 1990년 이후 약 3% 포인트 정도 관세율이 인하되었고 기타 제품은 더욱 큰 폭으로 관세율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서 1998년의 경우 비철금속의 관세율(가중평균 4.3%)이 철강재의 관세율(5.5%)보다 높고 단순평균도 이와 마찬가지로 원래 1990년에는 철강재의 가중평균 및 단순평균 관세율(6.4%, 9.1%)이 비철금속 관세율(7.2%, 9.4%)보다 낮았었다.

자본재 평균세율은 전술한 대로 가중평균(단순평균)이 8.1%(11.2%)에서 5.0%(6.6%)로 상당히 많이 하락하였다. 그 중에서 기계와 정밀기기가 약 3% 포인트대에 달하는 세율인하로 10%대 세율에서 약 6.5%를 초과하는 높은 평균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단순평균과 가중평균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다른 품목의 경우 가중평균에 비하여 단순평균 세율은 급락하여 전기·전자기기는 12.0%에서 6.7%, 수송장비는 8.0%에서 4.8%, 기타는 12.4%에서 7.1%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가중평균 세율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들 제품은 기계와 정밀기기에 비하여 모두 4%대의 낮은 세율을 1998년 현재 적용받고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기타 품목이 9.1%에서 4.1%로 전기·전자기기는 6.7%에서 4.5%로 관세율이 감소한 반면, 수송장비 관세율은 4.0%에

〈표 II-10〉 기공도별 실적관세율 구조의 변화

(단위 : 개, %)

	1990년			1994년			1998년		
	품목수	단순	가중	품목수	단순	가중	품목수	단순	가중
1. 소비재	2,347	14.5	10.1	2,479	11.9	9.7	2,549	13.5	8.2
곡물	61	8.1	3.8	65	4.8	2.9	80	5.5	2.0
직접소비재	639	21.1	17.6	750	21.5	20.9	814	24.2	24.9
내구소비재	906	11.6	10.1	914	8.0	6.1	927	7.2	4.4
비내구소비재	741	12.9	11.7	750	7.7	7.9	728	10.4	9.8
간이세율적용분	-	-	-	-	-	-	-	-	-
2. 원자재	4,579	10.6	6.4	4,671	7.2	4.6	4,543	7.5	4.5
기초원료	504	6.1	3.6	521	4.0	2.2	482	3.8	2.8
연료	110	8.5	4.2	113	5.3	2.0	103	5.8	3.3
광물	172	4.5	1.8	177	2.9	1.4	162	3.3	0.6
경공업연료	222	6.1	3.5	231	4.1	3.0	217	3.3	2.1
중간재	4,075	11.2	9.3	4,150	7.6	6.8	4,061	8.0	6.6
유지	71	13.3	7.8	79	11.2	5.7	70	10.5	4.8
섬유류	718	11.5	11.5	710	8.1	9.1	708	8.8	9.2
화공품	1,598	11.6	10.1	1,669	7.6	7.2	1,642	8.0	7.3
철강재	355	9.1	6.4	363	6.9	5.4	321	7.0	5.5
비철금속	245	9.4	7.2	253	5.6	4.8	240	6.2	4.3
기타	1,088	11.4	10.7	1,076	7.6	7.1	1,080	7.8	6.7
3. 자본재	2,044	11.2	8.1	2,101	6.6	5.3	2,282	6.6	5.0
기계류와 정밀기기	1,084	10.9	10.1	1,120	6.8	6.0	1,211	6.7	6.6
전기·전자기기	584	12.0	6.7	587	6.5	5.4	680	6.7	4.5
수송장비	149	8.0	4.0	171	4.9	2.9	157	4.8	3.5
기타	227	12.4	9.1	223	7.2	5.4	234	7.1	4.1
총 계	8,970	11.8	7.4	9,251	8.3	5.4	9,374	8.9	5.2

주 : 1. 실적관세율은 탄력관세 등을 포함한 관세징수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관세율임.

2. 내구소비재의 경우 금을 제외하면 가중평균 관세율이 1990년 10.9%, 1994년 6.8% 그리고 1998년 7.1%임.

자료 : 재정경제부 전산자료 ; 관세청 관세연구소, 『수출입동향 품목분류』, 1998.

서 3.5%로 떨어져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수송장비에서는 비록 단순평균 세율은 관세율인하예시제로 많이 감소하였지만 수입액이 많은 품목은 상대적으로 세율이 덜 인하되었으며 가중평균과 단순평균도 서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 다. 산업별 관세율 현황과 변천

##### 1) 산업별 관세율 현황

본절에서는 HS 10단위 품목을 한국은행 IO분류에 맞추어 재편성, 산업별 관세율구조를 분석해 본다. 우선 가중평균 관세율(4.91%)이 아닌 단순평균을 대상으로 검토하는데 단순평균 실행관세율(1999년)은 8.81%에 달한다<sup>9)</sup>. 이에 비하여 단순평균 실적관세율(1998년)은 8.93%인데 표준편차는 실적관세율이 12.1로 실행관세율의 2배에 달한다. 이와 같이 실적관세율이 높고 그 분포가 완만한 이유는 농림수산물(36.8)과 음·식료품(25.4)에 관하여 관세할당과 탄력관세가 적용되어 이들 품목의 평균관세율과 편차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sup>10)</sup>.

1999년 실행관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농림수산물은 13.9%, 광산품에는 2.6%의 단순평균 관세율이 부과되는 데 비하여 제조업은 평균 8.6%로 이 중에서 경공업이 11.6% 그리고 중공업이 7%의

9) 평균세율이 IO표를 기준으로 할 때 다른 이유는 HS 10단위를 기준으로 한 전체 수입품 품목의 갯수는 11,091개인데 이 중 종량세 적용 품목 21개를 제외한 11,069개 품목에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 IO 표와 연계 가능한 제품은 10,691개(96.6%)로 농산물 1,655개 중 1,566개(94.6%), 공산품 9,420개 중 9,135개(97.0%)이기 때문이다.

10) 100% 이상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수입품은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농·수산물이나 음·식료품으로 녹두 기타(HS713319000, 667%), 마늘(HS712901000, 703200000, 397%, 226%), 잡삼(HS1211201240, 318%), 비탈각 낙화생(HS1202100000, 241%), 고추류(HS904202000, 189%), 생강(HS910100000, 170%), 탈지 및 전지분유(HS402101010, 402211000, 149%, 146%), 양파(HS712200000, 138%), 기타녹차(HS902200000, 128%) 등이 있다.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제조업에서는 대부분의 산업에 7% 이상의 관세율이 부과되는데 음·식료품(18.3%), 섬유·가죽제품(9.8%)에 대한 상대적인 보호도가 높고 이외 ITA협정 등으로 인쇄·출판(3.5%) 및 전기·전자기기(6.5%)의 관세율이 낮으며 중간재 품목이 많은 제1차 금속(6.1%)과 수송장비(5.9%)도 관세율이 낮다. 한편 실적관세율을 기준으로 1990~1998년 사이의 산업별 관세율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1〉 IO 28산업의 실행(1999년) 및 실적(1998년) 관세율

(단위 : 조원, 개, %)

	수입액	품목수 (실행)	단순평균		표준편차		최고 값	
			실행	실적	실행	실적	실행	실적
농림수산물	5.2	681	13.9	15.0	12.8	36.8	50.0	666.4
광산물	23.8	194	2.6	2.8	1.4	1.5	8.0	9.0
제조업	101.0	9,785	8.6	8.7	5.8	10.5	76.0	538.1
- 경공업	14.2	3,312	11.6	11.9	8.8	14.3	76.0	397.1
· 음·식료품	4.8	997	18.3	20.7	13.1	25.4	76.0	397.1
· 섬유·가죽제품	5.4	1,478	9.8	9.7	2.9	3.4	16.0	33.3
· 목재·종이제품	2.7	352	6.9	7.3	1.9	2.7	8.0	17.0
· 인쇄·출판 및 복제	0.5	60	3.5	3.6	3.8	3.8	8.0	8.6
·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0.9	425	7.5	7.8	2.3	2.7	13.0	42.4
- 중공업	86.8	6,473	7.0	7.1	2.2	2.7	20.0	538.1
· 석유·석탄제품	4.5	86	6.3	6.5	1.8	2.0	8.0	8.7
· 화학제품	14.8	2,481	7.4	7.8	1.9	1.9	20.0	538.1
· 비금속광물제품	1.1	306	7.8	7.6	0.9	1.5	8.0	13.2
· 제1차금속	16.4	600	6.1	6.3	2.4	3.3	8.0	51.1
· 금속제품	1.2	352	7.9	7.6	0.9	2.9	8.0	50.1
· 일반기계	10.8	1,011	7.0	6.9	2.3	2.1	13.0	15.1
· 전기·전자기기	28.8	717	6.5	7.0	2.5	2.9	13.0	46.7
· 정밀기기	5.1	556	7.1	6.6	2.0	3.7	8.0	75.1
· 수송장비	3.9	364	5.9	4.6	3.2	3.7	10.0	16.2
교역재전체	130.1	10,660	8.8	8.9	6.7	12.1	76.0	666.4

주 : 1. 실행 관세율은 기본관세보다 낮은 양허관세를 포함한 1999년 수치이며 실적 관세율은 관세 할당과 탄력관세를 포함한 관세 징수액/수입액으로 1998년 기준임.

2. 분류기준은 한국은행의 1995년 산업연관표 IO Table을 사용함.

자료 : 재정경제부 및 관세청 전산자료.

2) 산업별 관세율의 변화: 실적관세율

실적관세율(관세징수액/수입액)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단순평균 관세율은 1990년 11.4%에서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가 1998년의 경우 약간 인상, 1993년 수준인 8.9%로 회귀한다. 이는 중공업 관세율 인하(10.7%→7.0%)에도 불구하고 경공업 관세율이 1990년 13.1%에서 1993년 11.3%로 감소하다가 그 이후 11.9%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공업에서는 산업별 관세율 격차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경공업에서는 그 격차가 계속 증가하여 표준편차가 7.8(1990년)에서 14.3(1998년)으로 약 2배 상승하였다. 또한 <표 II-13>에서 보듯이 경공업과 마찬가지로 농림수산물에서는 수입장벽의 관세화와 관세할당으로 이들 산업의 단순평균 관세율이 1994년 13.2%에서 15%로 증가함과 동시에 제품간의 관세율 격차가 심화되어 표준편차가 1998년의 경우 36.8에 달한다. 이 밖에도 같은 기간에 광산품의 단순평균 관세율은 4.3%에서 2.8%로 감소하였다.

<표 II-12> 산업별 실적관세율의 단순평균과 표준편차 변화추이 (1990~1994, 1998)

(단위 : %)

	단순평균			표준편차			최고값			최저값		
	교역재	중공업	경공업	교역재	중공업	경공업	교역재	중공업	경공업	교역재	중공업	경공업
1990	11.4	10.7	13.1	6.3	4.3	7.8	71.9	71.9	53.9	0	0	0
1991	11.3	10.5	13.2	6.4	4.4	7.8	98.7	98.7	76.9	0	0	0
1992	10.3	9.3	12.3	6.6	4.3	8.2	107.4	107.4	84.5	0	0	0
1993	8.9	7.7	11.3	7.4	3.6	10.0	104.6	93.1	100.0	0	0	0
1994	8.3	7.0	10.5	7.7	3.3	10.6	103.7	103.7	103.3	0	0	0
1998	8.9	7.0	11.9	12.1	2.7	14.3	666.4	75.1	397.1	0	0	0

주 : 1. 1990~94년 : 경공업, 중공업 부문에서 관세율 108% 이상 제외

1998년 : 중공업부문에서 관세율 108% 이상 제외.

2. 교역재는 농림수산물, 광산품과 서비스업 교역재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 한국은행 및 관세청 전산자료, 재경부 자료.

단순평균과 달리 수입액 가중평균 관세율은 1990년 7.3%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1998년 현재는 5.2%에 이른다. 경공업의 경우 1994년과 1998년 사이에 가중평균 관세율이 8.8%에서 8.9%로

〈표 II - 13〉 IO 28산업 실적관세율의 단순평균과 표준편차 변화추이 (1990, 1994, 1998년)

(단위 : %)

	단순평균			가중평균			표준편차		
	1990	1994	1998	1990	1994	1998	1990	1994	1998
농림수산물	13.2	13.5	15.0	4.1	6.3	6.7	12.8	16.5	36.8
광산물	4.3	2.7	2.8	4.1	1.8	3.2	2.5	1.3	1.5
경공업	13.1	10.5	11.9	9.6	8.8	8.9	7.8	10.6	14.3
음·식료품	18.0	18.1	20.7	9.5	11.6	13.4	13.8	16.7	25.4
섬유·가죽제품	12.0	8.0	9.7	11.0	8.3	7.9	3.5	3.5	3.4
종이·나무제품	11.2	8.1	7.3	7.2	6.5	4.7	3.3	6.9	2.7
인쇄·출판 및 복제	—	—	3.6	—	—	0.8	—	—	3.8
기타제조업 제품	10.8	8.1	7.8	10.5	6.9	7.8	4.5	9.1	2.7
중공업	10.7	7.0	7.0	7.8	5.5	5.1	4.3	3.3	2.7
화학제품	11.4	7.6	7.6	9.9	7.0	6.9	3.2	2.5	1.9
석유·석탄제품	9.0	5.9	6.5	3.2	2.6	2.2	7.0	2.5	2.0
요업·토석제품	12.3	8.2	7.6	10.1	7.7	8.1	2.8	4.9	1.5
제1차 금속제품	8.3	5.9	6.3	5.6	4.6	3.7	4.7	2.5	3.3
금속제품	11.2	7.3	7.6	10.4	6.0	7.3	3.6	4.1	2.9
일반기계	10.8	6.9	6.9	10.5	6.3	6.6	4.9	2.3	2.1
전기 및 전자기기	10.3	6.8	7.0	6.1	5.4	4.6	5.1	5.1	2.9
정밀기기	10.3	6.8	6.6	9.2	5.7	5.7	3.5	3.2	3.7
수송기기	8.9	5.1	4.6	4.1	3.3	3.9	6.9	3.6	3.7
교역재 전체	11.4	8.3	8.9	7.3	5.5	5.2	6.3	7.7	12.1

주 : 1. 교역재에는 서비스업과 기타 수입품이 포함되는데 농림수산품을 제외한 관측품목은 1990~94년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실적관세율이 108% 미만인 품목으로 구성됨(경공업에서 7개 품목 제외).

2. 1995년도 산업연관표에는 '인쇄·출판 및 복제' 산업이 추가되었고 가구가 기타제조업으로 재분류되는 등 부분적 조정이 있었음.

3. 표준편차는 단순평균 관세율에 대한 편차임.

자료 : 재경부 및 관세청 전산자료.

증가하였지만 증공업 관세율은 7.8%에서 계속 감소하여 5.1%에 이르고 있다. ITA협상 등을 감안하면 증공업 관세율은 향후에도 계속 감소할 추세에 있다. 한편 전술한 대로 관세화 등으로 인하여 농수산품의 수입가중 관세율은 1990년대에 들어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광산품의 경우 원유의 관세율 인상(5%) 등으로 평균관세율이 경공업과 마찬가지로 1994년부터 약간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경공업에 속하는 산업의 관세율을 검토하면 음·식료품도 농림수산물과 같이 단순평균(18.0%→20.7%)과 가중평균(11.6%→13.4%)을 막론하고 평균관세율이 인상되었고 관세율 편차(25.4)도 매우 심화되었다. 이에 비하여 섬유·가죽제품은 단순평균 관세율(12.0%→8.0%→9.7%)이 1994년 이후 인상되는 등 기복이 있는 반면 가중평균 관세율은 중간재에 관한 관세율 인하로 계속 감소하였다(11.0%→7.9%). 이외 종이·나무제품은 원목 등에 관한 관세율인하로 가중평균이 4.7%에 이르고 가구제품이 신규로 편입된 기타제조업은 가중평균 관세율이 7.8%로 인상되었다<sup>11)</sup>. 이 밖에도 경공업 제품은 섬유·가죽제품과 기타 제조업 제품을 제외하고 단순평균과 가중평균 관세율이 큰 차이를 보인다(특히 음·식료품은 7.3%의 차이를 보임).

반면 증공업의 경우, 단순평균과 가중평균 관세율이 1990년 당시 각각 10.7%와 7.8%에 달하였으나 1994년 이후에는 각각 7%, 5%선에서 안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산업간 관세율 편차도 정밀기기를 제외하면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석유·석탄제품(2.2%)과 제1차 금속제품(3.7%), 전기·전자기기(4.6%)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단순평균보다 크게 낮은 2~4%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수송기기(3.9%)와 정밀기기(5.7%) 가중평균 관세율도 낮은 편이

11) 1995년 산업연관표 분류에서는 인쇄·출판 등이 기타제조업에서 독립되는 대신 가구제품이 신규로 편입되는 등의 개편이 있어 이 부분의 1998년 관세율을 다른 연도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다. 이외에 화학, 요업·토석, 금속제품과 일반기계의 단순평균과 가중평균 관세율은 7%대를 유지한다. 이와 같이 전기·전자기거나 제 1차 금속 등 관세율이 5%대 이하인 중공업 제품은 수입이 주로 관세율이 낮은 품목에 편중되어 있어 단순평균 관세율이 수입가중치보다 많이 높다. 그러나 일반적 인식과 달리 화학, 요업, 금속제품 그리고 일반기계 등 중공업에서 관세율이 7%에 이르는 품목은 단순평균 관세율이나 가중평균 관세율이 큰 차이가 없다.

결국 중공업에서는 평균관세율이 인하 내지는 안정적 추세에 있고 제품간 관세율 격차도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은 관세율 인상과 격차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경공업에서 종이·나무제품은 중공업과 마찬가지로 관세율이 인하되고 있고 섬유·가죽의 관세율은 인상되는 데 비하여 산업별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경우 단순평균 관세율과 가중평균 관세율과의 차이가 큰 편인데 경공업에서는 대략 섬유·가죽과 기타 제조업 제품이, 중공업에서는 화학, 요업, 금속제품 그리고 일반기계가 예외적으로 수입액과 상관없이 평균관세율이 대동소이하다.

### 3. 2000년도 관세율 개편안

#### 가. 2000년도 관세율 개편안 내용

1997년 당시 일부 취약산업에 대한 관세율 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 ITA협정의 이행과 원유 관세율 인상 등에 따른 파급효과로서 세율 불균형이 문제시되는 일부 부문에 대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0년 관세율 조정안에 의하면 우선 농수산물에 대한 고관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공식품에 관한 역관세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마토와 대두유, 아몬드 등 국산제품과 비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의 관세율이 20~50%에서 5~10%로 인하되었다. 이 밖에도 중국 등으로부

〈표 II - 14〉 2000년 품목별 기본관세율 조정 (안)

(단위 : %, 백만달러)

품 명	관 세 율		수입액 1998	비 고
	기본(할당)	조 정		
1. 종량제 원료농산물 :				
(고액(율) 적용)				
당근	30	134원/kg	1.1	채소(53.0)
표고버섯	30	1,625원/kg	2.0	과실 및 채소가공품(213)
영지버섯	30	842원/kg	0.7	
기타버섯	30	1,218원/kg	1.4	
고사리	30	1,807원/kg	9.5	
파	30	1,159원/kg	5.1	
들깨	40	410원/kg	6.1	유지작물(62.0)
2. 가공식품 원료농산물				
- 조제·저장처리 토마토				
· 전체·조각상 토마토	50(10)	8	0.5	과실 및 채소가공품
· 토마토 페이스트	8(5)	5	13.8	
· 기타	50(10)	8	0.9	
- 유채유	30(10)	10	3.6	식물성유지 및 식용유(601)
- 해바라기씨유	25	10	0.0	
- 대두유 오일, 유박	5(3)	3	207.0	
- 밀과 메슬린(기타)	5(3)	3	-	밀(663)
- 아몬드	30(8)	8	12.6	식용임산물(30)
- 캐슈넛	30	8	0.1	커피 및 차류(22)
- 해즐넛	30	8	0.7	식용임산물
3. ITA 관련 원부자재				
- 폴리실리콘	8	3	43.3	무기화합물(973)
- 블랭크마스크	8(6.5)	3	14.8	사진용화학제품(433)
- 포토마스크	8(6.5)	3	14.5	인쇄회로(262)
- 금속도금기	8	5	2.9	기타특수목적기계(2,047)
- 흑연도가니	8	3	2.8	내화학 요업(69)
- 석영도가니	8(4)	3	19.7	산업용유리(234)
- 여과기	8	3	11.8	공기액체여과기(214)
- 납땀재기	8(3.6)	3	1.8	기타특수목적기계
- 콘덴서지와 판지	8	3	7.2	기타종이제품(194)
- 진공펌프(기타)	8	3	35.1	펌프 및 압축기(785)
- 건조기(기타)	8	3	31.2	기타특수목적기계
- 자외선 램프	8	3	9.5	전구 및 조명장치(134)
- 광학용품(기타)	8	3	14.5	기타광학기기(449)
- 유량자동조절기	8	3	17.4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272)
4. 세울불균형 시정				
- 컴퓨터설계도	8	0	3.2	인쇄(42.9)
- 발전기용 내연엔진	8(4)	4	83.7	엔진 및 터빈(757)
- 태입형 리드프레임	8(7.2)	0	18.9	인쇄회로기판(296.0)
- 재생스테이플 섬유	8(4)	4	51.7	재생섬유(71)

자료 : 재정경제부.

터 저가로 수입되어 국내농업에 피해가 큰 당근과 버섯, 파, 고사리, 들깨 등 7개 채소 가공품에 대하여 종량세 부담이 클 경우 이를 적용하도록 하여 저가제품의 대량 수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ITA 협정에 따라 무세화되는 제품의 부분품이나 원료로서 8%의 관세율이 부과될 경우 후방산업인 ITA 품목에 역관세의 부담이 되므로 폴리 실리콘, 흑연도가니 등 국산 가능성이 없는 품목을 중심으로 세율을 8%에서 3~5%로 인하하였다. 그리고 생사와 재생섬유와 같이 국내생산이 전혀 없거나 발전기용 디젤엔진 등 유사물품간 세율균형이 결핍되었거나 역진적인 품목의 세율을 조정, 8% 기본세율이나 할당관세 세율을 인하 또는 무세화하였다. 이와 같이 2000년도 개정안의 특색은 세율이 인상되는 품목이 없이 약 6억달러에 이르는 HS 10단위 42개 수입품(IO 405산업 15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율이 0~10%로 인하된다.

#### 나. 2000년도 관세율 개편안에 따른 실효관세율 변화

##### 1) 기본구조와 관측상의 문제점

2000년 관세율 조정안에 따른 HS 10단위 42개 품목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IO 402산업으로 재분류하고 조정된 관세율을 근거로 실효관세율의 변화를 모의 실험하였다(제 VI 장 실효관세율 참조). 실효관세율은 관세율 조정에 의한 산업별 파급효과를 추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HS 10단위 품목에 비하여 IO 402산업은 덜 세분화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HS 10단위 품목은 IO산업의 일부이므로 IO산업의 평균 관세율이 부분적으로 인하되는데 그 결과 HS 10단위 품목의 관세율 인하에 따른 파급효과가 잘못 해석될 수 있다. 이를 관측상의 동일효과(observational equivalence)라고 한다. 즉, 생사의 관세가 하락할 때 생사가 포함되는 IO산업 '건사'의 명목관세율이 부분적으로 떨어져 다른 산업(예 : 건직물, 가죽신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러한 파급효과가 한 예로 가죽신발에서 생사를 ‘실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인지 아니면 가죽신발에 중간재로 사용되는 견사의 관세율이 떨어졌기 때문인지가 불분명하다.

개정안에 의하여 관세율이 변화하는 IO산업은 15개 산업으로서 관세율이 조정되는 품목이 IO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식용 입산물, 인쇄회로기판, 그리고 커피 및 차류를 제외하면 여타 12개 IO산업의 평균 명목관세율은 1% 이내로 인하된다<sup>12)</sup>. 한편 종량세 전환 품목은 기존의 종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

## 2) 2000년도 실효관세율의 변화

본고에서는 관세율이 조정되는 15개 산업 이외의 중간 교역재의 평균세율이 변하는 품목을 포함하여 실효관세율이 0.2% 포인트 이상 변화하는 35개 산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는 실효세율이 -0.1~0.1% 사이에서 움직이는 산업이 관측상의 오차이거나 또는 위에서 지적한 관측상의 동일효과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내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0년도 세율 개편으로 명목세율은 15개 산업에서 관세율이 떨어지고 실효세율은 26개 산업이 영향을 받는데 이 중에서 실효세율이 0.2% 포인트 이상 감소하는 산업은 명목세율이 감소하는 15개 산업이며 이에 따른 중간재 관세율 인하 등으로 실효세율이 증가하는 관련 산업은 11개 산업이다.

경공업의 경우 식품원료 농산물에 대한 세율인하로 설탕과자, 기타 식료품(0.4~0.8%, 콘푸레이크), 기타 조미료(0.1%, 캐첩), 두부(0.1~0.6%)의 보호율이 약간 올라가는데 2000년 세율 조정으로 혜택이 큰 산업은 섬유산업으로 재생섬유의 세율인하로 후방산

12) 한편 테입형 리드프레임은 원래 HS 8542909000(전자집적회로 부분품 기타)로 구분되었으나 1999년에 HS 8534009000(인쇄회로기판)으로 재분류되었으므로 구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모의실험을 한다.

업인 재생섬유사(0.9~2.8%)와 재생섬유직물의 실효세율(0.0%~0.3%)이 많이 증가한다. 반면 ITA품목의 경우 기타제조업 제품을 제외하면 관련 산업에 대한 과급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다만 단순평균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 컴퓨터 및 주변기기(0.2%)의 실효세율이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1999년 가중평균 실행세율을 기준으로 한 실효세율의 변화를 보면 캐슈넛과 해즐넛의 세율 인하(30%→8%)로 식용 임산물의 가중평균 명목 및 실효세율은 약 20%에서 11%로 감소한다<sup>13)</sup>. 이에 따라서 설탕과자는 7.4%(0.2% 증가), 콘푸레이크 등을 포함하는 기타식료품의 실효세율은 7.3%(0.8%)로 증가된다. 한편 유채유의 세율 하락(30%→10%)은 이들 제품이 식물성 유지와 식용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큰 영향 없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이 각각 4.2%, -6.3%를 유지한다. 캐슈넛이 포함되는 커피 및 차류도 실효관세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IO-HS 연계표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sup>14)</sup>.

토마토 수입품의 세율인하(50~8%→8~5%)는 과일 및 채소가 공품의 명목세율에 약 0.5% 포인트의 영향을 미쳐 명목세율이 32.8%, 실효세율은 43.1%로 인하된다. 이로 인하여 8.3%의 명목세율에도 불구하고 부의 가중평균 실효세율(-2.5%)을 유지하는 캐참 등의 기타조미료 실효세율이 0.2% 포인트 인상된다. 이 밖에도 음·식료품 실효세율에서는 두부(10%, 0.6% 포인트 인상), 청량음료(52.1%, 0.2% 포인트)가 영향을 받는다. 2000년 관세율 조정으로 실효관세율에서 가장 과급효과가 큰 산업은 재생섬유로서 재생스

13) 단순평균 관세율을 기준하면 대체로 가중평균 관세율과 큰 차이가 없으나 전자의 경우 수입액이 아닌 품목수에 따라 평균관세율이 변화하므로 세율인하 폭이 큰 농산물에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14) 이러한 문제점은 ITA 품목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는 IO-HS 품목분류간에 연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테이플 섬유의 세율인하(8%→4%)는 재생섬유의 명목과 실효세율을 각각 5.3%, 7.7%로 감소시키지만 재생섬유사와 재생섬유직물의 실효세율은 각각 2.8%, 0.3% 포인트 증가하여 11.1%, 13.9%가 된다. 재생섬유는 특히 국내생산에 대비한 수입의존도가 67%에 이르는 품목으로 원료에 관한 관세율 조정은 중간재인 섬유사(69%)와 직물(53%)의 수입의존도를 인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 컴퓨터 설계도의 무세화로 인쇄의 명목세율이 감소하는데 실효세율은 거의 0%가 되며 이와 동시에 중간재 관세율의 인하효과를 야기한다. 마찬가지로 ITA 품목으로 분류되는 품목의 세율인하로 사진용 화학제품, 산업용 유리제품, 내화요업제품, 특수목적용 기계, 여과기 등의 실효세율이 0.2~0.7% 포인트 정도 감소한다. 관련 산업의 반응이 특별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우선 세율 하락이 크지 않고 이들 제품은 자본재로 간주되어 중간재 투입표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표 II-15〉 2000년 관세율 조정에 따른 실효관세율의 변화  
(단순평균 기준)

(단위 : %, 천만달러)

기본부문(402부문)	수입액	수입의존도	명목	차이	실효	차이	중간재 평균세율	차이
식용임산물	3.0	0.17	25.9	-2.9	26.7	-3.0	0.2	-
설탕과자	7.8	0.09	7.6	-	5.3	0.1	5.1	-0.1
국수류	2.4	0.02	8.0	-	4.4	0.2	6.4	-0.1
기타 조미료	4.9	0.06	11.4	-	3.7	0.1	10.6	-0.1
식물성유지 및 식용유	60.1	0.39	11.5	-0.8	6.2	-1.9	9.8	-0.1
과실 및 채소가공품	21.3	0.24	31.1	-0.6	37.7	-1.5	16.2	-0.1
커피 및 차류	2.2	0.09	16.4	-1.4	24.6	-3.7	5.5	-
두부	0.6	0.02	8.0	-	-4.9	0.1	11.9	-0.1
기타 식료품	6.4	0.11	15.7	-	18.6	0.4	8.7	-0.2
청량음료	5.1	0.03	34.8	-	68.7	0.3	6.8	-0.1
배합사료	2.7	0.01	5.1	-	0.8	0.2	4.9	-0.1
재생섬유사	29.7	0.69	8.0	-	9.4	0.9	3.7	-0.4
기타 종이제품	19.4	0.28	7.8	-0.2	9.3	-0.4	3.7	-
인쇄	4.3	0.01	4.8	-0.1	2.6	-0.1	3.1	-
재생섬유	7.1	0.67	6.8	-0.9	11.6	-2.3	1.8	-
내화요업제품	6.9	0.15	7.9	-0.1	9.8	-0.2	2.4	-
펌프 및 압축기	78.5	0.59	7.9	-0.1	8.9	-0.2	4.1	-
공기 및 액체여과청정기	21.4	0.27	6.8	-0.1	6.1	-0.3	3.6	-
기타 특수목적용기계	204.8	0.67	6.6	-0.1	5.4	-0.2	4.3	-
전구 및 조명장치	13.3	0.12	7.9	-0.1	8.3	-0.2	3.7	-
인쇄회로기판	29.6	0.11	5.3	-1.4	4.0	-2.1	3.2	-0.4
컴퓨터 및 주변기기	150.4	0.37	4.6	-	4.1	0.2	3.3	-0.1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27.2	0.25	6.7	-0.1	7.5	-0.2	1.9	-
기타 광학기기	44.9	0.72	7.7	-0.1	7.8	-0.1	2.4	-

주 : 1. 1999년 실행관세율(명목세율) 대비 2000년 세율개편안(석유제품 제외)에 따른 세율의 변화를 나타내며 실효세율은 Corden 방식으로 계산된 세율임.

2. 수입의존도는 재고증가를 제외한 수입/(국내생산+수입-수출)임.

자료 : 재경부 전산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1998.

〈표 II-16〉 2000년 관세율 조정에 따른 실효관세율의 변화  
(가중평균 기준)

(단위 : %, 천만달러)

기본부문(402부문)	수입액	수입의존도	명목	차이	실효	차이	중간계 평균세율	차이
식용임산물	3.0	0.17	10.8	-8.8	11.0	-9.2	0.2	-
설탕과자	7.8	0.09	7.6	-	7.4	0.2	4.2	-0.1
기타 조미료	4.9	0.06	8.3	-	-2.5	0.1	10.6	-0.1
파설 및 채소가공품	21.3	0.24	32.8	-0.5	43.1	-0.4	15.9	-0.2
커피 및 차류	2.2	0.09	14.2	-0.1	27.5	-0.3	2.7	-
두부	0.6	0.02	8.0	-	10.0	0.6	3.4	-0.3
기타 식료품	6.4	0.11	9.9	-	7.3	0.8	7.4	-0.4
청량음료	5.1	0.03	29.3	-	52.1	0.2	7.0	-0.1
재생섬유사	29.7	0.69	8.0	-	11.1	2.8	3.0	-1.2
재생섬유직물	13.5	0.53	9.6	-	13.9	0.3	6.6	-0.1
기타 종이제품	19.4	0.28	6.9	-0.2	7.3	-0.4	3.6	-
인쇄	4.3	0.01	3.3	-0.6	0.2	-1.0	3.0	-0.1
기초무기화합물	97.3	0.34	4.6	-0.2	4.4	-0.3	1.7	-
재생섬유	7.1	0.67	5.3	-2.7	7.7	-7.1	1.8	-
사진용 화학제품	43.3	0.84	7.4	-0.1	7.5	-0.2	3.8	-
내화요업제품	6.9	0.15	7.8	-0.2	10.2	-0.3	2.1	-
엔진 및 터빈	75.7	0.45	7.0	-0.2	6.8	-0.4	4.0	-
펌프 및 압축기	78.5	0.59	7.7	0.1	8.5	0.3	4.1	-
기타 특수목적용기계	204.8	0.67	5.2	-0.1	1.9	-0.2	4.2	-
전구 및 조명장치	13.3	0.12	7.6	-0.4	7.9	-0.7	3.7	-
인쇄회로기관	29.6	0.11	7.2	0.1	7.1	0.1	3.8	-
자동차정 및 제어기기	27.2	0.25	7.6	-0.3	9.1	-0.5	1.9	-
기타 광학기기	44.9	0.72	7.8	-0.2	8.4	-0.2	2.2	-
모형 및 장식용품	5.9	0.15	8.0	-	8.5	0.2	3.4	-0.1
기타 제조업제품	7.2	0.20	8.5	-	9.4	0.1	2.8	-0.1

주 : 1. 1999년 실행관세율(명목세율) 대비 2000년 세율개편안(석유제품 제외)에 따른 세율의 변화를 나타내며 실효세율은 Corden 방식으로 계산된 세율임.

2. 수입의존도는 재고증가를 제외한 수입/(국내생산+수입-수출)임.

자료 : 재경부 전산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1998.

### III. 농산물 관세의 현황과 개선방향

#### 1. 서론

우루과이라운드(이하 UR) 이후 농산물 관세의 정책적 중요성이 크게 증대하였다. 이것은 우선 비관세장벽이 철폐되어 관세화되고 국내보조가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관세정책이 국내농업 보호의 핵심적 수단이 된 것에 기인한다. 또한 관세정책은 절대적·상대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식품 관련산업의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도 중요성이 크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산물관세체계의 특징을 정리해 보고, 다가오는 뉴 라운드의 협상구도 및 국내농업 상황을 중심으로 관세정책의 환경을 살펴본 후, 관세정책의 향후 개선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농산물 관세의 특징

##### 가. 다중(多重)관세구조

UR 협상의 결과로 중요 관심품목에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되었다.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품목들은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재경부고시 제 98-54호)에 ‘별표 1 나’로 나타나며 이 품목들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보다 양허세율이 우선적용되며 양허세율을 통해 관세할당량 안의 물량에 대해서는 저세율, 할당량 밖의 물량에 대해서는 고세율이 적용되는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 다른 한편,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 공산품과 같이 기본세율과 양허세율 가운데 저세율 우선원칙이 적용되고 있

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3중의 관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현상이다. QUAD 국가들도 관세할당을 두고 있는 품목이 많으며 OECD 국가들도 평균적으로 많은 관세할당을 두고 있다. 또한 여기에 특별긴급관세와 탄력관세까지 더해져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 상대적 고관세

〈표 III-1〉에서 보듯이 기본세율과 실행세율 기준으로 볼 때 농산물 관세는 공산품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양허세율 기준의 국제비교를 보면 우리나라의 농산물 평균관세율은 관세할당 설정품목의 경우 할당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자국의 전 품목평균(19%)에 비해서나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36%)에 비해서나 매우 높은 62% 수준이다<sup>1)</sup>.

그러나, 이렇게 높은 농산물의 양허관세 평균치는 농산물 전품목이 고관세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일부 품목,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장접근물량 설정품목에서 관세할당량 이상 물량에 대해 설정되어

〈표 III-1〉 평균양허세율

(단위 : %)

	한 국	미 국	일 본	EU-15	캐나다	QUAD 평균	OECD 평균
농산물 평균	62	6	12	20	5	10.75	35.67
접근물량 내 세율평균	21	10	20	8	8	11.5	35.64
접근물량 외 세율평균	366	29	274	45	203	137.75	119.93
전품목 평균	18	4	5	7	5	5.25	15.40

자료 : OECD, *Tariff Review-Synthesis Report*, Annex, 1999.

1) 참고로 OECD 국가 중 평균 농산물양허관세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나라는 노르웨이(약 120%)와 터키(65%)임.

있는 세율평균이 366%로 매우 높은 데 기인하는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일본과 캐나다의 경우에도 할당의 세율은 275% 및 203%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접근물량 설정 품목들의 일차적 실행세율이 되는 접근물량 내 세율평균은 21%에 불과하여 OECD 평균보다 오히려 낮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OECD의 이른바 내국 기준 고관세라고 할 수 있는 180%를 초과하는 고관세 품목에 집중하여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이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즉, 〈표 III-2〉에서 알 수 있듯이 할당외 관세의 평균은 단순평균은 500%에 육박하지만 일차적 실행세율인 할당내 관세율 평균은 20%에 불과하다. 더욱이 실적관세 기준으로 보면 매니옥, 고구마(HS 0714), 옥수수(HS 1005), 대두(HS 1201)<sup>2)</sup> 그리고 참깨(HS 1005) 등 수입액에서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품목들의 실적세율이 매우 낮음으로 인하여 전체평균이 7.2%에 불과하다.

다른 OECD 여러 나라의 농산물 세율 수준과의 비교를 위해 1988, 1993, 1996년의 OECD 회원국의 양허세율 단순평균과 MFN 세율 단순평균을 각국의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주는 변수(경제활동인구 중 농업종사자의 비중, 1인당 GDP, 무역의존도)에 회귀한 결과가 다음의 표에 나타나 있다. 양허세율과 MFN 어느 쪽이든 경제활동인구 중 농업종사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1인당 GDP가 높을수록,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농산물 관세율 수준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처음의 두 변수에 대한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종사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것은 농산물 관세율이 정치적 과정의 산물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어떤 국민경제 내에 농업종사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그들이 정치적 과정에

2) 이상 품목에는 할당관세가 적용됨.

〈표 III-2〉 할당의 양허관세 180% 이상 품목의 관세율

(단위 : %, 천달러)

HS	접근물량 외 세율		접근물량 내 세율		실적세율		수입액
	단순	가중	단순	가중	단순	가중	
0402	198.0	198.0	30.0	21.6	147.6	148.6	4,612
0409	256.5	256.5	20.0	20.0	76.9	76.9	944
0701	321.0	321.0	15.0	30.0	33.5	33.5	2,379
0703	380.0	380.0	50.0	50.0	225.6	225.6	10,533
0709	285.0	285.0	50.0	50.0	8.9	8.9	4
0711	332.5	—	50.0	—	—	—	0
0712	387.0	380.1	17.7	49.7	198.6	394.5	152
0713	542.7	457.6	30.0	30.0	349.2	75.3	6,678
0714	671.6	936.2	18.3	13.4	13.7	7.6	49,366
0802	415.0	392.3	40.0	41.2	42.8	44.1	648
0810	645.5	—	50.0	—	—	—	—
0813	645.5	645.5	50.0	50.0	57.0	57.0	80
0902	542.2	542.2	40.0	40.0	84.4	97.9	26
0904	285.0	285.0	50.0	50.0	121.7	57.7	13,946
0910	398.2	398.2	20.0	20.0	170.1	170.1	869
1003	379.1	473.5	22.5	26.6	3.7	4.3	10,634
1004	585.6	585.6	3.0	3.0	0.0	0.0	415
1005	426.1	347.0	2.0	2.6	1.2	0.5	910,828
1007	822.7	822.7	3.0	3.0	0.0	0.0	57
1008	557.5	270.3	3.0	3.0	34.3	34.3	287
1102	559.6	844.8	12.5	5.0	28.9	28.9	2
1103	490.4	—	9.3	—	—	—	0
1104	658.6	658.2	7.5	5.0	4.4	4.4	25
1105	321.0	321.0	7.4	7.4	34.0	34.0	110
1107	284.0	284.0	30.0	30.0	11.7	10.8	17,718
1108	523.9	412.1	7.8	8.9	21.3	16.3	25,378
1201	514.0	514.0	5.0	5.0	10.6	5.4	379,145
1202	243.3	243.3	36.5	33.1	152.3	69.7	3,459
1207	665.0	665.0	40.0	40.0	40.1	40.1	45,107
1211	623.6	278.4	20.0	20.0	95.9	46.2	299
1302	796.2	796.2	20.0	20.0	0.0	0.0	28
1515	665.0	665.0	40.0	40.0	40.9	40.9	585
1702	256.5	—	20.0	—	—	—	0
2106	796.2	—	20.0	—	—	—	0
2207	285.0	285.0	30.0	30.0	31.0	31.0	2,593
3301	796.2	—	20.0	—	—	—	—
3505	323.7	407.1	8.0	8.0	12.3	13.3	26,413
전체평균	496.5	419.4	20.2	6.5	62.6	7.2	1,513,320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들의 농업생산인여나 농업임금을 높일 수 있도록 관세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1인당 GDP가 높을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현상도 정치적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생산 및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생산이나 성장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 다른 분야의 자원이 많으므로 농업에 대한 국경보호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의 손실을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농업의 긍정적 외부성<sup>3)</sup>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는 것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우 그 국민경제가 일반적으로 대외개방적일 것으로 기대되므로 관세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이 회귀분석의 결과는 양의 계수를 보여주고 통계적으로는 영향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회귀식에서 얻은 계수를 이용하여 얻은 우리나라의 '기대관세율'은 1996년 양허세율 기준 13.1%, 1998년 실행세율 기준 8.3%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양허세율 단순평균은 '기대관세율'

〈표 III-3〉 OECD국가의 평균 양허 관세율 회귀분석 결과

변 수 명	계 수	t-stat
상 수	-32.9872	-1.704*
경제활동인구 중 농업종사자의 비중	1.5154	3.562***
1인당 GDP	0.1340	2.291**
무역의존도(%)	0.2200	1.488

주 : 1. 한국의 경우 평균양허관세율의 예측치는 1996년 기준 13.08%, 1998년 기준 10.44% 수준으로 나타났다.

2. \* : 10% 유의수준  
 \*\* : 5% 유의수준  
 \*\*\* : 1% 유의수준

3) 식량안보, 문화유산의 보존,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등.

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율이 극단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1996년 양허세율 단순평균 62%임). 그러나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보다 가까운 실행세율 기준으로 보면 상방편차는 10% 정도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1999년 실행세율 단순평균은 17.85%임).

〈표 III-4〉 OECD국가의 MFN 관세율 회귀분석 결과

변 수 명	계 수	t-stat
상 수	-23.2389	-1.297
경제활동인구 중 농업종사자의 비중	0.8533	2.139**
1인당 GDP	0.9925	1.810*
무역의존도(%)	0.1702	1.228

주 : 1. 한국의 경우 실행관세율의 예측치는 1996년 기준 8.33%, 1998년 기준 6.49% 수준으로 나타났다.

2. \* : 10% 유의수준

\*\* : 5% 유의수준

#### 다. 관세율편차가 큼

농산물의 관세율체계는 공산품에 비하여 관세율의 편차가 크다. 즉, 중요 종자용 및 사료용 곡류에 대해서는 무세, 곡류에 대해서는 3~5%인 반면, 농가소득 기여도와 국내생산비중이 높은 육류, 채소과실 등에 대하여는 30~50%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공산품의 중심세율인 8%가 주로 적용되는 등 편차가 크다. 이에 따라 기본세율의 분포는 〈표 III-5〉에 보는 바와 같이 8%, 20%, 30%를 중심으로 중층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표 III-1〉에서 보듯이 양허관세율은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시장접근물량 설정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경우에는 〈표 III-6〉에서 보듯 50%~100% 대와 300% 이상의 고관세율대에 다수의 품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표 III-5〉 기본관세율 분포

(단위 : %, 개)

세 율	해당품목의 수	전체 품목수에 대한 비율
0	35	2.1
2	8	0.5
3	100	6.1
5	93	5.6
7	1	0.1
8	423	25.6
10	96	5.8
20	358	21.7
25	14	0.8
30	336	20.4
40	70	4.2
50	116	7.0

〈표 III-6〉 시장접근물량 있는 품목의 양허세율 분포(접근물량 외)

(단위 : %, 개)

세 율 구 간	해당품목의 수	비 중
0	0	0
0~15	4	2.3
15~50	17	9.6
50~100	33	18.6
100~200	17	9.6
200~300	27	15.3
300~	79	44.6

또한 시장접근물량 설정품목의 경우 할당의 세율에 다수의 tariff peak가 존재한다. <표 III-7>은 농산물 평균양허세율인 62%를 세 배 정도 초과하는 180% 이상의 고관세율 품목들을 보여준다.

<표 III-7> 양허세율 180% 이상인 품목

04류 : 밀크와 크림(0402), 천연꿀(0409),
07류 : 감자(0701), 양파 마늘 등 파속의 채소(0703), 신선 또는 냉장한 기타채소(0709),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0711), 건조한 채소(0712), 건조한 채두류(0713), 매니옥(071410), 고구마(071420),
08류 : 밤(080240), 잣(080290),
09류 : 기타 과일(0910), 건조한 과일(0813), 차류(0902), 후추 및 고추류(0904), 생강(0910),
10류 : 보리(1003), 귀리(1004), 옥수수(1005), 수수(1007), 메밀 조(1008),
11류 : 곡분(1102), 곡물의 분쇄물 조분 펠리트(1103), 기타 가공한 곡물(1104), 감자조분 분말(1105), 맥아(1107), 전분과 이눌린(1108),
12류 : 낙화생(1202),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1207), 인삼(121120),
기타 : 식물성 액즙(1302),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1515), 기타 당류 인조꿀(1702),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품(2106),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콜(2207)

#### 라. 양허세율 우선 현상

앞에서 언급했듯이 UR 협상의 결과로 시장접근 품목에서 높은 양허관세율이 낮은 기본세율에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WTO 라운드를 통한 양허관세율의 인하가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과는 달리, 농산물의 경우 많은 주요품목에서 양허관세 인하는 바로 실행관세를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 마. 증가세 중심 체제

〈표 III-8〉에서 보듯이 OECD국가들에서는 평균적으로 보아 할당외 세율에 비증가세가 많이 적용되며 이러한 현상은 QUAD 국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농산물 관세체계에서는 종량세 혹은 증가-종량 선택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적다. 기본관세율은 모두 증가세로 되어 있으며, 양허세율 중 할당내 세율은 모두 증가세로 되어 있으며 할당외 세율 중 극히 일부(68개품목)가 선택세로 되어 있다. 실제 운용에 있어서 선택세 중 종량세 적용 사례는 극히 적어서 실제 적용된 품목 중에서도 특히 일부 수입건에만 종량세가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1998년 적용품목은 6개(표고버섯, 고사리, 신선 혹은 냉장마늘, 건조마늘, 분쇄고추, 대두(채유 및 탈지대부박용 제외))에 불과하며, 해당품목에 대해서도 통관건수의 23%, 수입금액의 1.9%에만 적용되었다.

#### 바. 특별긴급관세(SSG) 제도의 존재

UR에서 국내의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산물의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하였을 경우 양허세율을 초과하여 부과되는 관세이다. 수입량 급증이나 수입가격 급락을 발동요건으로 하므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발동요건으로 하는 일반적인 긴급관세(관세법 12조)와는 구분된다. 〈표 III-9〉에서 보듯이 전분류와 일부 작물(낙화생, 메밀, 녹두, 팥 등)에 집중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300%대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표 III-8> 국별 비종가세 비율 및 분포

(단위 : 개, %)

	한 국		캐나다		일 본		미 국		EU		QUAD mean	
	종량세 적용 품목수 (양허)	적용 비율	종량세 적용 품목수 (실행)	적용 비율	종량세 적용 품목수	적용 비율	종량세 적용 품목수	적용 비율	종량세 적용 품목수	적용 비율	종량세 적용 품목수	적용 비율
1.산 동물	0	0.0	0	0.0	16	50.0	6	21.4	8	34.8	30	63.8
2.육과 식용설육	0	0.0	0	0.0	69	68.3	22	20.4	50	53.8	169	72.5
3.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0	0.0	0	0.0	0	0.0	0	0.0	20	17.5	0	0.0
4.낙농품, 조란, 천연꿀 등	1	1.8	1	1.8	73	83.9	46	31.5	126	50.2	169	94.9
5.기타 동물성 생선품	0	0.0	0	0.0	0	0.0	0	0.0	1	4.8	0	0.0
6.산 수물과 기타 식물	0	0.0	0	0.0	0	0.0	0	0.0	8	28.6	0	0.0
7.식용채소	33	25.4	8	6.2	55	37.9	9	8.2	85	55.2	46	32.4
8.식용 과일 및 견과류	9	10.2	8	9.1	20	21.7	0	0.0	62	53.9	78	35.5
9.커피, 차 및 향신료	3	7.0	3	7.0	3	6.0	0	0.0	7	14.9	0	0.0
10.곡물	2	6.3	2	6.3	15	62.5	13	31.0	14	66.7	47	85.5
11.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0	0.0	0	0.0	35	53.0	30	33.3	19	50.0	78	92.9
12.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일	3	2.4	3	2.4	0	0.0	4	4.9	25	43.1	3	3.6
13.락, 검 수지 및 기타 식물성액즙	0	0.0	0	0.0	1	8.3	2	8.7	1	6.7	0	0.0
14.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및 기타	0	0.0	0	0.0	0	0.0	0	0.0	2	14.3	0	0.0
15.동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물	1	1.0	1	1.0	4	6.3	36	43.9	31	47.0	10	7.8
16.육류, 어류 갑각류의 조제품	0	0.0	0	0.0	31	34.4	3	3.0	9	10.0	15	16.1
17.당류와 설탕과자	2	6.1	0	0.0	26	63.4	30	61.2	34	51.5	43	93.5
18.코코아와 그 조제품	0	0.0	0	0.0	2	11.1	2	6.5	34	43.6	20	74.1
19.곡물, 분, 밀크의 조제품 등	1	2.0	0	0.0	35	31.0	27	20.5	18	26.5	46	95.8
20.채소과실 견과류 및 기타조제품	2	2.0	0	0.0	2	2.3	11	4.8	73	43.2	75	24.4
21.각종의 조제식품	1	1.5	0	0.0	13	27.1	14	13.6	39	44.3	17	40.5
22.음료, 알코올 및 식초	0	0.0	0	0.0	62	79.5	27	51.9	61	87.1	161	93.6
23.식품공업의 잔재물 및 조제사료	2	4.4	1	2.2	4	10.0	4	9.5	12	33.3	32	48.5
24.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품	0	0.0	0	0.0	12	75.0	0	0.0	36	64.3	21	70.0
합 계	60	3.5	27	1.6	478	34.0	286	15.0	775	40.0	1,060	43.0

자료 : OECD 전산자료.

〈표 III-9〉 특별긴급관세 발동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설정 품목수	적 용 물 품	신고 금액 (천달러)	감정 가격	특별 긴급 관세액	평균 적용 세율
1995	76	메밀, 미탈각땅콩, 탈각땅콩, 기타 녹두, 기타 가공보리, 탈각땅콩, 밀 전분, 기타 전분, 백삼		1,786	5,579	312.4
1996	61	미탈각땅콩, 탈각땅콩, 밀전분, 고 구마전분, 메밀, 골분, 고구마전분, 본삼, 귀리	4,739	3,654	9,327	255.3
1997	61	미탈각땅콩, 탈각땅콩, 밀전분, 고 구마전분, 녹두·팥, 메밀, 밀전분, 고구마전분	3,550	3,176	9,344	294.2
1998	61	고구마전분, 팥, 녹두, 낙화생, 메 밀, 밀전분, 백삼	519	783	3,073	392.5

#### 사. 빈번한 탄력관세(조정, 할당관세) 발동

탄력관세는 농산물에 고유한 제도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농산물에 빈번히 발동된다. 조정관세는 환급성 높은 작물이나 영세한 식품산업의 산물에 인상 적용되고 있고, 할당관세는 주로 사료용 곡물에 인하 적용되고 있다<sup>4)</sup>.

#### 아. 가공식품에 대한 역관세의 문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료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공산품의 중심세율이 적용되므로 가공식품의 경우 실효관세율이 음수가 되는 이른바 역관세

4) 보다 자세한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탄력관세 일반에 대한 별도의 서술 참조.

의 가능성이 있다. 이 현황을 살피기 위해 투입산출표(1995년)와 1998년 실적관세율을 이용하여 실질관세율을 Corden 방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가 <표 III-10>에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소수의 품

<표 III-10> 농림수산물 및 음·식료품 실효관세율 분포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20 초과	5.채소 6.과실 9.유지작물 13.잎담배 25.식용임산물 30.내수면양식	46.도축육 47.가금육 48.육가공품 49.우유 50.유제품 55.수산저장품 56.기타수산식품 57.정미 62.전분 63.당류 66.국수류 70.장류 73.과실 및 채소가공품 74.커피 및 차류 75.인삼식품 76.누룩 및 맥아 80.소주 81.탁주 및 약주 82.맥주 83.기타 주류 84.청량음료
10~20	14.화훼작물 27.해면어획	53.수산통조림 67.정제염 68.발효조미료 79.주정
8~10	7.콩류 10.약용작물 28.내수면어획	8.감자류 23.육립
5~8	29.해면양식	58.정맥 59.계분 77.두부 52.어육및어묵 54.수산냉동품 64.빵 및 곡분과자 65.설탕과자 78.기타 식료품 85.광천수 및 생수 86.얼음 87.배합사료
0~5	1.벼 11.기타 식용작물 15.천연고무 17.기타 비식용작물 22.기타 축산 2.보리 12.섬유작물 26.기타 임산물	60.원당 61.정제당 69.기타 조미료
0 이하	3.밀 16.종자 및 묘목 19.옥우 21.가금 4.잡곡 18.낙농 20.양돈 24.원목	51.아이스크림 71.동물성유지 72.식물성유지 및 식용유 88.담배

자료 : 관세청 전산자료, 한국은행.

목을 제외하고는 역관세 현상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최세균(1998)<sup>5)</sup> 등도 1995년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였으나 적용한 실적 관세율이 다름).

그러나 원료농산물의 경우에는 관세율 이외에 관세할당에 의한 수입수량의 제한 등으로 인해 실제보호효과가 더 높을 수 있고 따라서 가공식품에 대한 실제보호의 정도는 실적관세와 투입계수만으로 평가한 실효관세율이 보여주는 것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국내가격과 세계시장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 실효보호율의 계산이 필요할 것이다.

### 3. 정책 환경

농산물 관세정책을 떠나감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정책환경은 WTO 차기 라운드의 협상, 농산물 수입구조, 농업소득 및 농업구조, 식품자급도 등이다.

#### 가. 차기 라운드

차기 라운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농산물관세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sup>6)</sup>.

- ① 쌀의 관세화 유예 유지문제 : 우리나라는 2004년까지는 UR에서 보장한 대로 쌀의 관세화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쌀 수출국(특히 미국)에 의해 쌀의 조기관세화 문제가 그 자체를 목적으로든 혹은 협상전략 차원에서든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최세균·이재욱·이명균,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1998.

6)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배종하, 「WTO 차기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망」(농정연구포럼 정기월례 세미나 발표문), 1999를 참조.

- ② 관세율 인하의 폭 : 앞에서 보았듯이 UR로 형성된 각국의 농산물 관세체계는 공산품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수입국의 정책적 이해가 걸린 민감한 품목들의 경우에는 몇 백% 수준의 고관세율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국들은 관세율의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공세적인 입장이 될 것이다.
- ③ 관세율 인하 방식 : 관세율 인하의 구체적 실행에 있어서 수입국의 재량을 어느 정도 남겨두는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고려되는 방안으로는 평균(단순 또는 가중)기준 감축, 전품목 일정비율 감축, 누진 감축(이른바 ‘스위스 공식’ 방식으로 인하 후 세율을 인하 전 기준세율의 함수로 정하되 인하 후 기준세율이 높을수록 인하의 폭을 크게 하는 방식), 영세율 교환방식(Zero-for-Zero : 특정품목군의 무세화를 주고받는 방식) 등이 있다. 이 중 단순평균 기준의 감축 방식이 수입국의 재량을 가장 많이 허용하는 방식이다. 수출국들은 보다 시장개방효과가 큰 전 품목의 일정한 비율 감축이나 누진감축 방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 ④ 시장접근물량의 증량과 관리방법 : 수출국 입장에서는 현재 관세 할당이 설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시장접근물량을 증량시키는 것이 고관세로 인한 무역장벽을 손쉽게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할당 내외를 불문한 관세인하를 요구하는 동시에 시장접근물량의 증량을 요구할 것이다. 또 수출국들은 시장접근물량의 수입, 판매에 있어 수입국 정부가 행사하고 있는 관리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그 관리방식을 투명하고 시장지향적으로 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 ⑤ 특별긴급관세 : 수출국들은 이 제도의 실제 시행이 자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도 자체의 폐지나 대폭적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수입농산물

에 대한 시장교란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주므로 그 유지를 추구하는 입장이다.

#### 나. UR 협정발효(1995년) 이후 농산물 수입구조의 변화

〈표 III-11〉에서 보듯이 수입액 기준으로 두류, 박류, 사료, 주류, 육류, 낙농품의 수입규모 증대가 현저하다. 특히 관심품목이라 할 수 있는 시장접근물량 설정 품목의 경우 농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1994년에는 HS 24류까지 수입액 중 이들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였던 것이 1998년에는 59억달러로 32%로 높아진 것이다. 특히 곡류, 서류, 두류, 사료, 낙농품 등의 수입이 액수기준과 물량기준 어느 쪽으로 보든 크게 증가하였다. 주목할 사실은 〈표 III-12-1〉, 〈표 III-12-2〉, 〈표 III-13〉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중 다수 품목(곡류, 전분, 대두, 참깨, 보조사료)에서 UR 이행계획을 초과한 관세할당의 증량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수입량도 관세할당량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접근물량 설정 품목의 경우는 할당 달성 상황에 따라서 무역정책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달라진다. 이론적으로 불매 미달성 품목은 할당내 세율이, 적정달성 품목은 할당량이, 초과달성 품목은 할당외 세율이 수입량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변수이다. 또한 할당량 배정방식에 따라 수입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렌트(rent)의 귀속이 달라질 수 있다. 차기 라운드에서 정책목표에 따라 각 품목의 할당 달성 상황을 고려하여 세 가지 변수의 조정을 적절히 조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III-11〉 품목별 수입 증대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1994	1997	1998	94~97증가율	94~98증가율
농산물	4,496.3	6,336.0	4,696.6	40.9	4.5
곡류	1,513.3	1,916.7	1,637.9	26.7	8.2
서류	38.3	117.6	81.5	207.0	112.8
두류	385.8	534.8	393.6	38.6	2.0
전분	21.6	26	25.5	20.4	18.1
채유종실	98.7	102	78.6	3.3	-20.4
과실	250.1	347	194.1	38.7	-22.4
채소	152.3	179.7	137.8	18.0	-9.5
화훼	18.8	30.3	13.2	61.2	-29.8
버섯, 수목	12.5	17.1	5.5	36.8	-56.0
식물성유지 및 그 가공품	224.5	312	264.7	39.0	17.9
박류	293.8	511	400.6	73.9	36.4
사료	72.9	122.1	80.4	67.5	10.3
기타 농산부산물 <sup>1)</sup>	60.1	69.6	43	15.8	-28.5
식물성재료 <sup>2)</sup>	103.5	92.1	63.7	-11.0	-38.5
커피, 코코아	251.5	329.6	229.4	31.1	-8.8
차류	1.5	1	0.8	-33.3	-46.7
연초류	245.2	397.5	166.3	62.1	-32.2
인삼, 한약재	44.5	82.5	39.9	85.4	-10.3
주류	136.6	309.9	186.6	126.9	36.6
당류	385.3	496.2	441.7	28.8	14.6
음료	20.1	36.3	22.4	80.6	11.4
과자, 면류	72.8	107.1	60.4	47.1	-17.0
기타 조제농산물	59.8	58.8	33.8	-1.7	-43.5
축산물	932.4	1,283.00	726.9	37.6	-22.0
산동물	24.2	32	10.9	32.2	-55.0
육류	621.3	850.9	481.1	37.0	-22.6
쇠고기(비가공) <sup>3)</sup>	432.9	480.2	268.3	10.9	-38.0
쇠고기(가공) <sup>4)</sup>	0.25	0.38	0.14	52.0	-42.3
돼지고기(비가공) <sup>3)</sup>	86.3	228	140.2	164.2	62.5
돼지고기(가공) <sup>4)</sup>	6.1	7.2	2.4	18.0	-60.1
기 타	44.9	134.5	69.8	199.6	55.5
동물성유지, 납	48.5	29.2	21.1	-39.8	-56.5
골류, 한약재	69	48.1	19.3	-30.3	-72.0
기타 축산부산물	73.3	107.1	53.7	46.1	-26.7
낙농품	89.8	158.3	97	76.3	8.0
난류	6.5	4.9	3	-24.6	-53.8

주 : 1) 농산물 납류, 식물성액즙, 기타 농산부산물

2) 빵류제조용 재료, 효모류, 소스류, 향신료, 지방성물질, 기타식물성 재료

3) HS 02류

4) 비가공 : HS 16류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1998~1999

KOTIS, 품목별 무역통계 자료

〈표 III-12-1〉 시장접근세율이 있는 품목의 수입액 증대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1990	1994	1997	1998	90~94 증가율	94~97 증가율	94~98 증가율
곡류	880.48	717.86	1,291.19	944.27	-18.5	79.9	31.5
서류	49.04	15.00	64.18	51.86	-69.4	327.9	245.7
두류	-	21.34	522.45	385.82	-	2,348.2	1,708.0
전분	5.27	21.64	25.97	25.48	310.6	20.0	17.7
채유종실	20.92	70.70	58.53	48.57	238.0	-17.2	-31.3
과실	47.67	78.56	98.42	71.58	64.8	25.3	-8.9
기타 과실	1.14	0.93	1.38	0.56	-18.4	48.4	-39.8
채소	5.87	77.16	53.38	51.14	1214.5	-30.8	-33.7
기타 산식물	0.03	-	0.10	0.02	-	-	-
식물성 유지	0.01	0.05	1.11	0.58	221.4	2,366.7	1,188.9
사료	1.48	5.91	27.83	22.82	299.3	370.9	286.1
기타 식물성물질	30.97	31.88	32.27	26.41	2.9	1.2	-17.2
차류	0.03	0.14	0.08	0.03	366.7	-42.9	-78.6
인삼류	0.44	0.10	1.07	0.33	-77.3	970.0	230.0
주류	-	-	2.61	2.59	-	-	-
잡사료	109.73	87.51	71.27	34.46	-20.2	-18.6	-60.6
포유가축류	3.09	5.86	6.44	0.94	89.6	9.9	-84.0
가금류	4.21	4.07	4.99	4.13	-3.3	22.6	1.5
포유가축육류	303.40	429.81	464.88	249.47	41.7	8.2	-42.0
가금육류	-	-	27.85	15.67	-	-	-
꿀류	0.13	0.01	0.15	0.12	-94.6	2,042.9	1,614.3
기타 축산부산물	2.34	2.96	4.19	2.77	26.5	41.6	-6.4
낙농품	1.26	17.71	35.93	31.21	1,305.6	102.9	76.2
난류	-	-	0.01	0.04	-	-	-
견과류	0.00	0.06	0.40	0.73	3,100.0	525	1,040.6
합 계	1,467.52	1,589.26	2,796.68	1,971.60	8.3	76.0	24.1

자료 : 관세청 품목별 무역통계 전산자료.

〈표 III-12-2〉 시장접근세율이 있는 품목의 수입량 증대 현황  
(단위 : 톤, %)

	90	97	98	90~97증가율	90~98증가율
곡류	6,352,004.6	8,446,748.0	7,260,593.3	33.0	14.3
서류	763,470.5	591,362.1	468,859.1	-22.5	-38.6
두류	-	1,589,462.3	1,433,274.0	-	-
전분	10,200.4	52,660.7	49,878.8	416.3	389.0
채유종실	19,602.3	72,937.4	59,720.0	272.1	204.7
과실	22,762.6	94,434.3	72,385.9	314.9	218.0
기타 곡실	120.8	293.6	163.5	143.0	35.3
채소	1,495.5	43,176.2	43,466.3	2,787.1	2,806.5
기타 산식물	1.9	9.2	2.4	384.2	26.3
식물성유지	1.3	460.6	196.0	35,330.8	-
사료	1,404.2	93,521.9	72,706.0	6,560.2	5,077.8
기타 식물성물질	43,430.8	39,888.2	34,086.9	-8.2	-21.5
차류	1.6	13.0	1.0	712.5	-37.5
인삼류	4.9	46.5	18.4	849.0	275.5
주류	-	5,788.5	5,837.5	-	-
잡사료	2,781.9	2,630.2	1,379.4	-5.5	-50.4
포유가축류	106.4	4,121.1	32.6	3,773.2	-69.4
가금류	41.5	36.6	29.4	-11.8	-29.2
포유가축육류	106,466.0	166,247.2	92,133.4	56.2	-13.5
가금육류	-	16,416.4	11,939.7	-	-
꿀류	37.0	569.0	450.5	1,437.8	1,117.6
기타 축산부산물	4,144.9	5,123.6	3,853.0	23.6	-7.0
낙농품	681.1	38,273.9	38,095.3	5,519.4	5,493.2
난류	-	0.3	1.9	-	-
견과류	1.1	151.5	327.3	13,672.7	29,654.5
합 계	7,328,761.3	11,264,372.3	9,649,431.6	53.7	31.7

자료 : 관세청 품목별 무역통계 전산자료.

〈표 III-13〉 시장접근물량 품목들의 관세협당 충족 상황

	1995	1996	1997	1998
종유(두)	○	●*	○	○
종돈(두)	◎*	◎*	◎*	○*
종계(수)	◎*	◎*	◎*	*
쇠고기(정육)	◎	●	●	○
돼지고기(지육)	◎	●	●	
닭고기	○	●	●	
탈지분유	◎	●	●	◎
전지분유	◎	○	●	○
연유	●	○		
유장	●	○	○	○
버터	◎	●	●	●
조란				○
천연꿀	●	●	●	●
꿀분	●	●	◎*	○*
사과, 배, 복숭아 등		○	○	
감자(종자용)	○	○	○	
감자(종자 이외)		○	○	○
양파	●	◎*	●	○
마늘	○	○	●	●
고추류	●	●	○	
녹두, 팥	◎*	◎*	◎*	◎*
매니옥	◎*	◎*	◎*	●*
매니옥펠리트		○	○	○
고구마	○	○	○	
기타서류	○	○	○	○
밥	○	○	○	○
잣	●	●	●	●
오렌지	●	●	●	●
감귤류	●	●	●	●
대추	●	●	●	○
녹차	◎	●	○	○
생강	◎	○	●	○
호밀(종자용)	◎	●	◎	◎
맥주맥	◎*	◎*	●	◎*
보리	●	◎*	◎*	◎*

<표 III-13>의 계속

	1995	1996	1997	1998
귀리(종자용)	●	●	●	◎
옥수수(종자용)	◎*	◎*	◎*	◎*
옥수수(종자용이외)	◎*	◎*	◎*	●*
벼, 현미, 쌀 등		●	●	○
수수(종자용)	◎*	●	○	◎
매밀, 기타 곡물류	◎*	●	●	●
밀, 귀리, 울무 등 기타	◎	●	●	●
가공곡물				
감자분(조분, 플레이크)	◎*	◎*	◎*	◎*
맥아	◎*	◎*	◎*	◎*
밀전분, 기타 전분, 이눌린	○	●	●	●
감자전분, 변성전분	◎*	◎*	◎*	◎*
매니옥전분	◎*	◎*	●*	●
고구마전분	◎*	◎*	◎*	◎*
대두	◎*	◎*	◎*	◎*
낙화생, 조제품	◎*	●	●	●
참깨	◎*	◎*	◎*	◎*
인삼(조제품 포함)	◎	○	●	○
사료용 근채류, 식물성부산물	●	◎*	◎*	◎*
참기름과 그 분획물	○	●	●	○*
유당	◎*	◎*	◎*	◎*
인조꿀	○			
오렌지쥬스	●	○	●	
변성하지 않는 에틸알콜(kl)	●	●	●	○
육, 설육의분, 조분, 펠리트	●	●	●	●*
기타 배합사료	●	●	○	●
보조사료	◎*	◎*	◎*	◎*
누에고치	○	○	○	○
생사	◎*	◎*	●*	○*

주 : ○ 할당달성률 90% 이하  
 ● 할당달성률 90~120%  
 ◎ 할당달성률 120% 이상  
 \* 중량운영

### 다. 농가-농업소득의 정체와 농업부문 생산구조의 '적응정체'

〈표 III-14〉에서 보듯이 1990년대 후반 들어 농업조수익의 증대는 농업경영비의 증대폭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 결과 농업소득은 정체 내지 감소하였다. 한편 농외소득의 증가도 1990년대 후반에는 전반에 비해 눈에 띄게 둔화되어 결국 농가소득이 정체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의 농업생산구조의 변화는 재배면적, 생산량, 조수입구조 어느 측면으로 보든, 식량작물 비중의 감소, 원예작물과 축산의 증대(특히 전자)로 요약되지만 이러한 변화는 전반기에 두드러지고 WTO 협정이 발효한 후반기에는 둔화되어 일종의 '적응정체'를 보이고 있다.

〈표 III-14〉 농업, 농가소득의 변화

(단위: 천원, %)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외소득비	
		농업조수입	농업경영비			
1985	5,736	3,699	5,477	1,778	1,060	18.5
1990	11,026	6,264	9,078	2,814	2,841	25.8
1994	20,316	10,325	15,347	5,022	6,184	30.5
1997	23,488	10,204	17,284	7,080	8,677	36.9
1998	20,494	8,955	16,630	7,675	6,975	34.0
90~94 증가율	84.3	64.8	69.1	78.5	117.7	18.2
94~98 증가율	0.9	-13.3	8.4	52.8	12.8	11.5

### 라. 자금률의 변화

〈표 III-15〉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대 후반에는 식품자금도에 있어서 급격한 악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곡류와 두류의 자금률은 각각 약 30%, 약 10%로 그 절대수준이 이미 매우 낮은 상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표 III-15〉 1994~1997년간 식품자급도의 변화

(단위 : %, %p)

	1994년		1997년		1994년~1997년 변화	
	자급도	자급도 (사료제외)	자급도	자급도 (사료제외)	자급도	자급도 (사료제외)
1. 곡류	28.3	52.3	31.7	57.8	3.4	5.5
쌀	87.7	87.7	105.0	105.0	17.3	17.2
보리	51.0	51.0	47.0	49.6	-4.0	-1.4
밀	0.0	0.1	0.2	0.3	0.2	0.2
옥수수	1.4	4.7	0.9	3.6	-0.6	-1.2
기타	2.7	9.3	2.0	10.3	-0.7	1.0
2. 서류류	95.0	104.9	99.2	110.2	4.2	5.3
감자	100.0	110.8	99.3	110.6	-0.7	-0.2
고구마	87.1	95.6	99.1	109.4	12.0	13.8
3. 설탕류	146.7		152.6		5.8	
4. 두류	14.9		10.3		-4.6	
대두	12.6		8.6		-4.0	
팥	48.7		61.3		12.3	
기타	39.5		45.2		5.7	
5. 견과류	129.2		107.2		-22.1	
6. 종실류	40.9		43.7		2.8	
참깨	30.8		35.4		4.6	
기타	66.2		63.6		-2.6	
7. 채소류	97.8		97.0		-0.8	
8. 과실류	92.1		92.1		-0.1	
9. 육류	91.0		92.1		1.0	
쇠고기	54.6		65.3		10.8	
돼지고기	98.2		100.1		1.8	
닭고기	99.2		93.2		-6.0	
부산물	108.9		100.0		-8.9	
10. 계란류	99.6		100.2		0.6	
11. 우유류	92.9		81.4		-11.5	
우유	93.4		80.9		-12.5	
전지분유	54.3		73.8		19.5	
탈지분유	39.2		87.6		48.4	
조제분유	99.6		124.5		24.9	
연유	100.0		97.2		-2.8	
12. 어패류	106.7		98.3		-8.5	
어류	99.8		86.3		-13.5	
패류	121.8		124.3		2.4	
13. 해조류	134.0		119.4		-14.6	
14. 유지류	3.8		4.1		0.3	
식물성	4.1		3.7		-0.4	
동물성	0.9		12.2		11.2	
15. 주류	101.4		102.4		1.1	

## 4. 개선방향

### 가. 개선방향 논의의 전제

농산물 관세체계의 정비를 논함에 있어 전제되어야 할 것은 차기 라운드 농업부문 협상에서 관세율 조정과 관련하여 국내정책 당국의 정책의지 구현을 위한 최대한의 여지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나. 정책목표 및 우선순위의 정립

농산물 관세정책을 행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정책목표로는 생산자 소득, 자급률, 효율성을 생각할 수 있다. 상충하는 정책목표들 사이에서 정책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각 목표에 가중치를 두어 그 가중합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방법, 한가지 목표의 최대화를 추구하되 다른 목표들의 최저치를 설정하여 그 제약하에서 최대화를 추구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정책목표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효율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i) 차기 라운드에서 결정될 관세율 감축 의무, (ii) 농업생산자 소득의 최저수준, (iii) 특정 품목군의 자급률 최저수준 등을 제약으로 놓고 국경보호로 인한 비효율성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접근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느 것을 제약으로 하고 어느 것을 최대화의 목표로 삼을 것인가는 정치적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어느 목표를 제약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그 최저수준의 결정 역시 정치적 고려를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경우든 우선순위가 정립되면, 최대화의 원리를 고려하여 관세율체계 개선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그 예로든 제약하의 비효율성 최소화 문제를 보다 단순화하여 (ii)의 제약 즉 농업생산자소득 최저수준 유지라는 제약하에 국경보호로 인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려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다.

$$\text{Min}_p \sum_j [CS_j(p) - PS_j(p) - (p - p^0)(D_j(p) - S_j(p))]$$

s.t.  $\sum_j PS_j(p) \geq a$

단,  $p$ : 관세 징수후 국내가격벡터,  $p^0$ : 국제가격벡터

하첨자  $j$ : 품목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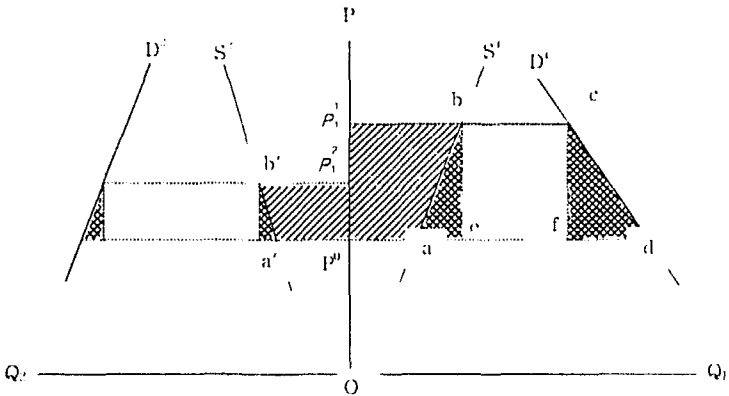
$CS_j(p)$ : 가격의  $p^0$ 에서  $p$ 로의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잉여 손실분

$PS_j(p)$ : 가격의  $p^0$ 에서  $p$ 로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자 잉여 증가분

$D_j, S_j$ : 각각 재화들의 수요 및 공급함수 벡터

이 문제의 의미를 2개의 품목이 있는 간단한 경우를 예를 들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 [그림 III-1]은 두 품목의 국내 수요 및 공급곡선을 중앙의 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y$ 축 양쪽으로 그린 것이다. 두 품목의 세계시장가격은  $P^0$ 로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두 재화의 단위를 적절히 조절해 주면 언제나 가능하다.

[그림 III-1] 생산자소득 최저수준 유지하에서 비효율 최소화



이제 관세의 부과로 인해 품목 1의 국내가격이  $p_1^1$ 이 되는 경우 이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은  $y$ 축 우측에 있는 겹빚금으로 표시한 두 개의 삼각형의 면적의 합으로 나타남은 잘 알려져 있다. 이 면적은 관세부과로 인한 소비자 잉여의 손실분(사다리꼴  $p^0 d c p_1^1$ )에서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사다리꼴  $p^0 a b p_1^1$ )을 빼고 다시 거기서 관세징수액(직사각형  $b e f c$ ), 즉  $p_1^1 - p^0 \times \{S(p_1^1, p_1^2) - D(p_1^1, p_1^2)\}$ 을 뺀 면적과 같다. 이것이 바로 위의 최소화 문제의 시그마 기호 우측에 있는 항들의 의미이다. 품목 2에 대해서도 같은 손실이 발생하며 이것도 역시  $y$ 축 좌측의 그림에서 동일한 요령으로 표식된다. 정책 설계자는 이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이 때 제약조건은 농업생산자의 생산자 잉여를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농업생산자의 생산자 잉여를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품목 1에서 관세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자 잉여 증가분  $P_1^0 a b P_1^1$ 과 품목 2에서 발생하는 생산자 잉여 증가분  $P_2^0 a' b' P_2^2$ 의 합을 일정하게 유지함을 의미한다. 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의 합은 그림에 홀빚금으로 표시되어 있다. 결국 주어진 최소화 문제는  $P_1^1, P_2^2$ 를 적절히 움직여 홀빚금친 면적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겹빚금으로 표시된 네 개의 삼각형의 면적의 합을 최소화하는 문제가 된다.

여기서  $CS$ 와  $PS$ 의  $P$ 에 대한 도함수가 각각  $D, S$ 임을 이용하고 교차가격효과가 없다고 가정하면 최적점에서는

$$(S_i' - D_i')(P_i - P_i) / S_i \quad (\text{단, 하첨자 } i \text{는 재화의 인덱스})$$

혹은 그 변형으로  $\{\text{공급탄력성} - (\text{수요량})(\text{수요탄력성}) / (\text{공급량})\} \times \{\text{세율} / (1 + \text{세율})\}$ 이 모든 재화에 걸쳐 동일해야 함을 보일 수 있다. 즉 공급탄력성이 높을수록, 수요탄력성이 낮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다른 제약을 무시하고 교차탄력성에 대한 제한된

가정에 근거한 예시에 불과하지만, 정책목표가 정해지면 관세율체계 설정의 방향이 구체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다. 역관세 현상의 시정

〈표 III-10〉에서 보듯 일부 식료완제품에 나타나고 있는 역관세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완제품의 관세율을 올리거나 투입재(원료농산물 혹은 중간 가공품) 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sup>7)</sup>. 투입재의 세율 인하는 투입계수와 투입재의 수입의존도를 고려하여 양자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라. 종량세의 역할 확대 검토

종량세는 저가품 혹은 저가신고품에 의한 시장교란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 다만, 단순한 종량세는 품질 차이에 의한 수입가격 차이에 반응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예로 〈표 III-16〉, 〈표 III-17〉에서 알 수 있듯이 즉, 고품질의 고가품과 저품질의 저가품에 대해서 같은 세액이 적용됨으로 인해 고가품 시장에 대해 필요한 보호를 해주지 못하고 저가품에 대해 과도한 보호를 해줌으로써 자원의 배분을 왜곡할 수 있는 것이다. 품목에 따라 원산지별로 가격차이가 매우 큰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종량세의 도입시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질성이 높은 품목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 세번(細番)의 분류가 필요하며, 단순종량세가 아닌 선택세, 혼합세 형태의 도입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7) 정부의 1999년 관세율 조정안에는 케찹, 소스, 마가린, 아이스크림, 비스킷의 원료품목들의 세율을 인하하도록 되어 있다.

〈표 III-16〉 참깨(1207400000)의 국별 수입현황(1998년)

(단위 : US \$, kg)

	금 액	중 량	단 가
중 국	5,750,142	6,032,148	0.95
인 도	855,041	1,272,000	0.67
멕시코	9,743	2,268	4.30
수 단	38,480,923	46,731,000	0.82
미 국	11,763	5,275	2.23
합 계	45,107,612	54,042,691	0.83

〈표 III-17〉 오렌지(1805100000)의 국별 수입현황(1998년)

(단위 : US \$, kg)

	금 액	중 량	단 가
캐 나 다	38,304	73,156	0.52
태 국	33,538	7,348	4.56
미 국	28,283,087	36,578,473	0.77
합 계	28,354,929	36,658,977	0.77

#### 마. 일상화된 탄력관세의 기본관세화

농산물은 수요, 공급의 낮은 탄력성, 수급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탄력관세제도를 적용할 필요성이 공산품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다년간에 걸친 일률적 세율의 탄력관세는 기본관세의 틀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품목들의 경우 기본세율과 실행관세와의 차이가 상당히 크므로 점진적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IV. 탄력관세 적용현황과 정비방향

### 1. 조정관세

#### 가. 운영현황

조정관세는 수산물, 일부 식료품 및 경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1999년 상반기 조정관세 적용 33개 품목 중 절반에 달하는 17개 품목이 최근 5개 연도 이상 연속 적용되고 있는 품목이다(〈표 IV-1〉 참조).

그 중 수산물에 부과되는 조정관세는 기본세율(10~20%)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sup>1)</sup>. 수산물 중 돔(0302), 미꾸라지(0302), 새우(0306), 골뱅이(1605)는 조정관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생산이 수입에 의해 빠른 속도로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표 IV-2〉 참조), 명태(0303), 농어(0302), 복어(0302)는 수입물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생산도 유지 혹은 확대되고 있다(〈표 IV-2〉 참조). 국내생산 유지 혹은 확대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조정관세율 수준 혹은 조정관세와 기본세율의 중간 수준으로 기본세율화하는 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경공업 생산품에 적용되고 있는 조정관세는 최근 3, 4년간 조정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어온 결과 기본세율과의 격차가 상당한 정도로 줄어들었으며 앞으로 수년간 현재와 같은 단계적 인하를 통해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 1999년 상반기 30~80%임.

〈표 IV-1〉 조정관세 적용현황

(단위 : %)

번호	품명	기본세율	1999상	1998	1997	1996하	1996상	1995하
0803	바나나	30	60	—				
0302	등	10	80	100	100	100	100	100
	농어	10	80	100	100	100	100	100
	미꾸라지	10	70	100	100	100	100	100
0302	복어	20	30	—	40	50	40	50
0303	명태	10	30	30	30	30	30	
	꽁치	10	50	50	—			
	민어	10	90	100	100			
	홍어	10	70	70	50			
0304	명태피레트	10	30	30	30	30	30	
0306	새우, 보리새우	20	40	40	40	35	35	35
0307	오징어	10	40	40	30	—	—	
	낙지	20	40	40	50	40	50	50
0709	표고버섯	30	90 또는 1,625 원/kg 중 고액	좌동	좌동	90	98	99
1605	굴뱅이	20	40	50	50	50	50	50
	조미오징어	20	30	30	30	30	—	
1902	당면	8	50 또는 395원/kg 중 고액	좌동	좌동	50	58	59
1904	전쌀	8	50	50	—			
2103	메주	8	50 또는 201원/kg 중 고액	좌동	좌동	50	50	59
2103	혼합조미료	8	50	50	50	50	50	50
4409	환봉	8	13	15	17	20	20	22
4421	이썬시게	8	13	15	19	23	23	26
4412	합판	8	15	15	15	15	15	15
5004	견사	8	20	20	20			
5007	견직물	13	20	20	20			
5208	면직물	10	18	18	24	26	26	26
5803	거즈	10	18	18	24	26	26	26
6302	면타올	13	18	20	30	30	30	30
6802	화강암	8	13	13	—			
7216	H형강	8	10	12	14			
8479	침마운터	8	21	21	—			
8712	자전거	8	13	16	19			
8714	자전거부품	8	13	15	17			

〈표 IV-2〉 조정관세적용 농수산물의 국내생산 및 수입추이

(단위 : 톤)

표고버섯	국내생산량	수입량	형태	국내생산량	수입량
1990	1,648	329	1990	321,501	198,006
1991	1,761	652	1991	187,497	267,758
1992	2,254	1,240	1992	330,362	136,980
1993	2,580	517	1993	226,162	111,548
1994	2,694	929	1994	314,717	112,469
1995	2,824	495	1995	343,713	131,121
1996	3,404	840	1996	223,198	207,753
1997	3,800	1,375	1997	222,187	187,465
돌류	국내생산량	수입량	농어	국내생산량	수입량
1990	20,555	832	1990	1,371	-
1991	20,965	1,485	1991	1,548	-
1992	18,505	911	1992	1,214	9
1993	20,054	623	1993	1,728	1,105
1994	17,417	2,810	1994	1,217	613
1995	12,563	1,926	1995	1,118	872
1996	11,455	1,956	1996	1,444	1,908
1997	11,272	2,087	1997	2,204	2,125
복어	국내생산량	수입량	미꾸라지	국내생산량	수입량
1990	6,978	56	1990	1,100	-
1991	5,230	641	1991	863	-
1992	9,459	101	1992	883	783
1993	5,683	-	1993	715	886
1994	4,191	2,193	1994	594	1,637
1995	10,178	1,841	1995	500	2,998
1996	9,708	2,560	1996	548	3,839
1997	7,471	2,041	1997	581	5,105
새우	국내생산량	수입량	꽃뱅이	국내생산량	수입량
1990	59,903	1,439	1990	6,389	300
1991	44,544	1,307	1991	7,143	2,231
1992	58,607	3,535	1992	5,852	937
1993	63,091	4,479	1993	8,352	190
1994	51,367	21,233	1994	8,131	8,645
1995	38,824	9,854	1995	5,224	9,440
1996	37,175	39,831	1996	2,975	14,175
1997	35,985	54,028	1997	1,617	10,946
낙지	국내생산량	수입량			
1990	-	-			
1991	-	-			
1992	-	-			
1993	-	-			
1994	-	-			
1995	18,803	6,987			
1996	11,611	19,571			
1997	10,103	15,446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1997」, 1988.

## 나. 조정관세의 효과

아래 <표 IV-3>은 우선 기본관세를 바탕으로 실효관세율을 구한 후 1999년 현재 부과중인 조정관세로 인하여 명목 및 실효관세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한 것이다.

<표 IV-3> 1999년도 조정관세를 포함한 기본관세 및 실효관세율의 변화

(단위 : %)

	명목 관세율	차이	실효 관세율	차이	중간재 평균세율	차이	비고
과실	51.7	13.1	68.2	19.2	1.0	-	바나나
해면어획	17.7	5.5	21.7	7.7	1.9	0.1	돔, 명태, 농어
내수면양식	35.3	25.3	51.6	39.9	3.7	1.7	뱀장어 등
육가공품	28.3	-	60.0	-2.9	7.8	0.6	
유제품	34.1	-	103.6	-0.6	5.5	0.1	
아이스크림	8.0	-	-0.5	-0.5	9.5	0.3	
어육 및 어묵	9.7	0.2	5.7	-3.5	7.6	1.7	명태 피레트
수산통조림	20.0	-	34.4	-8.9	8.9	2.1	
수산냉동품	20.3	8.6	27.4	15.0	10.7	3.6	홍어, 민어
수산저장품	25.6	7.6	46.9	15.4	9.9	2.9	염장 새우
기타 수산식품	22.9	3.0	59.1	7.6	7.9	1.4	오징어
당류	14.8	-	25.8	-0.3	5.1	0.1	
빵 및 곡분과자	8.0	-	6.3	-0.8	5.4	0.4	
설탕과자	7.6	-	6.1	-1.1	4.9	0.6	
곡수류	39.7	31.7	160.6	153.8	6.7	1.2	당면
발효조미료	8.0	-	11.0	-0.5	3.4	0.2	
기타 조미료	32.9	24.6	64.8	67.5	11.9	1.1	혼합조미료
장류	21.1	13.1	39.5	33.0	7.1	1.6	매주, 고추장
동물성유지	2.5	-	-18.2	-2.1	10.4	1.2	
식물성유지 및 식용유	4.3	-	-6.3	-0.2	7.8	0.1	
과실 및 채소가공품	33.8	0.6	38.7	-4.9	18.8	2.6	표고버섯
커피 및 차류	14.4	-	27.5	-0.3	2.9	0.2	
기타 식료품	11.5	1.7	9.8	3.3	8.1	0.4	전쌀
청량음료	29.3	-	50.7	-1.2	7.4	0.4	
견사	8.4	0.5	11.9	1.0	2.8	0.1	

<표 IV-3>의 계속

(단위 : %)

	명목 관세율	차이	실효 관세율	차이	중간재 평균세율	차이	비고
견직물	19.6	6.6	36.9	17.1	5.3	0.6	
면직물	13.3	3.3	31.5	10.8	2.6	-	
기타 섬유직물	12.0	0.1	17.5	0.2	3.7	-	거즈
직물제의류	10.8	-	10.8	-1.0	5.3	0.5	
기타 장신품	8.9	-	7.9	-0.9	4.9	0.4	
직물제품	10.4	0.3	12.2	0.1	4.9	0.3	린넨
기타 섬유제품	8.3	-	8.4	-0.3	3.8	0.1	
기타 가죽제품	8.0	-	10.2	-0.2	3.1	0.1	
제재목	5.5	0.7	11.6	2.0	1.7	0.1	환봉
합판	10.4	3.2	20.9	8.5	2.4	0.2	
재생 및 강화목재	8.0	-	9.4	-0.3	2.4	0.1	
건축용 목제품	8.0	-	9.1	-1.3	3.9	0.5	
목제용기	8.0	-	9.8	-1.2	3.6	0.5	
기타 목제품	8.2	0.2	9.6	-0.3	3.0	0.3	이쑤시개
펄프	2.0	-	-1.1	-0.3	2.4	0.2	
석제품	10.1	2.1	12.9	3.4	1.7	-	화강암
형강	8.1	0.2	16.6	0.5	2.2	-	
기타 선박	4.9	-	1.2	-0.1	4.3	0.1	
모터사이클	8.8	0.8	10.1	1.6	4.3	0.1	자전거
목제가구	5.6	-	2.9	-0.9	4.1	0.4	
금속가구	3.8	-	-0.7	-0.2	4.1	0.1	
기타 가구	5.7	-	4.2	-0.2	2.7	0.1	
장난감 및 오락용품	7.4	-	7.3	-0.1	3.1	0.1	
약기	7.9	-	8.7	-0.5	3.0	0.3	
모형 및 장식용품	8.0	-	8.2	-0.1	3.5	0.1	

주 : 1. 1999년 기본관세 등을 기준한 실행관세율에서 현재 적용중인 조정관세율  
포함할 경우임.

2. 명목관세율과 실효관세율은 조정관세율 반영한 것임.

3. 명목관세율과 실효관세율 다음의 '차이'는 조정관세가 있으므로 해서 없  
었을 경우에 비하여 각각의 관세율이 어느만큼 변화한 것인가를 보임.

이 표에 나타난 명목관세율과 실효관세율은 조정관세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이며, '차이'로 표시한 것은 조정관세가 있으므로 해서 없었을 경우에 비하여 각각의 관세율이 몇 % 포인트 변화한 것인가를 보인 것이다. 조정관세의 부과로 실효관세율이 10% 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있는 산업은 과실(바나나에 대한 조정관세의 영향), 대수면 양식(뱀장어 등), 수산냉동품, 수산저장품, 국수류, 기타 조미료, 장류, 면직물, 견직물 등이다. 반면 조정관세 부과 품목들을 투입재로 이용하는 산업들은 실효관세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중 감소의 폭이 2% 포인트를 넘어서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산업은 육가공품(-2.9% 포인트), 수산통조림(-8.9% 포인트), 동물성 유지(-2.1% 포인트) 등이다.

#### 다. 조정관세의 정책개선방향

우선 농수산물은 전체적으로 기본관세가 높으므로 1999년 조정관세를 인하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농산물의 경우 국산화가 불가능하거나 세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바나나, 표고버섯, 당면 등의 세율 인하가 바람직하다. 당면의 경우 특히 중간재 관세율에 비하여 높은 명목세율을 유지하여 부분적 조정이 필요하며 바나나와 찐쌀은 부품 원재료이므로 과자 등 식가공품 보호를 위하여 조정관세율을 인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 기타 조미료나 장류는 중간재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실효세율이 낮으므로 조정관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재가 많은 어획 등 수산품의 세율 인하는 1, 2차 가공산업에 속하는 수산냉동품과 저장품 그리고 수산통조림의 보호율을 인상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즉, 어육과 어묵에서는 명태 피레트의 조정관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수산품의 조정관세로 실효관세율이 하락하였으므로 이들 원재료의 전반적인 세율 인하가 바람직하다. 한편 오징어는 고율의 기본관세로 보호율이 높으므로 어느 정도의 세율

인하가 가능하다.

섬유제품의 경우 1997년 세율조정으로 기본세율이 인상되었으므로 조정관세가 적용될 관세구조상의 문제점은 없으므로 수입급증이나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원재료인 견사의 경우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조정관세가 필요할 수 있지만 견사에 대한 조정관세로 인하여 수입감소 추세에 있는 견직물의 원가 인상을 유발, 견직물에 관한 관세 인상을 촉발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흑자산업인 견직물에 초점을 맞춘다면 장기적으로는 견사에 대한 조정관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직물의 경우 일부 품목의 수입은 감소추세에 있어 일괄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모든 대상 품목이 서로 대체재가 아니라면 일부 품목(5208130000, 520812000)에 대한 조정관세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린넨은 거어즈와 달리 수입이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조정관세의 인하가 바람직하며, 마찬가지로 합판도 수입급증이나 정책적 배려가 아니라면 세율조정이 가능한 품목이다. 합판은 기초 원자재로서 건축용 목제품, 목제용기, 그리고 특히 실효세율이 낮은 각종 가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다. 합판 중 일부 전락품목은 조정관세의 부과가 가능할 것이나 이는 부분적이어야 한다. 한편 기타 합판(4412291000, 4412991090)을 제외하면 품목에 따라 수입급증, 감소 제품이 있어 대체재가 아니라면 수입품을 구별하여 조정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산 H형강은 이미 반덤핑관세가 적용중인 품목으로 중국산 H형강으로 급속한 대체수입이 없는 한 조정관세가 필요없다. 이외 장기 구조조정 품목인 이쑤시개나 원재료에 해당하는 환봉·화강암은 조정관세의 인하가 바람직하다.

## 2. 할당관세

### 가. 운영현황

할당관세는 사료용 농산물과 광물, 비료, 공업용 원료, 원자재 및 고급 기계류에 적용되어 국내 농업 및 공업에 대한 실질보호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표 IV-4〉은 1999년 하반기 현재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과거 4년간 할당관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품목들에 할당관세가 연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수입전량에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적용품목 중 최근 3년 이상, 수입전량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들로는 알팔파(사료용), 유채유, 망간광, 연광, 아연광, 원목, 반합성스티폴섬유, 터보제트, 자동조절용 기기등이 있다.

〈표 IV-5〉는 할당관세 적용 주요품목에 대한 관세지원액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관세지원액은 수입액에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가상의 관세징수액으로부터 실제 관세징수액을 뺀 것으로 정의되었다. 옥수수, 밀, 대두, 프로판, 터보제트 등에 대한 지원액의 규모가 1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부탄과 자동조절용 기기 등에 대한 지원액이 각각 7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할당관세 적용현황

(단위: %, 천톤)

번호	품명	기본관세	1999하반	한계수량	1999상반	한계수량	1998하반	한계수량	1998상반	한계수량
0404	유장(사료용)	20	7	17.8	7	8.76	7	8.1	7	8.6
0601	백합인경	8	4	0.33	4	0.569				
0714	매니옥	20	10	117	10	143	10	130	10	150
0714	매니옥펠리트	3	2	315						
0802	아몬드	30	8	1.8	8	1.5				
1001	밀(사료용)	5(3)	2	1530	1	1695	0	1823	0	1525
	밀(계분용)	5(3)	2	1260			1	1260	1	1100
1003	겉보리(사료용)	5(20)	2	50					1	50
1005	옥수수(사료용)	5(3)	1	4118	0	3954	0	3608	0	4133
1107	맥아	30	10	30	10	28.7	10	13.45	10	43
1201	대두(사료용)	5(3)	2	700	2	35-630	1	890	1	720
1214	알팔파(사료용)	20	1	전량	1	전량	1	전량	1	전량
1514	유채유	30	10	전량	10	전량	15	전량	15	전량
1518	동식물성유지	8	3	34	3	37			3	43
2002	토마토	50	10	0.61	10	0.6			10	2
2002	토마토펜이스트	8	5	13	5	13			5	15
2302	밀기울(사료용)	5	2.5	390					2.5	461
2304	대두박(사료용)	5(3)	2.4	570						
2306	채종박(사료용)	5	3	전량					2	
2510	천연인산칼슘	1	0	전량	0	전량	0	전량	0	전량
2602	망간광	1	0	전량	0	전량		전량	0	전량
2607	연광	1	0	전량	0	전량		전량	0	전량
2608	이연광	1	0	전량	0	전량		전량	0	전량
2709	석유, 역청유	5	1	7천5백만 배럴	2	7천5백만 배럴	1	7천만 배럴	1	5천만 배럴
2711	프로판, 부탄	5	1.5	전량	3	전량	1	전량		
2907	비스페놀에이	8	6	27	6	24				
3102	요소	8	5	150	5	250	5	250	4	200
3104	염화칼륨	1	0	전량	0	전량	0	전량	0	전량
3204	염료	8	6	0.06-3.5	6	0.06-3.5	6	0.06-3.2	6	0.06-0.41
3206	이산화티타늄 안료	8	6	20						
3501	카세인, 카세인산염	20	8	2.4	8	2.6	8	2.6	7	2.6
3912	초산셀룰로스	5	2	전량	3	전량				
4101	원피	2	1	전량	1	전량				
4104	소가죽 등	5	3	전량	3	전량	2.5	전량	2.5	전량
4401	침상, 식면상의 목재	2	1	전량	1	전량				
4403	원목	0.5	0	전량	0	전량	0	전량	0	전량

<표 IV-4>의 계속

(단위 : %, 천톤)

번호	품명	기본 관세	1999 하 반	한계 수량	1999 상 반	한계 수량	1998 하 반	한계 수량	1998 상 반	한계 수량
4408	합판용단판	5	2.5	12만 m <sup>3</sup>	2.5	12만 m <sup>3</sup>	2.5	15만 m <sup>3</sup>	2.5	전량
5002	생사	8	3	1.6	2	0.3	2	1.6	2	전량
5205	면사	8	2	15	2	전량	2	전량	2	13
5403	반합성필라멘트사							7	2	7
	비스코레이온	8	2	7	2	7	2			
	초산셀룰로스	8	5	4	5	7				
5504	반합성스테이플섬유	8	4	전량	2	전량	2	전량	3	전량
7014	유리제의 광학용품	8	5	전량	5	전량	5	전량	5	전량
7207	철, 비합금강 (단조용슬랩)	3	2	83			1	500	1	전량
7224	철, 비합금강(블래트)	3	1	600	1	500	1	500	1	1300
7226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8	5	0.8						
7601	알루미늄 과	3	2	전량	2	275				
7605	알루미늄 선	8	4	1.1	4	0.6			4	1.1
7606	알루미늄 판, 쉬트	8	6	0.4~25	6	0.57~25	6	25	6	30
8408	발전기용디젤엔진	8	4	전량	4	전량	4	전량	4	전량
8411	터보제트 등	3	1	전량	1	전량	1	전량	1	전량
8473	카드리지형 CPU	4	0	전량						
9032	자동차절용 기기 등	5	1	전량	1	전량	1	전량	1	전량
2825~ 3823	농약원제	8	2	13	2	13	2	13	2	22천
0803	바나나	30			60	5	70	20	70	20

번호	품명	기본 관세	1997 하 반	한계 수량	1997 상 반	한계 수량	1996 하 반	한계 수량	1996 상 반	한계 수량
0404	유장(사료용)	20	7	10	7	7.82	7	8.22	7	10
0601	백합인경	8								
0714	매니옥	20	10	140	10	115	10	120	10	10
0714	매니옥펠리트	3								
0802	이본드	30								
1001	밀(사료용)	5(3)	0	595	0	1464	0	960	0	1
	밀(제분용)	5(3)			1	1200	1	1200		
1003	질보리(사료용)	5(20)	1	50	1	100	1	50		2
1005	옥수수(사료용)	5(3)	0	4650	0	3735	0	4358	0	1
1107	맥아	30	10	35.3	10	44.2	10	21	10	15
1201	대두(사료용)	5(3)	1	944	1	797	1	827	1	2
1214	알팔파(사료용)	20	1	전량	1	전량	1	102	2	2
1514	유채유	30	15	전량	15	전량	15	전량	15	15
1518	동식물성유지	8	3	40	3	47				
2002	토마토	50								
2002	토마토케이스트	8	5	76	5	13.5				

〈표 IV-4〉의 계속

(단위 : %, 천톤)

번호	품명	기본관세	1999하반	한계수량	1999상반	한계수량	1998하반	한계수량	1998상반	한계수량
2302	밀기울(사료용)	5	2.5	362	2.5	380	2.5	39		
2304	대두박(사료용)	5(3)								
2306	채종박(사료용)	5	2	413	2	404				
2510	천연인산칼슘	1	0	전량						
2602	망간광	1	0	전량	0	전량				
2607	연광	1	0	전량	0	전량				
2608	이연광	1	0	전량	0	전량				
2709	식유, 역청유	5	1	7천만 배럴	1	3천만 배럴	3	4천6백만 배럴	3	3
2711	프로판, 부탄	5	1	전량	1	전량	1	전량	2	2
2907	비스페놀에이	8								
3102	요소	8	4	전량	4	120	4		4	4
3104	염화칼륨	1	0	전량						
3204	염료	8	6	0.4	6		6		6	6
3206	이산화티타늄 안료	8								
3501	카세인, 카세인산염	20	7	전량	5	2.6				
3912	초산셀룰로스	5								
4101	원피	2	1	전량	1	전량				
4104	소기죽 등	5								
4401	침상, 삭편상의 목재	2								
4403	원목	0.5	0	전량	0	전량	0		1	1
4408	합판용단판	5	2.5	전량	2.5	전량	2.5			
5002	생사	8	2	전량						
5205	면사	8	2	7천	2	10	2	10	2	2
5403	반합성필라멘트사	2	전량	2	7	2	7	2	2	
	비스크레이온	8								
	초산셀룰로스	8								
5504	반합성스테이플섬유	8	2	전량	2	전량	2	전량	2	4
7014	유리제의광학용품	8	5	전량	5	0.1	5	0.23	-	
7207	철, 비합금강(단조용)	3	4	120	4	전량	3	전량	2.5	2.5
7224	철, 비합금강(빌레트)	3	2	전량	2	1300	2	1300	2	2
7226	합금강의평판연제품	8							6	
7601	알루미늄 괴	3	3	전량	3	350	3	400	3	3
7605	알루미늄 선	8	4	1.02						
7606	알루미늄 판, 쉬트	8	6	전량	4	25	6	30	6	6
8408	발전기용디젤엔진	8			4	전량				
8411	터보제트 동	3	1	전량	1	전량	3	전량	3	
8473	카트리지형 CPU	4								
9032	자동차조절용 기기 등	5	3	전량	3	전량	5	전량	5	
2825~3823	농약원재	8	2	전량	2	20	2	15	2	2
0803	바나나	30	70	20	70	20	70	20	70	70

〈표 IV-5〉 주요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관세지원액 추정

(단위 : %, 백만원)

HS	품 목 명	기본관세	1999 하반기 할당세율	1998 하반기 할당세율	1998년 관세지원액
040410	유장과 변성유장(사료용)	20	7	7	1,100
0714102010	매니옥(칩 : 주정용)	20	10	10	2,229
1001909020	밀(사료용)	5	2	0	14,665
1001909030	밀(계분용)	5	2	1	11,769
1005901000	옥수수(사료용)	5	1	0	31,503
1107	맥아(맥주제조용)	30	10	10	1,183
1201001000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용)	5	2	1	10,373
1214909010	알팔파(사료용)	20	1	1	1,231
1514	유채유	30	10	15	764
251010	천연인산칼슘	1	0	0	1,190
2602	망간광	1	0	0	0
2711120000	프로판	5	1.5	1	31,148
2711130000	부탄	5	1.5	1	7,632
3102100000	요소	8	5	5	701
3104200000	염화칼륨	1	0	0	1,111
3501	카세인, 카세인산염	20	8	8	2,126
4403	원목	0.5	0	0	2,442
4408	합판용단판	5	2.5	2.5	1,488
5002	생사	8	3	2	2,831
5205	면사	8	2	2	2,939
5504	반합성스테이플섬유	8	4	2	4,330
7014	유리제의 광학용품	8	5	5	264
7207	철, 비합금강(단조용슬랩)	3	2	1	3,284
7224902000	기타 합금강(빌렛)	3	1	1	34
7606	알루미늄, 판, 쉬트	8	6	6	2,264
8411	터보제트 등	3	1	1	11,070
9032	자동조절용 기기 등	5	1	1	7,833

### 나. 할당관세의 효과

다음 〈표 IV-6〉은 실행관세율을 바탕으로 실효관세율을 구한 후 1999년 현재 부과중인 할당관세로 인하여 명목 및 실효관세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한 것이다. 이 표에 나타난 명목관세율과 실효관세율은 할당관세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이며, ‘차이’로 표시한 것은 할당관세가 있음으로 해서 각각의 관세율이 할당관세가 없었을 경우에 비하여 몇 % 포인트 변화한 것인가를 보인 것이다. 원유에 대해서는 나프타에 한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할당관세율이 아닌 실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실효관세율의 변화가 0.5% 포인트 이상인 산업을 표시하였다.

할당관세의 부과로 인하여 실효관세율이 크게 인하되는 산업은 보리, 기타 식용작물(알팔파에 대한 할당관세의 영향), 도축육(원피에 대한 할당관세의 영향), 유제품(유장과 변성유장에 대한 할당관세의 영향) 등이며 면사와 비료는 할당관세의 부과로 인하여 양(+ )의 실효관세율이 음(-)의 실효관세율로 바뀌는 경우이다. 반면, 정맥, 전분, 주정, 맥주 등은 할당관세의 부과로 인하여 실효관세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분, 맥주, 견직물, 면직물, 재생섬유직물, 편조원단, 가죽의류 등의 산업은 할당관세 없이도 실효관세율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할당관세로 인해 추가적 보호효과를 누리고 있는 산업이다.

〈표 IV-6〉 1999년도 할당관세를 포함한 기본관세 및 실효관세율의 변화

(단위 : %)

	명 목	차 이	실 효	차 이	중간재 평균세율	차 이	
보리	8.8	-12.5	10.5	-17.8	1.1	-0.3	호밀, 맥주맥, 겉보리
잡곡	0.8	-1.8	-0.3	-2.2	0.9	-0.3	옥수수
과실	38.6	0.0	49.9	0.9	0.7	-0.4	
콩류	3.8	-2.2	3.9	-2.4	0.5	-0.3	대두
감자류	6.6	-6.2	6.8	-6.9	1.0	-0.7	매니옥(카사바)
기타 비식용작물	2.3	-10.4	1.6	-11.7	0.2	0.0	알팔파
양돈	1.5	0.0	-9.3	0.6	3.9	-0.2	
원목	0.0	-1.8	-0.6	-1.9	0.2	0.0	원목
식용임산물	11.4	-8.3	11.6	-8.6	0.1	-0.1	아몬드
동광석	0.5	-0.5	-2.5	-0.7	1.1	0.0	
연 및 아연광석	0.0	-1.0	-2.2	-1.3	-1.3	0.0	연광과 그 정광, 아연광과 그 정광
기타 비철금속광석	0.5	-0.5	-1.0	-0.6	1.0	0.0	방간광과 그 정광, 공광과 그 정광
도축육	16.5	-0.6	240.0	-30.1	2.1	0.0	원피
육가공품	28.3	0.0	63.6	0.8	7.0	-0.2	
우유	40.0	0.0	445.3	1.1	1.0	0.0	
유제품	31.5	-2.6	91.1	-13.0	5.3	-0.2	유장과 변성유장
정맥	4.5	0.0	-10.7	22.6	6.9	-9.0	
채분	3.3	-1.9	3.9	-4.6	1.8	-0.4	밀기울
전분	8.3	0.0	23.1	5.1	1.3	-1.2	
당류	14.8	0.0	26.8	0.8	4.8	-0.2	
빵 및 곡분과자	8.0	0.0	8.0	0.9	4.6	-0.4	
국수류	8.0	0.0	7.9	1.1	5.1	-0.4	
발효조미료	8.0	0.0	12.2	0.6	2.9	-0.2	
장류	8.0	0.0	7.4	0.8	5.2	-0.3	
누룩 및 맥아	12.8	-10.2	24.0	-7.0	5.8	-8.0	맥아
두부	8.0	0.0	12.0	2.7	2.6	-1.1	
기타 식료품	9.9	0.0	7.9	1.4	7.2	-0.6	
주정	9.7	0.0	12.8	7.0	4.3	-3.1	

〈표 IV-6〉의 계속

(단위 : %)

	명 목	차이	실 효	차이	중간재 평균세율	차이	
탁주 및 약주	15.0	0.0	30.0	2.0	2.8	-0.6	
맥주	30.0	0.0	101.7	18.0	5.7	-2.3	
청량음료	29.3	0.0	52.5	0.5	6.9	-0.2	
배합사료	5.0	0.0	7.6	3.2	2.4	-1.1	
견사	3.6	-4.3	2.7	-8.1	2.1	-0.6	생사
면사	2.0	-0.9	-1.9	-2.9	2.5	0.0	면사
재생섬유사	3.9	-4.1	1.9	-6.4	3.0	-1.2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
재봉사 및 기타섬유사	8.0	0.0	10.3	0.6	2.7	-0.2	
견직물	13.0	0.0	22.5	2.7	3.8	-0.9	
면직물	10.0	0.0	22.2	1.5	2.1	-0.4	
재생섬유직물	9.6	0.0	17.9	4.2	5.8	-0.8	
편조원단	10.0	0.0	22.7	2.5	3.1	-0.6	
가족의류	13.0	0.0	34.9	2.1	3.2	-0.4	
가족	4.3	-0.7	-5.3	-0.9	7.3	-0.3	마속동물의 가족
가족신발	13.0	0.0	24.9	0.9	3.6	-0.3	
기타 가족제품	8.0	0.0	11.1	0.7	2.8	-0.3	
제재목	4.5	-0.3	11.9	2.4	0.6	-0.9	침상 또는 식편상의 목재
합판	6.9	-0.3	13.6	1.2	1.6	-0.7	합판용 단판
나프타	1.0	0.0	-9.6	0.9	3.5	-0.3	
휘발유	5.0	0.0	5.8	1.1	3.5	-0.3	
제트유	5.0	0.0	5.6	0.9	3.3	-0.3	
등유	5.0	0.0	5.5	1.1	3.5	-0.3	
경유	5.0	0.0	5.7	1.0	3.3	-0.3	
중유	5.0	0.0	5.6	0.8	3.2	-0.3	
액화석유가스	1.5	-3.2	-6.3	-9.6	3.3	-0.3	프로판 및 부탄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5.3	-2.4	4.5	-5.0	3.1	-0.2	초산셀룰로스, 농약원재
합성수지	7.9	0.0	11.3	0.6	3.9	-0.2	
재생섬유	5.3	-2.7	7.9	-6.9	1.8	-0.1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

〈표 IV-6〉의 계속

(단위 : %)

	명 목	차 이	실 효	차 이	중간재 평균세율	차 이	
합성섬유	7.9	0.0	10.9	1.4	4.2	-0.4	
비료	1.9	-1.4	-1.6	-3.4	2.2	-0.1	요소, 염화칼륨
농약	3.8	-4.2	0.9	-8.0	3.2	-1.5	
의약품	5.7	-1.0	5.3	-1.2	2.2	-0.2	
비누 및 세제	5.3	-2.7	4.5	-6.3	3.4	-0.4	
염료, 안료 및 유연제	6.9	-0.8	8.2	-1.1	3.0	-0.4	염료 및 조제품, 이산화티타늄을 기재로 한 원료
도료	8.0	0.0	9.9	0.5	3.5	-0.2	
잉크	8.0	0.0	9.8	0.6	3.6	-0.2	
접착제 및 젤라틴	7.9	-1.8	9.8	-3.9	3.7	-0.3	카세인·카세인산업 과 유도체
기타 화학제품	5.7	0.0	5.3	0.6	3.4	-0.2	
강반제품(조강)	2.7	-0.4	4.2	-1.4	1.5	0.0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기타합금 강의 반제품
철근 및 봉강	5.3	0.0	12.5	1.1	2.1	-0.2	
형강	8.0	0.0	16.9	0.7	2.0	-0.2	
선재 및 캐조	8.0	0.0	17.9	0.8	1.9	-0.2	
열간압연강재	7.1	0.0	16.8	0.9	2.0	-0.2	
냉간압연강재	7.2	-0.8	7.2	-2.2	4.4	0.0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표면처리강재	8.0	0.0	9.6	0.7	4.1	-0.3	
기타 철강1차제품	5.0	0.0	0.0	0.7	4.9	-0.2	
동괴	4.1	-0.1	10.8	0.9	0.9	-0.3	비정제 동과 전해 정제용의 동약극
알루미늄괴	2.3	-0.8	0.8	-1.1	1.7	-0.4	알루미늄괴
연 및 아연괴	4.7	0.0	8.2	1.0	1.0	-0.3	
알루미늄1차제품	6.9	-1.1	15.2	-2.0	2.0	-0.5	알루미늄선,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대
건물용 금속제품	8.0	0.0	9.5	0.8	4.4	-0.3	
금속포장용기	8.0	0.0	8.8	0.5	4.3	-0.2	
엔진 및 터빈	6.8	-0.4	6.3	-0.8	3.9	-0.1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내연기관
컴퓨터 및 주변기기	3.8	-0.9	1.9	-2.7	3.2	-0.2	판세울표8471 기계의 부분품
항공기	0.4	-0.5	-3.1	-0.6	1.7	-0.2	터보·기타의 가스 터빈 그 부분품

다. 할당관세의 정책개선방향

다년간에 걸쳐 수입전량에 대해 할당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기본관세와의 격차가 작으며, 관세지원액의 규모도 작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율의 기본관세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sup>2)</sup>.

---

2) 염화칼륨, 원목 등.

## V. 관세율체계의 국제비교

### 1. 경제적 변수에 따른 적정 관세율

적정 관세율을 결정하는 데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정책적 목표에 따라 적정 관세율의 수준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정책목표가 국내산업의 보호에 있다면 국내외 가격차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는 비교우위에 따른 교역을 반영하는 잣대로 볼 수는 없다. 반면 관세율정책이 경제규모와 발전 정도 그리고 수입구조 등 다양한 경제적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내생변수라면 이를 감안하여 관세율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러한 뜻에서 적정 관세율에 관한 경제학적 회귀분석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산업경쟁력은 높을 것이며 따라서 소비자 효용의 제고가 관세정책의 주요 목표가 될 것이므로 적정 관세부담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관세세입이 많을수록 그리고 교역비중이 상당할수록 재정관세의 기능이 약화되는 반면, 수입이 많을수록 관세의 보호정책적 기능이 중요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특정 산업의 발전으로 제 산업에 미치는 과급효과가 크면 이러한 외부효과를 관세율에서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세부담률과 각종 경제변수와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데 본고에서는 아래 식에서 각종 변수의 추정계수 즉,  $\beta$ 들을 추정하고자 한다.

$$\begin{aligned} \text{관세부담률} = & \alpha + \beta_1(\text{수입}/\text{GDP}) + \beta_2(\text{수출}/\text{GDP}) + \beta_3(\text{내국세}) \\ & + \beta_4(\text{소득}) + \varepsilon \end{aligned}$$

상기 개념에 입각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56개국에 관한 국가별 관세부담률을 각종 경제요인에 대비하여 회귀분석하였다. <표 V-1>에 의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GDP 대비 수출비중 그리고 내국세 부담률이 높을수록 관세부담률은 적고 GDP 대비 수입 비중이 높을수록 관세부담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이다(김진수·안종석, (1994)).

<표 V-1>에 제시된 값에다가 우리나라 1인당 GDP와 교역비중 등을 대입하면 적정 관세부담률이 산출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1995년 당시 추정된 관세부담률이 GDP 대비 1.62%로서 실제 관세부담률 1.32%보다 약 0.3% 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표 V-1> 1995년 관세부담률 추정 결과(국제비교)

	관세액/GDP(종속변수)	평균관세율
상수항	2.033(4.489)	11.568(6.73)
1인당GDP	-0.045(-2.628)	-0.150(-2.111)
내국세/GDP	-0.027(-1.495)	-0.163(-2.170)
수입/GDP	0.081(4.449)	0.116(1.557)
수출/GDP	-0.065(-3.831)	-0.165(-2.242)
R <sup>2</sup>	0.54	0.42
표본수	56	56
실제 관세부담률(%)	1.316	4.446
추정 관세부담률(%)	1.623	6.287

자료 : IMF, *International Revenue Statistics*, 각 연도.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각 연도.

나타났다<sup>1)</sup>. 따라서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정도나 무역구조가 유사한 다른 국가에 비하여 관세에 의존하는 비중이 적으며 그 차이는 1995년 당시 약 1조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관세 징수액은 4조 6,332억원인데 상기의 차액은 대략 관세 환급액(1조 2천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만약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수출용 수입품에 관세를 환급하지 않는다면 총관세 징수액이 적정 부담률이 될 것이다.

한편 같은 방식으로 수입가중 평균관세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할 수 있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평균 실적관세율은 4.45%인데 추정된 적정 관세율은 6.29%로서 실제 평균관세율이 약 1.8% 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 경우 GDP 대비 수입의 추정계수가 비록 양(+)의 값을 갖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수입과 관세변수 사이에 내생성(endogeneity)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2. 경제적 변수에 따른 적정 관세율구조

### 가. 가공도별 관세율 구조 : 국제비교

OECD TD/TC 자료에 의하면 1988~1996년 OECD 표본국가의 가공단계별 최혜국(MFN) 단순평균 관세율구조(관세할당치 포함)는 아래 <표 V-2>와 같다. 자료가 존재하는 OECD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할 때 전체 평균(3년 평균)이 9.3%로 스위스(3.2%)보다 높고 터키(38.1%)보다는 낮다. 또한 경사관세율체제가 여실히 나타나 광물과 공산품, 원자재의 관세율은 각각 2.3%, 5%에

1) 반면 김진수·안종석(1994)에서는 적정 부담률이 GDP 대비 2.39% 그리고 실제 부담률은 2.13%로 0.26% 포인트의 차이가 난다. 전자의 경우 1990년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본 연구는 1995년을 대상으로 하여 관세부담률이 약 0.8% 포인트 낮다.

달하지만 중간재와 완제품에는 7.7%, 11.2%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한편 괄호 안은 1996년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오스트리아·핀란드·스위스를 제외한 1996년 평균관세율로 3년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sup>2)</sup>.

〈표 V-2〉 OECD 표본국가의 관세율구조 분포(1988, 93, 96년)

	평 균	표준편차	최 소 치	최 대 치
원 자 재	6.51(11.66)	9.73	0.60(0.60)	55.70(55.70)
농어업품	7.83(13.99)	11.79	0.50(0.50)	69.40(69.40)
광 산 품	2.27( 1.64)	4.18	0.00(0.30)	23.00( 8.70)
공 산 품	5.02( 8.24)	6.60	0.10(0.90)	32.70(32.70)
중 간 재	7.65( 6.66)	6.54	0.40(2.90)	43.60(12.00)
최 종 재	11.24(12.57)	8.67	3.60(3.60)	51.60(35.40)
전 체	9.33(10.58)	6.76	3.20(3.20)	38.10(31.50)

주 : 포함된 국가는 QUAD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아이스랜드, 터키, 멕시코, 노르웨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들 3개국은 1993년 자료까지만 존재)의 14개국으로 표본수는 1988년, 1993년, 1996년 사이의 39개임. 제시된 수치는 3년 평균이며 괄호안은 1996년 관세율인데 이는 상기 3개국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 OECD, *Indicator of Tariff & Non-tariff Trade Barriers, update 1997, 1997.*

한편 좀 더 의미 있는 관세율체계로서 QUAD 국가의 가공단계별 단순평균 실행관세율(MFN)은 〈표 V-3〉과 같다. 평균관세율의 경우 미국(6.2%)과 일본(6.7%)은 큰 변화가 없으나 EU(8.2%)와 캐나다(10.4%)에서는 1988년과 비교하여 평균관세율이 증가추세에 있다. 전체적으로 농수산물 관련 수입규제의 관세화로 UR 이후 원자재 관세율은 2~5% 정도 인상되어 5.0~11.8%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반면 광산물 관세율은 1% 이하로 계속 인하되는 모

2) 이 밖에도 노르웨이의 경우 관세율이 5.6%(1993년)에서 31.5%로 증가하는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습을 나타낸다.

제조업에서는 1989~1996년 사이에 광산물 원자재(평균 1.3% → 0.6%)와 함께 중간재(평균 7.7% → 6.2%)도 관세율이 인하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제조업 원자재와 완제품의 관세율이 인상되었는데 특히 EU와 캐나다는 완제품의 경우 10.8%, 12.8%의 높은 실행세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음·식료품에 관한 관세율 인상과 상관이 있는 듯한데 이들 국가의 경우 제조업 원자재의 관세율도 완제품과 마찬가지로 각각 11.5%와 5.7%로 인상되었다. 이와 같이 비록 제조업 원자재의 관세율이 인상되었다지만 음·식료품을 제외할 경우 가공도별 관세율구조는 EU와 캐나다에서 미약하게나마 강화되는 듯 보인다. 반면 미국과 일본의 관세율구조는 농림수산업을 제외하면 같은 기간에 큰 변화가 없다.

〈표 V-3〉 QUAD 국가의 가공단계별 MFN 관세율구조

	미국			EU			일본			캐나다			평균		
	1989	1993	1996	1988	1993	1996	1988	1993	1996	1988	1993	1996	1988	1993	1996
원자재:	3.2	3.3	6.2	6.0	6.0	10.8	3.8	3.8	3.9	3.4	3.3	6.8	4.10	4.10	6.93
농업, 임업, 수산업	3.8	4.1	8.3	8.5	8.3	11.8	5.1	5.1	5.0	3.6	3.5	5.6	5.25	5.25	7.68
광업	1.0	1.0	0.8	0.8	0.8	0.4	0.5	0.3	0.3	2.7	2.8	0.8	1.25	1.23	0.58
제조업	2.3	2.3	3.2	5.2	5.4	11.5	3.4	3.4	3.5	2.5	2.4	5.7	3.35	3.38	5.98
제조업 중간재	7.0	7.0	5.7	7.3	7.3	6.7	6.6	6.8	6.3	9.9	9.4	6.2	7.70	7.63	6.23
제조업 완제품	6.3	6.6	6.4	7.8	8.1	10.8	7.8	7.8	7.6	9.8	9.6	12.8	7.93	8.03	9.40
전 산업	6.2	6.4	6.2	7.5	7.6	8.2	6.9	7.0	6.7	9.1	8.9	10.4	7.43	7.48	7.88

주 : 관세할당과 변동수수료의 관세율 상당치(AVE)를 포함한 단순 평균 MFN 관세율임.

자료 : OECD, *Indicator of Tariff & Non-tariff Trade Barriers, update 1997, 1997.*

다른 국가의 경우, 1989~1996년 사이에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터키에서는 관세율 인하가 대폭 이루어진 반면 멕시코는 평균 관세율이 오히려 인상되었다(아이슬랜드와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임). 호

주와 뉴질랜드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원자재에 관한 관세율이 그만큼 낮고 대신 가공품의 관세율이 높은 편인데 완제품의 관세율은 각각 6.7%, 11.7%로 중간재와 마찬가지로 인하 추세에 있다. 터키는 1989년 당시 23~50%의 높은 관세율을 전 산업에 부과하다가 최근에는 개방화가 진행되어 제조업 원자재와 중간재 그리고 완제품에 각각 5.7%, 8.5%, 11.9%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가 경사관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광물 관련 원자재 관세율은 멕시코와 터키 등 개도국을 제외하면 1% 이내이다. 또한 격차가 별로 없는 호주를 제외하면 제조업 중간재와 완제품간의 관세율 격차가 QUAD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커서 3~6%의 격차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멕시코와 터키에서는 1993년 이후 농림수산업에 관한 관세율이 QUAD 국가와 같이 인상 추세에 있다.

〈표 V-4〉 여타 OECD 국가의 가공단계별 MFN 관세율구조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터키		
	1989	1993	1996	1988	1993	1996	1988	1993	1996	1988	1993	1996
원자재:	2.0	0.9	0.6	2.7	1.7	1.5	8.3	10.9	12.7	27.6	6.5	6.9
농업, 임업, 수산업	1.7	0.7	0.5	2.7	1.6	1.6	10.6	12.2	14.7	29.0	7.5	9.0
광업	2.2	0.7	0.5	2.2	1.5	1.2	5.5	9.3	8.7	23.0	5.1	2.5
제조업	2.3	1.3	0.9	2.1	1.3	1.2	8.0	10.9	12.3	25.8	6.2	5.7
제조업 중간재	11.9	9.3	6.3	7.9	4.9	4.3	8.8	11.3	11.0	43.6	8.5	8.5
제조업 완제품	17.6	11.4	6.7	20.3	11.6	11.7	12.1	14.0	16.4	51.6	10.8	11.9
전체 산업	14.3	9.6	5.9	14.6	8.5	8.5	10.6	12.8	14.2	38.1	8.6	8.0

주 : 관세 할당과 변동 수수료의 관세율 상당치(AVE)를 포함한 단순 평균 MFN 관세율임.

자료 : OECD, *Indicator of Tariff & Non-tariff Trade Barriers, update 1997*. 1997.

#### 나. 회귀분석 : 가공도별 관세율구조

관세부담률에 관한 회귀분석 방식과 마찬가지로 본고에서는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 산업별 그리고 가공단계별 적정 MFN 실행관세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료는 OECD 표본국가의 연도별 그리고 가공단계별 관세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설명변수로서 1인당 GDP와 UNCTAD에 제시된 표준 국제무역 분류체계(SITC)의 1995년 교역비중을 사용하여 앞의 회귀식과 같은 방식의 추정을 하였다<sup>3)</sup>. 한편 회귀식은 오차항간의 자기상관관계를 이용한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을 응용하였다<sup>4)</sup>.

〈표 V-5〉는 가공도에 따른 관세율을 추정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용된 관세율은 관세할당 등 AVE까지 포함한 수치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분석결과를 해석하여야 한다. 설명변수가 관세율 분포를 설명하는 비율(R-Square)은 추정식에 따라 30~60%에 이른다. 마지막 열에서 전체적인 평균관세율로 보면 1인당 국민총생산이 높을수록 관세율은 낮은 반면 GDP 대비 수입이 많을수록 관세율은 낮고 수출이 적을수록 관세율은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표 V-1〉에서는 수입과 관세율이 정(正)의 상관관계, 수출과 관세율은 부(負)의 상관관계에 있어 OECD와 비OECD국가간에 구조적 차이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한 예로 주로 선진국으로 구성된 OECD국가의 경우 수입자유화가 비교적 잘 이루어져 관세의 수입제한적 기능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가공도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1인당 GDP가 높을수록 모

3) 이러한 의미에서 같은 국가일지라도 연도가 다르면 마치 가공의 국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는데 이는 물론 자료의 부족함에 기인한 차선의 선택이다.

4) 반면 본고의 분석에서는 수입의 내생성을 따로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표 V-5〉 OECD 국가에 기반한 가공도별 관세율구조 추정

	상 수	수입/GDP	수출/GDP	1인당 GDP	R <sup>2</sup>
원 자 재	7.00 ( 5.66)	0.10( 0.77)	-0.05(-1.07)	-0.0001(-3.23)	0.33
농어업품	8.09( 4.93)	2.36( 1.87)	-0.81(-3.16)	-0.0002(-3.40)	0.53
광 산 품	6.15( 7.83)	-0.70(-3.23)	-0.03(-0.42)	-0.0002(-5.91)	0.61
공 산 품	6.28( 5.51)	0.71( 1.67)	-0.60(-1.57)	-0.0001(-2.94)	0.31
중 간 재	10.90(14.59)	-0.37(-3.17)	0.10( 1.15)	-0.0001(-3.97)	0.50
최 종 재	14.27( 9.88)	0.03( 0.30)	-0.09(-1.30)	-0.0002(-4.14)	0.41
전 체	12.75(12.04)	-0.13(-2.34)	0.08( 1.77)	-0.0002(-5.05)	0.49

주 : 1. 표본수는 36개이며 ( )안은 t값임.

자료 : UNCTAD, *Handbook of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Statistics 1995, 1997.*

OECD, *Indicator of Tariff & Non-tariff Trade Barriers, update 1997, 1997.*

든 관세율이 낮아 소득과 관세율정책의 관계를 잘 설명한다. 그러나 수입비중의 경우 광산품과 공산품 중간재가 GDP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중이 많을수록 이들 제품의 관세율이 낮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표 V-6〉 우리나라 가공도별 관세율구조 추정

	수입/GDP	수출/GDP	1인당 GDP	우리나라 평균관세율 (I)	우리나라 평균관세율 (II)	OECD 평균관세율
원 자 재	9.95	2.93	10124	6.71	6.40	4.26
농어업품	2.03	0.40	10124	13.61	10.89	5.18
광 산 품	5.13	0.30	10124	0.41	1.03	1.72
제 조 업	2.78	2.23	10124	6.32	5.54	3.66
중 간 재	6.76	9.75	10124	7.70	8.17	7.02
최 종 재	13.80	15.82	10124	11.54	10.99	9.53
전 체	29.00	26.86	10124	8.93	9.15	8.03

주 : 1. OECD 평균관세율은 회귀식에 사용된 국가의 관세율만을 평균한 것임.

2. 추정관세율 I 은 OLS를, II는 SURE 모형을 사용하여 추산한 관세율임.

자료 : UNCTAD, *Handbook of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Statistics 1995, 1997.*

OECD, *Indicator of Tariff & Non-tariff Trade Barriers, update 1997, 1997.*

원자재와 중간재에 대해서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러나 농·어업품에서는 수입이 많을수록 관세율이 높아 관세율체계의 내생성(endogeneity), 즉 관세의 수입제한적 기능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한편, 수출의 경우 농어업품에서는 수출이 많을수록 관세율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어 산업별 경쟁력이 관세율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수출비중과 관세는 수입비중과 달리 대부분의 회귀분석에 있어서 부(負)의 상관관계를 보인다(중간재 제외).

상기 분석에서 수입과 관세율의 내생성은 사용된 설명변수가 적절하지 않아 발생할 수도 있다(specification problem). 특히, 제조업 중간재의 경우 기타 제조업(SITC 6+8-68+352)을, 완제품에는 화학 및 기계 및 운송기구산업(SITC 5+7)을 가변수(proxies)로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상기 분석이 좀더 명확한 결론을 맺지 못할 수도 있다<sup>5)</sup>. 이 밖에도 2단계 최소자승법이나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회귀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면서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적정 관세율구조(상기 표에서 여섯째 열, II)를 교역비중에 비추어 추정해 보면, 전체평균 관세율은 OECD 평균에 비하여 1.1% 포인트가 높은 9%가 적정하며 원자재 평균관세율은 약 2% 포인트 정도 높은 6.4% 수준임을 알 수 있다<sup>6)</sup>. 원자재 중에서도 농어업품 원자재에는 11~14%의 관세율이, 수입 의존적인 광산품에는 특히 하계도 OECD 평균 1.7%보다 낮은 1% 이하의 관세율이 적용되

5) 기타 농어업품 원자재에는 SITC 2+04-22-27-28, 광산품에는 SITC 27+28+68+332+3, 공산품 원자재에는 SITC 67+68+69에 따른 분류기준을 사용하였다.

6) 반면 <표 V-1>에서 적정관세율과 실제 관세율과의 차이는 1.8% 포인트이었다. 한편, 추정치는 관세할당 등 AVE를 포함하므로 기본관세율은 이보다 약간 낮을 수 있다.

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공산품 원자재에는 OECD 평균 3.7%보다 무려 2% 포인트가 높은 약 5~6%의 관세가 각각 부과되어야 한다. 반면 공산품 중간재 및 완제품에는 대략 1% 포인트 많은 8%, 11%의 관세율을 각각 부과하여야 OECD국가와 비교할 때 적정 관세율체계가 된다.

특히, 농어업품과 광산품의 경우 경제발전단계 즉 1인당 소득에 비하여 우리나라 교역구조상 GDP 대비 수입비중이 높아 적정 관세율이 농어업에서는 높고 광산품에서는 낮다. 한편, 제조업에서는 전술한 대로 원자재, 중간재 그리고 완제품의 관세율은 각각 5.5%, 8.2% 그리고 11%가 적정하여 OECD 평균관세율보다 1~2% 포인트 높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평균관세율(9.15%)과 OECD 적정 관세율(8.03%)은 약 1.1% 포인트 차이로 큰 차이가 없지만 가공도별 관세율구조에 있어서는 OECD 기준에 따르면 가파른 경사관세율 구조가 뚜렷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 다. 산업별 관세율 구조 : 국제비교

동일한 방식으로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 산업별 적정 관세율(MFN)의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에 앞서서 QUAD 국가의 산업별 관세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7>은 ISIC 2단위를 기준으로 한 산업별 관세율을 국내 부가가치(Value Added)로 가중하여 평균한 수치로서 QUAD 국가의 경우 농수산물과 음·식료품 때문에 UR에 따른 여타 품목의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관세율이 1988년부터 1996년 사이에 6.4%에서 7.1%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일본 예외). 농수산품의 경우, 수입장벽의 관세화로 관세율이 인상되었다고 하지만 음·식료품의 관세율도 동반 상승하여 미국 15.9%, EU 32.5%, 일본 18.9%, 캐나다 57.4%의 높은 관세율을 보인다.

캐나다의 원유(3.0%)를 제외하면 원자재에 대한 QUAD 국가의

관세는 1%를 하회한다. 제조업의 경우 1988~1996년 사이에 평균 관세율이 인상된 것도 음·식료품 때문이며, 섬유·의류에서도 각국이 공히 10%대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고 이 부문에 관한 한 관세율을 인하하려는 노력도 저조하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섬유제품의 관세율이 18%에 달하며 음·식료품 관세율은 무려 57%에 이르러 평균관세율은 8.7%에서 12.1%로 인상되었다. 상기 두 산업을 제외하면 공산품에 관한 QUAD 국가의 관세율은 매우 낮아서 일본 2~3%, 미국 3~4% EU 4~5%, 캐나다 4~6%대의 관세율 분포를 보인다.

〈표 V-7〉 QUAD 국가의 산업별 관세율 구조(생산량 가중평균)

(단위 : %)

	미국		EU		일본		캐나다		평균	
	1989	1996	1988	1996	1988	1996	1988	1996	1988	1996
1 농업, 임업, 수산업	3.8	7.9	6.4	10.7	5.1	5.0	4.1	5.5	4.9	7.3
2 광업	0.2	0.2	0.5	0.6	0.5	0.3	3.4	1.9	1.2	0.8
21 석탄 채광	0.0	0.0	0.4	0.0	-	-	0.0	0.0	0.1	0.0
22 천연석유	0.1	0.1	-	0.9	-	-	5.8	3.8	3.0	1.6
23 금속광물	1.2	1.1	-	0.0	-	-	0.0	0.0	0.6	0.4
29 기타	1.1	0.9	1.0	0.7	-	-	3.2	0.8	1.8	0.8
3 제조업	4.7	5.4	8.4	7.7	4.1	3.3	10.0	14.4	6.8	7.7
31 음·식료품	7.6	15.9	27.4	32.5	15.6	18.9	16.8	57.4	16.9	31.2
32 섬유·의류	11.6	11.3	10.0	9.8	10.4	10.1	20.2	17.8	13.1	12.3
33 나무·목제품	4.1	3.5	5.2	3.4	5.0	3.6	9.0	6.7	5.8	4.3
34 종이·제지	2.0	1.8	7.1	4.7	2.0	1.2	6.3	3.8	4.4	2.9
35 석유·화학	5.7	4.4	6.4	5.3	4.6	3.2	9.6	6.3	6.6	4.8
36 비철금속	4.9	4.5	5.5	3.9	2.9	1.5	6.9	4.3	5.1	3.6
37 기초금속	4.1	3.7	5.1	3.6	4.1	3.0	6.9	4.1	5.1	3.6
38 조립금속	3.5	3.2	6.0	4.3	1.7	0.3	7.3	5.0	4.6	3.2
39 기타 제조업	6.0	4.8	5.6	4.2	3.8	2.5	10.9	6.8	6.6	4.6
제조업 전체	4.4	5.2	8.2	7.7	4.2	3.4	8.7	12.1	6.4	7.1

주 : 가중치가 국내 부가가치이지만 HS 6단위 관세율을 4단위 ISIC 관세율로 전환하는 데에는 단순평균 관세율이 사용됨.

자료 : OECD, *Indicator of Tariff & Non-tariff Trade Barriers, update 1997, 1997.*

한편 <표 V-8>의 마지막 열에 나타난 14개 OECD국가 전체 평균관세율을 살펴보면 QUAD국가와 마찬가지로 1988~1996년 사이에 농수산업(6.1%→10.9%)과 식료품(26.2%→37.9%)에 대한 관세율 인상으로 UR에 따른 공산품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전체(9.4%→8.8%)와 제조업(10.9%→10.9%)의 평균관세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음·식료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제조업 제품의 관세율이 많으면 절반 가량 인하되어 평균관세율이 대략 4~6% 사이에 있다. 예외적으로 섬유·의류제품의 관세율이 1996년 당시 약 13%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1988년(21.5%)에 비하여 약 8.5% 포인트 인하된 수치이다. 하지만 이는 터키(100.2%→14.1%)와 호주(27.8%→20.2%)가 섬유·의류제품에 관한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였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OECD국가가 섬유·의류제품의 관세율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발도상국인 터키(39.0%→10.6%)에서는 개방화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나 음·식료품을 제외하면 고관세가 대폭 인하되어 섬유·의류와 비철금속만이 10% 이상의 관세율을 유지한다. 반면 같은 개도국인 멕시코는 농수산물 관련 산업을 제외하더라도 관세율(11.0%→18.0%)이 오히려 인상되었고 섬유산업의 관세율도 인상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노르웨이(5.3%→22.3%)의 경우에도 평균 관세율이 인상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는 농수산물(60.3%)과 음·식료품(135.1%)에 대한 고관세에 따른 결과로 의류(12.0%)를 제외한 다른 산업의 관세율은 극히 낮다.

이에 비하여 호주의 경우 의류산업에 약 20%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외에 음·식료품을 포함하여 전 산업에 관한 관세율은 약 3~4%대로 거의 균등관세율에 가깝다. 음·식료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스위스, 뉴질랜드, 호주, 터키 등을 제외한 QUAD 국가 등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비록 농수산물에 관한 관세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기존의 각종 비관세장벽의 관세화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움직임이다.

〈표 V-8〉 OECD 국가의 산업별 관세율(생산량 가중평균)과  
14개국 평균관세율

(단위 : %)

	노르웨이		호 주		멕시코		터 키		평균	
	1988	1996	1988	1996	1988	1996	1988	1996	1988	1996
1 농업, 임업, 수산업	1.9	60.3	1.7	0.5	10.6	14.7	31.0	9.1	6.06	10.92
2 광업	6.6	3.0	2.2	0.5	3.4	7.9	23.0	2.5	3.41	1.89
21 석탄 채광	0.0	0.0	-	-	1.7	10.0	-	-	0.44	1.78
22 천연석유	6.7	3.1	-	-	2.1	7.0	-	-	3.68	2.98
23 금속광물	0.0	0.0	-	-	3.9	8.7	-	-	0.85	1.96
29 기타	0.0	0.0	-	-	6.6	8.8	-	-	1.60	2.03
3 제조업	4.8	33.4	12.8	4.8	11.8	19.9	49.8	13.1	10.92	10.85
31 음·식료품	7.9	135.1	6.2	3.3	14.0	43.6	200.0	82.3	26.22	37.86
32 섬유·의류	13.0	12.0	27.8	20.2	16.2	21.9	100.2	14.1	21.53	12.96
33 나무·목제품	2.7	1.8	14.3	4.9	15.8	16.3	99.4	11.2	14.70	6.45
34 종이·제지	3.2	2.3	11.9	3.0	6.7	9.9	35.0	5.7	8.49	4.38
35 석유·화학	4.6	4.5	10.4	3.8	10.6	12.3	31.5	5.3	8.49	5.23
36 비철금속	2.0	1.9	10.4	4.1	11.3	12.2	64.3	13.7	10.15	5.09
37 기초금속	1.4	1.1	6.7	2.9	8.4	10.7	25.8	7.5	6.03	3.83
38 조립금속	4.4	4.0	18.3	4.9	12.2	14.1	31.0	8.5	8.18	4.69
39 기타 제조업	3.5	3.3	14.1	3.2	16.8	16.7	25.4	4.6	8.86	5.61
제조업 전체	5.3	22.3	11.2	4.2	11.0	18.0	39.0	10.6	9.37	8.82

주 : 가중치가 국내 부가가치이지만 HS 6단위 관세율을 4단위 ISIC 관세율로 전환하는 데에는 단순평균 관세율이 사용됨(마지막 열의 평균은 OECD 14개국의 평균 관세율임).

자료 : OECD, *Indicator of Tariff & Non-tariff Trade Barriers, update 1997, 1997.*

#### 라. 회귀분석 : 산업별 관세율구조

본절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OECD 국가의 산업별 관세율구조(부가가치 가중평균)를 기초로 우리나라 적정 관세율체계에 관한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추정식에서는 국민소득(1인당 GDP)과 교역비중뿐만 아니라 관세율정책에 있어서 고용의 중요성을 감안하는

데 대상 산업의 평균관세율과 각종 통계치는 〈표 V-11〉에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 시도하는 산업별 관세율과 각종 경제변수와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관세율} = & \alpha + \beta_1(\text{수출입}/\text{GDP}) + \beta_2(\text{고용}/\text{GDP}) + \beta_3(\text{고용}/\text{인구}) \\ & + \beta_4(\text{소득}) + \varepsilon \end{aligned}$$

연구결과는 〈표 V-9〉에 제시되어 있다. 사용된 변수는 1인당 GDP, 교역 및 고용비중인데 여기서 비중은 총생산(GDP)이 아닌 해당산업의 국내생산으로 각 변수를 나눈 수치를 의미한다. 포함된 경제변수들이 관세율 변화를 설명하는 정도는 산업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나무·목제품과 대다수 중공업의 경우, 포함된 경제변수가 관세율 분포의 60~70%를 설명하는 반면 음·식료품과 섬유제품은 설명력이 낮아서 R-Square가 20~30%에 불과하다. 한편, 변수들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2단계 및 3단계 최소자승식(3SLS)을 이용하였으나 추정 결과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우선 제조업 전체(마지막 행)로 볼 때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관세율이 낮고 제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고용/경제활동인구)이 낮을수록 그리고 제조업이 노동집약적일수록(고용/GDP) 관세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생산에서 제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관세율이 높고 제조업 제품의 수입이 많으면 관세율이 낮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과 섬유·의류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1인당 소득과 관세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역비례하여 국민소득이 관세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둘째로 해당 산업의 중요성을 암시

7) 상기 자료에 비하여 스위스와 터키 그리고 뉴질랜드에는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밖에도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의 1996년 관세율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변수, 즉 고용/경제활동인구에서는 국가경제에서 비중이 큰 산업일수록 관세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음·식료품을 제외하면 섬유·의류, 종이·제지, 석유·화학, 비철금속, 조립금속 그리고 기타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고용인원이 많을수록 관세율은 낮은 편이다.

〈표 V-9〉 OECD 국가에 기초한 산업별 관세율 추정식

	상 수	수입/ 국내생산	수출/ 국내생산	고용/ 국내생산	고용/ 경제활동인구	1인당 GDP	R <sup>2</sup>
음·식료품	8.39(0.81)	101.80(4.74)	-10.99(-1.04)	6.20(0.80)	10.05(0.09)	-0.0003(-0.72)	0.24
섬유·의류	20.24(3.21)	-5.82(-3.25)	7.57(1.44)	3.67(1.76)	-582.46(-3.69)	0.0000(0.17)	0.36
목재·제품	6.52(1.44)	3.78(1.56)	0.57(0.25)	3.18(2.29)	-46.21(-0.40)	-0.0002(-1.71)	0.67
종이·제지	8.48(2.90)	0.09(0.03)	3.31(1.60)	1.71(1.14)	-151.74(-2.86)	-0.0002(-2.07)	0.65
석유·화학	12.09(6.18)	-2.57(-4.61)	-1.65(-1.22)	2.33(1.75)	-118.33(-1.88)	-0.0002(-3.28)	0.67
비철금속	9.25(4.42)	-6.77(-3.63)	4.87(1.92)	2.72(2.62)	-231.27(-3.21)	-0.0002(-4.09)	0.74
기초금속	8.79(6.60)	3.39(1.31)	-5.85(-4.72)	2.52(1.25)	-2.83(-0.03)	-0.0002(-4.01)	0.71
조립금속	9.97(3.96)	-4.28(-8.18)	1.38(0.95)	5.71(5.03)	-64.47(-5.03)	-0.0001(-1.73)	0.72
기타 제조업	19.64(10.61)	-4.15(-3.15)	-1.98(-1.76)	0.48(0.87)	-995.13(-3.36)	-0.0003(-3.62)	0.65
제조업 전체	10.99(4.54)	-1.73(-1.12)	4.56(2.36)	3.63(2.99)	-16.76(-3.43)	-0.0002(-2.55)	0.63

주 : 1. SURE모형에 따른 추정식으로 표본수는 27개이고 괄호안은 t값임.

2. 사용된 종속변수는 연도별 부가가치 기준평균 관세율(1988년, 93년, 96년)임.

자료 : OECD, *Indicator of Tariff & Non-tariff Trade Barriers, update 1997*, 1997.

OECD, *The OECD Stan Database for Industrial Analysis 1978~1997*, 1998.

이에 비하여 생산제품 1원당 투입된 고용자수를 대표하는 고용/(해당산업의) 국내생산은 노동집약도를 대변한다. 고용/국내생산과 관세율은 섬유·의류, 나무·목제품, 석유·화학, 비철금속 그리고 조립금속 제품 등 상당수 산업에서 서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正)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산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일수록 보호 관세율이 높다는 일반적인 결론을 입증한다.

수입의 경우 특정 산업에서 관세율과 역비례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수입의 내생성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즉, 다른 요인이 일정할 경우 음·식료품과 목재·목제품과 같이 국내생산 대비 수입이 많은 산업일수록 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관세율이 높을 수도 있는데 특히 음·식료품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수입이 많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섬유·의류와 석유·화학, 일부 금속제품과 기타제조업에서 보듯이 관세율과 수입이 부(負)의 상관관계에 있을 수 있다.

반면 국내생산에서 수출비중이 많아 국제경쟁력이 높으면 기초금속과 기타 제조업에서 나타났듯이 관세율도 낮아야 한다. 그러나 비철금속에서는 수출이 많을수록 관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종이·제지 등도 이와 유사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소득과 산업의 중요성 그리고 노동집약성은 예상된 결과를 내포하고 있는 데 비하여 수입비중은 변수의 내생성 문제가 있으며 수출은 부분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추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상기 추정식을 기반으로 추정된 계수  $\beta$ 값에다가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적 변수를 대입하여 우리나라 적정관세율을 산출하면 <표 V-10>과 같다. 추산된 적정 관세율은 OECD 국가와 비교되는 수치로서 사용된 관세율이 국내부가가치를 가중한 평균 관세율임을 감안하면 단순평균 관세율이나 수입가중 평균관세율은 약간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적정 관세율은 8.2~9.7%(국내생산 가중)로서 추정식에 사용된 OECD국가(7.7%)보다 1~2% 포인트 높고 실제 제조업 관세율 7.3%보다는 약 0.9~2.4% 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는 가공도별 관세율 회귀식(<표 V-6>)에서 추정된 9% 적정 관세율과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전자의 경우 수입품 전체의 단순평균치인 데 비하여 <표 V-10>에 제시된 8.2~9.7%의 관세율은 국내생산이 가중되었고 제조업에 국한된 관세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차항간의 자기상관관계를 고려하면 SURE 모형이 일반 최소자승식(OLS)에 비하여 보다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SURE 추정식(일곱째 열, II)을 기준으로 산업별 적정관세율을 살펴본다<sup>8)</sup>. 우선 음·식료품과 섬유·의류의 적정 관세율은 OECD 평균 관세율 15%에 비하여 약 4% 포인트가 높은 19%에 이르는데 이는 음·식료품 산업의 경우 수입이 많다는 점이 중요한 반면, 섬유·의류산업의 경우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노동집약적이고 수입보다는 수출이 많은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sup>9)</sup>. 한편, 목제품은 수입비중이 커서 10%의 관세율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종이·제지도 7%의 관세율을 유지해야 한다. 이처럼 경공업에서는 우리나라 적정 관세율이 OECD 평균보다 약 3~4% 포인트 높게 나타나는데 중공업에서는 그 차이가 약 2% 내외이다.

구체적으로 중공업에서는 석유·화학이 8%의 관세율을, 금속제품은 7.5%를 전후한 관세율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단순 평균 관세율 8%와 큰 차이가 없다. 반면 기타제조업은 OECD 평균관세율 7%보다 5% 포인트나 높은 12%가 적정한 관세율로 추정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평균관세율과 달리 경공업과 기타 제조업을 제외한 중공업의 적정 관세율이 특정 산업과 관련 없이 약 7.5~8%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 8%선의 균등관세율체계가 바람직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산업별 관세율구조로 볼 때

- 
- 8) 일반 최소자승식을 이용하면 함수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수 없는데 이 때의 적정 관세율은 SURE 모형보다 관세율이 대체로 낮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R-Square가 낮아 설명력이 떨어지는 음·식료품과 섬유·의류산업에서 추정된 적정관세율의 변화가 뚜렷하다. 특히 일반최소자승식의 경우 우리나라 음·식료품과 목제품의 적정관세율은 OECD평균보다 낮아야 하며 섬유·의류 관세율은 약 5.5% 이상 높아야 정상이다.
- 9) 한 예로 섬유·의복에서는 OECD 국가의 국내생산 대비 수출입 비중이 각각 29%와 78%인데 우리나라는 이와 정반대인 79%와 29%로 나타났다.

〈표 V-10〉 OECD국가에 기초한 우리나라 산업별 관세율구조 추정

	수입/ 국내생산	수출/ 국내생산	고용/ 국내생산	고용/ 경제활동 인구	우리나라 평균관세율 (I)	우리나라 평균관세율 (II)	OECD 평균 관세율
음·식료품	0.12	0.05	0.40	0.01	13.27	19.79	15.74
섬유·의류	0.29	0.79	1.75	0.02	21.89	19.46	15.41
목재·제품	0.35	0.06	1.30	0.003	6.27	9.94	6.86
종이·제지	0.13	0.07	0.79	0.007	7.27	7.33	4.71
석유·화학	0.22	0.20	0.43	0.02	7.07	7.98	6.08
비철 금속	0.11	0.04	0.84	0.006	7.16	7.46	5.37
기초 금속	0.22	0.12	0.25	0.006	6.56	7.38	4.43
조립 금속	0.36	0.39	0.76	0.06	6.67	7.80	5.81
기타 제조업	0.29	0.54	1.56	0.003	11.87	11.78	6.89
제조업 전체	0.26	0.27	0.66	0.14	8.23	9.73	7.65

주 : 1. 우리나라 평균관세율 I 는 일반최소자승식(OLS)에 따른 추정 값이며 II 는 SURE 모형에 의한 추정값임(1995년 1인당 GDP는 10,124달러가 사용됨).

자료 : OECD, *Indicator of Tariff & Non-tariff Trade Barriers, update 1997, 1997.*

OECD, *The OECD Stan Database for Industrial Analysis 1978~1997, 1998.*

제조업 평균관세율이 OECD국가에 비하여 2% 정도 높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음·식료품과 섬유·의류 등 경공업제품의 관세율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의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ECD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와 같은 소득수준과 교역구조 그리고 고용구조를 갖는 국가의 단순평균 관세율은 대체로 9% 이상을 유지하되 제조업의 경우 평균관세율(국내생산 가중)은 이보다 약간 높은 9.5% 정도가 될 수 있다. 원자재는 평균적으로 6.5%대의 관세율을 유지하되, 농어업품은 약 11%, 광산품은 1% 그리고 공산품 원자재는 5.5%가 적정하다. 이에 비하여 공산품 중간재는 8% 그리고 완제품 관세율은 11%선을 유지할 수 있어 매우 가파른

경사관세율체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공도별 관세율은 물론 관세할당을 포함한 단순평균 MFN 관세율을 의미한다.

한편 국내생산을 가중한 산업별 평균관세율은 중공업의 경우 기타 제조업(12%)을 제외하면 대체로 7.5%를 전후한 관세율이 바람직하지만 경공업에서 특히 음·식료품과 섬유·의류제품은 약 20%의 관세율이 OECD국가 수준에 비교할 때 적당하다. 반면 목제품은 약 10% 관세율이 적정하며 대신 종이제품의 적정 관세율은 중공업과 유사한 7%대이다. 이와 같이 산업별 적정 관세율구조는 특이하게도 경공업, 특히 음·식료품과 섬유·의류제품을 제외하면 공산품의 경우 균등관세율체제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V-11〉 OECD 국가의 가중평균 산업별 관세율(1988, 93, 96년)

	평 균	표준편차	최 소 치	최 대 치
1 농업, 임업, 수산업	6.76(10.92)	10.32	0.50(0.50)	60.30(60.30)
2 광업	2.44(1.89)	4.13	0.00(0.00)	23.00(7.90)
21 석탄 채광	1.14(-)	2.90	0.00(-)	10.00(-)
22 천연석유	3.57(-)	2.72	0.10(-)	7.00(-)
23 금속광물	1.46(-)	2.90	0.00(-)	8.70(-)
29 기타	1.85(-)	2.83	0.00(-)	9.70(-)
3 제조업	9.64(10.85)	8.67	3.20(3.30)	49.80(33.40)
31 음·식료품	26.12(37.86)	38.69	1.00(3.30)	200.00(135.00)
32 섬유·의류	16.60(12.96)	15.52	6.10(6.10)	100.20(21.90)
33 나무·목제품	9.86(6.45)	16.05	1.80(1.80)	99.40(16.30)
34 종이·제지	6.18(4.38)	6.49	1.20(1.20)	35.00(10.40)
35 석유·화학	6.70(5.23)	4.84	2.80(3.20)	31.50(12.30)
36 비철금속	7.06(5.09)	10.38	1.10(1.50)	64.30(13.70)
37 기초금속	4.86(3.83)	4.55	0.00(0.00)	25.80(10.70)
38 조립금속	6.30(4.69)	6.01	0.30(0.30)	31.00(14.10)
39 기타제조업	7.21(5.61)	5.33	1.80(2.10)	25.40(16.70)
제조업 전체	8.16(8.82)	6.54	3.00(3.20)	39.00(22.30)

주 : 1. 제시된 수치는 3년간 평균관세율이며 괄호 안은 1996년 관세율임.

2. 가중치는 상기 표와 동일하며 표본수는 39개로 〈표 V-2〉와 같이 14개국의 1988년, 93년, 96년 관세율인데 부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수치도 있음(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은 1993년 수치임).

자료 : OECD, *Indicator of Tariff & Non-tariff Trade Barriers, update 1997*, 1997.

이러한 연구결과는 물론 OECD국가의 관세율을 기초하였다는 점에서 경제이론으로 뒷받침되는 관세율은 아니며 단지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국가가 국제 기준에 따를 때 그렇다는 것이다. 한 예로 산업별 관세율체제는 경공업울 제외하면 그나마 균등 관세율체제를 지지하고 있는 데 비하여 가공도별 적정 관세율체제는 매우 가파른 경사관세율체제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국제비교가 이론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관세율정책이 해당 국가의 고유한 산업환경과 정치적 배경에 의하여 결정되며 또한 본문에서 논의한 대로 제시된 회귀분석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상기한 바 연구결과는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VI. 실효관세율(1998년)과 관세율정책

### 1. 개 요

관세율정책의 목표가 수입억제를 통한 국내산업의 보호에 있다면 실효관세율(effective rate of tariff protection)의 목적은 전체적인 관세율체계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추정하는 데 있다. 즉, 명목관세율 인상은 상대가격과 수입의 변화를 초래하지만, 원료를 포함한 수입중간재에 대하여 관세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이로 인한 생산비용의 인상효과로 완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효과는 약화된다. 따라서 실질적 보호의 정도와 자원이동의 규모를 파악하려면 명목관세율보다는 중간재로 투입되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같이 감안한 실효관세율의 추정이 필요하다.

실효관세율은 중간재에 부과되는 관세를 고려하여 완제품 가격에서 투입재 비용을 차감한 부가가치가 관세 부과를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수치화한 지수이다. 따라서 실효관세율은 관세율구조와 투입-산출구조를 동시에 감안하여 비교적 정확한 관세의 보호 정도를 산업별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본고에서는 각종 탄력관세와 관세할당을 감안한 1998년 실적관세율과 한국은행의 1995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1998년 IO 402산업별 가중평균 실효관세율을 추정하고 이와 함께 단순평균 세율을 이용하여 '잠재적' 실효관세율을 같이 논의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균등관세율체제를 지향해 온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이 어느 정도 실질적 보호 측면에서 산업별 차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현행 관세율정책 운용 현황을 실효관세율을 통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결과를 제시하기 앞서서 실효관세율 추정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한계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2. 실효관세율의 개념

### 가. 실효관세율의 정의

본고에서 사용된 ‘실효관세율’이란 주어진 관세율의 구조체계로 인하여 특정 산출물의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유정호 외, 1993). 따라서 수입 제한적인 비관세장벽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만 실적관세율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에서 관세할당, 감면, 탄력관세 등의 각종 관세제도의 효과를 감안한다. 비관세장벽을 고려한 실효보호율은 유정호 외(1993)에 자세히 논의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실효관세율의 개념을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의 식 (1)과 같다.

$$(1) \quad z_j = \frac{V_j - V_j^*}{V_j^*}$$

여기서  $V_j$ 는  $j$ 산업에서의 관세 부과 이후 제품  $j$ 의 단위당 부가가치를 의미하는데 별표(\*)로써 자유무역체제에서의 부가가치를  $V_j^*$ 로 표시하면 실효관세율은 관세 부과를 전후한 부가가치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부가가치는 총생산액에서 중간재 비용과 감가상각비, 조세 등을 제외한 노동, 자본 등 기초 생산요소에 제공되는 보수의 총합을 의미한다.

실효관세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 가정은 관세의 부과를 전후하여 중간재 투입계수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부분균형적 가정으로  $j$ 라는 재화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중간재  $i$ 의 비중 즉,  $Q_{ij}/Q_j$ 는 모든  $i$ 와  $j$ 에 대하여  $Q_{ij}/Q_j = Q_{ij}^*/Q_j^*$

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으로 말미암아 관세부과로 인한 상대가격의 변화, 환율변동 등에 의하여 중간재 투입이 변화하는 것은 실효관세율에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 밖에도 실효관세율을 추정함에 있어서 국내경제가 소규모이므로 수출입제품의 가격은 해외가격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가정과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은 완전 경쟁재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정하에 실효관세율  $z_j$ 를 명목관세율과 투입계수로 표시하면 우선 자유무역하에서의 단위당 부가가치  $V_j^*$ 가 식 (2)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P^*$ 와  $Q^*$ 는 자유무역체제에서의 국내가격(CIF가격)과 생산량(투입량)을 의미하며  $a_{ij}^*$ 는 원화로 환산된 중간재 투입계수, 즉  $j$ 라는 완제품 1원어치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중간재  $i$ 의 투입액( $P_i^* Q_{ij}^* / P_j^* Q_j^*$ )을 의미한다.

$$\begin{aligned} (2) \quad V_j^* &= \frac{1}{Q_j^*} (P_j^* Q_j^* - \sum_i P_i^* Q_{ij}^*) = P_j^* (1 - \sum_i \frac{P_i^*}{P_j^*} \frac{Q_{ij}^*}{Q_j^*}) \\ &= P_j^* (1 - \sum_i a_{ij}^*) \end{aligned}$$

마찬가지로 재화  $i$ 와  $j$ 에 부과된 명목관세율을 각각  $t_i$ ,  $t_j$ 라고 한다면 관세가 부과된 이후의 부가가치는 아래 식 (3)과 같은데 세번째 등호에서는 특히 물리적 투입계수가 불변이라는 가정( $Q_{ij}/Q_j = Q_{ij}^*/Q_j^*$ )과 함께 모든 재화  $i$ 와  $j$ 에 대하여 국내가격은 CIF가격보다 관세만큼 높다는 사실, 즉  $P = P^* (1+t)$ 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3) \quad V_j = \frac{1}{Q_j} (P_j Q_j - \sum_i P_i Q_{ij}) = P_j (1 - \sum_i \frac{P_i}{P_j} \frac{Q_{ij}}{Q_j})$$

$$\begin{aligned}
 &= P_j^* (1+t_j) \left[ 1 - \sum_i \frac{P_i^* (1+t_i) Q_{ij}^*}{P_j^* (1+t_j) Q_j^*} \right] \\
 &= P_j^* \left[ 1+t_j - \sum_i a_{ij}^* (1+t_i) \right]
 \end{aligned}$$

마지막으로 식 (2)와 (3)을 식 (1)에 대입하여  $j$ 산업의 실효관세율  $z_j$ 를 구하면 식(4)와 같다.

$$(4) \quad z_j = \frac{P_j^* [1+t_j - \sum_i a_{ij}^* (1+t_i)]}{P_j^* (1 - \sum_i a_{ij}^*)} - 1 = \frac{t_j - \sum_i a_{ij}^* t_i}{1 - \sum_i a_{ij}^*}$$

식 (4)는 비교역재를 감안하지 않았지만 실효관세율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등식으로서 유용한 식이다. 이 식에서 분모는 완제품 1원어치에 내재되어 있는 부가가치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는 자유무역하에서도 영(0)의 값보다 크다고 가정한다<sup>1)</sup>. 분자에서 첫 번째 항은 완제품에 부과된 명목관세로 인한 판매가격의 인상률을,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중간원료에 대한 관세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율(완제품 1원당)을 의미하는데 이를 종합하면 실효관세율  $z_j$ 는 주어진 관세율체제로 인하여 완제품 한 단위당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비율을 측정한다.

식 (4)는 실효관세율과 명목관세율 그리고 생산구조와의 관계를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상기 식은 실효관세율의 격차가 왜 발생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으로서 첫째, 중간재와 완제품의 관세율이 같다면 ( $t_i = t_j$ , 모든  $i$ ) 즉, 가공단계별로

1) 이에 따른 문제점은 유정호 외(1993)의 각주 3에 자세히 논의되고 있다.

균등관세율체제가 성립한다면 실효관세율은 명목관세율과 같고 둘째, 차등관세율체제처럼 완제품의 관세율이 중간재 관세율보다 높으면 실효관세율은 완제품 관세율보다 더 높다. 셋째, 중간재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 $t_i=0$ , 모든  $i$ ), 실효관세율  $z_j$ 는 명목관세율  $t_j$ 보다 크며 중간재 비중이 증가할수록(보호해야 할 부가가치가 감소할수록) 실효관세율도 상승한다. 넷째, 완제품 관세율이 중간재 관세율보다 큰 상황에서 ( $t_j > t_i$ ), 중간재 비중이 증가하면 실효관세율도 같이 상승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실효관세율이 하락한다<sup>2)</sup>.

#### 나. 실효관세율의 조정

실효관세율을 실제 추정할 때는 비교역제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는 일반균형이론상 관세율구조가 변화할 때 비교역제의 대체성에 따라 그 가격도 변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Corden은 제품  $j$ 의 관세가 변화할 때  $j$ 재에 투입되는 비교역제의 부가가치도 이에 따라서 변화하므로  $j$ 의 부가가치에 변동하는 비교역제의 부가가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Balassa는  $j$ 재의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생산요소들에 관한 보호만을 고려하여  $j$ 재의 부가가치는 완제품 가격에서 교역재뿐만 아니라 비교역제의 부가가치와 중간재 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Corden은 어떤 교역재에 적용되는 관세가 변화할 때 해당제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비교역제의 부가가치도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실효관세율의 추정시 감안할 것을 주장하였고 반면 Balassa는 비교역재에 직·간접적으로 포함된 교역재 가격의 상승만이 비교역제의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가정한다. 즉, Corden은 관세부과로 인하여 제품  $j$ 의 부가가치가 변화하지만  $j$ 재에 투입되는 비교역재 또한 정의

2) 이는 위의 식에서 보듯이 실효관세율이 상승하려면 분모가 증가하는 비율이 분자가 증가하는 비율보다 커야 하기 때문이다.

상 시장이 국내에 한정되어 있어 공급이 비탄력적이므로  $j$ 재의 관세 부과로 인하여 그 가격이 변화한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수입가격과 무역장벽에 의하여 국내가격이 결정되는 교역재와 달리 비교역재의 가격탄력성은 제한되어 있다는 가정에 입각하여 Corden식의 실효관세율을 추정한다.

유정호 외(1993)의 표현을 빌려 비교역재를 고려한 Corden 방식에 따른 실효관세율을 수식으로 표시하면 아래 식 (5)와 같다. 여기서  $Y_m / Q_m$ 은 비교역재  $m$ 을 한 단위 생산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교역재  $i$ 의 물리적 양이고,  $Y_m / Q_m \cdot Q_{mj}$ 는 비교역재  $m$ 을 통해  $j$ 재 생산에 투입되는 교역재  $i$ 의 양이다. 그런데 아래 식에서 보듯이 제품  $j$ 의 부가가치는 제품 한 단위당 생산가격에서 직접 사용된 교역재 비용과 비교역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투입된 교역재 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정의된다.

$$\begin{aligned}
 (5) \quad VA_j^c &= \frac{1}{Q_j} (Q_j P_j - \sum_i Q_{ij} P_i - \sum_{m=K+1}^{K+N} \sum_i \frac{Y_m}{Q_m} \cdot Q_{mj} \cdot P_i) \\
 &= P_j - \sum_i \frac{Q_{ij}}{Q_j} P_i - \sum_m \sum_i \frac{Y_m}{Q_m} \cdot \frac{Q_{mj}}{Q_j} P_i \\
 &= P_j [1 - \sum_i \frac{Q_{ij}}{Q_j} \frac{P_i}{P_j} - \sum_m \sum_i \frac{Y_m}{Q_m} \frac{P_i}{P_m} \cdot \frac{Q_{mj} P_m}{Q_j P_j}]
 \end{aligned}$$

한편 투입계수  $\frac{Q_{ij} P_i}{Q_j P_j} = a_{ij}$ ,  $\frac{Y_m P_i}{Q_m P_m} = \gamma_m$ ,  $\frac{Q_{mj} P_m}{Q_j P_j} = a_{mj}$ 라고 정의하면 식 (5)는 식 (6)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6) \quad VA_j^c = P_j (1 - \sum_i a_{ij} - \sum_m \sum_i \gamma_m a_{mj})$$

상기의 수식에서  $\sum_i a_{ij}$ 는 국내가격(관세 포함)을 기준한 모든 교

역재들의 투입계수의 합을 의미하며  $\sum_m \sum_i \gamma_{im} a_{mj}$  는 비교역재  $m$  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교역재  $j$  에 투입되는 모든 교역재의 투입계수의 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j$  재의 생산액에서 비교역재 투입액 전부인  $\sum_m a_{mj}$  를 빼지 않고 그 일부인  $\sum_m \sum_i \gamma_{im} a_{mj} (< \sum_m a_{mj})$  를 빼 나머지를  $j$  재의 부가가치로 간주하는 것이 Corden식의 특징이다.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자유무역하에서의 부가가치를 구하면 다음 식 (7)과 같다.

$$\begin{aligned}
 (7) \quad VA_j^{*c} &= \frac{1}{Q_j^*} (Q_j^* P_j^* - \sum_i Q_{ij}^* P_i^* - \sum_m \sum_i \frac{Y_{im}^*}{Q_m^*} \cdot Q_{mj}^* P_i^*) \\
 &= P_j^* - \sum_i \frac{Q_{ij}^*}{Q_j^*} P_i^* - \sum_m \sum_i \frac{Y_{im}^*}{Q_m^*} \frac{Q_{mj}^*}{Q_j^*} P_i^* \\
 &= P_j^* \left( 1 - \sum_i \frac{Q_{ij}^* P_i^*}{Q_j^* P_j^*} - \sum_m \sum_i \frac{Y_{im}^*}{Q_m^*} \cdot \frac{Q_{mj}^*}{Q_j^*} \cdot \frac{P_i^*}{P_j^*} \right)
 \end{aligned}$$

여기서 물리적 IO계수가 불변한다는 가정과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관계를 이용한다. 즉,  $\frac{Q_{ij}^*}{Q_j^*} = \frac{Q_{ij}}{Q_j}$ ,  $\frac{Q_{mj}^*}{Q_j^*} = \frac{Q_{mj}}{Q_j}$ ,  $\frac{Q_{im}^*}{Q_m^*} = \frac{Q_{im}}{Q_m}$ ,

$\frac{Y_{im}^*}{Q_m^*} = \frac{Y_{im}}{Q_m}$  그리고  $P_i = P_i^* (1+t_i)$  이라면 국내가격으로 표시된

투입계수로 표시된 식 (8)을 얻을 수 있다.

$$(8) \quad VA_j^{*c} = P_j^* \left[ 1 - \sum_i \frac{Q_{ij} P_i / (1+t_i)}{Q_j P_j / (1+t_j)} \right]$$

$$\begin{aligned}
 & - \sum_m \sum_i \frac{Y_m P_i / (1+t_i) Q_{mj} P_m}{Q_m P_m Q_j P_j / (1+t_j)} \\
 & = P_j^* \left[ 1 - \sum_i a_{ij} \frac{1+t_j}{1+t_i} - \sum_m \sum_i \gamma_{im} a_{mj} \frac{1+t_j}{1+t_i} \right]
 \end{aligned}$$

결론적으로 Corden식의 실효관세율은 국내가격에서의 부가가치 즉, 식 (7)을 국경(수입)가격에서의 부가가치 식 (8)으로 나누는 뒤 1를 뺀 수치와 같다. 따라서 Corden에 의하면 어떤 교역재의 부가가치는 제품 한 단위당 생산가격에서 직접 사용된 교역재 비용과 비교역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투입된 교역재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Corden이 생각하는 교역재  $j$ 에 대한 실질적 보호는  $j$ 재의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생산요소들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j$ 재의 생산에 소요되는 비교역재의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생산요소들에 관한 보호를 포함한다.

(9) Corden식 실효관세율:  $z_j^c$

$$\begin{aligned}
 1 + z_j^c &= \frac{VA_j^c}{VA_j^{*c}} \\
 &= \frac{1 - \sum_i a_{ij} - \sum_m \sum_i \gamma_{im} a_{mj}}{\frac{1}{1+t_j} - \sum_i a_{ij} \frac{1}{1+t_i} - \sum_m \sum_i \gamma_{im} a_{mj} \frac{1}{1+t_i}}
 \end{aligned}$$

한편 유정호 외(1993)의 32쪽에 나타나 있듯이 Balassa식의 실효관세율은 식 (10)과 같다.

(10) Balassa식 실효관세율:  $z_j^b$

$$1 + z_j^b = \frac{VA_j^b}{VA_j^{*b}}$$

$$= \frac{1 - \sum_i a_{ij} - \sum_m a_{mj}}{\frac{1}{1+t_j} - \sum_i a_{ij} \frac{1}{1+t_i} - \sum_m \sum_i \gamma_{im} a_{mj} \frac{1}{1+t_i} - \sum_m \gamma_{vm} a_{mj}}$$

상기의 두 식을 이용하여 Balassa와 Corden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면  $j$ 에 투입되는 비교역재의 합,  $\sum_m a_{mj} = \sum_m (\gamma_{vm} + \sum_i \gamma_{im}) a_{mj}$ 이므로 Balassa식은 Corden식과 비교할 때 분모와 분자에서  $\sum_m \gamma_{vm} a_{mj}$ 을 동시에 빼주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Balassa식 실효관세율은 Corden식보다 항상 과대 평가된다. 이를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완제품의 주어진 관세율  $t_j$ 가 보호하여야 할 부가가치는 Corden식에 비하여 Balassa식이  $\sum_m \gamma_{vm} a_{mj}$ 만큼 적으므로 주어진 관세율 체계 아래서는 Balassa에 따른 실효관세율이 Corden의 실효관세율보다 항상 크게 나타난다.

#### 다. 실효관세율 추정상의 문제점

본고에서 추정된 실효관세율은 실질 실효관세율보다 과대 또는 과소하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추정된 실효관세율을 제시하기 앞서서 추정의 오차에 관한 원인을 논할 필요가 있다. 실효관세율이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되는 원인에는 첫째로 품목별 관세율 통합에 따른 오차(aggregation bias)가 있으며 둘째로 자유무역 아래서 중간투입계수를 관측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이에 따라서 중간투입계수의 조정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이 경우 간접세의 처리와 수출에 투입된 중간재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본고에서는 간접세에 따른 실효관세율의 변화를 자세히 논의하는데 이에 앞서서 어떤 관세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의 한계상 모든 HS 10단위 품목의 실효관세율을 구할 수 없으므로 제 품목을 산업별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통합으

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HS 10단위 품목인 생사는 IO 402산업에서는 견사로 분류되는데 견사에는 생사 이외에 다른 제품도 있으므로 견사의 관세율은 평균적인 관세율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실효관세율이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제품별 관세율을 수입액으로 가중한 실적관세율을 사용할 경우, HS 10단위 품목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고 각종 감면, 탄력 관세제도를 감안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관세율이 높아 수입이 없는 품목의 실효관세율을 평가절하한다는 단점이 있다. 최악의 경우 상기 식 (4)에서 수입실적이 없는 품목의 경우 실적관세율  $t_j$ 가 영(0)으로 처리되어 실효관세율이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이 밖에도 Basevi(1971)에 의하면 통합된 산업에 속하는 산업들의 수입액과 관세율이 부(負)의 상관관계에 있거나, 또는 중간재 투입비중과 중간재의 관세율이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을 때 그리고 국내생산과 완제품의 관세율이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일 경우 추정된 실효관세율은 실질 실효관세율을 과소 평가한다.

또한 자유무역 아래서 존재하는 중간투입계수  $a_{ij}^*$  ( $P_i^*$ ,  $Q_{ij}^*$  /  $P_j^*$ ,  $Q_j^*$ )를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효관세율을 추정할 때 관세를 포함한 국내가격 기준의 투입계수  $a_{ij}$ 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간재들 사이에서 대체가 가능하다면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중간재의 사용은 증가하고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 수입중간재의 사용은 감소하며 이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된 이후의 중간재 평균관세율( $\sum a_{ij} t_i$ )은 자유무역체제에서 나타나는 평균관세율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게 되므로 추정치는 실질 실효관세율을 과대 평가한다. 한편, 관측되는 투입계수는 중간재에서 노동 등 기초생산요소로의 대체를 반영하므로 중간재 비중은 하락하고 부가가치는 상승하여 추정치는 실질 실효관세율을 과소 평가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추정된 실효관세율에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은 중간재 투입계수  $a_{ij}$ 가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에 따른 중간재 투입내역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만약 관세가 높은 물품의 비관세장벽이 클 경우 관측되는 실효관세율이 실질 실효관세율을 과대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자유무역하에서의 투입계수를 관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관세율을 추정하는 어떤 연구에서도 존재하는 근본적인 제약조건들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간접세와 중간재에 관한 조정을 통하여 자료가 허용하는 선에서 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또한 실적 및 실행 관세율을 이용하여 실효관세율을 추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 라. 산업연관표에서의 간접세 및 중간재 조정

### 1) 이론적인 측면

본고에서는 1998년 실효관세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가장 최신판인 한국은행의 『1995년 산업연관표 개요』를 이용, 중간재와 수입 중간재 투입계수를 계산한다. 산업연관표는 여러 간접세와 수입 상품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거나 간접세를 감안한 실효관세율 공식의 조정이 필요하다. 유정호 외(1993)는 간접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실효보호율을 추정하는 데 본고에서는 이와 달리 간접세로 인한 보호 정도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실효관세율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정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한다.

이는 간접세가 실효관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이다. 특히 유정호 외(1993)에서 논의된 것과 달리 간접세는 그 성격에 따라 중간투입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실효관세율 추정치의 오차를 교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중간재에 부과된 제 간접세를 감안하지 않으면 생산비용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중하게 산정되어 실효관세율을 과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Corden, 1971)<sup>3)</sup>. 한 예로 수입품과 국산품에 동일한 세율로 부과되는 판매세(sales tax)의 경우 이들 두 제품간에 왜곡이 없을 듯하지만 중간재에도 판매세가 부과된다면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에 따른 생산위축을 초래하여 실질적 보호의 정도가 감소하게 된다(J. C. Leith, 1970). 따라서 각종 간접세가 어떻게 실효관세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실효관세율 공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관세와 판매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효관세율의 변화를 수식으로 살펴봄으로써 이해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완제품  $j$ 와 중간재  $i$ 에 관세( $t$ )와 판매세( $s$ )가 부과되고 만약 수입품과 국산 제품이 완전경쟁재라고 가정하면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사이에는 각각  $P_j = (1+s_j)(1+t_j)P_j^*$  와  $P_i = (1+s_i)(1+t_i)P_i^*$  라는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아래 항등식 (11)에서 보듯이 수입품 가격으로 평가된 생산액(우변항)은 국내가격으로 표시된 생산액(좌변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11) \quad P_j Q_j = (V_j Q_j + \sum P_i Q_{ij})(1+s_j)$$

이를 수입가격과 제세로 표시하면 식 (11)은 식 (12)와 같고 따라서  $j$ 재의 단위당 부가가치는 식 (13)과 같다.

$$(12) \quad P_j^* (1+s_j)(1+t_j) Q_j = (1+s_j)(V_j Q_j + \sum P_i Q_{ij})$$

$$(13) \quad V_j = \frac{1}{Q_j} \{ P_j^* (1+t_j) Q_j - \sum P_i Q_{ij} \}$$

---

3) 일반적인 경우는 완제품에 적용된 관세율이 중간재 관세율보다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begin{aligned}
&= P_j^* \left\{ (1+t_j) - \sum \frac{P_i}{P_j^*} \frac{Q_{ij}}{Q_j} \right\} \\
&= P_j^* \left\{ (1+t_j) - \sum (1+s_i)(1+t_i) \frac{P_i^*}{P_j^*} \frac{Q_{ij}^*}{Q_j^*} \right\} \\
&= P_j^* \left\{ (1+t_j) - \sum (1+s_i)(1+t_i) a_{ij}^* \right\}
\end{aligned}$$

마지막으로 관세와 판매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실효관세율은 식 (14)와 같이 표시되는데 이는 앞에서 제시된 식 (4)와 달리 제품  $j$ 에 투입되는 중간재  $i$ 에 부과되는 판매세  $s_i$ 로 인하여 실효관세율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sup>4)</sup>.

$$\begin{aligned}
(14) \quad \frac{V_j - V_j^*}{V_j^*} &= \frac{(1+t_j) - \sum (1+s_i)(1+t_i) a_{ij}^* - (1 - \sum a_{ij}^*)}{1 - \sum a_{ij}^*} \\
&= \frac{t_j - \sum \{(1+t_i) s_i + t_i\} a_{ij}^*}{1 - \sum a_{ij}^*}
\end{aligned}$$

상기 식 (14)는 판매세와 관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부가가치의 변화를 측정한다. 그러나 만약 판매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관세가 부과될 경우 부가가치의 변화를 본다면 우선 판매세만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부가가치는 식 (15)와 같고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때 부가가치는 여전히 식 (13)과 같으므로 부가가치의 변화는 식 (16)으로 표시될 수 있다. 식 (14)와 비교하면 식 (16)은 식 (14)에서

---

4) 만약  $s_i = 0$ 이라면 식 (14)는 식(4)와 같다.

$\sum s_i a_{ij}^*$  만큼 분자와 분모에서 차감한 수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15) \quad V^* = P_j^* \{1 - \sum (1 + s_i) a_{ij}^*\}$$

$$(16) \quad \frac{V - V^*}{V^*} = \frac{(1 + t_j) - \sum (1 + s_i)(1 + t_i) a_{ij}^* - (1 - \sum (1 + s_i) a_{ij}^*)}{1 - \sum (1 + s_i) a_{ij}^*}$$

$$= \frac{t_j - \sum (1 + s_i) t_i a_{ij}^*}{1 - \sum (1 + s_i) a_{ij}^*}$$

지금까지의 논의는 Leith(1970)에서 제시된 실효관세율 조정과 같다. 그러나 상기 식 (14)는 자유무역 아래서의 투입계수  $a_{ij}^*$  로 표시되어 있는바, 이를 제세 부과 이후 국내가격으로 표시된 투입계수  $a_{ij}$ 로 환산하여야 실제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세의 부과 후 실효관세율 공식이 필요한데 우선 식 (11)을 단위당 부가가치의 합수로 표시하면 식 (17)이 성립한다.

$$(17) \quad V_j = P_j \left( \frac{1}{1 + s_j} - \sum a_{ij} \right)$$

또한 자유무역에서의 단위당 부가가치는 다음과 같은데,

$$V_j^* = P_j^* \left( 1 - \sum \frac{P_i^*}{P_j^*} \frac{Q_{ij}^*}{Q_j^*} \right)$$

여기서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관계, 즉

$$P_j = (1+s_j)(1+t_j)P_j^*, \quad a_{ij} = \frac{P_i Q_{ij}}{P_j Q_j^*} = \frac{(1+s_i)(1+t_i)}{(1+s_j)(1+t_j)} a_{ij}^* \text{를}$$

이용하면 식 (18)이 성립한다.

$$\begin{aligned} (18) \quad V_j^* &= \frac{P_j}{(1+s_j)(1+t_j)} \left\{ 1 - \sum \frac{P_i/(1+t_i)(1+s_i)}{P_j/(1+t_j)(1+s_j)} \frac{Q_{ij}^*}{Q_j^*} \right\} \\ &= \frac{P_j}{(1+s_j)(1+t_j)} \left\{ 1 - \sum \frac{(1+t_i)(1+s_i)}{(1+t_j)(1+s_j)} \cdot \frac{P_i Q_{ij}}{P_j Q_j^*} \right\} \end{aligned}$$

따라서 식 (17)과 (18)을 이용하여 제세의 부과 이후 국내가격 투입계수로 표시된 실효관세율을 산정하면 아래 식 (19)과 같다<sup>5)</sup>. 판매세와 관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에 비하여 판매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관세가 부과될 경우 부가가치의 변화는 아래 식 (19)과 달리 분모에 제시된  $s_j$ 가 영(0)의 값을 갖는 차이가 있다.

$$\begin{aligned} (19) \quad \frac{V_j}{V_j^*} - 1 &= \frac{\frac{1}{1+s_j} - \sum a_{ij}}{\frac{1}{(1+s_j)(1+t_j)} - \sum \frac{a_{ij}}{(1+t_i)(1+s_i)}} - 1 \\ &= \frac{1 - \sum a_{ij}(1+s_j)}{\frac{1}{(1+t_j)} - \sum a_{ij}(1+s_j)/(1+t_i)(1+s_i)} - 1 \end{aligned}$$

5) 만약 판매세율이 완제품과 부분품에 상관없이 동일하다면 식 (19)에서 분모의 판매세율만이 남게 된다. 한편 식 (19)를 기준으로 하면 완제품에 부과되는 판매세(소비세)가 마치 실효세율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 국내가격으로 표시된 투입계수의 조정이며 식(14)에서 보듯이 자유무역체제와 비교할 때 수입품과 국산품에 같은 세율로 부과되는 소비세는 실효관세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물론 비교역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식 (19)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실효관세율을 추정할 수 없으며 앞에서 논의된 것처럼 비교역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식 (19)를 수정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식 (12)와 마찬가지로 비교역재를 포함한 국내가격의 변화는 수입재 가격과 같아야 하므로 다음의 식 (20)이 성립하며 단위당 부가가치로 식 (20)을 전환하면 식 (21)이 성립한다.

$$(20) \quad P_j Q_j = [V_j Q_j + \sum P_i Q_{ij} + \sum_m \sum_i P_i \frac{Y_{im}}{Q_m} Q_{mj}] [1 + s_j]$$

$$(21) \quad V_j Q_j = \frac{P_j Q_j}{1 + s_j} - \sum P_i Q_{ij} - \sum \sum P_i \frac{Y_{im}}{Q_m} Q_{mj}$$

$$\begin{aligned} V_j &= \frac{P_j}{1 + s_j} - \sum P_i \frac{Q_{ij}}{Q_j} - \sum \sum P_i \frac{Y_{im}}{P_m Q_m} \frac{P_m Q_{mj}}{Q_j} \\ &= P_j \left[ \frac{1}{1 + s_j} - \sum a_{ij} - \sum \sum \gamma_{im} a_{mj} \right] \end{aligned}$$

한편 자유무역 아래서의 부가가치는 식 (22)와 같으므로 식 (21)에 대비되는 자유무역체제에서의 단위당 부가가치는 식 (23)으로 표현된다. 식 (23)에서는 특히 투입계수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이용한다.

$$(22) \quad V^* Q_j^* = P_j^* Q_j^* - \sum P_i^* Q_{ij}^* - \sum \sum P_i^* \frac{Y_{im}^*}{Q_m^*} Q_{mj}^*$$

$$(23) \quad V^* = P_j^* \left( 1 - \sum \frac{P_i^* Q_{ij}^*}{P_j^* Q_j^*} - \sum \sum \frac{P_i^* Y_{im}^* Q_{mj}^*}{P_j^* Q_m^* Q_j^*} \right)$$

$$= P_j^* \left( 1 - \sum \frac{P_i^*}{P_j^*} \frac{Q_{ij}}{Q_j} - \sum \sum \frac{P_i^*}{P_j^*} \frac{Y_{im}}{Q_m} \frac{Q_{mj}}{Q_j} \right)$$

그런데  $P_j^* = P_j / (1+t_j)(1+s_j)$  이고  $\frac{P_i}{P_j} \frac{Y_{im}}{Q_m} \frac{Q_{mj}}{Q_j} = \frac{P_i Y_{im}}{Q_m} \cdot \frac{1}{P_m} \cdot \frac{P_m Q_{mj}}{P_j Q_j}$  이라는 관계식을 차례대로 이용하면 보호무역체제 아래서의 비교역재 가격  $P_m$ 에 관한 어떠한 가정을 할 필요가 없이 아래의 식 (24)를 도출할 수 있다.

$$\begin{aligned} (24) \quad V^* &= P_j^* \left\{ 1 - \sum \frac{(1+s_j)(1+t_j)}{(1+s_i)(1+t_i)} \frac{P_i}{P_j} \frac{Q_{ij}}{Q_j} \right. \\ &\quad \left. - \sum \sum \frac{(1+s_j)(1+t_j)}{(1+s_i)(1+t_i)} \frac{P_i}{P_j} \frac{Y_{im}}{Q_m} \frac{Q_{mj}}{Q_j} \right\} \\ &= P_j^* \left\{ 1 - \sum \frac{(1+s_j)(1+t_j)}{(1+s_i)(1+t_i)} a_{ij} \right. \\ &\quad \left. - \sum \sum \frac{(1+s_j)(1+t_j)}{(1+s_i)(1+t_i)} \gamma_{im} a_{mj} \right\} \end{aligned}$$

식 (21)과 (24)에 근거하여 제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중간계수와 판매세를 감안한 실효관세율을 아래 식 (25)으로 표현할 수 있다.

$$\begin{aligned} (25) \quad \frac{V}{V^*} - 1 &= \frac{\frac{1}{1+s_j} - \sum a_{ij} - \sum \gamma_{im} a_{mj}}{1 - \sum \frac{(1+s_j)(1+t_j)}{(1+s_i)(1+t_i)} a_{ij} - \sum \sum \frac{(1+s_j)(1+t_j)}{(1+s_i)(1+t_i)} \gamma_{im} a_{mj}} \\ &= \frac{\frac{1}{1+s_j} - \sum a_{ij} - \sum \gamma_{im} a_{mj}}{\frac{1}{(1+s_j)(1+t_j)} - \sum \frac{a_{ij}}{(1+s_i)(1+t_i)} - \sum \sum \frac{\gamma_{im} a_{mj}}{(1+s_i)(1+t_i)}} \end{aligned}$$

식 (25)는 관세와 각종 판매세를 포함한 국내가격 기준의 투입계수 즉, 아래 식(26)을 전제로 한 실효관세율 추정식이다. 그런데 유정호 외(1993)의 경우,  $a_{ij}$ 를 직접 이용하기보다는 간접세를 제거한 중간투입계수 즉, 아래 식 (27)의  $a_{ij}^{\circ}$  등을 실효관세율 공식에 대입한다. 이러한 방식의 추정이 합당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식 (25)의  $a_{ij}$ 를  $a_{ij}^{\circ}$ 로 대체하여 실효관세율 공식을 구하면 식 (28)과 같다.

$$(26) \quad a_{ij} = \frac{P_i Q_j}{P_j Q_i} = \frac{(1+s_i)(1+t_i)}{(1+s_j)(1+t_j)} \frac{P_i^* Q_j^*}{P_j^* Q_i^*} = \frac{(1+s_i)(1+t_i)}{(1+s_j)(1+t_j)} a_{ij}^*$$

$$(27) \quad a_{ij}^{\circ} = \frac{(1+s_j)}{(1+s_i)} a_{ij} = \frac{(1+t_i)}{(1+t_j)} a_{ij}^*, \quad a_{mj}^{\circ} = \frac{(1+s_j)}{(1+s_m)} a_{mj}, \quad \gamma_{im}^{\circ} = \frac{(1+s_m)}{(1+s_i)} \gamma_{im}$$

$$(28) \quad \frac{V}{V^*} - 1 = \frac{\frac{1}{1+s_j} - \sum \frac{1+s_i}{1+s_j} a_{ij}^{\circ} - \sum \sum \frac{1+s_i}{1+s_m} \gamma_{im}^{\circ} \frac{1+s_m}{1+s_j} a_{mj}^{\circ}}{\frac{1}{(1+s_j)(1+t_j)} - \sum \frac{1+s_i}{1+s_j} a_{ij}^{\circ} \frac{1}{(1+s_i)(1+t_i)} - \sum \sum \frac{1}{(1+s_i)(1+t_i)} \frac{1+s_i}{1+s_m} \gamma_{im}^{\circ} \frac{1+s_m}{1+s_j} a_{mj}^{\circ}}$$

식 (28)을 정리하면 판매세가 포함되지 않은 국내가격 기준의 투입계수를 이용할 수 있는 실효관세율 추정식 (29)를 얻을 수 있는데 식 (29)는 유정호 외(1993)에서 사용된 실효관세율 추정식 즉, 식 (9)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9) \quad \frac{V}{V^*} - 1 = \frac{1}{1+s_j} \{ 1 - \sum (1+s_i) a_{ij}^{\circ} - \sum \sum (1+s_i) \gamma_{im}^{\circ} a_{mj}^{\circ} \} \\ \frac{1}{(1+s_j)} \left\{ \frac{1}{1+t_j} - \sum \frac{a_{ij}^{\circ}}{1+t_i} - \sum \sum \frac{\gamma_{im}^{\circ} a_{mj}^{\circ}}{(1+t_i)} \right\}$$

$$= \frac{1 - \sum(1 + s_i)a_{ij}^{\circ} - \sum\sum(1 + s_i)\gamma_m^{\circ}a_{mj}^{\circ}}{\frac{1}{1 + t_j} - \sum\frac{a_{ij}^{\circ}}{(1 + t_i)} - \sum\sum\frac{\gamma_m^{\circ}a_{mj}^{\circ}}{(1 + t_i)}}$$

특히, 실제 실효관세율을 추정할 때 판매세가 포함된 투입계수인 식 (9)의  $a_{ij}$ 가 아니라 식 (29)의  $a_{ij}^{\circ}$ 와 같이 간접세가 제거된 중간투입 계수가 사용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관세율의 추정에 있어서 중간재에 부과된 판매세는 고려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전술한 대로 중간재에 부과되는 판매세는 생산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실효관세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판매세로 인하여 투입계수가 조정되어야 하지만 판매세가 중간재 가격을 인상시킨다는 것을 간과하면 추정된 실효관세율은 실제치보다 과대 평가된다. 물론 중간재에 부과되는 판매세의 비중이 낮으면 현실적으로 이를 무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중간재에 관한 판매세는 실효관세율 추정시 직접 감안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간접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수입품과 국내제품에 동일한 세율로 부과되는 판매세를 대상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측정상의 문제점은 완제품과 중간재에 판매세가 같은 세율로 부과되더라도 나타나는데 이 밖에도 수입제품과 국산품에 부과되는 세율이 다르다면 측정상의 오차가 증폭될 수 있다. 이 때 만약 수입품과 국산품이 완전경쟁재라면 국산중간재의 가격은 수입중간재에 부과되는 판매세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상기 식 (29)의 중간재 세율은 수입품 중간재에 적용되는 세율로 바뀌는데 이와 함께 분모에 나타난 1도  $(1 + \text{수입 완제품 세율}) / (1 + \text{국산 완제품 세율})$ 로 대체된다<sup>6)</sup>. 또한 완제품과 달리 수입 중간재와 국산 중간

6) 즉, 국산품과 수입품에 부과되는 판매세를 각각  $n$ 과  $d$ 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실효관세율은 다음 식과 같다.

재가 완전 경쟁재가 아니어서 국산재의 가격이 국산품 세율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중간재간의 상이한 세율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식 (29)는 실효관세율 추정의 근본적인 식이 되는데 부가가치세도 이와 같은 조정이 필요한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Mckinnon (1971)이 논의한 대로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수입품과 국산품에 같은 세율이 부과되는 부가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간재에 대한 부가세가 환급되므로 소비세와 같은 역할을 하여 생산에 관한 왜곡효과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원료에 대한 각종 국내 간접세가 차별적일 수 있지만 비중이 큰 부가세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농산물 생산에서 완제품을 비과세하는 반면 중간재에 부가세를 환급하면 수입품에는 부가세가 부과되므로 실효보호율이 증가하게 된다(domestic tax holiday).

2) 산업연관표의 조정

앞에서 논의한 대로 실효관세율을 추정하려면 산업연관표에 있는 투입계수에서 간접세를 제거한 연후 식 (29)를 적용하여야 한다. 국산거래표나 수입거래표에서 각종 간접세를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유정호 외(1993, 제 V 장)에 자세히 논의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외의 차이점만을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산업연관표에 제시된 투입계수표에는 여러 간접세를 포함하는데 그 성격에 따라 간접세를 구분하면 부가가치세와 비례간접세 그리고 기타간접세로 나뉘어진다. 비례간접세는 재화의 수량이나 가치에 비례하는 과세로서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증권거래세, 담배소비세, 마권세, 도축세와 이들 세목에 부가세로 부과되는 각종 목적세가

$$V^* - 1 = \frac{\frac{1+s_w}{1+s_w} - \sum(1+s_m)a_u^o - \sum\sum(1+s_m)\gamma_m^o a_m^o}{\frac{1}{1+t} - \sum \frac{a_u^o}{(1+t)} - \sum\sum \frac{\gamma_m^o a_m^o}{(1+t)}}$$

있으며, 기타간접세는 생산요소의 투입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세목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소방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와 각종 수수료가 있다. 한편 수입품에 부과되는 제세도 관세 이외에 특별소비세, 주세, 수입부가가치세가 있다.

산업연관표상의 국산거래표나 수입거래표는 이들 간접세를 평가 배분하여 세로(열)별로는 각 산업이 재화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생산비용의 구성 즉, 구입비용을 보여주고 가로(행)는 생산물의 판로 구성 즉, 배분구조를 나타낸다(한편 세로로는 간접세 지출이 별도로 나타난다). 한 예로 부가가치세는 최종 수요자가 재화 등을 구입함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액을 해당 재화의 생산부문에 배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담배소비세는 전액이 담배부문에 배분된다.

본고에서 수행된 간접세의 제거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1998년 산업별 각종 조세의 납부액 자료를 획득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애초에 국산중간재 거래표에서 공제되어 발표되므로 이를 일단 최종수요에서 제거한 후 추산된 기타 간접세율로 중간재, 최종수요, 수출제품을 나누어 기타간접세를 제거한다. 수입상품세도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되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경우에는 수출용 투입부분이 면세되나 이를 제거하기가 어려워 기타 간접세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각종 간접세를 제거하고 새로이 국산·수입중간재 투입계수를 작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실효관세율을 추정한다. 한편 산업연관표상의 투입-산출액의 평가기준이 국내가격과 국경가격 즉, 자유무역가격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국내가격으로 통일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곡선에 의거하여 한계가격이 어느 점에서 교차되는가에 따라서 국산중간재의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지 않는다. 즉, 생산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수입중간재도 국내에서 소비되는 제품의 생산에 쓰여지고 따라서 국산재 가격은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관

세환급제도가 일종의 관세감면제도라는 뜻에서 국경 또는 국내가격으로 산업연관표를 재조정하는 작업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sup>7)</sup>.

### 3. 실효관세율 추정결과

#### 가. IO 402 산업 실효관세율의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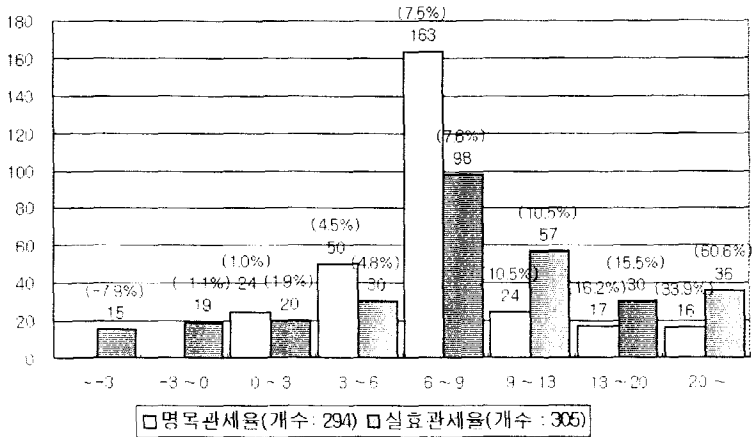
##### 1) 1998년 실적세율에 따른 실효관세율의 분포

IO 402 산업 중 교역재에 속하는 산업은 305개 산업인데 이들의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분포를 구간별로 구분한 것이 [그림 VI-1], [그림 VI-2](1998년 실적세율 기준)이다. 단순평균 기준으로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가공도별 관세율구조가 반영되어 명목관세율이 9% 이하인 산업이 237개 품목으로 전체 294개 산업의 대다수인 81%에 이르지만 실효관세율로 보면 실효세율이 9% 이하인 산업은 182개 산업에 불과하다. 그 대신 실효세율이 9% 이상인 산업이 123개 산업에 달하여 명목세율 59개 품목의 2배에 달한다. 또한 역관세가 나타나는 품목도 34개 산업이 있어 실효관세율의 분포가 명목관세율보다 좀더 분산된 분포를 보인다. 이는 물론 산업별로 중간재 의존도와 그 세율이 달라 실효관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 산업간의 차이가 좀더 확연하게 나타남을 뜻한다.

우선 품목수로 단순평균한 세율의 분포를 보면 중심구간인 세율 6~9% 사이에 명목세율 기준으로는 163개 산업(55%)이 있는 반면 실효세율 기준에서는 98개 산업(32%)이 존재한다. 대신 실효세율이 9%를 초과하는 산업이 123개로 전체 산업의 40%에 이르고(명목세율은 57개 품목, 19%), 실효세율이 6% 이하인 84개 품목 중에서 실효세율이 음의 값을 갖는 산업은 34개 품목(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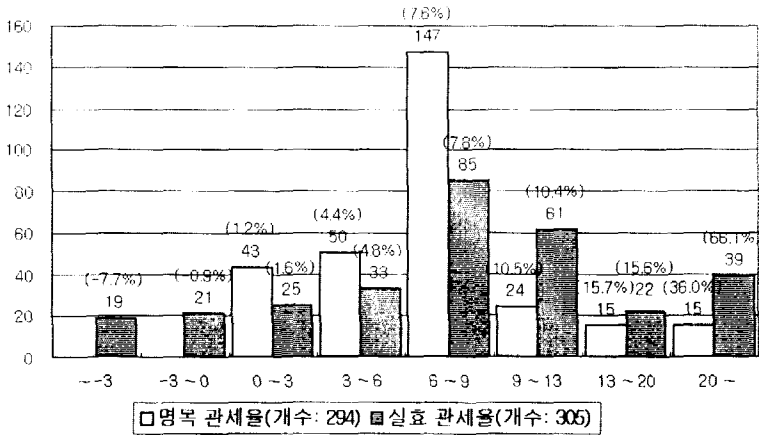
7) 김진수·장근호, 『관세 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그림 VI-1] 단순평균 실적관세율



주: ( ) 안은 세율구간별 평균임

[그림 VI-2] 기중평균 실적관세율



주: ( ) 안은 세율구간별 평균임

이고 이 중에서도 실효세율이 -3% 이하인 산업이 15개 품목으로 평균세율이 -7.9%에 이른다. 물론 이렇듯 역관세 현상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생산이 많지 않고 또한/그리고 가공도에 따른 경사관세율을 원할 경우 원자재에 관한 역관세 현상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역관세 산업 중에는 광물과 같이 국산화가 어렵거나 ITA 등 국제협정에 의하여 명목세율이 0%인 품목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품목이 있고 이외 8% 등의 높은 명목관세에도 불과하고 실효세율이 음(-)의 값을 갖는 품목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국산화가 어려운 산업은 주로 1, 2차 원자재로 밀, 원목, 연탄, 광석류, 가죽, 모피, 펄프, 액화 석유가스, 선철, 철도차량, 항공기 등의 산업이 있다. 이들 산업의 경우 제품의 성격상 기초원료이거나 첨단산업에 속하며 혹은 수입의존도가 높아 정책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제협정에 따라 세율이 낮은 산업으로는 출판·복제부문, 담배, 개별소자와 승합차 등이 있는데 향후 ITA협정으로 무세화되는 정보기술 품목의 경우 역관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이외 단순평균 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 역관세에 해당하는 품목은 낙농, 정제당, 아이스크림, 유지류, 두부 등의 식료품과 배합사료, 나프타, 기타 철강 1차제품, 승용차, 선박류, 트레일러 및 컨테이너 등이 있다.

단순평균 세율은 관세율을 품목수로 나눈 수치로 세율이 높아 수입이 되지 않는 품목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잠재적 세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입가중 평균세율은 실제 수입동향에 따라 수입품의 상대적 중요성을 감안한다는 뜻에서 좀더 현실적인 세율이다. 특히 수입이 많은 품목의 세율이 많이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정책 변화를 고려할 때 유용한 변수로 판단된다.

가중평균 세율을 기준하면 실효세율에 따른 품목의 분포가 단순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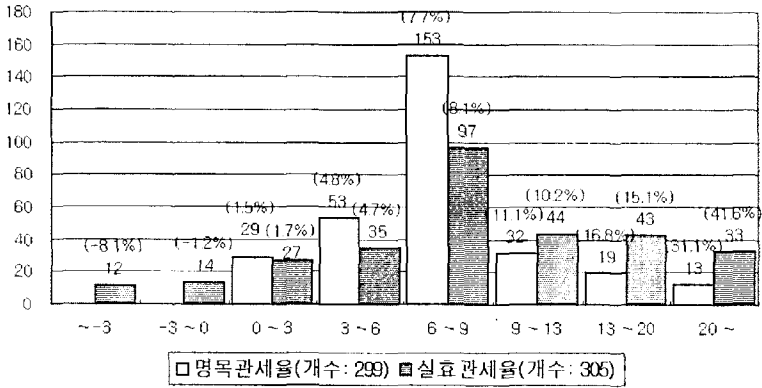
균보다 더 분산되는 모습을 띠고 이에 따라서 가중평균에 따르면 전체적인 보호도는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즉, 단순평균 명목세율의 구간별 분포는 가중평균과 유사한데 후자의 경우 0~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산업이 43개 산업으로 단순평균 24개 산업보다 19개가 더 많다. 이에 따라서 실효관세율로는 가중평균에서 6% 이하의 보호를 받는 품목이 98개 품목으로 단순평균보다 14개 산업이 나 더 많고 역관세 현상이 있는 산업이 40개 산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가중평균 실적세율로 살펴보면 명목세율로는 중심구간인 6~9% 사이에 147개 산업(50%)이 있는 반면 실효세율로는 85개 산업(28%)이 존재한다. 실효세율이 9%를 초과하는 산업이 122개 품목으로 전체 품목의 40%에 이르고(명목세율은 54개 품목, 18%), 실효세율이 6% 이하인 98개 품목 중에서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는 산업은 40개 품목(13%), 실효세율이 -3% 이하인 산업이 19개 품목에 이른다.

## 2) 1999년 실행세율에 따른 실효관세율의 분포

실행세율은 기본세율과 이보다 낮은 양허세율을 감안한 세율로서 관세할당과 탄력관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실행세율의 분포도 대체로 실적세율과 유사하지만 탄력관세에 따라 일시적으로 높거나 낮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이 없어 실행세율을 기준으로 한 실효세율의 음(-)의 값을 갖는 경우가 적고 대신 13%를 전후한 구간에 가까이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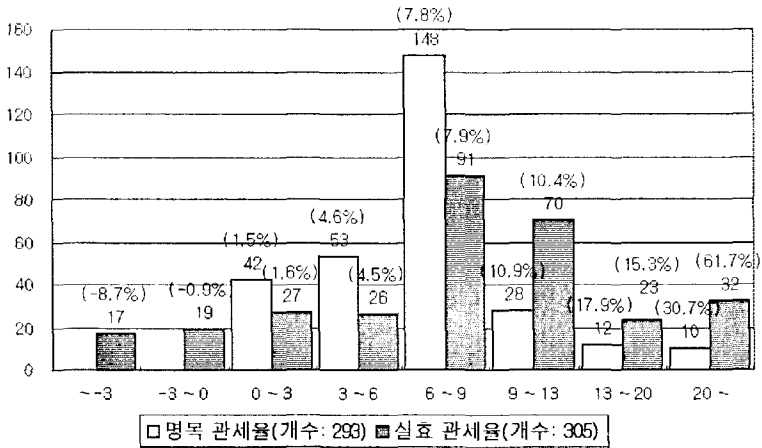
단순평균과 가중평균 실행세율을 비교하면 실적세율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중평균에서 낮은 명목세율이 적용되는 산업이 특히 명목세율 0~3% 구간에 13개 품목이나 더 많고 그 대신 조정관세 등 높은 명목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적다. 구체적으로 6%보다 낮은 명목세율이 적용되는 산업이 95개 산업으로 13개 품목이 더 많은 대신 6% 이상 적용되는 품목은 그 만큼 적다. 이에 따라서 실효 피

[그림 VI-3] 단순평균 실행관세율



주: ( ) 안은 세율구간별 평균임.

[그림 VI-4] 가중평균 실행관세율



주: ( ) 안은 세율구간별 평균임.

해를 받는 품목이 가중평균에서는 36개 산업으로 단순평균보다 10개 산업이 더 많다. 그러나 단순평균에서 실효세율이 13~20%인 품목이 43개 산업인 반면 가중평균에서는 23개 산업에 불과하고 그 대신 실효세율이 9~13%인 품목이 가중평균에서는 무려 70개 산업으로 단순평균보다 26개 산업이 더 많다.

#### 나. IO 402 산업 실효관세율: 산업별 동향

##### 1) IO산업 대분류에 따른 비교

305개 교역재 산업에 대한 실효관세율의 분포는 아래 <표 VI-3>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개별적으로 논의하기 앞서서 16개 산업으로 통합하여 <표 VI-1>에서 전체적인 윤곽을 검토한다. 통합의 기준은 실효관세율의 분석 목적이 부가가치의 증감을 살피는 데 있으므로 각 개별산업의 부가가치로 실효관세율과 중간재 관세율을 가중한 후 이를 산업별로 합하여 논의한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통합은 만약 관세율이 높아 수입액이 적고 국내생산이 많은 부분의 실효보호가 과대 계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성격의 통합은 일종의 평균화된 수치로서 각 개별 산업 내에서도 실효보호의 편차가 매우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여야 한다.

305개 교역재 산업을 산업별로 평균하여 보면 명목세율의 평균은 약 8.4%이고 표준편차는 8.1인 데 비하여 실효관세율의 평균은 13.9%이고 편차는 약 34로 실효세율의 평균도 높고 산업별 격차는 명목세율의 4배에 이른다. 한편 중간재 세율은 산업별로 0.7%(광산품), 0.8%(농림수산품)에서 6.6%(음·식료품), 4.8%(수송장비) 등인데 약 3% 정도가 평균세율로 보인다. 이외에 수입의존도와외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관계수가 가중평균은 -0.28, 단순평균은 -0.20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을수록 세율이 낮지만 그 관계가 절대적이지는 않다.

1차 산업에 있어서는 농림수산품의 경우 부가가치 가중 평균명목

관세율(31%)은 높은 반면 중간재 관세율(0.8%)은 매우 낮고 또한 중간재 비중이 16%로 낮아 보호해야 할 부가가치가 많으므로 실효관세율이 40%로 명목관세율을 많이 초과한다. 이외에도 농수산품에서는 산업간에 세율격차가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을 불문하고 큰 편이다. 그러나 광산품은 수입의존도(1995년 기준)가 높은 만큼 명목과 실효, 두 관세율이 3%를 초과하지 않고 수입의존도가 높으면 세율도 낮은 편이다.

<표 VI-1> 우리나라 산업의 실효관세율 분포 : 요약(1998년, Corden 방식)  
(단위: 백억원, %)

	수입액	수입의존도	가 중 실 적			
			명 목	실 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중
1. 농림수산물	374.9	15.0	30.99	39.76	0.82	16.09
2. 광산품	1,705.9	79.0	2.87	1.98	0.74	10.64
3. 음·식료품	344.7	10.0	15.85	49.57	6.61	57.13
4. 섬유·가죽제품	389.2	23.0	10.04	13.61	4.17	52.14
5. 목재·종이제품	189.9	22.0	7.13	10.19	2.77	54.73
6. 인쇄·출판 및 복제	33.7	5.0	1.42	-2.68	2.72	39.46
7. 석유·석탄제품	324.6	23.0	4.93	5.64	3.30	71.55
8. 화학제품	1,060.8	21.0	7.19	8.52	3.24	51.47
9. 비금속광물제품	80.3	7.0	6.81	8.02	2.16	42.94
10. 제1차금속	1,173.6	23.0	6.30	11.98	2.31	64.61
11. 금속제품	86.2	7.0	7.48	7.23	3.97	53.06
12. 일반기계	775.9	37.0	7.00	6.44	3.88	53.00
13. 전기·전자기기	2,064.4	32.0	5.59	6.28	2.86	47.97
14. 정밀기기	363.0	60.0	6.59	6.28	2.71	40.23
15. 수송장비	282.1	13.0	5.31	1.66	4.74	61.83
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61.1	15.0	7.63	7.88	3.14	42.86

주: 한국은행 IO 28산업 기준으로 IO 405 산업의 실효관세율을 부가가치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수치이고 수입의존도는 1995년 기준임.  
자료: 재경부 및 한국은행 전산자료.

경공업에 있어서는 음·식료품의 경우 명목관세율(16%)에 비하여 실효관세율이 매우 높아 약 50%에 이르는데 이는 중간재 비중이 57%로 높고 중간재 관세율(6.6%)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높으나 명목세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높은 실효관세율로 인하여 음·식료품의 수입의존도는 약 10%에 불과하며 이는 농림수산물(15%)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또한 음·식료품에서는 명목세율이 높은 품목이 있는가 하면 원자재인 농림수산품의 세율이 높은 품목이 있어서 산업간의 실효세율 격차는 그 어떤 제품보다도 크다(표준편차 79.2). 섬유·가죽제품은 중간재 세율이 4.2%로 약간 높지만 10%의 명목관세율로 13%에 달하는 보호를 받고 실효세율의 산업간 격차도 작은 편은 아니다(표준편차 15.2).

목재·종이제품도 명목관세율은 7.1%로 낮으나 중간재 세율(2.8%)이 낮아 섬유제품과 유사하게 10%의 실질적 보호를 받는다. 한편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제품은 명목과 실효세율이 비슷하여 실질적 보호가 7.8%에 달하는 데 비하여 인쇄·출판·복제제품은 출판물을 제외하고는 명목세율(1.4%)이 거의 대부분 무세화되어 역관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중공업에 있어서는 높은 중간재 세율이 부과되는 수송장비와 석유·석탄제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에서 6% 내외의 명목세율이 부과되고 실효세율은 이보다 높는데 중간재 세율이 거의 4%대에 이르는 일반기계와 금속제품이 예외로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약간 낮다. 6.3%의 명목세율에 비하여 중간재 세율(2.3%)은 낮고 중간재 비중(약 65%)은 높아 12%의 실질적 보호를 받는 제1차 금속을 제외하면 이들 제품은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이 대략 유사하여 6~8%의 실질적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수송장비는 5.3%의 명목세율에도 불구하고 높은 중간재 세율(4.7%)로 실효세율이 1.7%에 불과하다.

반면 원유 때문에 중간재 세율이 높은 석유·석탄제품(5.6%)은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7.9%) 등과 마찬가지로 명목과 실효세율

이 유사하며 화학제품과 비금속광물제품은 8%대의 보호를, 이외 일반기계와 ITA협정 대상인 전기·전자기기 그리고 정밀기기는 6%대의 보호를 적용받는다. 한편 중공업에서 실효세율이 가장 높거나 낮은 제1차 금속과 수송장비의 표준편차는 약 8.2로 이들 산업에서 실효세율의 편차가 제일 심한 것이 특색인데 이는 경공업에 비하면 많이 낮은 수치로서 중공업에서 균등관세율체제가 잘 정립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2) 실효관세율의 산업별 분포도

IO 교역재 산업을 1차 산업과 경·중공업으로 나누어 실효관세율의 변화를 <표 VI-2>에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독자의 이해를 위하여 <표 VI-3>에서 산업별 실효관세율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표 VI-3>을 참조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우선 1차 산업의 경우 단순평균 명목관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3% 이하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총 43개 산업 중 13개 산업이 있고 14개 산업에서 9% 이상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데 비하여 가중평균으로는 명목세율 3% 이하에 20개 산업이 있고 8개 산업에서 9% 이상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특히 가중평균으로 3% 이하의 명목세율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서 역관세를 나타내는 1차 산업이 15개 품목이나 있는데 이들은 주로 작물(밀, 잡곡, 종자 및 묘목)과 원목, 원염 및 광산품이고 또한 축산품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표 VI-3> 참조). 한편 작물 중에는 채소, 과일, 유지작물, 잎담배 그리고 식용임산물, 해면어획과 내수면 양식은 20% 이상의 실효보호를 받아 1차 산업의 경우 산업별로 고율의 실효보호나 역관세가 나타나는 양분화 현상이 뚜렷하다. 이외에 벼와 보리는 3% 정도의 실효관세율을, 콩과 약용작물류는 8% 그리고 감자류와 화훼작물은 9% 이상의 보호를 받는데 이들 품목의 경우 관세할당 등의 수입장벽이 있으므로 단순한 관세율로 보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표 VI-2〉 제1차 산업, 경공업과 중공업의 명목·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실적관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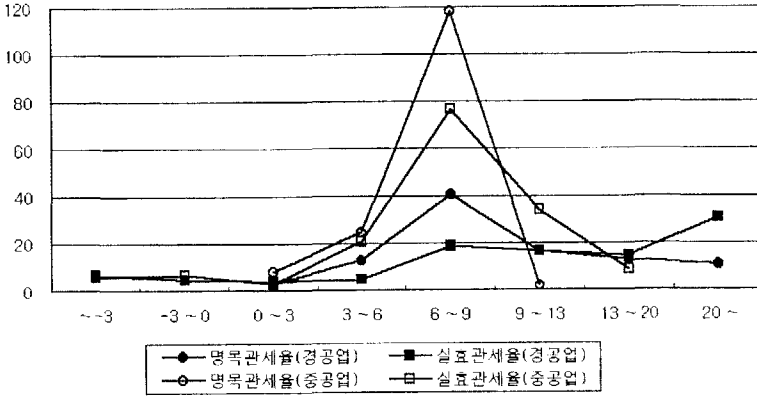
(단위: 개, %)

항 목		구 간		~3	-3~0	0~3	3~6	6~9	9~13	13~20	20~
				명	개수(43)	-	-	13	12	4	5
단 순 평 균	1차 산업	구간평균	-	-	0.8	3.6	8.3	10.3	14.6	41.3	
		실	개수(45)	2	7	13	4	2	6	6	5
		효	구간평균	-4.7	-0.7	2.0	4.0	7.6	11.3	16.3	51.9
	경공업	명	개수(98)	-	-	3	13	41	17	13	11
		구간평균	-	-	0.6	5.0	7.8	10.7	16.7	30.5	
		실	개수(103)	7	5	4	5	19	17	15	31
		효	구간평균	-9.8	-1.2	1.7	4.6	8.0	10.5	15.6	62.0
	중공업	명	개수(153)	-	-	8	25	118	2	-	-
		구간평균	-	-	1.5	4.7	7.4	9.5	-	-	
		실	개수(157)	6	7	3	21	77	34	9	-
		효	구간평균	-6.9	-1.3	2.1	5.0	7.6	10.3	14.8	-
	가 중 평 균	1차 산업	명	개수(43)	-	-	20	10	5	1	2
구간평균			-	-	0.9	3.4	8.0	9.7	18.1	46.7	
실		개수(45)	4	11	13	3	3	4	1	6	
효		구간평균	-6.0	-0.7	1.7	3.6	7.7	9.5	19.6	55.3	
경공업		명	개수(98)	-	-	8	14	37	16	13	10
		구간평균	-	-	1.1	4.6	7.8	10.7	15.4	30.6	
		실	개수(103)	7	3	5	6	24	20	8	30
		효	구간평균	-8.5	-1.5	2.0	5.3	7.7	11.1	15.0	72.7
중공업		명	개수(153)	-	-	15	26	105	7	-	-
		구간평균	-	-	1.5	4.8	7.6	10.4	-	-	
		실	개수(157)	8	7	7	24	58	37	13	3
		효	구간평균	-8.0	-0.8	1.2	4.8	7.8	10.1	15.7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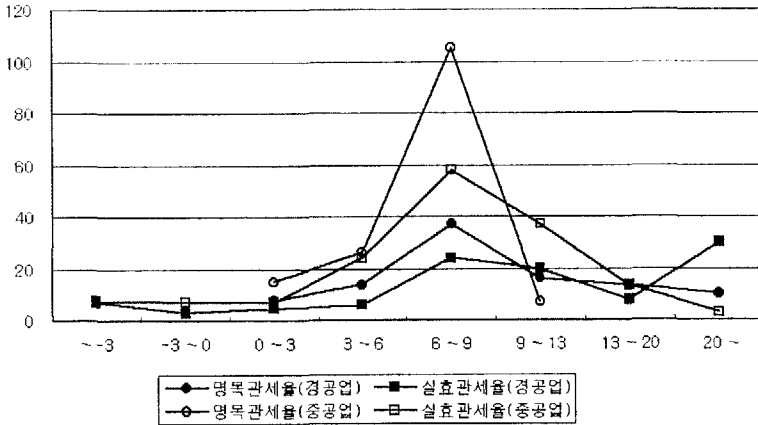
주: 구간은 관세율 구간으로 단순평균은 품목수로 나눈 수치이며 가중평균은 수입액 가중임.

자료: 한국은행 및 재경부 전산자료.

[그림 VI-5] 단순평균 실적관세율의 분포(경공업 및 중공업)



[그림 VI-6] 기중평균 실적관세율의 분포(경공업과 중공업)



제조업의 경우 명목과 실효세율의 분포를 좀더 쉽게 살펴보기 위하여 <표 VI-2> 이외에도 [그림 VI-5], [그림 VI-6]를 제시하였다. 우선 중공업 153개 산업 중에서는 118개 산업(77%)에 이르는 대부분 산업이 명목세율 6~9%를 중심으로 몰려 있고 특히 명목세율이 13%를 초과하는 품목은 하나도 없다. 이외에 6% 이하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33개 산업이 있는데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그 품목수는 41개 산업으로 증가한다. 그 결과 중공업에서 13% 이상의 실효세율을 부과받는 제품이 상대적으로 적어 단순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9개 품목 그리고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16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비하여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는 품목은 중공업에서 13개(가중: 15개) 산업이 있다.

반면 경공업에서는 명목관세율이 고율인 품목이 많아 실효보호율도 그만큼 높다. 특히 경공업 중에서 13% 이상의 명목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약 24개 산업에 이르는 데 비하여 전술한 대로 중공업에서는 이러한 품목이 없다. 또한 명목세율 6~9% 구간에 있는 품목도 41개(가중 37개) 산업으로 전체 산업의 42%(38%)에 불과하여 중공업 비율 77%에 비할 수 없다. 그 결과 경공업에서 13% 이상의 실효관세율이 적용되는 산업은 단순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103개 산업 중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6개에 이른다. 또한 20% 이상의 실효관세율 품목도 31개 산업에 이른다. 한편,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한 산업수는 13% 이상이 38개, 20% 이상이 30개 산업으로 감소한다. 이외에 역관세 산업은 12개 품목으로 중공업과 비슷하며 -3% 이하인 품목은 7개 산업이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별 관세율 분포를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공업에서는 명목관세율의 분포가 다양하여 3% 이하의 저세율 제품이 총 98개 산업 중 3개 품목이 있고 13% 이상의 고세율 품목도 23개 품목에 달한다. 이에 따라 가중평균 실효관세율에 역관세가 나타나는 품목은 10개 산업으로 아

이스크림, 동·식물성 유지, 담배, 모사, 가죽, 펄프, 출판·복제 등의 제품이 있다. 이외에도 3% 이하의 실효보호가 적용되는 품목에는 정제당, 기타 조미료, 면사, 골판지와 인쇄가 있다. 한편 실효보호 13% 이상의 고관세 보호를 받는 품목은 무려 38개 산업으로 특히 20% 이상의 제품은 대부분의 육류 및 낙농품과 음료품, 일부 수산가공품, 정미, 곡수류, 장류, 가죽신발, 합판 그리고 상당부분의 과일·채소가공품과 기타 식료품, 각종 섬유직물, 의류 등 30개 산업에 이른다.

반면 중공업제품은 총 153개 산업 중 3% 이하의 명목세율이 적용되는 산업은 15개 산업이며 명목세율이 6~9% 구간에 있는 산업이 105개 품목이며 9~13% 구간에는 7개 산업, 13% 이상에 해당하는 산업은 없다. 이에 따라서 가중평균 실효관세율에 역관세 현상이 있는 산업은 나프타, 액화 석유가스, 선철 이외에 비료, 기타 1차 철강제품,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개별소자, 승용차, 승합차, 트레일러 및 컨테이너, 강철제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등 15개 산업이 있다. 이의 실효세율이 3% 이하인 중공업 품목에는 질소화합물과 석회 및 석고제품, 알루미늄과, 금은과, 기타 비철금속피가 있고 기타 특수용 목적기계와 집적회로 그리고 측정 및 분사기기의 세율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다.

한편 실효관세율 20% 이상의 보호를 받는 산업은 형강과 열간압연강재, TV의 3개 산업에 불과하고 13% 이상의 보호제품은 접착제 및 젤라틴, 석제품 그리고 철근 및 봉강, 선재 및 궤조, 주철물, 단조물, 동과 알루미늄 1차제품의 금속제품이 주로 있고 기타 전자표시장치, 기타 전자부품, 음향기기, 화물차를 포함한 13개 산업이 높은 보호율을 나타낸다. 이 중에서 기타 전자부품은 ITA협정에 따라 명목세율이 인하되고 이에 따라 실효세율도 대폭 하락할 예정이지만 음향기기와 VTR 등을 중간재 세율인하로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표 VI-3〉 실효관세율의 산업별 분포

	3이하	-3~0	0~3	3~6	6~9	9~13	13~20	20초과
1. 농림 수산물	16. 종자 및 묘목 18. 낙농 20. 양돈 21. 가금	3. 밀 4. 참죽 19. 옥수수 24. 원목	11. 기타식용식물 12. 섬유작물 15. 천연고무 17. 기타비식용식물 22. 기타축산 26. 기타임산물	1. 버 2. 보리	7. 콩류 10. 약용작물 29. 해면 양식	8. 감자류 14. 화훼작물 23. 육림 28. 미수면 어획	27. 해면 어획	5. 채소 6. 과일 9. 유지작물 13. 잎담배 25. 식용임산물 30. 대수면 양식
2. 광산물	36. 동광석	31. 무연탄 32. 유연탄 35. 철광석 37. 연 및 아연광석 38. 기타비철 금속광석 44. 원염	34. 천연가스 39. 모래 및 자갈 40. 채석 41. 기타인 42. 석회석 43. 요업 원료광물 45. 기타 비금속광물	33. 원유				
3. 음식료품	71. 동물성 유지 72. 립 식물성유지 및 식용유 88. 담배	51. 아이스크림	61. 정제당 69. 기타조미료	60. 원당 85. 광친수 및 생수	52. 어유 및 동물성 기름 58. 장래 곡분과자 부 78. 기타 식료품 87. 제빵사료	67. 정제염 68. 발효조미료	53. 수산통조림 79. 주정	46. 도축육 47. 가공육 48. 육가공품 49. 우유 50. 유제품 55. 수산저장품 56. 기타수산물 57. 정미 62. 전분 63. 당류 66. 곡수류 70. 장류 73. 과일 및 채소가공품 74. 커피 및 차류 75. 인삼제품 76. 누룩 및 맥아 80. 소주 81. 탁주 및 약주 82. 맥주 83. 기타주류 84. 청량음료

〈표 VI-3〉의 계속

	3이하	3~0	0~3	3~6	6~9	9~13	13~20	20초과
4. 섬유· 기증제품	30.모사 114.기증	91.편사	108.기타장 신품	92.마사 104.섬유표백 및 염색 112.기타섬유제품 116.기방 및 핸드백	89.견사 93.제방섬유사 94.합 성섬유사 95.제방사 및 기타섬 유사 99.미직물 101.합성섬유 직물 107.직물계의류 111.직 물제품 113.끈, 로프 및 어망 119.기타기증제품	100.제방섬유직물 105.편직제의류 102.기타섬유직물 103.편조원단 118.운동화 및 기 타신발	96.견직물 97.모직물 98.편직물 106.편직제의류 109.기증의류 110.모피의 류 117.가족신발	
5. 목적· 종이제품	126.필프	130.골판지 및 골 판지 상자	124.목적용 기	131.종이용기 132.종이문구 및 사무용지 133.위생용종이제 품 134.기타 종이제품	120.제책목 122.제방 및 강화 목적 123.건축물 목적품 125. 기타 목적품 127.신문용지	128.인쇄용지 129.기타원지 및 판지	121.합판	
6. 인쇄· 출판및 부제	135.신문 136.출판	138.기록매 출판 및 출제	137.인쇄					
7. 석유· 석탄제품	141.나프 타 147.액 화석유가스	139.연탄		142.취발유	144.등유 145.경유 146.중유 148.운활유제품 149.기타석유 제품	143.케트유	140.기타 선반제품	
8. 화학제품	161.비표 179.기타고 무제품	160.질소화합물	152.석탄화 합물 155. 기초무기화 합물 158. 제생 섬유 162.농약	153.기타 기초유기화합물 154. 산염용가스 157.합성고무 163. 171.착자기용-기타대 체 172.사민용 화학제품 173. 기타 화학제품 174.플라스틱 175.산염용-플라스틱제 176.가성용-플라스틱제품	150.석유화학기초제품 151.석 유화학중간제품 156.합성수지 159.합성섬유 164.화장품 및 165.미누 및 세계 166.염 료, 인료 및 유연제 167.도로 170.화학 및 불꽃제 177.타이어 및 튜브 178.산 업용 고무제품	169.점착제 및 젤 라틴		

〈표 VI-3〉의 계속

	3이하	-3~0	0~3	3~6	6~9	9~13	13~20	20초과
9. 비금속 광물제품				187. 시멘트 188. 레미콘 190. 석회 및 석고제품	186. 건설용 점토제품 189. 콘크리트제품 193. 연니세	180. 판유리 및 1차유리 181. 산업용 유리제품 182. 기타 유리제품 183. 산업용 도자가 184. 가정용 도자기 185. 내화요업제품 192. 석면 및 암면제품 194. 아스팔트제품 195. 기타 토석제품	191. 석제품	
10. 제1차 금속	196. 선철	208. 기타 철강 1차제품	210. 알루미늄과 타 비철금속과	197. 합금철 198. 강 반상품(조강)	203. 강관(주철 강관 제외) 211. 연필아연괴	204. 냉간연강재 207. 표면처리강재 209. 동괴 216. 기타 비철금속 1차제품	199. 철근 및 봉강 201. 산재 및 폐조 205. 주철물 206. 단조물 214. 동 1차제품 215. 알루미늄 1차제품	200. 헝강 202. 열간연강재
11. 금속제품		219. 금속행크 및 저장용기		217. 건물용 금속제품 220. 금속포장용기 222. 나사제품 224. 부착용 금속제품	218. 금속구조물 226. 가정용 금속제품 227. 기타 금속제품	221. 공구류 223. 철선제품 225. 금속처리		
12. 일반기계			246. 기타 특수목적용기계	228. 엔진 및 터빈 238. 금속절삭기공기계 239. 금속성형처리기계 243. 압유기계 245. 제지 및 인쇄용기계	229. 펌프 230. 베어링, 기어 및 전동요소 231. 산업용운반기계 232. 공기조절장치 및 냉장냉동장비 233. 보일러 234. 난방 및 조리기기 235. 펌프 및 압축기 236. 공기 및 액체여과장치 237. 기타 일반목적용기계 240. 농업용기계 241. 건설 및 광물처리기계 242. 음식품가공기계 244. 군행 및 수행			

〈표 VI-3〉의 계속

	3이하	-3~0	0~3	3~6	6~9	9~13	13~20	20초과
13. 전기·전자기기		257.개별소자	258.집적회로(IC)	254.기타 전기장비	247.발전기 및 강동기 248.변압기 249.기타전기변환장치 250.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253.전구 및 조명장치 255.전자판 259.저항기 및 축전기 260.전자표일 및 변성기 261.인쇄회로기판 266.기타 영상음향기기 268.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270.사무용기기 271.냉장고 273.선공기	251.전선 및 케이블 252.전지 264.VTR 267.유선통신기기 262.기타 전자부품 265.음향기기 269.컴퓨터 및 주변기기 272.세탁기 274.가정용 전열기기	256.기타 전자표시장치 263.TV	
14. 장발기기				276.이료기기 278.측정 및 분석기기 279.촬영기및영상기	275.기타 가정용전기기기 277.자동차경 및 제어기기 280.기타광학기기 281.시계			
15. 수송장비	283.순합차 288.트레일러 및 컨테이너 289.강철제 선반 292.철도 차량 293.항공기	282.승용차	290.기타선박	285.특장차	286.자동차엔진 287.자동차부품 291.신박수리 및 부품품 295.차전거 및 기타수송장비	294.포터사이클	284.화물차	
16. 기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298.기타기구 304.모형및장식용품	296.복제기구 297.금속기구 301.악기 302.문방구	299.장난감 및 오락용품 300.운동 및 경기용품 305.기타 제조업제품		

## 다. IO 402 산업 실효관세율 : 개별 산업

### 1) 개 요

〈표 VI-4〉~〈표 VI-19〉는 IO 405 산업 중 305개 교역재 산업의 실효관세율을 Corden식으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 표이다. 이 표에서 제시된 명목관세율은 완제품  $j$ 에 실제로 부과된 1998년 실적관세율로서 수입액을 가중 평균한 수치이고 중간재 평균관세율은  $j$ 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가중평균 관세율(투입계수 가중)을 의미한다.

$$(30) \quad z_j = \frac{t_j - \sum_i a_{ij}^* t_i}{1 - \sum_i a_{ij}^*}$$

실효관세율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상기 식 (30)에서 보듯이 대략 완제품에 부과된 실행관세율이 높을수록, 중간재 관세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중간재 투입비중이 클수록(보호해야 할 부가가치가 작을수록), 실효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상승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이해가 빠르다. 한 예로서 벼의 경우, 한 단위의 작물이 생산되었을 때 부가가치가 약 93%인데, 명목세율만 고려한다면 벼의 국내가격은 국제가격보다 3.3% 높고 국내생산시 중간재의 관세가 약 0.3%이므로 실효보호는 대략  $(0.033 - 0.003)/0.93 = 0.032$ 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벼의 경우 중간재에 부과된 관세율이 거의 영(0)에 가까운 반면 주어진 완제품 관세율이 보호해야 할 부가가치는 크므로 실효관세율이 실적관세율과 유사하다.

### 2) 개별 산업의 비교

본절에서는 1998년도 가중평균 실효관세율을 중심으로 산업별 관세율 분포를 논의한다. 특히 가중실적 관세율과 함께 부표에 제시된 단순평균 실적관세율도 같이 논의한다(〈부표 2〉 참조). 이는 물

론 전술한 대로 수입이 없는 이유가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라면 그러한 효과는 가중평균이 아닌 단순평균 관세율이 좀더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가) 1차산업

#### (1) 농림수산물

농림수산물은 국내 부가가치를 가중한 평균관세율로 보면 명목관세율이 31.0%인데 실효세율은 이보다 더 높은 39.8%에 달한다. 이는 중간재 관세율이 부가가치 가중평균의 약 0.82%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효관세율이 명목관세율보다 크게 높은 편이다. 농림수산물은 IO 77부문으로는 작물, 축산, 임산물 그리고 수산물로 나뉘어지는데 작물의 평균 실효세율이 제일 높아 약 47.6%에 이르고 수산물과 임산물이 각각 18.6%, 12.3%의 실효세율을 보이며 축산은 실효관세율이 역관세인 -3.3%에 이른다.

작물의 경우, 관세율이 품목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실효관세율이 약 80%에 이르는 품목(채소와 과일)이 있는가 하면 밀, 잡곡 그리고 종자 및 묘목처럼 역관세가 나타나는 품목 그리고 천연고무, 섬유작물 등 1% 내외의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원료도 있다. 또한 수입의 존도가 높을수록 관세율도 낮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우선 비관세장벽이 존재하므로 관세율이 작물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국내생산이 없는 품목의 경우 관세율을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수입이 제한되는 벼와 보리 등의 관세율은 4% 미만이며 이외 기타 식용작물과 비식용작물, 섬유작물의 관세율도 이보다 낮고 밀(-1.5%), 잡곡(-0.8%), 종자 및 묘목(-0.4%)은 명목세율이 낮아 미미하게나마 역관세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수입의존도가 3% 이하인 채소, 과일의 실효세율은 80%대에 이르며 이보다 대체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유지작물, 잎담배, 화훼작물의 실효세율도 10%가 넘는다.

〈표 VI-4〉 우리나라 농림수산품의 실효관세율 분포(1998년, Corden 방식)

(단위: 천만달러, %)

	수입액	수입 의존도	가 중 실 적			
			명 목	실 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 중
1. 농림수산물	374.9	0.15	30.99	39.76	0.82	16.09
1. 작 물	284.9	0.14	36.47	47.56	0.53	12.19
1. 벼	0.0	0.00	3.30	3.13	0.33	7.16
2. 보리	1.4	0.22	3.50	3.07	1.12	24.92
3. 밀	66.3	0.97	0.68	-1.53	1.32	33.54
4. 잡곡	91.6	0.89	0.53	-0.76	0.95	28.77
5. 채소	5.3	0.01	73.49	96.95	0.48	13.99
6. 과실	8.6	0.03	58.92	79.97	0.83	17.47
7. 콩류	39.6	0.47	7.55	8.28	0.67	16.83
8. 감자류	5.2	0.06	8.74	9.24	1.18	17.95
9. 유지작물	6.2	0.15	34.16	37.61	0.80	8.79
10. 약용작물	3.7	0.08	8.31	8.79	0.56	11.71
11. 기타 식용작물	16.0	0.99	2.58	2.30	0.74	22.06
12. 섬유작물	0.2	1.05	1.69	1.48	0.30	9.89
13. 잎담배	8.6	0.12	19.94	23.96	0.79	17.18
14. 화훼작물	0.9	0.03	9.65	10.19	1.05	15.64
15. 천연고무	22.8	0.97	0.03	0.03	0.00	0.00
16. 종자 및 묘목	6.4	0.29	0.52	-0.42	0.52	20.17
17. 기타 비식용작물	2.2	0.80	2.24	1.49	0.20	3.14
2. 축 산	14.4	0.08	2.03	-3.30	3.13	59.21
18. 낙농	0.0	0.00	0.00	-5.24	2.66	48.41
19. 육우	0.1	0.00	3.50	-0.16	3.39	64.28
20. 양돈	0.0	0.00	1.97	-8.18	4.04	75.08
21. 가금	0.5	0.01	1.87	-7.21	3.70	74.38
22. 기타 축산	13.8	0.67	3.44	2.07	2.01	39.91
3. 임산물	41.3	0.53	12.02	12.27	0.31	6.71
23. 육림	0.0	0.00	8.00	9.07	1.96	33.57
24. 원목	35.0	0.93	0.00	-0.71	0.15	1.97
25. 식용임산물	3.0	0.17	20.56	21.16	0.17	2.89
26. 기타 임산물	3.3	0.08	3.12	3.00	0.37	10.25
4. 수산물	34.3	0.11	15.26	18.55	1.80	23.17
27. 해면 어획	33.2	0.13	16.25	19.64	1.82	23.35
28. 내수면 어획	0.1	0.09	8.97	9.42	1.22	17.70
29. 해면 양식	0.3	0.02	6.46	6.12	1.36	21.60
30. 내수면 양식	0.7	0.06	46.48	71.91	4.45	30.61

역관세 품목의 경우 단순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밀 외에는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부표 2〉 참조). 그러나 명목세율보다 실효세율이 낮은 현상이 잡곡, 섬유작물, 종자 및 묘목에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직접 투입되는 중간재의 세율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비교역재 등을 통한 교역재의 관세 때문이며 따라서 세율 차이는 크지 않다. 한편 단순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콩류(단순평균, 111.1%, 가중평균 7.6%)와 감자류(16.9%, 8.7%)의 실효세율이 매우 높아 특정 품목에 매우 높은 세율이 부과되지만 수입비중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기타 식용작물(10.6%, 2.6%)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채소(단순평균, 38.8%)와 과일(34.7%), 유지작물(13.4%)의 단순평균 세율은 이와 반대 현상을 보여 수입 가중평균 세율이 단순평균의 약 2배에 이른다.

한편 축산물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타 축산을 제외하면 중간재 세율이 완제품 세율보다 높아 대다수 품목이 역관세 현상을 보인다. 다만 제품의 성격상 이들 품목의 수입의존도는 0%에 가깝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농특회계 등의 각종 보조금이 없다면 제품생산에 있어서 축산농가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낙농품이 약 -5.9%의 역관세 현상을 보이는 외에 육우, 양돈과 가금은 15% 이상의 높은 실효세율을 보이는데 이는 명목세율이 8%대이고 중간재 세율이 5%대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재 세율이 5%대이며 중간재 비중도 70%로 높아 보호해야 할 부가가치가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임산물의 경우 평균세율이 12.3%에 이르는데 정책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원목을 제외하면 식용임산물의 세율이 약 21.2%에 이르러 평균 실효세율이 높고 육림과 기타 임산물의 실효세율은 각각 9.1%, 3.0%에 불과한데 단순평균 세율도 이와 유사하다.

수산물에 있어서는 다른 농림수산물과 마찬가지로 중간재 세율이

낮아 실효세율이 약 18.6%에 이른다. 그러나 품목별로는 편차가 심하여 내수면 양식의 실효세율이 71.9%인 데 비하여 해면 양식이 6.1%로 수산물 종류에 따라 관세율 기복이 큰 사실이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해면 어획이 19.6% 그리고 내수면 어획이 9.4%의 실효관세율을 보이는데 과연 수산물간의 대체탄력성이 커서 이러한 관세율 격차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다만 단순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품목별 차이가 급감하여 해면과 내수면을 불문하고 실효세율이 11%를 넘는데 그 중에서도 내수면 양식의 실효세율이 약 30.4%로 제일 높다. 따라서 내수면 양식의 경우 수입이 많은 품목에 세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내수면 어획과 해면 양식은 이와 반대로 수입이 많은 품목에 세율이 낮은 편이다.

## (2) 광산품

광산품의 경우 수입의존도(1995년, 79%)가 높아 부가가치 평균 관세율도 2.9%에 이르고 실효세율은 이보다 더 낮는데 약 4.6%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원유를 제외하면 세율은 더욱 낮아진다. 광산물은 명목세율보다 실효세율이 낮은 품목이 대부분이며 1%의 명목관세율이 부과되는 금속광석의 경우 4개 산업이 역관세 산업이지만 이 또한 수입의존도가 80~90% 이상인 품목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외 수입의존도는 낮지만 대부분 3%가 적용되는 비금속광물의 경우(기타 비금속광물 제외) 실효세율이 1~2%에 이르고 원염은 명목세율이 1%로 실효세율이 음(-)의 값을 갖는다. 그러나 단순평균 기준으로는 원염도 다른 비금속광물과 비슷한 약 3%의 실효세율을 유지한다. 한편 원유의 경우 에너지 절약과 재정관세 측면에서 5%의 기본관세가 적용되는데 비하여 천연가스는 1%의 기본관세가 부과되어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천연가스로의 대체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표 VI-5〉 우리나라 광산품의 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Corden 방식)

(단위: 천만달러, %)

	수입액	수입 의존도	가 중 실 적			
			명 목	실 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 중
2. 광산품	1,705.9	0.79	2.87	1.98	0.74	10.64
5. 석 탄	220.6	0.88	1.01	-0.68	1.02	16.93
31. 무연탄	6.0	0.18	1.01	-0.68	1.02	16.93
32. 유연탄	214.7	1.01	0.00	0.00	0.00	0.00
6. 원유 및 천연가스	1,279.0	0.99	-	-	-	-
33. 원유	1,124.1	0.99	4.62	4.62	0.00	0.00
34. 천연가스	154.9	0.98	1.05	1.05	0.00	0.00
7. 금속광석	170.3	0.96	0.55	-1.02	1.07	15.37
35. 철광석	83.0	0.97	1.00	-0.04	0.81	11.61
36. 동광석	48.9	1.01	0.00	-3.48	1.09	13.74
37. 연 및 아연광석	27.8	0.91	0.00	-2.38	1.46	19.66
38. 기타비철금속광석	10.6	0.81	0.52	-1.03	1.07	15.64
8. 비금속광물	36.0	0.12	3.01	2.18	0.71	10.19
39. 모래 및 자갈	0.1	0.00	3.06	2.49	0.42	5.89
40. 쇄석	0.0	0.00	3.00	2.10	0.80	12.41
41. 기타건설용석재	0.9	0.17	3.04	1.63	1.54	22.94
42. 석회석	0.2	0.01	3.05	1.89	1.09	14.94
43. 요업원료광물	7.1	0.30	3.09	2.15	0.84	11.84
44. 원연	5.8	0.38	1.10	-0.21	0.82	12.33
45. 기타비금속광물	21.9	0.93	2.17	0.45	1.36	20.22

나) 경공업

(1) 음·식료품

음·식료품에는 42개 품목에 이르는 다양한 품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록 중간재 세율(6.6%)은 높지만 부가가치 가중 명목 세율이 15.9%에 이르는 반면 중간재 비중이 크고 부가가치가 큰 제품의 세율이 높아 실효세율은 약 49.6%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육류와 낙농품, 음료품의 가중 명목세율이 20%를 상회하며 실효세

율은 이보다 몇 배를 초과한 수치를 보인다. 한편 과일 채소 및 기타 가공품의 명목세율도 20%를 초과하는 데 비하여 정곡 및 제분, 배합사료의 세율은 5%에 불과하고 담배는 영세율로 -13.7%의 역관세 현상을 보인다.

〈표 VI-6〉 우리나라 음·식료품의 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Corden 방식)

(단위: 천만달러, %)

	수입액	수입 의존도	가 중 실 적			
			명 목	실 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 중
3. 음·식료품	344.7	0.10	15.85	49.57	6.61	57.13
9. 육류 및 낙농품	114.6	0.17	26.46	169.62	4.87	62.99
46. 도축육	97.7	0.27	16.30	224.45	2.18	81.71
47. 가공육	4.5	0.11	16.58	99.30	1.39	71.95
48. 육가공품	3.1	0.04	28.92	65.23	7.29	56.48
49. 우유	0.0	0.04	40.00	441.74	1.01	62.54
50. 유제품	9.0	0.08	39.52	136.55	5.79	54.27
51. 아이스크림	0.4	0.04	8.26	-0.75	10.22	50.94
10. 수산가공품	23.7	0.14	15.87	25.51	8.31	61.85
52. 어육 및 어묵	9.7	0.41	8.89	7.16	6.16	59.85
53. 수산통조림	0.1	0.09	13.13	16.10	7.76	62.64
54. 수산냉동품	6.6	0.03	12.49	6.83	10.16	61.34
55. 수산저장품	3.7	0.11	29.42	66.51	9.13	60.67
56. 기타수산식품	3.6	0.29	20.87	58.92	6.22	67.01
11. 정곡 및 제분	8.5	0.01	5.38	44.82	2.51	84.55
57. 정미	2.2	0.01	6.02	60.81	3.09	92.60
58. 정맥	0.3	0.01	4.67	8.16	2.99	79.21
59. 제분	5.9	0.10	3.81	8.41	0.99	64.69
12. 제당 및 전분	49.4	0.30	10.23	21.71	3.58	62.60
60. 원당	37.5	1.00	3.08	3.08	0.00	0.00
61. 정제당	7.5	0.11	3.52	2.93	2.34	65.94
62. 전분	3.1	0.08	14.38	50.49	1.37	62.93
63. 당류	1.3	0.05	15.29	20.78	7.13	57.98

〈표 VI-6〉의 계속

(단위: 천만달러, %)

	수입액	수입 의존도	가 중 실 적			
			명 목	실 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 중
13. 빵,과자 및 곡수류	10.8	0.04	14.63	40.51	5.43	54.21
64. 빵 및 곡분과자	0.7	0.03	8.42	7.75	5.42	53.01
65. 설탕과자	7.8	0.09	7.72	6.97	4.58	52.86
66. 곡수류	2.4	0.02	40.34	172.25	6.58	59.21
14. 조미료 및 유지	68.0	0.20	11.49	5.71	11.25	57.62
67. 정제염	0.1	0.03	8.24	12.63	1.11	40.90
68. 발효조미료	0.1	0.01	7.81	10.77	3.22	53.87
69. 기타조미료	4.9	0.06	14.55	2.39	17.48	57.11
70. 장류	0.2	0.02	18.96	31.53	8.05	56.80
71. 동물성유지	2.7	0.38	2.58	-17.18	9.77	66.72
72. 식물성유지 및 식용유	60.1	0.39	4.03	-7.32	7.91	62.44
15. 과채가공품 및 기타식료품	33.2	0.14	20.16	26.95	11.53	54.84
73. 과실 및 채소가공품	21.3	0.24	37.60	30.83	28.10	55.58
74. 커피 및 차류	2.2	0.09	14.53	27.41	3.13	47.69
75. 인삼식품	0.1	0.00	29.68	92.16	6.35	61.83
76. 누룩 및 맥아	2.6	0.14	10.02	28.20	2.45	68.10
77. 두부	0.6	0.02	8.13	8.24	4.33	52.91
78. 기타식료품	6.4	0.11	10.83	6.76	9.33	56.97
16. 음료품	25.7	0.05	26.51	72.78	5.83	54.19
79. 주정	8.4	0.09	9.98	13.52	4.24	55.99
80. 소주	0.0	0.00	20.00	65.23	6.71	70.74
81. 탁주 및 약주	0.0	0.00	15.00	29.44	2.90	52.21
82. 맥주	0.1	0.01	28.90	100.84	4.93	59.33
83. 기타주류	12.2	0.32	19.69	26.08	6.51	39.22
84. 청량음료	5.1	0.03	30.10	53.20	7.50	46.24
85. 광천수 및 생수	0.0	0.01	6.47	5.87	2.51	34.82
86. 얼음	0.0	0.00	8.00	7.97	0.30	4.37
17. 배합사료	2.7	0.01	5.17	7.75	2.51	64.25
87. 배합사료	2.7	0.01	5.17	7.75	2.51	64.25
18. 담배	8.0	0.08	0.01	-13.66	8.64	50.55
88. 담배	8.0	0.08	0.01	-13.66	8.64	50.55

음·식료품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명목과 실효세율이 높은 경우도 있고 농수산물의 고관세로 인하여 실효세율이 낮은 품목도 있는 등 중간재 세율의 고저가 심하여 산업간 실효관세율의 격차가 심하다. 구체적으로 육류 및 낙농품의 경우 부가가치 가중 명목세율(26.5%)에 비하여 실효세율이 169.9%로 매우 높는데 이는 도축육(224.5%)과 우유(441.7%) 그리고 유제품의 세율(136.6%)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 제품의 경우 명목세율이 높기도 하지만 이에 비하여 중간재 세율은 낮은 대신 그 비중은 커서 실효세율이 높다. 특히 수입이 많고 수입의존도도 높은 도축육의 경우 중간재 비중이 무려 82%에 이른다. 그러나 아이스크림의 경우 8.3%에 이르는 명목세율에도 불구하고 중간재 세율이 10.2%에 달하여 미미하게나마 역관세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단순평균 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중간재 세율이 증가하는 대신 명목세율도 함께 올라 큰 차이가 없고 도축육에서만 실효세율(46.9%)이 많이 감소한다.

수산가공품의 경우 중간재 비중도 크고 수산저장품과 기타 수산식품의 관세율이 약 20%를 초과하여 대략 60%의 높은 실효세율을 보인다. 이외 수산통조림도 16.1%의 실효세율을 보이는 데 비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어육과 어묵(41%)과 그렇지 않은 수산냉동품은 7%대의 실효세율을 보인다. 특히 수산냉동품은 12.5%의 높은 명목세율에도 불구하고 중간재 세율이 10.2%에 달하여 실효세율이 6.8%로 명목세율보다 낮다. 이는 수산물의 평균세율이 약 15%에 이르러 후방산업인 수산가공품에서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낮은 현상이 어육과 어묵 그리고 수산냉동품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데 다만 단순평균으로는 모든 수산가공품의 명목세율이 16%를 넘어 실효세율도 대략 20%대 이상을 유지한다.

정곡 및 제분에서는 정미의 명목관세율이 6%에 불과하지만 중간재 비중이 약 93%로 워낙 커서 보호받을 부가가치가 7%에 불과하므로 실효세율이 무려 61%에 이른다. 그러나 단순평균으로는 명

목세율과 중간재 세율이 유사하여 실효세율이 17.7%로 감소한다. 이외 정맥과 제분도 4%의 명목세율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은 8%대를 유지하는데 단순평균을 기준하면 제분의 경우 특히 명목세율이 9.1%로 증가하여 실효세율이 20%를 넘는다.

한편 제당과 전분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100%인 원당은 실효세율이 3%이고 수입의존도가 11%인 정제당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전분과 당류는 수입의존도가 정제당보다 낮은 대신 명목세율은 15%대이고 실효세율은 각각 50%, 21%선을 유지한다. 그러나 단순평균으로 보면 원당의 경우 명목세율이 24.2%에 달하는 대신 후방산업인 정제당의 명목세율은 6.1%, 중간재 세율은 14.4%로 실효세율이 약 -16.8%로 추정되어 상당한 역관세 현상을 보인다. 이외 당류도 12.2%의 명목세율에도 불구하고 높은 중간재 세율(8.7%)로 실효세율이 8.7%에 불과하다.

제당의 경우 가중평균과 단순평균 세율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당을 100% 수입하고 이외 정제당도 원재료로 수입, 전분을 주로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전분의 세율이 높는데 그 대신 전분은 당류를 가공하는 데 사용되어 당류의 중간재 세율이 높다. 한편 수입이 크지 않은 특정 품목의 원당에 고세율이 적용되어 단순평균에서 정제당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주로 수입되는 원당의 세율이 낮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한편 빵·과자·국수류에서는 국수류에 관한 높은 명목세율(40.3%)로 당해 산업의 실효세율이 172.2%에 이르지만 이외에 빵 및 곡분과자 그리고 설탕과자의 실효세율은 7%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단순평균으로 보면 국수류의 실효세율도 7.6%에 달하며 빵과 과자류의 실효세율도 3~4%에 불과한데 이는 중간재 세율이 단순평균에서 6~8%대로 증가하기 때문이며 국수류의 경우 수입이 많은 특정 품목에 대하여 고관세가 적용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조미료와 유지의 경우 명목세율이 평균 11.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실효세율은 평균 약 6%에 불과하다. 이는 동물성과 식물성과 관계없이 유지와 식용유에서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인데 이들 제품의 수입의존도는 음·식료품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매우 높아 약 38%에 이른다. 특히 동물성과 식물성 제품의 명목세율은 각각 3%, 4%에 달하는 데 비하여 중간재 세율은 9.8%, 7.9%에 이르러 실효세율이 각각 -17.2%, -7.3%에 이른다. 한편 단순평균으로는 실효세율이 모두 -9.1%에 달하는데 특히 수입액이 절대적으로 많은 식물성 유지와 식용유는 높은 명목세율(11.3%)에도 불구하고 중간재 세율(21.9%)이 워낙 높으므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외에 수입이 많은 기타 조미료도 명목세율(14.6%)에 비하여 중간재 세율이 17.5%나 되어 실효세율이 2.4%에 불과한데 단순평균 실효세율은 오히려 23.8%나 된다. 한편 장류의 실효세율은 31.5%로 높은 편이며 발효조미료와 정제염도 10%대 이상의 실효관세율을 나타낸다. 그러나 단순평균으로는 발효조미료의 중간재 세율이 매우 높아 실효세율이 1%에 불과하다.

과실과 채소 가공품 그리고 기타식료품을 보면 평균적으로 10%대의 중간재 세율에도 불구하고 20% 이상의 높은 실효세율을 보인다. 특히 인삼식품의 명목세율(29.7%)과 실효세율(92.2%)이 매우 높다. 커피와 차류 그리고 누룩과 맥아도 낮은 중간재 세율로 명목 및 실효세율이 각각 10%, 20%대에 있다. 이와 달리 수입의존도(24%)가 상대적으로 높은 과실과 채소 가공품에서는 높은 중간재 세율(28.1%)을 유지하고 있으나 명목세율(37.6%)도 높아 실효세율이 31%에 달한다. 특히 두부는 8%의 평균세율을 그리고 기타식료품은 높은 중간재 세율(9.3%)로 실효세율이 7%에 불과하다. 그러나 두부의 경우 단순평균으로는 높은 중간재 세율(31.8%)로 -20%의 역관세 현상을 보이고 기타 식료품은 약 19%의 높은 실효세율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음료품의 경우 실효세율이 6%대인 광천수를 제외하

면 대부분의 제품에서 명목세율이 15%를 넘고 실효세율도 26%를 초과한다. 주정은 세율이 10%대이지만 단순평균으로는 20%대다. 특히 맥주와 청량음료의 명목과 실효세율이 각각 30%, 50%를 초과하는데 수입의존도가 음료품 가운데 제일 높은 기타 주류도 20%대를 유지한다. 이외 배합사료는 가중평균으로는 7.8%의 실효세율을 보이지만 단순평균으로는 중간재 세율(7%)이 명목세율(5.7%)보다 높아 약간의 역관세 현상이 엿보인다. 담배는 영세율 적용으로 -13.7%의 실효피해를 입고 있는데 단순평균으로 보면 그러한 피해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 (2) 섬유·가죽제품

섬유·가죽제품은 음·식료품과 유사하게 중간재 세율(4.2%)이 높은 편에 속하고 10% 이상의 평균 관세율을 향유하지만 섬유사를 제외하면 제품간의 관세율 격차가 뚜렷하게 크지 않은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음·식료품과 달리 섬유·가죽제품은 완제품을 제외하면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이 특색이다.

섬유사의 경우 명목과 실효관세율이 5% 이하이지만 수입의존도가 70% 또는 그 이상인 견사와 재생섬유사 그리고 합성섬유사의 명목세율은 8%대이며 실효세율은 10% 내외이다. 또한 마사도 수입의존도가 87%에 이르는데 명목세율이 6%로 실효세율은 7%대이다. 한편 수입액은 많지만 20%의 낮은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면사와 모사는 명목세율이 각각 2.4%, 0.9%로 실효세율은 1.7%, -5.4%이다. 그러나 단순평균으로는 수입액이 절대적으로 많은 면사의 경우 낮은 중간재 세율(1.9%)로 실효세율이 21.5%에 이르러 섬유사 중에서 실효세율이 제일 높다.

섬유직물에서는 견직물 등 일부 품목에 관한 1997년 세율조정으로 약 10%의 평균세율을 유지하고 실효세율도 14%에 이르러 관세율 5%대의 섬유사와 비교할 때 가공도에 따른 경사관세율체제가 잘 드러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입의존도가 25~45% 사

이에 있는 견직물(명목세울 20.3%), 모직물(13.1%), 면직물(13.4%)은 30% 이상의 실효세율을 보이는데 견직물의 경우 중간재 세율도 5.3%에 이른다. 이외에 재생섬유직물(9.5%)은 중간재 세율(6.4%)이 높은 대신 중간재 비중(77.1%)이 많고 편조원단(8.2%)은 중간재 세율(3.5%)이 낮아 14%대의 실효세율을 유지한다. 반면 기타 섬유직물은 명목세율(11.9%)도 높고 중간재 세율(3.5%)은 낮아 실효세율이 17%를 초과한다. 단순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면직물의 실효세율은 16%대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실효세율이 감소하는데 이는 명목세율은 감소하는 대신 모사와 면사 등 중간재 세율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섬유의 경우 수입이 많은 품목의 세율이 높은 데 비하여 섬유사 등 중간재 세율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의류 및 장신품의 경우 평균 명목세율이 12.1%인 데 비하여 중간재 세율은 4.5%에 불과하여 실효세율은 평균 17.5%에 달한다. 따라서 섬유제품에서는 섬유사, 섬유직물 그리고 의류의 순으로 관세율이 가공도에 따른 경사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장신품을 제외하면 의류는 품목과 상관없이 11% 이상의 명목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실효세율도 20%대에 이른다. 특히 모피의류의 실효세율은 76.2%에 이르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직물제 의류는 중간재 세율이 5.3%로 다른 제품에 비하여 높아 실효세율이 약 13%에 달한다. 의류 중에서 수입의존도(43%)가 가장 높은 기타장신품은 명목세율(7.8%)이 중간재 세율(4.9%)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은 5.8%에 불과하여 이 제품에 투입되는 비교역재에 포함된 중간재의 관세율이 높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순평균으로 보면 기타 장신품의 실효관세율도 명목세율과 유사하며 이외 다른 제품의 실효관세율은 가중평균에 비하여 약간씩 감소한다.

〈표 VI-7〉 우리나라 섬유·가죽제품의 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Corden 방식)

(단위: 천만달러, %)

	수입액	수입 의존도	가 중 실 적			
			명 목	실 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 중
4. 섬유, 가죽제품	389.2	0.23	10.04	13.61	4.17	52.14
19. 섬유사	161.1	0.45	4.92	4.45	2.84	61.92
89. 견사	3.9	0.86	8.26	11.55	2.72	50.09
90. 모사	8.5	0.24	0.91	-5.40	2.59	68.32
91. 면사	78.4	0.27	2.43	1.73	1.80	69.49
92. 마사	1.2	0.87	5.88	6.80	3.01	57.93
93. 재생섬유사	29.7	0.69	7.48	11.14	2.47	53.44
94. 합성섬유사	38.5	0.97	8.16	9.22	5.23	67.32
95. 재봉사 및 기타섬유사	0.9	0.03	7.97	9.77	2.93	47.90
20. 섬유직물	92.8	0.22	9.56	14.13	3.68	52.96
96. 견직물	11.8	0.45	20.32	39.19	5.33	54.92
97. 모직물	5.0	0.25	13.15	35.20	1.82	60.47
98. 면직물	15.8	0.34	13.44	32.82	2.37	59.49
99. 마직물	3.1	0.98	7.89	12.68	4.21	69.17
100. 재생섬유직물	13.5	0.53	9.52	14.13	6.41	77.13
101. 합성섬유직물	32.6	0.29	8.91	10.57	4.52	58.69
102. 기타 섬유직물	5.6	0.45	11.92	17.24	3.74	49.96
103. 편조원단	5.6	0.09	8.22	14.45	3.54	65.36
104. 섬유표백 및 염색	0.0	0.00	8.00	8.35	2.44	33.49
21. 의류 및 장신품	49.7	0.10	12.08	17.51	4.46	49.89
105. 편직제의류	17.3	0.11	12.91	21.02	3.08	48.77
106. 편직제장신품	1.7	0.10	11.68	20.78	3.49	56.24
107. 직물제의류	26.9	0.10	11.85	12.90	5.32	47.85
108. 기타 장신품	2.7	0.43	7.78	5.75	4.85	49.71
109. 가죽의류	0.1	0.08	10.60	25.14	3.09	64.99
110. 포피의류	1.0	0.07	16.01	76.28	3.88	75.34
22. 기타 섬유제품	29.1	0.23	9.35	10.16	4.47	51.61
111. 직물제품	8.4	0.17	9.89	10.95	4.86	53.95
112. 기타 섬유제품	19.4	0.71	8.09	8.02	3.72	46.57
113. 끈, 로프 및 어망	1.3	0.08	9.84	12.00	4.20	52.34
23. 가죽제품 및 모피	56.6	0.33	8.26	8.81	4.68	53.28
114. 가죽	28.4	0.37	4.03	-5.81	7.26	53.01
115. 모피	5.1	0.61	4.84	6.82	2.96	72.50
116. 가방 및 핸드백	5.9	0.43	7.58	8.58	3.07	47.22
117. 가죽신발	2.0	0.12	13.62	26.56	3.68	56.77
118. 운동화 및 기타신발	14.0	0.22	10.41	14.35	4.34	55.80
119. 기타 가죽제품	1.2	0.05	8.34	11.80	2.83	51.49

기타 섬유제품의 경우 평균관세율은 8~9%를 유지하고 기타 섬유제품(8.0%)을 제외하면 실효관세율은 이보다 1~2% 포인트 높다. 마지막으로 가죽제품과 모피에서는 원료에 해당하는 가죽에서 명목세율(4.0%)에 비하여 중간재 세율(7.3%)이 높아 뚜렷한 역관세 현상(-5.8%)을 보인다. 그러나 수입의존도(61%)가 높고 비슷한 세율이 적용되는 모피와 수입의존도가 43%에 이르지만 8% 세율이 부과되는 가방과 핸드백에서는 7~9%의 실효세율이 나타난다. 실효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명목세율이 13.6%로 높은 가죽신발(26.6%)이고 이외 운동화와 기타 가죽제품의 실효세율도 10%를 넘는다. 한편 가죽제품의 경우 모피에서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외에 단순평균과 가중평균과의 차이는 없다.

### (3) 목재·종이제품

목재·종이제품에서는 명목세율이 평균 7.1%에 불과하지만 원료에 대한 세율이 2.8%로 매우 낮아 실효세율이 평균 10%에 이른다. 특히 목재 및 나무제품의 실효세율이 12%를 넘는데 그 중에서도 제재목의 경우 4.8%의 낮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중간재 세율이 1%도 되지 않고 중간재 비중도 약 65%에 이르러 실효세율(12.7%)이 매우 높다. 그러나 실효세율이 가장 높은 제품은 수입의존도(45%)도 같이 높은 합판으로 약 22%가 되며 이외에 재생목재나 건축용 및 기타 목제품은 10%대의 실효세율을 나타낸다. 목제품기는 명목세율(5.9%)과 실효세율(5.5%)이 서로 유사한데 단순평균은 이보다 2~3% 높다.

펄프 및 종이의 경우 펄프가 미미한 역관세 현상을 보이거나 원자재이므로 큰 문제가 없고 신문 및 인쇄 용지와 기타 원지 및 판지에서는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재 관세율(2%) 덕분에 12~16%의 실효세율을 보인다. 그러나 골판지의 경우 낮은 명목세율(4.8%)과 상대적으로 높은 중간재 세율(4%)로 실효세율이 2%를 넘지 못하는데 수입이 없으므로 이 또한 큰 문제가 없다.

〈표 VI-8〉 우리나라 목재·종이제품의 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Corden 방식)

(단위: 천만달러, %)

	수입액	수입 의존도	가 증 실 적			
			명 목	실 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 중
5. 목재·종이제품	189.9	0.22	7.13	10.19	2.77	54.73
24. 목재 및 나무제품	56.1	0.26	7.48	12.56	2.24	54.44
120. 제재목	24.6	0.29	4.75	12.66	0.67	64.59
121. 합판	20.6	0.45	10.13	22.11	1.82	56.86
122. 재생 및 강화목재	3.5	0.22	8.27	10.09	2.32	40.04
123. 건축용 목제품	4.0	0.09	8.27	10.26	3.71	54.93
124. 목제용기	0.2	0.02	5.92	5.52	3.33	54.57
125. 기타 목제품	3.1	0.16	8.43	10.62	2.69	44.78
25. 펄프 및 종이	133.8	0.20	7.01	9.40	2.95	54.83
126. 펄프	97.4	0.86	2.05	-0.67	2.15	42.90
127. 신문용지	0.0	0.15	6.71	12.17	1.55	53.84
128. 인쇄용지	1.1	0.05	8.30	15.84	1.87	55.80
129. 기타원지 및 판지	11.9	0.11	8.05	14.17	2.06	54.05
130.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0.3	0.00	4.75	1.67	3.99	59.01
131. 종이용기	1.2	0.02	8.15	8.33	4.23	53.35
132. 종이문구 및 사무용지	0.7	0.03	7.51	7.41	4.26	56.65
133. 위생용 종이제품	1.9	0.02	7.12	8.11	3.21	51.23
134. 기타 종이제품	19.4	0.28	7.27	8.18	3.59	54.40

이의 종이용기나 종이문구 및 사무용지, 위생용과 기타 종이제품은 7~8%대에서 명목세율과 유사한 실효세율을 보인다.

(4) 인쇄·출판 및 복제

인쇄·출판 및 복제에서는 ITA 협정에 따른 무세화로 인쇄를 제외하면 신문(-4.4%), 출판(-5.4%) 그리고 기록매체 출판과 복제(-3.0%)에서 역관세 현상이 역력하다. 인쇄의 경우에도 약 3.9%의 명목세율이 적용되지만 중간재 세율도 이와 유사하여 실질적 보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중 특히 수입액이 절대적으로 큰 기록매

〈표 VI-9〉 우리나라 인쇄·출판 및 복제의 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Corden 방식)

(단위 : 천만달러, %)

	수입액	수입 의존도	가 중 실 적			
			명 목	실 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 중
6. 인쇄·출판 및 복제	33.7	0.05	1.42	-2.68	2.72	39.46
26. 인쇄, 출판 및 복제	33.7	0.05	1.42	-2.68	2.72	39.46
135. 신문	0.2	0.01	0.00	-4.44	2.29	35.18
136. 출판	6.1	0.11	0.00	-5.35	2.79	41.14
137. 인쇄	4.3	0.01	3.93	1.08	3.13	42.65
138. 기록매체출판 및 복제	23.1	0.26	0.45	-2.98	2.01	33.58

체 출판과 복제에서 실효세율이 음(-)의 값을 갖는 것이 문제인데 이 제품의 경우 단순평균으로 보면 실효세율이 4.5%에 달하여 수입액이 큰 품목의 관세율이 무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2000년에 이르면 ITA협정에 따른 무세화가 완료되어 기록매체 등의 실효세율은 약 -2%를 유지하게 된다.

#### (5)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제품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제품은 명목과 실효세율이 평균적으로 유사하여 7.6%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타 제조업 제품이 이보다 평균적으로 1% 정도 세율이 높다. 가구의 경우 목재와 금속가구 공히 약 7% 이상의 명목 및 실효세율을 적용받는데 기타 가구는 이보다 세율이 1% 정도 낮고 중간재 비중도 적어 실효세율이 5%대에 이른다. 그러나 단순평균으로는 목재가구(8.1%), 기타 가구(6.0%), 금속가구(5.4%)의 순으로 실효세율이 크다. 한편 가구에서는 UR에 따른 국제협정으로 인하여 1999년 가중평균 실효세율을 기준하면 금속가구의 명목세율이 3.8%로 인하되고 중간재 세율은 약 4%에 달하여 실효세율이 음의 값(-0.6%)를 갖는다. 이외 다른 가구도 실효세율이 5.6%에 이르러 실효세율이 4%대로 떨어진다.

〈표 VI-10〉 우리나라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의 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Corden 방식)

(단위: 천만달러, %)

	수입액	수입 의존도	가 중 실 적			
			명 목	실 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 중
16.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61.1	0.15	7.63	7.88	3.14	42.86
57. 가구	11.1	0.05	7.25	7.01	3.42	44.51
296. 목재가구	6.8	0.05	7.75	8.04	3.90	51.31
297. 금속가구	1.0	0.06	7.35	7.03	4.03	53.11
298. 기타 가구	3.3	0.04	6.58	5.67	2.67	34.03
58. 기타 제조업제품	50.0	0.27	7.96	8.66	2.89	41.40
299. 장난감 및 오락용품	9.1	0.36	9.02	9.92	3.24	41.37
300. 운동 및 경기용품	13.1	0.46	8.05	9.07	2.54	39.07
301. 약기	4.3	0.17	7.70	8.25	3.02	43.32
302. 문방구	3.6	0.19	7.99	8.52	2.56	35.84
303. 귀금속 및 보석	6.8	0.50	5.33	7.38	2.33	59.53
304. 모형 및 장식용품	5.9	0.15	6.70	5.91	3.31	44.49
305. 기타 제조업제품	7.2	0.20	9.46	11.34	2.70	37.46

기타 제조업제품의 경우 수입의존도와 상관없이 대부분 제품이 8~9%의 세율을 적용받고 실효세율도 이와 유사한데 기타 제조업제품의 실효세율은 예외적으로 11.3%에 이른다. 또한 귀금속과 보석은 명목세율이 5.3%이고 모형 및 장식용품은 세율이 6.7%인데 귀금속의 경우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약 2% 높지만 모형의 경우 실효세율이 약 1% 낮다. 한편 단순평균 세율도 가중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 중공업

(1) 석유·석탄제품

석유·석탄제품은 석유제품의 영향으로 관세율이 약 5%대를 유지하는데 그 중에서 수입이 거의 없는 연탄의 실효세율은 음(-)의

〈표 VI-11〉 우리나라 석유·석탄제품의 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Corden 방식)

(단위: 천만달러, %)

	수입액	수입 의존도	가 중 실 적			
			명 목	실 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 중
7. 석유, 석탄제품	324.6	0.23	4.93	5.64	3.30	71.55
27. 석탄제품	2.6	0.02	5.13	18.33	0.37	69.35
139. 연탄	0.0	0.01	1.00	-1.75	0.82	71.11
140. 기타 석탄제품	2.6	0.02	5.13	18.33	0.37	69.35
28. 석유제품	322.0	0.24	4.93	5.14	3.41	71.64
141. 나프타	171.8	0.47	1.04	-9.50	3.54	75.66
142. 휘발유	6.8	0.07	4.88	5.20	3.48	73.76
143. 제트유	2.6	0.65	6.04	9.27	3.31	69.98
144. 등유	12.2	0.28	5.66	8.15	3.53	74.01
145. 경유	3.7	0.15	5.25	6.48	3.30	70.20
146. 중유	18.8	0.19	5.40	6.84	3.18	67.66
147. 액화석유가스	76.3	0.55	1.06	-7.71	3.33	71.45
148. 윤활유제품	26.1	0.32	7.03	8.22	4.04	63.66
149. 기타 석유정제품	3.6	0.13	6.36	7.35	3.09	56.07

값을 갖는 데 비하여 기타석탄제품은 낮은 세율(5.1%)에도 불구하고 중간재 관세율이 낮은 데 비하여 중간재 비중(69%)은 높아 실효세율이 18.3%에 달한다. 중간재 비중이 70% 이상인 석유제품의 경우 명목세율(4.9%)과 중간재 비중은 기타 석탄제품과 유사하나 중간재 세율(3.4%)이 높아 실효세율이 5.1%로 명목세율과 유사하다.

수입액이 상당하고 따라서 수입의존도도 높은 나프타의 경우 1%의 관세율로 역관세(-9.5%)를 보이고 휘발유는 각종 세율과 중간재 비중이 석유제품의 평균치과 비슷하여 5%의 실효세율을 보인다. 이외에 5%의 세율이 적용되는 석유제품 가운데 등유가 약 8%의 실효세율을 보이며 경유와 중유는 7%를 약간 밑도는 실효세율을 나타낸다. 그러나 제트유의 실효세율은 9.3%에 이르는데 반대

로 수입이 상당한 액화석유가스에서는 1%의 세율로 -7.7%의 역관세 현상이 발생한다. 이외 운할유 제품과 기타 석유정제품은 7~8%의 세율을 유지한다. 한편 명목세율이 3%로 실효세율이 약 -1%로 증가하는 액화석유가스를 제외하면 단순평균에서도 세율의 분포는 가중평균과 매우 유사하다.

## (2) 화학제품

약 30개 품목으로 구분되는 화학제품은 명목세율이 평균 7.2% 그리고 중간재 세율은 3.2%이며 그 비중은 약 51%로 실효세율은 8.5%에 달한다. 유기화학 기초제품 가운데 수입액이 상당한 석유화학 기초제품의 명목세율은 5.2%로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은 12.7%에 달한다. 그러나 후방산업에 속하는 석유화학 중간제품의 경우 수입액이 절대적으로 많고 수입의존도(35%)도 높아 명목세율도 기초제품보다 약 2% 포인트 높아 7.2%에 이르지만 동시에 중간재 세율은 2.5% 포인트가 높아 실효세율이 약 10%로 낮아진다. 한편 석탄화합물은 명목세율보다 실효세율이 약간 낮아 4.7%이며 기타 기초유기화합물은 수입액이 상당하고 수입의존도(72%)도 매우 높지만 대략 평균에 가까운 7.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단순평균으로 보면 석탄화합물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명목세율과 상관없이 11%대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다.

무기화학기초제품의 경우 수입액이 절대적으로 많은 기초무기화합물의 세율은 유기화학제품보다 낮아 약 5%를 적용받고 또한 중간재 비중도 상대적으로 작아 실효세율이 명목세율과 유사하게 5% 선을 유지하는데 단순평균으로는 8% 내외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산업용 가스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절대적 세율은 석유제품보다 약 3% 포인트 높은 8%를 적용받는다.

합성수지와 합성고무에서는 수입의존도(21%)는 낮지만 수입액이 월등히 많은 합성수지가 8.2%의 명목세율로 합성수지보다 명목세율이 약 1.7% 포인트 높지만 실효세율로는 11.5%에 달하여 합

성수지보다 합성고무의 실효세율이 약 4.7% 포인트 높다. 또한 화학섬유의 경우 합성섬유의 세율이 8.1%로 재생섬유의 세율에 비하여 두 배에 이르는데 수입의존도는 재생섬유가 67%로 월등히 높다. 실효세율은 재생섬유가 명목세율과 유사한 4.3%이고 합성섬유는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약 1.8% 포인트 높다. 하지만 단순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명목세율이 6.4%에 이르는 대신 중간재 세율(1.9%)이 매우 낮은 재생섬유의 실효세율이 10.3%로 합성섬유(7.6%)보다 높은 편이어서 재생섬유에서 수입되지 않는 제품의 세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VI-12〉 우리나라 화학제품의 실효관세율 분포(1998년, Corden 방식)  
(단위: 천만달러, %)

	수입액	수입의존도	가 중 실 적			
			명 목	실 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중
8. 화학제품	1,060.8	0.21	7.19	8.52	3.24	51.47
29. 유기화학기초제품	346.6	0.37	6.36	10.75	2.46	61.21
150. 석유화학기초제품	51.7	0.19	5.16	12.69	1.14	65.57
151. 석유화학중간제품	131.9	0.35	7.18	9.97	3.36	60.29
152. 석탄화합물	14.1	0.49	5.28	4.72	2.61	49.03
153.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148.9	0.72	7.47	8.93	3.36	53.53
30. 무기화학기초제품	98.4	0.28	5.83	5.96	1.64	33.69
154. 산업용 가스	1.1	0.02	8.06	8.40	1.47	20.96
155. 기초무기화합물	97.3	0.34	4.88	4.93	1.71	39.07
31.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109.7	0.22	8.11	11.21	4.07	63.07
156. 합성수지	92.5	0.21	8.20	11.46	4.11	63.52
157. 합성고무	17.2	0.39	6.45	6.71	3.33	55.15
32. 화학섬유	16.3	0.07	8.02	9.83	4.61	64.32
158. 재생섬유	7.1	0.67	4.01	4.30	1.88	54.72
159. 합성섬유	9.2	0.04	8.12	9.97	4.68	64.56
33. 비료 및 농약	28.5	0.14	3.58	1.59	2.68	59.15
160. 질소화합물	12.5	0.35	2.08	1.35	0.97	50.20
161. 비료	12.1	0.15	1.90	-1.23	2.01	59.05
162. 농약	3.9	0.05	6.72	5.87	4.44	63.31

<표 VI-12>의 계속

(단위: 천만달러, %)

	수입액	수입 의존도	가 중 실 적			
			명 목	실 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 중
34. 의약품 및 화장품	86.7	0.10	7.13	7.45	2.52	36.18
163. 의약품	63.1	0.10	6.60	6.44	2.31	33.63
164. 화장품 및 치약	14.5	0.08	8.19	9.06	2.75	37.25
165. 비누 및 세제	9.1	0.11	8.23	11.40	3.81	58.96
35. 기타화학제품	291.8	0.39	7.93	9.34	3.65	53.77
166. 염료, 안료 및 유연제	64.9	0.52	7.90	9.57	3.32	51.47
167. 도료	8.2	0.08	8.16	9.71	3.71	53.76
168. 잉크	3.9	0.13	8.30	9.86	3.80	54.01
169. 접착제 및 젤라틴	14.2	0.25	9.83	13.82	4.04	56.17
170. 화약 및 불꽃제품	0.3	0.01	7.86	9.41	2.74	45.09
171. 전자기기용기록매체	18.1	0.29	8.09	8.91	3.87	52.15
172. 사진용 화학제품	43.3	0.84	7.89	8.22	4.03	53.22
173. 기타 화학제품	138.9	0.53	6.72	7.40	3.64	58.63
36. 플라스틱제품	63.8	0.07	7.64	7.23	4.53	57.66
174. 플라스틱1차제품	38.8	0.19	8.09	8.37	4.32	54.84
175. 산업용 플라스틱제품	23.4	0.03	7.46	6.79	4.61	58.80
176. 가정용 플라스틱제품	1.5	0.05	7.43	6.64	4.62	58.53
37. 고무제품	19.1	0.09	7.35	9.10	2.93	50.51
177. 타이어 및 튜브	5.5	0.04	7.55	9.89	2.78	50.55
178. 산업용 고무제품	11.6	0.16	7.78	9.19	3.29	50.71
179. 기타 고무제품	2.1	0.09	3.07	-0.04	2.92	49.06

비료 및 농약의 경우 약 6%대의 명목과 실효세율을 나타내는 농약을 제외하면 농약(5%)에 비하여 수입의존도(35%, 15%)가 상대적으로 높은 질소화합물과 비료는 가중평균과 단순평균 세율이 특히하게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즉, 가중평균으로는 이들 제품의 명목세율은 2% 이내여서 실효세율은 질소화합물이 약 1% 또는 비료가 -1%의 역관세 현상을 보이지만 단순평균을 기준하면 이들 제품의 명목세율은 약 7%로 대폭 증가하며 실효세율은 이보다 더 높

다. 결국 농산물의 원료인 이들 제품의 경우 다량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관세율이 매우 낮은 편인데 같은 품목에 속하는 제품간에 관세율 격차가 너무 큰 것이 아닌지에 관해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약품과 화장품의 경우 의약품, 화장품과 치약 그리고 비누의 순으로 실효세율이 증가하여 각각 6.4%, 9.1%, 11.4%를 유지하는데 이는 수입액과 반대의 순서이다. 그러나 명목세율로는 의약품이 약 6.6%의 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화장품과 비누 사이에는 세율이 별로 차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화장품에 비하여 비누의 중간재 세율이 높지만 중간재 비중은 비누가 큰 관계로 비누 및 세제의 실효세율이 높다.

기타 화학제품의 경우 명목세율뿐만 아니라 중간재 세율과 비중이 서로 유사한 이유로 1%에서 84%에 이르는 수입의존도와 상관없이 약 8%대의 명목세율과 9%대의 실효세율을 대부분 제품이 적용받는데 예외적으로 접착제와 젤라틴의 명목세율이 10%에 가까워 실효세율도 14%에 달한다. 이 밖에도 기타의 기타 화학제품의 세율이 평균치보다 약 1% 내외 정도 낮는데 이러한 기초화학제품의 분포는 단순평균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된다. 또한 전자기기용 기록매체의 경우 실효세율이 1998년 현재 8%를 초과하고 있지만 2000년에 이르면 ITA 협정으로 무세화되어 실효세율<sup>8)</sup>을 기준으로 실효세율이 -7.2%를 유지하게 되며 기타의 기타 화학제품 명목세율은 5.1% 그리고 실효세율은 3.4%로 인하된다.

이외에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에도 균등관세율체제의 영향으로 가중과 단순평균을 불문하고 기타 화학제품과 마찬가지로 각종 제품이 수입의존도와 관계없이 7~8%의 명목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중간재 세율이 약 4%대로 기초화학제품보다 대략 1% 정도 높아 실효관세율은 명목세율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약간 낮다. 마지막으로 고무제품의 경우 8%에 가까운 명목세율과 3%에 이르는 중간재

8) 실효세율은 기본세율과 이보다 낮은 양허세율을 포함한 세율로 구성된다.

세율로 실효세율이 기초 화학제품과 비슷한 9% 선을 유지하는데 예외적으로 기타 고무제품은 명목세율이 3.1%에 불과한 반면 중간재 세율이 이와 유사하여 거의 역관세에 가까운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단순평균으로는 기타 고무제품도 타이어나 산업용 고무제품과 유사한 8%대의 실효세율을 보이므로 기타 고무제품 가운데 수입품이 많은 품목의 세율이 낮은 이유가 규명되어야 한다.

### (3) 비금속광물제품

비금속광물제품은 화학제품과 양상이 유사하여 명목세율이 평균 6.8% 그리고 중간재 세율은 2.2%이며 그 비중은 약 43%로 실효세율은 8.0%에 달한다. 또한 유리제품과 도자기 및 점토제품은 관세율체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수입의존도와 상관없이 명목세율이 대체로 8%에 이르고 실효세율은 9% 선을 유지한다. 중간재 관세율이 2%대로 기타 화학제품에 비하여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중간재 비중이 40%를 못 미쳐 중간재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기타 화학제품보다 보호해야 할 부가가치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중간재 비중이 43%에 이르는 내화요업제품의 경우 실효세율이 약 11%에 달한다. 한편 단순평균을 기준하여도 품목간 관세율 분포는 비슷하며 다만 세율이 약 0.5~1% 정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시멘트 및 콘크리트 제품은 7%의 세율이 적용되는 콘크리트제품을 제외하면 중간재로 간주되어 유리나 도자기 등의 제품에 비하여 명목세율이 5%로 낮고 실효세율도 이와 유사하다. 이외에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의 경우 명목세율의 차이가 제품별로 커서 석회 및 석고제품은 약 3%대의 명목 및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석제품은 다른 제품과 비교할 때 특이하게도 명목세율이 10%를 넘고 중간재 세율은 1.6%에 불과하여 실효세율이 13.4%에 이른다. 아스팔트 제품의 명목세율은 7.8%, 중간재 세율은 3.4%로 석제품과 비교할 수 없지만 중간재 비중이 62%에 달하여 실효세율이 거의 12%에

이르는 데 비하여 명목세율이 아스팔트와 비슷한 기타 토석제품(8.0%)은 중간재 세율(1.8%)이 석제품과 유사하여 실효세율이 10%를 초과한다. 이외 석면과 연마제 등은 8% 이상의 실효세율을 유지한다. 한편 단순평균을 기준하면 석제품의 명목세율도 떨어지지만 아스팔트제품의 실효세율은 대폭 감소하여 다른 제품보다 실효세율(7.2%)이 오히려 낮아진다.

〈표 VI - 13〉 우리나라 비금속광물제품의 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Corden 방식)

(단위: 천만달러, %)

	수입액	수입 의존도	가 중 실 적			
			명 목	실 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 중
9. 비금속광물제품	80.3	0.07	6.81	8.02	2.16	42.94
38. 유리제품	44.6	0.21	8.13	9.17	2.35	36.72
180. 판유리 및 1차유리	13.8	0.41	8.00	9.63	2.15	38.95
181. 산업용 유리제품	23.4	0.14	8.16	9.09	2.38	36.28
182. 기타 유리제품	7.4	0.44	7.99	9.22	2.41	38.38
39. 도자기 및 점토제품	21.7	0.11	8.07	9.55	1.91	34.21
183. 산업용도자기	11.5	0.12	8.13	9.41	2.16	35.78
184. 가정용도자기	2.1	0.11	8.10	9.43	1.80	32.72
185. 내화요업제품	6.9	0.15	8.21	10.89	2.14	42.90
186. 건설용 점토제품	1.2	0.04	7.86	8.80	1.56	27.34
40. 시멘트 및 콘크리트제품	1.2	0.01	5.28	6.07	2.16	48.76
187. 시멘트	0.9	0.03	4.76	5.25	1.49	37.53
188. 레미콘	0.0	0.00	5.00	5.72	2.50	57.46
189. 콘크리트제품	0.3	0.00	6.94	8.51	2.69	49.82
41.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12.6	0.09	8.71	11.23	2.17	41.97
190. 석회 및 석고제품	0.5	0.03	3.73	3.01	2.22	56.38
191. 석제품	3.2	0.08	10.39	13.41	1.62	32.70
192. 석면 및 암면제품	1.9	0.17	7.84	9.79	2.26	42.63
193. 연마제	2.6	0.23	8.06	8.08	3.69	46.22
194. 아스팔트제품	1.3	0.04	7.77	12.11	3.38	62.34
195. 기타 토석제품	3.2	0.15	7.96	10.25	1.80	38.74

## (4) 제1차 금속제품

21개 품목으로 구성된 제1차 금속제품은 비금속광물제품과 비교할 때 부가가치 평균세율(6.3%)은 유사하지만 중간재 비중(64.6%)이 매우 높아 실효세율이 비금속광물제품과 달리 약 12%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원자재에 해당하는 선철 및 강반성품(조강)의 세율은 물론 이와 같은 평균세율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수입액이 상당한 선철의 세율은 거의 영(0)에 가까워 실효세율이 -11.0%에 이르며 단순평균으로도 역관세 현상이 여실히 나타난다. 또한 조강의 세율도 2%에 불과하지만 원자재 세율이 1%에 미치지 못하고 중간재 비중(71%)이 매우 높아 실효세율은 3%대를 넘는다. 한편 합금철은 중간재로 간주되어 4.4%의 세율을 적용받은 결과 실효세율은 5.8%에 이른다.

이보다 가공도가 높은 철강 1차제품의 경우 상당수 품목에서 중간재 세율은 낮으나 그 비중이 높아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을 상당히 초과한다. 특히 철강 1차제품에 속하는 각종 제품의 경우 서로간의 명목세율이 대체로 유사하지만 중간재 세율에서 큰 차이가 날 때 실효세율이 변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우선 철근 및 봉강과 형강의 예를 보면 명목세율이 각각 5.7%, 8.5%이지만 중간재 세율이 1.5%로 워낙 낮은 데 비하여 중간재 비중은 커서 실효세율이 17.4%, 20.1%에 달한다. 특히 철근의 경우 명목세율은 5.7%로 매우 낮지만 중간재 비중이 72%를 상회하여 실효세율이 명목세율과 비교할 때 약 3배에 이른다. 선재나 열간압연강재 그리고 주철물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 8%에 미치지 못하는 명목세율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은 20% 또는 16%선을 유지한다. 이외에 단조물은 주철물에 비하여 명목세율이 높지만 중간재 비중이 50%에 미치지 못하여 실효세율은 약 15%에 이른다.

그러나 강관, 냉간압연강재와 표면처리강재에서는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이 큰 차이가 없어 대략 8%대인 명목세율보다 1% 이내로

실효세율이 높을 뿐이다. 그 이유는 철근 등의 중간재 세율이 2% 이내인 데 비하여 강관 등의 중간재 세율은 매우 높아서 5%를 하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높은 중간재 세율은 명목세율이 5.2%에 불과한 기타 철강 1차제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이 제품의 실효세율은 음의 값(-0.7%)을 갖는데 다만 기타 철강 1차제품의 수입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단순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실효세율이 14%를 초과하는 품목의 중간재 세율이 약 0.5% 이내로 증가하고 명목세율은 감소하여 실효세율이 2~4% 감소하는 것을 제외하면 가중평균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제 1차금속에서도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비철금속 및 1차제품의 경우 제품간의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의 차이보다 큰 변화를 거듭한다. 각종 피제품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25%로 피 중에서는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 및 아연피의 명목세율이 약 4.8%에 이르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피제품의 수입의존도는 70% 이내이며 명목세율은 2~4%이다. 그러나 수입이 절대적으로 많은 동피의 경우 중간재 세율이 0.6%에 불과하고 중간재 비중(67.2%)도 높아 실효세율이 10.8%에 달하는 반면 알루미늄, 기타 비철금속피은 중간재 세율이 약 2%에 달하여 실효세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금은피의 실효세율은 2.3%이지만 이 제품의 경우 금융지원을 위한 변형 수입으로 문제가 되는 품목이다.

한편 전술한 대로 연 및 아연피의 명목세율은 약 4.8%이고 중간재 세율도 낮아 실효세율이 8.3%에 이른다. 이외 기타 비금속 1차제품도 연피와 유사한 모습을 띤다. 동과 알루미늄 1차제품의 경우 각종 피의 후방산업이어서 명목세율이 7.5% 이내인데 이들 피제품의 명목세율이 낮은 탓에 실효세율은 14%를 상회한다. 단순평균을 기준하면 전에는 실효세율이 1%에 못 미치던 알루미늄과 기타 비철금속피에서 명목세율이 4%대로 상승하여 실효세율도 이와 유사해진다. 따라서 이들 제품의 경우 수입이 많은 품목에 세율이 매우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는 동괴의 중간재 세율이 낮아 실효 세율이 10%를 초과하고 명목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과 알루미늄의 1차제품 실효세율도 10%를 상회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표 VI-14〉 우리나라 제1차금속품의 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Corden 방식)

(단위: 천만달러, %)

	수입액	수 입 의존도	가 중 실 적			
			명 목	실 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 중
10. 제1차금속	1,173.6	0.23	6.30	11.98	2.31	64.61
42. 선철 및 강반성품	205.3	0.18	1.62	1.26	1.13	71.09
196. 선철	119.6	0.29	0.18	-11.00	2.87	74.90
197. 합금철	46.9	0.72	4.36	5.78	1.10	42.08
198. 강반성품(조강)	38.8	0.09	1.82	3.41	0.80	71.09
43. 철강1차제품	157.4	0.15	7.68	15.07	2.75	63.50
199. 철근 및 봉강	15.1	0.07	5.74	17.38	1.53	72.33
200. 형강	10.1	0.23	8.49	20.12	1.54	60.46
201. 선재 및 케조	3.2	0.21	7.92	19.47	1.42	62.43
202. 열간압연강재	59.0	0.22	7.47	20.23	1.43	65.82
203. 강관(주철강관제외)	28.0	0.20	8.06	8.89	5.15	67.30
204. 냉간압연강재	16.8	0.11	8.24	9.56	4.57	60.98
205. 주철물	4.0	0.04	7.69	16.41	1.89	60.35
206. 단조물	2.2	0.05	8.40	14.58	1.34	47.88
207. 표면처리강재	18.9	0.11	8.32	9.32	4.51	58.75
208. 기타 철강1차제품	0.1	0.00	5.21	-0.68	5.27	68.43
44. 비철금속피 및 1차제품	810.9	0.46	6.27	12.16	1.96	61.72
209. 동괴	114.8	0.67	3.83	10.84	0.59	67.21
210. 알루미늄괴	95.2	0.82	2.09	0.38	1.66	61.17
211. 연 및 아연괴	15.9	0.25	4.78	8.34	0.99	52.05
212. 금은괴	461.9	0.76	3.01	2.32	1.92	64.50
213. 기타 비철금속괴	35.7	0.68	2.62	0.76	1.95	60.67
214. 동1차제품	27.8	0.16	7.73	14.10	2.48	60.37
215. 알루미늄1차제품	39.5	0.21	7.48	17.25	1.89	63.77
216. 기타 비철금속1차제품	20.2	0.38	5.70	9.88	2.35	64.73

## (5) 금속제품

수입의존도가 매우 낮은 금속제품은 명목세율이 부가가치 가중평균으로 7.5%를 적용받고 중간재 세율은 약 4% 그리고 중간재 비중은 대략 53%에 이르러 명목세율과 실효세율간에 차이가 별로 없다. 제품간의 명목세율은 균등관세율체제의 영향으로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를 제외하면 대략 6~8% 사이에서 변화하는 데 비하여 실효세율은 3%에서 10%까지 차이가 난다.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의 경우 중간재 세율(4.5%)이 명목세율(4.4%)보다 높아 -0.6%의 역관세 현상을 보이며 금속포장용기도 세율이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세율이 3.0%에 불과하다. 이외 명목세율보다 실효세율이 낮은 품목이 다수 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아 건물용 금속제품, 나사제품, 부착용 금속제품에서 1% 정도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낮다.

〈표 VI-15〉 우리나라 금속제품의 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Corden 방식)

(단위: 천만달러, %)

	수입액	수입 의존도	가 중 실 적			
			명 목	실 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 중
11. 금속제품	86.2	0.07	7.48	7.23	3.97	53.06
45. 금속제품	86.2	0.07	7.48	7.23	3.97	53.06
217. 건물용 금속제품	1.5	0.01	6.79	5.48	4.61	62.22
218. 금속구조물	16.1	0.02	7.79	7.60	4.45	56.95
219.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4.8	0.09	4.40	-0.60	4.52	60.97
220. 금속포장용기	4.3	0.06	5.90	3.04	4.53	57.90
221. 공구류	19.1	0.41	7.92	10.06	3.45	55.30
222. 나사제품	6.2	0.06	6.68	5.46	3.51	46.77
223. 철선제품	3.6	0.05	8.88	10.13	4.27	54.33
224. 부착용 금속제품	4.0	0.11	6.38	5.23	3.62	49.29
225. 금속처리	0.0	0.00	8.00	9.73	1.81	35.13
226. 가정용 금속제품	2.9	0.09	7.87	8.22	3.82	51.01
227. 기타 금속제품	23.9	0.16	7.33	6.98	3.73	49.11

한편 실효세율이 10%에 이르는 금속제품은 공구류, 철선제품, 금속처리제품이 있는데 이들 제품의 명목세율은 8%를 약간 초과하기 때문이며 공구류의 경우 특히 수입의존도가 41%로 다른 금속제품의 수입의존도를 4배 이상 초과한다. 그러나 수입이 전혀 없는 금속처리제품의 중간재 세율(1.8%)은 다른 금속제품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고 중간재 비중도 작다. 단순평균과 가중평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다만 역관세 현상이 나타났던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의 실효세율은 1.9%로 양(+ )의 값을 갖지만 절대적 세율은 다른 제품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다.

#### (6) 일반기계

일반기계의 경우 균등관세율체계가 대체로 잘 적용되고 있는 산업이다. 특히 일반기계도 금속제품과 마찬가지로의 양상을 띠어 명목과 실효세율이 유사한데 단지 세율이 금속제품보다도 약 0.5% 이상 낮아서 평균적으로 명목과 실효세율이 각각 7.0%, 6.4%에 이른다. 그러나 특수목적용 기계 및 장비류에서는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낮은 현상이 많이 발견된다. 또한 수입의존도도 5%에서 69%로 제품간에 편차가 심하지만 관세율이 이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류를 보면 각 품목의 명목세율이 6.5~8.2% 사이에 있고 실효세율은 5.7~9.0%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일반목적용 기계에서도 몇몇 제품의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낮은데 그 차이는 0.7% 이내이다. 또한 엔진과 터빈의 경우 실효세율(5.7%)이 6% 이하로 떨어지는 이외 특이한 점이 나타나지 않으며 단순평균으로 살펴보아도 큰 차이가 없다.

특수목적용 기계 및 장비류의 경우 수입의존도와 관계없이 명목세율이 일반기계보다 약간 낮은 4.9~7.7% 사이에 있다. 그리고 중간재 세율이 일반기계보다 약간 높아서 대다수 품목의 경우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낮은 5.2~7.7% 사이에 놓여져 있다(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외). 수입의존도(67%)와 수입액이 큰 기타 특수목

〈표 VI-16〉 우리나라 일반기계의 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Corden 방식)

(단위: 천만달러, %)

	수입액	수입 의존도	가 중 실 적			
			명 목	실 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 중
12. 일반기계	775.9	0.37	7.00	6.44	3.88	53.00
46.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	418.4	0.30	7.33	7.13	3.85	52.08
228. 엔진 및 터빈	75.7	0.45	6.43	5.74	3.79	55.40
229. 밸브	50.4	0.42	7.84	8.28	3.51	48.15
230. 베어링, 기어 및 전동요소	51.5	0.42	8.25	8.98	3.51	47.10
231. 산업용운반기계	44.5	0.24	7.00	6.34	3.86	52.01
232. 공기조절장치 및 냉장냉동장비	31.3	0.13	7.59	7.61	4.03	53.67
233. 보일러	17.2	0.12	6.93	6.41	3.76	51.78
234. 난방 및 조리기기	1.5	0.07	8.06	8.63	3.82	50.75
235. 펌프 및 압축기	78.5	0.59	7.63	7.82	4.22	56.75
236. 공기 및 액체여과청정기	21.4	0.27	7.24	6.89	3.59	48.40
237. 기타 일반목적용기계	46.5	0.41	7.05	6.44	3.93	52.71
47. 특수목적용기계 및 장비	357.5	0.46	6.49	5.38	3.92	54.43
238. 금속절삭가공기계	31.1	0.40	6.21	5.20	3.67	52.60
239. 금속성형처리기계	33.2	0.53	6.75	5.88	4.08	55.98
240. 농업용 기계	5.9	0.10	7.57	7.66	4.71	63.39
241. 건설 및 광물처리기계	17.4	0.21	7.09	6.66	4.14	56.27
242. 음식품가공기계	8.3	0.36	7.72	7.67	4.55	59.54
243. 섬유기계	27.4	0.58	6.58	5.61	3.35	45.96
244. 금형 및 주형	7.3	0.05	7.23	7.42	3.51	50.24
245. 제지 및 인쇄용기계	22.1	0.69	6.26	5.19	3.69	52.72
246. 기타 특수목적용기계	204.8	0.67	4.92	1.34	4.19	58.01

적용 기계의 경우 명목세율(4.9%)과 중간재 세율(4.2%)이 유사하여 실효세율은 1.3%에 불과하다. 더욱이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에서는 ITA협정에 해당하는 품목이 많아 2000년에 실행세

율을 기준으로 할 때 명목세율이 4.2%로 감소하여 실효세율이 미미하게나마 음(-)의 값을 갖게 된다. 이외에도 각종 금속기계와 제지 및 인쇄용 기계, 섬유기계가 엔진 및 터빈과 마찬가지로 다른 기계에 비하여 낮은 5%대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다. 한편 단순평균으로 보면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의 명목세율은 6.3%로 증가하여 실효세율도 4.9%에 이르는데 이와 반대로 건설 및 광물처리기계는 명목세율의 감소로 실효세율이 오히려 6.7%에서 3.4%로 많이 떨어진다.

#### (7) 전기·전자기기

전기·전자기기는 ITA 협정으로 상당수 품목에서 무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이므로 1998년 실적관세율로 관세율 개편을 논하기가 어려운 품목이며 무세화와 연계하여 전·후방산업에 대한 관세율 조정 논의가 필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본절에서의 논의는 28개 품목으로 분류되는 전기·전자기기의 현황과 2000년 이후의 추이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본다.

전기·전자기기의 경우 ITA 협정의 영향으로 1998년 당시 평균적으로 명목세율은 5.6%에 이르고 중간재 세율은 기계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2.9%이어서 실효세율은 이보다 높은 6.3%에 달한다. 특히 전기·전자기기는 대략 전기기계 및 장치, 전자기기 부분품, 이외에 소비품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사용 용도에 따라 세율이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기계와 장치와 소비용품은 8%대의 세율이, 부분품은 ITA의 영향으로 2%대의 세율이 적용된다.

우선 전기기계 및 장치의 경우 수입의존도와 관계없이 제품간에 7~8%의 균등한 세율이 적용되고 실효세율도 이와 유사하다. 단지 전선과 케이블 그리고 전지가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간재(3.3% 이하) 때문에 비슷한 명목세율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이 10%를 초과한다. 이외 기타 전기장비가 5.5%, 변압기가 6.4%의 실효세율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제품간에 큰 차이가 없으며 단순평균

으로도 변압기와 발전기 및 전동기가 실효세율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다음 장에서 논의되겠지만 ITA협정으로 2000년과 2004년에 관세율이 변하는 품목은 대부분 1% 이내로 실행세율<sup>9)</sup>이 인상 또는 인하되는데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는 2000년부터 가중평균 실행세율을 기준으로 명목세율이 1% 인하되어 실효세율은 5.7%에 달한다.

전자기기 부분품의 경우 개별소자와 집적회로에 관한 ITA협정 때문에 제품간의 세율격차가 심하다. 다른 제품의 경우 기타 전자표시장치와 기타 전자부품을 제외하면 명목과 실효 각 세율이 대략 유사하여 8% 내외에 이른다. 명목세율이 각각 12%, 9.8%에 달하는 기타 전자표시장치와 기타 전자부품은 실효세율이 16.8%, 13.3%에 이르지만 단순평균으로는 실효세율이 10% 이내로 감소한다. 한편 개별소자와 집적회로는 명목세율이 2%대로 개별소자는 역관세(-1.3%), 집적회로는 1%대의 낮은 실효세율을 보이며 단순평균으로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기본세율 기준인 실행세율을 기준할 때 2000년부터 무세화되어 -4.6%의 역관세가 적용될 개별소자 이외에 ITA협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품목은 저항기와 축전기(8.0%), 인쇄회로기판(7.8%), 기타 전자부품(13.3%)으로 이들 품목의 실효세율은 2000년에 각각 -4.9%, 2.9%, 3.4%로 감소하며 인쇄회로기판의 경우 2004년에 이르면 실효세율이 -3.2%로 떨어지게 된다(실행세율 기준).

소비제품에 가까운 영상 및 음향·통신기기의 경우 VTR, 음향기기, 기타 영상음향기기, 무선통신방송장비 등은 대략 8%대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실효세율은 이보다 약간 높거나 낮으며 단순평균

9) 실행세율은 전술한 대로 기본세율과 이보다 낮은 양허세율을 포함한 세율로 탄력세율 등을 감안하지 않는다.

으로는 이러한 경향이 전 품목에서 나타난다(음향기기 제외). 그러나 가중평균으로는 중간재 비중(70.5%)과 그 세율(5.6%)이 높은 TV의 경우 약 11.6%의 명목세율로 인하여 실효세율이 23.4%에 이르는데 다만 단순평균으로는 실효세율이 11%로 줄어든다. 음향기기도 이와 유사하여 명목세율이 9.4%에 이르고 중간재 비중이 많아 중간재 세율(4.9%)이 다른 제품에 비하여 높지만 실효세율이 14.7%에 달한다.

ITA협정에 따른 효과를 보면 전자부분품에 관한 세율인하로 영상 등 당해 산업은 혜택을 입어 실행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 2000년 당시 TV, VTR 그리고 음향기기의 실효세율이 각각 13.1%(0.7% 증가), 14.4%(1.3%), 17.8%(3.3%) 증가한다. 그러나 유선통신기기의 경우 약 3.3%에 이르는 명목세율의 인하(2.7%)로 실효세율이 1.4%에 불과하게 되며 2004년에는 완전 무세화로 실효세율이 -3.3%의 역관세 현상을 띠게 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경우 중간재 비중(70.2%)이 특히 컴퓨터에서 많아 명목세율(7.5%)에 비하여 실효세율(10.6%)이 3% 포인트 정도 높다. 그러나 사무용기기는 명목과 실효세율이 서로 유사하여 7%를 조금 초과하며 단순평균 세율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컴퓨터의 경우 ITA협정에 따라 명목세율(실행세율 기준)은 2000년에 1.8%(-2.9% 포인트 감소), 2004년에 무세화되어 실효세율이 -7.4%가 된다. 또한 사무용기기도 2000년에는 세율이 2.1% 포인트 감소하여 4.1%가 되고 실효세율은 2.6%로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가정용 전기기기의 경우 8%를 전후한 세율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실효세율도 8% 내외로 산업간에 큰 차이가 없는데 가정용 전열기기는 예외적으로 가중평균 세율이 8.8%에 달하여 실효세율이 11.1%로 높은 편이다. 이들 제품은 TV 등과 마찬가지로 ITA협정의 영향권에 속하여 실효세율이 향후에 인상되는 품목인데 다만 그 인상폭이 1% 이내이다.

〈표 VI-17〉 우리나라 전기·전자기기의 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Corden 방식)

(단위: 천만달러, %)

	수입액	수입 의존도	가 중 실 적			
			명 목	실 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 중
13. 전기·전자기기	2,064.4	0.32	5.59	6.28	2.86	47.97
48. 전기기계 및 장치	314.5	0.23	7.55	8.34	3.60	52.36
247. 발전기 및 전동기	60.0	0.35	7.41	7.47	3.84	52.64
248. 변압기	12.2	0.44	6.97	6.43	3.55	48.81
249. 기타 전기변환장치	30.1	0.17	8.05	8.74	3.33	46.22
250.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93.9	0.24	7.63	7.89	3.87	53.10
251. 전선 및 케이블	22.7	0.07	7.74	10.88	3.34	58.68
252. 전지	39.6	0.33	8.61	10.71	3.05	46.73
253. 전구 및 조명장치	13.4	0.12	7.74	7.94	3.75	50.09
254. 기타 전기장비	42.6	0.39	6.37	5.50	3.39	48.00
49. 전자기기부품	1,420.6	0.53	3.54	2.97	1.95	40.35
255. 전자관	77.9	0.29	8.19	8.54	4.68	58.76
256. 기타 전자표시장치	18.3	0.47	11.72	16.80	3.97	50.57
257. 개별소자	127.2	0.84	2.28	-1.31	2.61	61.77
258. 집적회로(IC)	1,057.2	0.75	2.15	1.20	1.31	36.07
259. 저항기 및 축전기	42.7	0.35	7.87	8.01	3.37	44.95
260. 전자코일 및 변성기	0.0	0.04	8.00	8.64	4.53	60.13
261. 인쇄회로기판	29.6	0.11	7.79	7.81	4.00	51.72
262. 기타 전자부품	67.7	0.37	9.81	13.34	3.63	51.58
50.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153.1	0.17	8.55	12.47	4.10	58.98
263. TV	10.7	0.07	11.60	23.42	5.58	70.46
264. VTR	1.7	0.05	7.72	9.83	3.91	60.11
265. 음향기기	13.5	0.17	9.37	14.69	4.93	67.11
266. 기타 영상음향기기	8.5	0.12	7.82	7.71	4.74	60.19
267. 유선통신기기	48.5	0.15	7.73	9.21	3.27	50.65
268.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70.2	0.36	6.96	8.12	3.16	52.45
51. 컴퓨터 및 주변기기	167.6	0.37	7.45	10.22	4.33	67.36
269. 컴퓨터 및 주변기기	150.4	0.37	7.47	10.59	4.47	70.17
270. 사무용기기	17.3	0.35	7.28	7.63	3.29	47.72
52. 가정용 전기기기	8.6	0.05	8.06	9.37	4.03	55.82
271. 냉장고	2.7	0.04	7.70	8.45	3.71	52.19
272. 세탁기	0.7	0.01	7.85	9.04	4.16	58.35
273. 선풍기	0.6	0.02	7.40	7.47	4.17	56.40
274. 가정용 전열기기	4.7	0.08	8.82	11.14	4.27	57.93

(8) 정밀기기

정밀기기는 다른 전자제품과 달리 품목간의 세율격차가 존재하는 품목이며 수입의존도는 높고 중간재 세율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약간 낮은 편이다. ITA 품목에 해당하는 측정 및 분석기기의 경우 수입액이 많고 수입의존도는 73%로 높지만 명목세율이 4.9%로 다른 정밀기기보다 낮으며 실효세율은 이보다 더 낮은 3.0%에 불과하다. 이 제품은 관세감면의 대상 품목으로 추정되어 실적세율이 매우 낮는데 실행세율 기준으로는 2004년이 되면 명목세율이 5.0%로 1.3% 포인트 감소하고 실효세율은 4.4%가 된다.

ITA 품목은 아니지만 그 영향권에 있는 촬영기 및 영사기도 명목세율이 4.9%로 낮고 실효세율은 이보다 더 낮은 3.7%에 불과하다. 이외 의료기기의 명목과 실효세율이 각각 6.1%, 5.3%인 것을 제외하면 다른 정밀기기 제품은 명목과 실효세율이 유사하여 7~8%의

〈표 VI-18〉 우리나라 정밀기기의 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Corden 방식)

(단위 : 천만달러, %)

	수입액	수입 의존도	가 중 실 적			
			명 목	실 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 중
14. 정밀기기	363.0	0.60	6.59	6.28	2.71	40.23
53. 정밀기기	363.0	0.60	6.59	6.28	2.71	40.23
275.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7.2	0.14	7.13	7.11	4.28	59.84
276. 의료기기	39.7	0.62	6.08	5.26	2.68	38.23
277.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27.2	0.25	7.61	8.55	2.17	35.75
278. 측정 및 분석기기	180.3	0.73	4.89	3.02	3.04	47.64
279. 촬영기 및 영사기	48.3	0.31	4.94	3.66	2.15	31.14
280. 기타 광학기기	44.9	0.72	7.34	7.34	2.36	33.05
281. 시계	15.3	0.78	8.14	8.78	3.36	44.72

세율을 적용받는다. 단순평균을 기준하면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의 세율이 2% 포인트 정도 하락하여 실효세율이 5%로 떨어지는 것을 제외하면 측정 및 분석기기(5.2%)와 촬영기 등(6.3%) 그리고 기타 가정용전기기기(9.8%)를 포함한 여러 제품의 실효세율은 올라간다.

#### (9) 수송장비

IO 교역재 산업에서 마지막 부문에 해당하는 수송장비의 명목세율은 평균 5.3%에 달하지만 실효세율은 이보다 매우 낮은 1.7%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중간재 세율이 평균 4.7%로 상당히 높기 때문

〈표 VI-19〉 우리나라 수송장비의 실효관세율 분포  
(1998년, Corden 방식)

(단위: 천만달러, %)

	수입액	수입 의존도	가 중 실 적			
			명 목 실 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 중	
15. 수송장비	282.1	0.13	5.31	1.66	4.74	61.83
54. 자동차 및 부분품	109.1	0.06	6.21	3.11	4.98	63.84
282. 승용차	1.4	0.02	5.18	-0.16	5.22	66.04
283. 승합차	0.0	0.00	0.00	-15.47	5.39	69.04
284. 화물차	1.1	0.03	9.90	15.09	5.30	67.75
285. 특장차	1.9	0.09	6.48	3.46	5.24	67.26
286. 자동차용 엔진	16.6	0.09	7.89	8.30	5.11	66.70
287. 자동차 부분품	85.0	0.10	7.98	8.34	4.48	58.28
288. 트레일러 및 컨테이너	3.1	0.13	2.29	-5.86	4.52	62.68
55. 선박	40.2	0.34	1.16	-5.41	3.87	52.53
289. 강철제 선박	11.4	0.40	0.24	-7.20	3.89	52.88
290. 기타 선박	25.5	0.29	4.67	1.03	4.12	58.13
291. 선박수리 및 부분품	3.2	0.06	8.21	8.51	3.70	48.43
56. 기타 수송장비	132.8	0.55	3.31	-0.06	3.14	57.49
292. 철도차량	17.0	0.22	2.91	-3.30	4.11	62.68
293. 항공기	112.3	0.75	0.16	-3.65	1.59	55.44
294. 모터사이클	2.4	0.11	8.78	10.13	4.20	54.08
295. 자전거 및 기타 수송장비	1.1	0.18	7.06	6.54	3.97	53.57

이며 이러한 현상은 자동차, 선박 그리고 기타 수송장비에 걸쳐서 다수의 품목에서 나타난다.

우선 중간재 비중이 70%를 육박하는 자동차의 경우 명목세율이 0%(승합차)에서 9.9%(화물차)까지 다양한 반면 중간재 세율은 5.2% 이상이어서 실효세율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승용차는 중간재와 명목세율이 5.2%로 동일하여 실효세율이 거의 음(-)의 값을 갖고 승합차는 무세화와 함께 높은 중간재 비중으로 실효세율이 -15.5%에 달한다. 반면 화물차는 높은 명목세율로 승합차와 정반대로 실효세율이 15%에 이르고 특장차는 중간재 세율이 높아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의 절반 수준인 3.5%에 불과하다. 단순평균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비슷하고 특히 명목세율(3.6%)이 더욱 낮아지는 승용차의 실효세율은 -3.6%에 이른다.

한편 수입이 별무한 완성차에 비하여 수입이 많은 자동차 부분품의 경우 명목과 실효세율이 유사하여 약 8%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트레일러와 컨테이너는 중간재 세율 4.5%에 비하여 2.3%에 불과한 명목세율로 -5.9%의 실질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단순평균으로는 역관세 크기가 -3.0%로 줄지만 동시에 자동차용 엔진은 실효세율이 8.3%에서 4.3%로 감소한다.

선박의 경우 8%대의 세율을 적용받는 선박수리와 부분품을 제외하면 수입의존도가 40%로 높은 강철제 선박은 중간재 세율은 3.9%인데 비하여 명목세율이 거의 0%에 가까워 -7.2%에 달하는 역관세 현상을 보인다. 기타 선박도 명목과 중간재 세율이 4%대로 비슷하여 실효세율이 1%에 불과한데 단순평균으로는 음의 실효세율(-0.9%)을 갖는다. 이외 기타 수송장비에서는 수입의존도가 각각 22%, 75%인 철도차량과 항공기의 명목세율이 2.9%와 0.2%에 불과하여 실효세율은 각각 -3.3%, -3.7%에 달한다. 철도차량과 항공기에서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되 명목세율에 비하여 실효세율이 비슷한 이유는 전자의 경우 중간재 세율이 4.1%로 높고 항공기는 중간재

세율이 1.6%로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터싸이클과 자전거 등 기타 수송장비는 8.8%, 7.1%에 이르는 명목세율로 실효세율이 10.1%, 6.5%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경우 단순평균으로는 실효세율이 감소하여 7.5%, 5.3%가 된다.

## Ⅶ. ITA 협정과 실효관세율의 변화

### 1. ITA 협상내용과 수출입동향

우리나라는 UR 협상시 반도체 등 전자제품 386개 품목에 대한 점진적 무세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정보기술협정(ITA)을 체결하고, 이 밖에도 건설장비, 의료기기 및 철강제품 등에 대하여 관세인하 내지는 무세화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정보기술협정으로 인하여 각국은 1997년 7월 1일 이후 관련 품목의 관세율을 2000년 1월 1일까지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면서 2000년에는 원칙적으로 완전 무세화한다<sup>1)</sup>.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예조항으로 인하여 2000년에 193개 품목이 무세화되며 이후 2004년까지 HS 10단위 기준 386개 품목이 완전 무세화된다<sup>2)</sup>.

정보기술협정으로 인하여 관세를 포함한 여타 수입과징금이 무세화되는데 이는 최혜국조치로서 모든 WTO 회원국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협상국은 또한 정보기술교역 확대를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고 대상 품목과 협상 참여국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정보기술협정의 주요 대상 품목은 CPU, 모니터, 프린터 등 컴퓨터 및 관련부품과 전화, 팩스, TV, 라디오 송신기기 등의 전자통

- 
- 1)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ITA에 참여한 국가는 호주, 일본, 캐나다, 타이완, 노르웨이, EC(15개국),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아이슬란드, 터키, 인도네시아, 미국 등 29개국이다. 이후 참여한 국가는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태국, 체코 공화국, 인도, 이스라엘 등 11개국으로 총 40개국인데 이들 국가가 정보기술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2.5%에 달한다.
  - 2) 우리나라 이외에 유예조항을 받은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그리고 태국이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도 2005년까지는 전 품목이 무세화된다.

신,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설비 등을 포함한다. 이 밖에도 디스켓과 CD-ROMs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과학계기뿐만 아니라 전자계산기, 워드프로세서, ATM, LAN & WAN, 저항기 등도 협상 품목이며 단, TV나 비디오 등 전자 소비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1995년을 기준으로 할 때 ITA 품목의 세계 총 교역규모는 약 6천억달러를 상회하며 전체 교역액의 10%를 초과하고 있으며 ITA 제품의 무역 증가율은 약 25%로 평균 교역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이 중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약 330억달러로 일본(1,066억달러), 미국(980억달러), EU(571억달러)에 이어 세계 제 5위이며 수입액으로는 165억달러로 미국(1,399억달러), EU(1,048억달러), 일본(377억달러)에 이어 세계 제 8위이다. 참고로 대만의 수출·입액이 각각 287억달러, 165억달러였고 중국은 145억달러, 144억달러였다.

〈표 VII-1〉 정보기술협정(ITA) 등 UR 분야별 협정의 우리나라 참여내용

분 야	미국·EC·APEC 합의내용	우리나라 참여내용
전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용·사무용 전자기기: 평균 60% 인하</li> <li>- 반도체, 반도체장비, 컴퓨터 및 주변기기: 5년 무세화</li> <li>총 15개 품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5년 무세화</li> <li>- 반도체장비: 국산화 불가 품목 10년 무세화</li> <li>-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일부 품목 10년 무세화(총10개 품목)</li> </ul>
종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1개 품목(HS 47~49류): 10년 무세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8개 품목: 10년 무세화</li> <li>- 3개 품목: 15년 무세화</li> </ul>
완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 품목: 10년 무세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무세화(8개 품목)</li> </ul>
비 철 금 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석, 니켈, 구리: 5년 무세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리 중 일부 품목: 10년 무세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타 품목: 최고세율을 5%로하고 33% 이상 인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타 품목: 50% 인하 (1986년 10~25%→5~13%)</li> </ul>
과 학 장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개 품목: 평균 65% 인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 65% 인하 (1986년 15~30%→8~13%)</li> </ul>

자료: 장근호, 『열린시대의 관세율정책: 수입구조의 평가와 우리나라 관세율체계의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1997.

〈표 VII-2〉 정보기술협정(ITA) 품목의 연도별 기중평균 관세율  
(1998년 수입액 기준)

(단위: 개, 억원, %)

	품목수	수입액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기록매체출판 및 복제	12	2,936.3	3.4	0.0	0.0	0.0	0.0	0.0
전자기기용 기록매체	8	2,523.4	5.0	0.0	0.0	0.0	0.0	0.0
사진용 화학제품	1	310.0	5.0	0.0	0.0	0.0	0.0	0.0
기타 화학제품	2	5,757.3	2.0	0.0	0.0	0.0	0.0	0.0
산업용 유리제품	1	75.3	4.0	0.0	0.0	0.0	0.0	0.0
산업용 운반기계	6	416.9	1.2	0.0	0.0	0.0	0.0	0.0
공기 및 액체여과청정기	2	1.6	4.0	0.0	0.0	0.0	0.0	0.0
기타 일반목적용기계	3	3.7	0.0	0.0	0.0	0.0	0.0	0.0
금속절삭가공기계	2	5.9	4.0	0.0	0.0	0.0	0.0	0.0
금속성형처리기계	3	374.3	3.7	0.0	0.0	0.0	0.0	0.0
금형 및 주형	1	64.0	4.0	0.0	0.0	0.0	0.0	0.0
기타 특수목적용기계	17	6,956.7	3.8	0.0	0.0	0.0	0.0	0.0
기타 전기변환장치	13	539.1	5.1	1.2	0.9	0.6	0.3	0.0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8	2,990.9	4.5	0.0	0.0	0.0	0.0	0.0
전선 및 케이블	10	211.6	4.3	0.0	0.0	0.0	0.0	0.0
기타 전기장비	5	516.0	3.8	0.0	0.0	0.0	0.0	0.0
기타 전자표시장치	1	1.3	4.0	0.0	0.0	0.0	0.0	0.0
개별소자	26	17,764.2	0.0	0.0	0.0	0.0	0.0	0.0
집적회로(IC)	15	147,669.0	0.0	0.0	0.0	0.0	0.0	0.0
저항기 및 축전기	25	5,966.4	3.7	0.0	0.0	0.0	0.0	0.0
인쇄회로기판	3	3,924.6	7.2	4.8	2.4	0.0	0.0	0.0
기타 전자부품	2	4,144.6	5.0	0.0	0.0	0.0	0.0	0.0
기타 영상음향기기	4	44.7	5.9	0.0	0.0	0.0	0.0	0.0
유선통신기기	45	6,772.9	6.0	2.7	1.3	0.0	0.0	0.0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15	2,402.9	5.9	2.8	1.4	0.0	0.0	0.0
컴퓨터 및 주변기기	47	21,001.7	5.1	1.8	1.4	0.9	0.5	0.0
사무용기기	33	1,184.1	4.3	0.0	0.0	0.0	0.0	0.0
측정 및 분석기기	60	7,315.1	4.8	1.8	1.4	0.9	0.5	0.0
촬영기 및 영사기	4	4,598.4	0.0	0.0	0.0	0.0	0.0	0.0
기타 광학기기	5	31.5	4.4	0.0	0.0	0.0	0.0	0.0
전 체	379	246,504.4	1.4	0.4	0.2	0.1	0.1	0.0

자료: 재정경제부, 전산자료.

우리나라 ITA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8년 당시 관세가 폐지된 기타 일반용 목적기계, 개별소자, 집적회로, 촬영기 및 영사기의 48개 품목 이외에 2000년에 무세화되는 품목으로 기록매체 및 출판(12개 품목), 화학과 유리제품(12개 품목), 기계류(31개 품목), 기타 광학기계(5개 품목)의 60개 제품 그리고 각종 전기장치, 저항기 그리고 사무용기기 등 전기·전자기계의 88개 제품으로 총 196개 품목이 있다. 이후 연도별로 세율이 균일하게 인하되면서 2001년에 무세화되는 품목에는 인쇄회로기판, 유선 통신기기, 무선 통신 및 방송장비 63개 품목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2004년에 무세가 적용되는 품목에는 기타 전기변환장치,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전기·전자기계에 60개 제품 그리고 측정 및 분석기계에 60개 제품으로 총 183개 품목이 있다.

〈표 Ⅶ-3〉 정보기술협정(ITA) 품목의 수출입액 및 관세율(1998년)  
(단위: 개, 십억원, %)

	품목수	수출액	수입액	무역 특화 지수	단순 실행 세율	단순 실적 세율
전체	374	37,029.4	24,650.4	20.0	3.8	6.1
인쇄, 출판 및 복제	12	22.7	293.6	-85.6	2.8	4.3
기타 화학제품	11	981.4	859.1	-6.6	4.4	7.2
유리제품	1	4.0	7.5	-30.4	4.0	7.9
일반목적용기계 및 장비	11	10.7	42.2	-59.5	2.0	5.2
특수목적용기계 및 장비	23	137.8	740.1	-68.6	3.9	5.9
전기기계 및 장치	36	284.1	425.8	-20.0	4.4	7.3
전자기기부분품	72	25,188.5	17,947.0	16.8	1.8	4.9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62	3,134.0	922.1	54.5	6.2	7.4
컴퓨터 및 주변기기	78	7,086.5	2,218.6	52.3	4.3	6.7
정밀기기	68	179.6	1,194.5	-73.9	3.1	5.3

주: 1995년 한국은행 IO 75개 사업 기준이며 품목수는 구분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재경부 전산자료.

정보기술협정은 품목수로 보면 HS 10단위로 386개 품목에 불과하지만 <표 VII-3>에서 보듯이 그 수입액은 1998년 현재 약 24조 7천억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18.9%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도 교역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 산업도 전자산업 이외에 인쇄·복제, 화학, 기계, 정밀기계 산업 등으로 매우 포괄적이다. 또한 잠재적 성장력 등 정보기술 관련 산업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면 무세화에 따른 역관세 현상 등을 참작하여, 전방산업에 관한 관세율 조정이 이루어지고 여타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ITA 산업에 관한 관세율정책을 재정립할 시점에 있다.

정보기술 관련 품목을 산업별로 구분해 보면 1998년 현재 총 386개 품목 중 실제 수출입되고 있는 품목은 374개 품목으로서 이들 제품의 대부분이 전자기계 및 장치, 전자기기 부분품, 영상·음향·통신기기와 컴퓨터기기 등 주로 전기·전자기기(248개 품목)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외에도 인쇄·출판·복제(12개 품목)와 화학제품(11개 품목) 그리고 일반기계(34개 품목) 및 정밀기기(68개 품목)에도 다수 품목이 존재한다<sup>3)</sup>.

ITA 품목의 수입액은 24조 7천억원으로 전술한대로 1998년 당시 전체 수입액의 18.9%에 이르고 수출액은 37조원에 달하여 전체적으로는 무역흑자이지만 인쇄·출판·복제, 일반과 특수 목적용 기계, 전자기계 및 장치 그리고 정밀기기 품목은 무역적자 품목으로 무역특화지수도 -0.7를 상회한다. <표 VII-3>에서 보면 전체 무역흑자 12조 4천억원의 대부분이 전자기기 부분품과 영상, 음향 및

3) ITA 대상 386개 품목(HS 10단위 기준) 중에서 HS-IO 분류가 불가능한 7개 품목을 제외하고 자료 중에서 세율이 존재하지 않는 4개 품목을 제외하면 375개 품목이 남는데 기타 통신사업 교환기(HS 8517301000)는 관세율이 전자식의 것(2000년 4.3%)과 기타(2000년 5.3%)로 구분되므로 376개 품목이 되는데 수입이 없는 5개 품목을 제외하면 통계분석이 가능한 품목은 총 369개 품목이다.

통신기기 그리고 컴퓨터와 주변기기에서 발생하여 이 부분의 흑자가 14조 3천억원(수출액 35조 4천억원, 수입액 21조 1천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무역흑자는 주로 집적회로(수출액 22조 8천억원, 흑자 8조원), 무선통신과 방송장비(수출액 2조 2천억원, 흑자 2조원), 컴퓨터와 주변기기(수출액 6조 9천억원, 흑자 4조 8천억원), 전자기기용 기록매체(수출액 8천억원, 흑자 5천억원) 그리고 인쇄회로기판(수출액 7천억원, 흑자 2천억원)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무역적자는 개별소자(수입액 1조 8천억원, 적자 7천억원), 측정 및 분석기기(수입액 7천억원, 적자 7천억원),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수입액 7천억원, 적자 6천억원), 기타 화학제품(수입액 6천억원, 적자 5천억원), 촬영기 및 영사기(수입액 5천억원, 적자 4천억원), 기록매체, 출판 및 복제(수입액 3천억원, 적자 3천억원) 그리고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수입액 3천억원, 적자 2천억원) 등으로 다수 품목에 소액으로 분산되어 있다(〈표 VIII-4〉 참조).

구체적으로는 무역특화지수가 음(-)의 값을 갖는 ITA 품목은 교역대상인 총 380개 품목 중에서 268개 품목으로 이들 품목의 무역적자가 16조 8천억원(수출 2천억원, 수입액 17조원)에 달하며, 특화지수가 양(+)의 값을 갖는 품목은 112개 품목으로 무역흑자는 27조 1천억원(수출 34조 8천억원, 수입액 7조 7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무역특화지수가  $-0.8$  이하인 품목은 147개인 반면  $0.8$ 을 초과하는 품목은 44개 품목에 달한다.

특히, 1998년 당시 수출액이 10억달러 이상인 품목은 전자집적회로 중에 기타의 기타(HS 8542199090, 수출 12조 7천억원, 흑자 8조 3천억원), 기억소자(HS 8542199010, 수출 8조 8천억원, 흑자 7조 8천억원), 무선전화용, TV용 송신기기 중 휴대용(HS 8525207030, 수출 2조원, 흑자 2조원), 자동자료처리기계 중에는 음극선관 모니터(HS 8571602021, 수출 1조 4천억원, 흑자 1조

4천억원)와 음극선관 단말기(HS 8571602021, 수출 1조 7천억원, 흑자 1조 7천억원)가 있어 상기 5개 품목이 약 21조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반면 1998년에 수입이 10억 달러 이상인 품목은 전자집적회로 칩·다이소·웨이퍼(HS 85421910000, 수출 8조 4천억원, 적자 8조 1천억원)로서 단 한 개이다.

〈표 VII-4〉는 정보기술협정에 의하여 무세화 대상인 ITA 품목의 1998년 수출입액과 무역특화지수 그리고 관세율<sup>4)</sup>을 IO 405산업 기준으로 제시하고 괄호 안에 해당 산업의 총품목수 그리고 총수출입 대비 비중을 나타낸 표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개별소자와 집적회로는 해당 산업에 속하는 전 품목이 ITA 품목으로 1999년에 이미 무세화가 완료되었다. 이들 외에 전자기기용 기록매체, 저항기 및 축전기, 유선통신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도 해당 산업에 속하는 전 품목이 ITA 품목으로 무세화된다. 또한 ITA 품목의 수출 또는 수입이 해당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산업은 기록매체 출판 및 복제(수출, 90%), 인쇄회로기판(수출입, 95%),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수출 71%), 사무용기기(수출입 50%), 촬영기 및 영사기(수입 68%)가 있다.

2000년에는 대부분의 제품이 무세화되는데 예외적으로 2000년 이후 2004년까지 관세율이 같은 비율로 떨어져 무세화되는 품목에는 기타 전기변환장치(2000년 관세율 1.2%), 인쇄회로기판(4.8%, 2002년 무세화), 유선통신기기(2.7%, 2002년 무세화),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2.8%, 2002년 무세화), 컴퓨터 및 주변기기(1.8%, 2004년 무세화), 측정 및 분석기기(1.8%, 2004년 무세화)가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세율은 2001년에는 이미 1~2%대로 인하되어 2001년에는 ITA의 파급효과가 대부분 가시화될 전망이다.

4) 〈표 VII-4〉에 제시된 관세율은 해당되는 전체 산업의 평균 관세율이 아니라 ITA 대상 품목만의 평균 관세율이다.

〈표 VII-4〉 정보기술협정(ITA) 품목의 수·출입액과 관세율(1998년)  
(단위: 개, 십억원, %)

	품목수	수출액	수입액	무역 특화지수	가중 세율
전 체	374	37,029.4	24,650.4	0.2	1.4
기록매체출판 및 복제	12(25)	22.7(31.9)	293.6(90.1)	-0.9	3.4
전자기기용기록매체	8(9)	848.7(100.0)	252.3(100.0)	0.5	5.0
사진용화학제품	1(106)	43.4(33.5)	31.0(5.1)	0.2	5.0
기타 화학제품	2(165)	89.3(18.8)	575.7(29.7)	-0.7	2.0
산업용 유리제품	1(51)	4.0(1.0)	7.5(2.2)	-0.3	4.0
산업용 운반기계	6(71)	10.7(1.2)	41.7(6.7)	-0.6	1.2
공기 및 액체여과청정기	2(29)	0.0(0.0)	0.2(0.1)	-0.9	4.0
기타 일반목적용기계	3(80)	0.0(0.0)	0.4(0.1)	-0.8	0.0
금속절삭가공기계	2(76)	1.0(0.1)	0.6(0.1)	0.2	4.0
금속성형처리기계	3(63)	16.3(5.9)	37.4(8.1)	-0.4	3.7
금형 및 주형	1(11)	43.1(8.2)	6.4(6.2)	0.7	4.0
기타 특수목적용기계	17(139)	77.4(6.0)	695.7(24.3)	-0.8	3.8
기타 전기변환장치	13(27)	37.2(8.1)	53.9(12.8)	-0.2	5.1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8(52)	80.3(15.4)	299.1(22.7)	-0.6	4.5
전선 및 케이블	10(32)	104.7(13.4)	21.2(6.7)	0.7	4.3
기타 전기장비	5(61)	61.9(13.7)	51.6(8.7)	0.1	3.8
기타 전자표시장치	1(26)	0.0(0.0)	0.1(0.0)	-0.8	4.0
개별소자	26(26)	1,083.6(100.0)	1,776.4(100.0)	-0.2	0.0
집적회로(IC)	15(15)	22,764.1(100.0)	14,766.9(100.0)	0.2	0.0
저항기 및 축전기	25(25)	523.6(100.0)	596.6(100.0)	-0.1	3.7
인쇄회로기판	3(5)	672.7(97.1)	392.5(94.8)	0.3	7.2
기타 전자부품	2(16)	144.6(13.7)	414.5(43.8)	-0.5	5.0
기타 영상음향기기	4(11)	9.2(0.3)	4.5(3.8)	0.3	5.9
유선통신기기	44(44)	896.3(100.0)	677.3(100.0)	0.1	6.0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14(31)	2,228.5(71.0)	240.3(24.5)	0.8	5.9
컴퓨터 및 주변기기	46(46)	6,907.4(100.0)	2,100.2(100.0)	0.5	5.1
사무용기기	32(56)	179.1(50.0)	118.4(49.0)	0.2	4.3
측정 및 분석기기	59(227)	55.6(13.5)	731.5(29.0)	-0.9	4.8
활영기 및 영사기	4(40)	124.0(25.2)	459.8(68.1)	-0.6	0.0
기타 광학기기	5(72)	0.1(0.0)	3.2(0.5)	-0.9	4.4

주: 제시된 수치는 ITA 대상 품목수나 수출입액, 무역특화지수 그리고 1999년 관세율인데 괄호안의 수치는 해당 산업의 총품목수 또는 총수출입의 ITA 품목 비중임.

전술한 대로 ITA 품목이 전체적으로는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흑자인 품목은 소수의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정보기술산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산업에는 반도체와 같이 고도의 기술과 상당한 설비투자를 요하는 산업이 있는가 하면 인쇄·출판과 소프트웨어 등 창의력을 요하는 첨단산업이 있고 산업의 특성상 전세계의 시장을 대상으로 독과점적 성격을 띤 산업이 많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기술발전과 투자라는 속성을 지닌 정보기술산업의 특성상 우리나라가 상당수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여 무역흑자를 유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정보기술산업의 무조건적인 국산화보다는 전문화를 통한 부가가치의 증대와 함께 우리가 경쟁력을 지닌 ITA 저변 상품의 국산개발이 되어야 한다.

ITA 품목은 주로 전기·전자관련 산업(248개 품목)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외에도 정밀기기, 일반기계 그리고 화학제품과 인쇄·출판·복제 제품에도 비록 해당 산업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다수 품목이 존재한다. 또한 연도별로 세율이 균일하게 인하되기 때문에 2001년이 지나면 무세화가 되지 않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세율도 이미 1~2%로 낮아져 정보기술협정의 파급효과는 2001년에 상당 부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정보기술협정에 따른 역관세 시정 등 정책적 세율조정이 필요하다면 이는 2001년을 전후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ITA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전기·전자관련 부품산업이며 혜택을 입을 품목은 소비재 관련 산업으로 보인다.

요컨대 1998년 당시 ITA 품목의 수입액은 24조 7천억원, 수출액은 37조원으로 우리나라 교역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또한 약 12조 3천억원의 무역흑자를 내는 산업이다.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379개 ITA 품목 중에서 무역특화지수가 양의 값을 갖는 품목은 112개 품목으로 이 부문에서 발생한 무역흑자가 27조 1천억원이며

무역특화지수가 음의 값을 갖는 품목은 268개 품목으로 무역적자가 16조 8천억원에 이른다. 또한 무역흑자는 주로 집적회로(8조원), 컴퓨터와 주변기기(4.8조원) 그리고 무선통신과 방송장비(2조원)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무역적자는 이외 상당수 품목에 소액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HS 10단위 기준으로 전자집적회로 기타의 기타, 기억소자, 무선전화용 송신기기 중 휴대용, 음극선관 모니터 그리고 음극선관 단말기의 5개 품목에서 총 21조원의 흑자를 창출하여 극히 소수의 품목에서 상당한 수출실적을 올렸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역흑자는 소수 품목에서 고액이, 무역적자는 다수 품목에서 소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정보기술산업의 특징이다. 물론 정보기술산업이 고도의 기술이나 상당한 설비투자를 요하는 속성으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어서 당해 산업의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기가 어려운 산업이다. 하지만 하드웨어일지언정 정보기술의 발달로 다품종, 소액생산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ITA 산업이 성장산업이며 일부 국내산업의 경우 성장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우선 ITA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연후 정책적 지원과 전문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음 절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만 정보기술협정으로 1999년 당시 이미 무세화되어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는 품목에는 개별소자와 집적회로가 있으며 촬영기 및 영사기의 실효세율도 영(0)에 가깝다. 한편 2000년에는 역관세 품목인 저항기 및 축전기 이외 기타 전자부품, 사무용 기기의 실효세율이 상당히 인하되고 2001년 이후 세율이 무세화되면서 역관세에 해당될 품목에는 인쇄회로기판, 유선 통신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가 있는데 이들 제품 또한 2001년에 이미 명목세율이 1~2%로 인하된 품목이므로 정보기술협정 이행에 따른 파급효과는 2001년에 현실화될 것이다. 이외에 12개 산업

에서 실효세율이 감소한다.

한편 정보기술협정으로 중간재 세율이 떨어져 실효세율이 인상되는 산업에는 주로 소비재 품목인 31개 산업이 있고 이외에도 15개 ITA 품목의 중간재 세율이 인하되는 등 총 46개 산업에 영향을 미쳐 전기·전자부품의 파급효과가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음향기기 등 몇 품목을 제외하면 중간재 세율인하로 인한 효과가 품목별로는 크지 않다. 실효세율이 인하되는 20개 산업 중 15개 산업의 무역특화지수가  $-0.7$ 을 초과하여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경쟁력이 없지만 수입의존도가  $0.5$ 를 초과하는 산업은 6개 산업으로 비록 수출경쟁력은 없어도 국내생산으로 수입품과 경쟁하여 내수를 충족시키는 산업이 있다. 따라서 전술한대로 ITA산업이 유치산업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일부 산업에 관하여 관세율조정 등을 통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 2. ITA 협정으로 인한 파급효과: 2000년

386개 품목, 약 25조원에 이르는 ITA 품목의 관세율 인하로 인하여 관련 산업의 실효관세율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우선 1995년 산업연관표상의 투입계수가 유용한 것으로 가정하고 2000년의 부분적 무세화에 따른 관련산업의 파급효과를 모의실험한다. 그러한 연후에 다음 절에서는 2004년 완전 무세화에 따른 실효세율의 변화를 추정한다. 본고에서는 특히 1999년 가중평균 실행관세율을 기준으로 실효관세율의 변화를 추적한다. 실적관세율에 비하여 실행관세율은 탄력관세 등을 포함하지 않는 기본관세율에 가깝고 2004년의 실효관세율 변화를 살펴보려면 실행관세율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비교역재를 통하여 보호율이 변화하는 등의 이유로 실효관세

율이 0.1% 이하로 조정되는 품목은 관측상의 오류가 염려되므로 이를 포함하지 않고 중간재 관세율이 변화하거나 실효관세율이 0.2% 이상 변화하는 품목만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2000년의 부분적 무세화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아래에서 논의되는 산업 전체가 아닌 그 중의 일부 품목으로서 본고에서는 다만 그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IO 405 산업을 기준으로 평균관세율의 변화를 논의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실행관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 2000년의 부분적 무세화에 따른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주로 전기·전자기기와 기계산업에 국한되며, 일부 출판·복제와 전자기기용 기록매체 그리고 화학 및 유리제품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보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A 대상품목으로서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이 감소하는 IO 405 산업은 〈표 VII-6〉에서와 같이 짙게 표시된 18개 품목에 이르는데 그 중에서 무역특화지수가 -0.7을 초과하는 품목은 14개 산업에 이르고 있다. 반대로 ITA 품목의 후방산업으로서 실효세율이 증가하여 혜택을 입는 산업은 25개 품목인데 이 중 무역특화지수가 양의 값을 갖는 품목은 TV, VCR, 냉장고, 세탁기, 가정용 전열기와 같은 완제품 5개 산업에 불과하고 특화지수가 음의 값을 갖는 산업이 15개 품목인데 그 중에서 특화지수가 -0.7을 초과하는 산업이 10개 산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도 수입의존도(수입/국내생산+수출-수입)로 보면 국내생산에 비하여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0.7 이상인 품목이 사 진용 화학제품과 개별소자 그리고 측정 및 분석기기 3개 제품이며, 수입의존도가 0.5 이상인 품목으로 보면 기타 화학제품과 펌프 및 압축기기, 금속형 처리기계와 기타 특수용 목적기계로서 4개 제품이 추가되어 총 7개 품목에 달한다<sup>5)</sup>. 요컨대, 비록 수입에 비하여 수출은

5) 1995년 수입의존도로 2000년의 무세화효과를 논의하기가 어렵지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가장 최신판이 1995년까지만 존재하므로 이에 의존하였다.

많지 않지만 국내생산으로 내수를 충족시키는 품목이 상당히여 주어진 관세율하에서 비록 수출경쟁력은 없지만 국내에서 수입품과 경쟁하고 있는 산업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자의 이해를 위하여 <표 VII-5>를 관세율 변화에 기준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 <표 VII-6>으로서 이 표를 <표 VII-5>와 함께 보면 2000년도 ITA 관세율 인하가 산업별로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우선 <표 VII-5>의 마지막 열부터 보면 2000년에 정보기술협정에 따른 무세화로 영향을 입어 1% 포인트 이상 가중평균 명목관세율이 인하되는 산업은 우선 저항기 및 축전기(3.7% 포인트 감소)와 유선통신기기(3.3% 포인트 감소)로 각각의 명목관세율은 0%, 2.7%가 된다<sup>6)</sup>. 또한 인쇄회로기판(2.8% 포인트)과 기타 전자부품(2.2% 포인트) 그리고 컴퓨터와 주변기기(2.9% 포인트)도 명목관세율이 4.5%, 4.4%, 1.8%로 인하된다. 이 밖에도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와 사무용기기의 명목관세율도 각각 1.0%, 2.1% 포인트 감소, 6.2%, 4.1%의 가중평균 관세율을 유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무세화 내지는 세율인하로 2000년도에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는 품목은 저항기 및 축전기(-4.9%, 5.9% 포인트 감소)<sup>7)</sup>와 컴퓨터 및 주변기기(-3.0%, 7.7% 포인트 감소), 기록매체 출판(-2.1%, 0.1% 포인트 감소), 전자기기용 기록매체(-7.2%, 1.7% 포인트 감소) 그리고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0.1%, 2.0% 포인트 감소)가 있다. 이 중 특수목적용 기계, 컴퓨터 및 주변기기와 저항기 및 축전기는 실효보호를 받다가 이제는 실효피해를 입는 품목이 된다.

6) 물론 이들 산업의 관세율은 정보기술협정 대상 품목이 아닌 수입품의 관세율까지 포함한 평균치이다.

7) ( )안의 앞의 수치는 ITA적용 후의 실효세율을 나타내고 뒤의 수치는 ITA적용 이전과 적용후의 실효세율의 차이를 나타낸다(이후 동일).

〈표 VII-5〉 ITA에 따른 2000년도 명목·실효관세율의 변화  
(가중평균 실행관세율 기준)

(단위: %)

명목 관세율	0	0 ~ -1	-1 ~ -3	-3 ~
실효 관세율				
-3~			인쇄회로기판(4.4, 2.9) 기타 전자부품(4.5, 3.4) 컴퓨터 및 주변기기(1.8, -3.0) 사무용기기(4.1, 2.6)	저항기및축전기(0, -4.9) 유선통신기기(2.7, 1.4)
-1~-3		전자기가용기록매체(0, -7.2) 기타화학제품(5.1, 3.4) 기타 특수목적용기계(4.2, -0.1)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6.2, 5.7) 측정 및 분석기기(5.5, 5.4)		
0~-1		기록매체출판및복제(0.2, -2.1) 사진용화학제품(7.1, 7.2) 금속성형처리기계(7.4, 7.6) 금형 및 주형(7.5, 7.9) 기타전기 변환장치(7.1, 8.2) 전선 및 케이블(7.5, 10.1) 기타 전기 장비(6.4, 6.1)		
0 ~ 1	펌프및압축기(7.7, 9.1) 금속철삭가공기계(7.8, 8.2) 발전기 및 전동기(7.0, 7.1) 변압기(8.0, 8.6) 전구및조명장치(7.6, 8.1) 전자판(8.0, 9.0) 기타전자표시장치(8.0, 9.0) 개별소자(0, -4.6) TV(8.0, 13.1)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6.3, 8.9) 냉장고(8.0, 10.0) 세탁기(8.0, 10.6) 선풍기(8.0, 9.3) 가정용전열기기(8.0, 10.7) 기타가정용전기기기(8.0, 11.0) 의료기기(6.9, 7.3) 자동조정및제어기기(7.6, 9.3) 촬영기 및 영상기(2.3, 0.1) 철도차량(5.0, 1.7) 장난감및오락용품(7.4, 7.7) 악기(7.9, 9.4)	기타영상음향기기(7.7, 10.3)		
1~3	전자코일및변성기(8.0, 11.9) VTR(8.0, 14.4)			
3~	음향기기(8.0, 17.8)			

주: ( )안의 앞의 수치는 명목관세율, 뒤의 수치는 실효관세율을 나타냄.

〈표 VII-6〉 ITA에 따른 2000년도 명목·실효관세율의 변화  
(가중평균 실효관세율 기준)

(단위: 천만달러, %)

	수출	수입	무역 특화 지수	수입 의존도	명목 차이	실효 차이	차이	중간재 평균 세율	차이	
기록매체출판 및 복제	0.5	23.1	-95.7	0.26	0.2	-0.2	-2.1	-0.1	1.2	-0.1
전자기기용기록매체	6.1	18.1	-49.7	0.29	-	-0.9	-7.2	-1.7	3.6	-
사진용화학제품	0.9	43.3	-95.8	0.84	7.1	-0.3	7.2	-0.4	3.7	-0.1
기타 화학제품	3.4	138.9	-95.2	0.53	5.1	-0.6	3.4	-1.5	3.6	-
펌프 및 압축기	4.8	78.5	-88.4	0.59	7.7	-	9.1	0.6	3.9	-0.2
금속절삭가공기계	5.0	31.1	-72.1	0.40	7.8	-	8.2	0.1	3.9	-0.1
금속성형처리기계	2.0	33.2	-88.8	0.53	7.4	-0.3	7.6	-0.4	4.0	-0.1
금형 및 주형	3.8	7.3	-31.9	0.05	7.5	-0.3	7.9	-0.5	3.6	-
기타 특수목적용기계	9.2	204.8	-91.4	0.67	4.2	-0.9	-0.1	-2.0	4.1	-0.1
발전기 및 전동기	3.8	60.0	-88.2	0.35	7.0	-	7.1	0.3	3.6	-0.1
변압기	2.4	12.2	-66.7	0.44	8.0	-	8.6	0.2	3.6	-0.1
기타 전기변환장치	3.3	30.1	-80.4	0.17	7.1	-0.5	8.2	-0.3	2.7	-0.3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3.7	93.9	-92.4	0.24	6.2	-1.0	5.7	-1.7	3.4	-0.3
전선 및 케이블	5.6	22.7	-60.5	0.07	7.5	-0.3	10.1	-0.7	3.4	-
전구 및 조명장치	2.0	13.4	-74.1	0.12	7.6	-	8.1	0.2	3.6	-0.1
기타 전기장비	3.2	42.6	-85.9	0.39	6.4	-0.3	6.1	-0.3	3.2	-0.2
전자관	24.7	77.9	-51.8	0.29	8.0	-	9.0	0.3	4.4	-0.1
기타 전자표시장치	10.8	18.3	-26.0	0.47	8.0	-	9.0	0.3	3.7	-0.1
개별소자	7.8	127.2	-88.5	0.84	0.0	-	-4.6	0.3	1.6	-0.1
저항기 및 축전기	3.7	42.7	-83.9	0.35	0.0	-3.7	-4.9	-5.9	2.5	-0.4
전자코일 및 변성기	-	-	-	0.04	8.0	-	11.9	1.5	3.5	-0.5

〈표 VII-6〉의 계속

(단위: 천만달러, %)

	수출	수입	무역 특화 지수	수입 의존도	명목 차이	실효 차이	실효 차이	중간재 평균 세율	차이	
인쇄회로기판	5.0	29.6	-71.3	0.11	4.4	-2.8	2.9	-4.2	2.9	-0.9
기타 전자부품	7.5	67.7	-80.0	0.37	4.5	-2.2	3.4	-4.1	2.8	-0.4
TV	17.3	10.7	23.9	0.07	8.0	-	13.1	0.7	4.4	-0.1
VTR	5.3	1.7	51.2	0.05	8.0	-	14.4	1.3	2.7	-0.4
음향기기	7.5	13.5	-28.8	0.17	8.0	-	17.8	3.3	2.9	-0.8
기타 영상음향기기	2.1	8.5	-60.3	0.12	7.7	-0.2	10.3	0.2	3.8	-0.3
유선통신기기	6.4	48.5	-76.6	0.15	2.7	-3.3	1.4	-5.6	1.8	-0.7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22.5	70.2	-51.5	0.36	6.3	-	8.9	0.6	2.2	-0.2
컴퓨터 및 주변기기	49.5	150.4	-50.5	0.37	1.8	-2.9	-3.0	-7.7	2.6	-0.8
사무용기기	2.6	17.3	-74.1	0.35	4.1	-2.1	2.6	-3.5	2.5	-0.5
냉장고	5.4	2.7	34.0	0.04	8.0	-	10.0	0.4	3.4	-0.2
세탁기	2.4	0.7	57.4	0.01	8.0	-	10.6	0.5	3.8	-0.2
선풍기	0.1	0.6	-80.7	0.02	8.0	-	9.3	0.3	4.1	-0.1
가정용 전열기기	8.8	4.7	30.5	0.08	8.0	-	10.7	0.5	3.7	-0.2
기타 가정용전기기기	1.3	7.2	-69.1	0.14	8.0	-	11.0	0.7	3.8	-0.2
의료기기	2.2	39.7	-89.5	0.62	6.9	-	7.3	0.2	2.4	-0.1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0.5	27.2	-96.4	0.25	7.6	-	9.3	0.2	1.8	-0.1
측정 및 분석기기	2.9	180.3	-96.8	0.73	5.5	-0.8	5.4	-1.4	2.7	-0.1
활영기 및 영사기	3.5	48.3	-86.4	0.31	2.3	-	0.1	0.1	1.9	-0.1
철도차량	1.0	17.0	-89.4	0.22	5.0	-	1.7	0.2	4.3	-0.1
장난감 및 오락용품	2.3	9.1	-59.7	0.36	7.4	-	7.7	0.2	2.9	-0.1
악기	2.8	4.3	-21.8	0.17	7.9	-	9.4	0.2	2.7	-0.1

주: 2000년 ITA 품목의 관세율 인하로 인한 실효관세율의 변화로서 2000년 세율 개편안이 반영됨(1999년 가중평균 실효관세율 기준).  
 자료: 재경부 및 한국은행 전산자료.

이외에 관세율이 인하되는 10개 산업 중 기타 화학제품(3.4%, 1.5% 포인트 감소), 인쇄회로기판(2.9%, 4.2% 포인트 감소), 기타 전자부품(3.4%, 4.1% 포인트 감소), 유선통신기기(1.4%, -5.6% 포인트 감소)의 실효관세율이 4% 이하로 떨어진다. 이와 같이 실효관세율이 대폭 감소하는 품목은 저항기 및 축전기, 기타 특수목적용기계, 인쇄회로기판, 기타 전자부품, 유선통신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무용 기기 등으로 다수 품목이다. 기타 영상 음향기기를 제외하면 저항기 및 축전기, 인쇄회로기판, 기타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와 같이 중간재 관세율이 동시에 인하되지만 완제품에 관한 세율인하가 워낙 커서 실효관세율이 인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자제품 등의 후방산업은 중간재에 관한 관세율 인하로 실질적인 보호도가 증가한다. 이들 품목은 명목관세율의 변화가 0%인 품목으로 <표 VII-5>의 첫 번째 열에 정리되어 있다. 후방산업 가운데 역관세 문제가 있는 품목은 개별소자(-4.6%)가 유일한 품목으로 실효관세율이 0.3% 포인트 증가한다. 이들 품목의 경우 촬영기(0.1%)와 철도차량(1.7%)을 제외하면 실효관세율이 7~8%를 초과하는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중간재 세율인하로 큰 혜택을 입는 품목은 펌프 및 압축기(9.1%, 0.6% 포인트 증가), 전자코일(11.9%, 1.5% 포인트 증가), TV(13.1%, 0.7% 포인트 증가), VTR(14.4%, 1.3% 포인트 증가), 음향기기(17.8%, 3.3% 포인트 증가), 세탁기(10.6%, 0.5% 포인트 증가), 기타 가정용기기(11.0%, 0.7% 포인트 증가) 등으로 주로 완제품에 해당한다.

정보기술협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산업은 주로 특수 목적의 전자기구나 그 부분품과 기계류이며 소비재 성격의 완제품은 혜택을 입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비록 균등관세율체제의 기초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보기술협정으로 인한 관세율체제의 조정은 장

기적으로 볼 때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컴퓨터 및 주변기기, 기록매체, 저항기 및 축전기, 개별소자 등 정보기술협정으로 인하여 역관세 현상이 두드러진 품목은 중간재 세율인하 등의 방법으로 정보기술협정에 따른 보완 조정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실효세율이 낮은 특수목적용 기계, 유선 통신기기, 촬영기 및 영사기 등에 대한 세율도 국산화 필요성에 따라 세율 조정을 고려하고 ITA 품목이 아니더라도 이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의 세율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단순평균 실행세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정보기술협정으로 인하여 명목 및 실효세율이 감소하는 품목은 18개 산업에서 26개 산업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비록 수입은 없지만 세율이 조정되는 HS 품목이 있기 때문이다(〈표 VII-7〉과 〈표 VII-8〉 참조). 이에 비하여 중간재 세율인하로 실효세율이 인상되는 품목은 1개 산업이 감소하여 24개 산업이 된다.

가중평균 실행관세율과 비교하여 단순평균에서 실효세율이 큰 차이가 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록매체 및 출판과 기타 특수용 목적 기계의 단순평균 실효세율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양(+)의 값을 갖는다. 이와 같이 단순평균 실효세율은 일반적으로 가중평균보다 세율이 높은 편인데 예외적으로 기타 전기변환장치, 전선 및 케이블, 기타 영상음향기기, 그리고 기타 전자표시장치의 단순평균 실효세율은 가중평균보다 약 4% 포인트 감소하여 3~5%대를 유지한다. 이러한 현상은 수입은 별로 없지만 정보기술협정으로 인하여 세율이 상당히 인하되는 품목이 많이 있는 산업에서 발생한다.

〈표 VII-7〉 ITA에 따른 2000년도 명목·실효관세율의 변화  
(단순평균 실행관세율 기준)

(단위: %)

명목 관세율	0	0 ~ -1	-1 ~ -3	-3 ~
실효 관세율				
-3 ~			기타 전기 변환 장치(4.2, 2.5) 전선 및 케이블(5.5, 4.7) 기타 영상음향기기(4.8, 2.0) 컴퓨터 및 주변기기(1.5, -3.8) 사무용기기(3.3, 1.2)	전자기기용 기록매체(0.9, -6.0) 저항기 및 축전기(0, -5.0) 유선통신기기(2.7, 1.5)
-1 ~ -3		기타 특수목적용기계(62, 45)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6.7, 6.9) 기타 전자 표시장치(6.0, 4.4) 측정 및 분석기기(5.5, 5.3)	기록매체출판 및 복제(3.8, 3.4) 인쇄회로기판(3.4, 1.4) 무선 통신 및 방송 장비(5.8, 7.7)	
-1 ~ 0		인쇄(4.6, 2.4) 산업용 유리(7.8, 8.2) 산업용유반기계(5.5, 3.9) 공기 및 액체여과 청정기(8.0, 8.7) 금속절삭 가공기계(7.7, 8.0) 금속성형처리기계(7.6, 8.3) 금형 및 주형(7.2, 7.2) 기타 전기 장비(6.7, 6.7) 집적회로(0, -1.4) 기타 전자 부품(7.0, 8.8) 기타 광학기기(7.4, 7.5)		
0 ~ 1	엔진 및 터빈(6.4, 5.8) 공기조절 장치 및 냉장냉동장비(8.0, 8.7) 펌프 및 압축기(7.9, 9.5) 발전기 및 전동기(6.9, 7.2) 변압기(8.0, 8.7) 전구 및 조명장치(7.9, 8.6) 전자관(8.0, 8.8) 개별소자(0, -5.0) TV(8.0, 13.1) VIR(8.0, 14.0) 냉장고(8.0, 10.0) 세탁기(8.0, 10.8) 선풍기(8.0, 9.4) 가정용 전열기기(8.1, 11.0) 의료기기(7.6, 8.6) 시계(7.8, 8.7) 강철제선반(0.9, -5.8) 철도차량(4.0, -0.4) 장난감 및 오락용품(8.0, 8.7) 악기(7.9, 9.3)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6.6, 7.7)			
1 ~ 3	전자코일 및 변성기(8.0, 11.8)			
3 ~	융합기기(8.0, 15.7)			

주: ( ) 안의 앞의 수치는 명목관세율, 뒤의 수치는 실효관세율을 나타냄.

〈표 VII-8〉 ITA에 따른 2000년도 명목·실효관세율의 변화  
(단순평균 실행관세율 기준)

(단위: %)

기본부문(402부문)	명목	차이	실효	차이	중간재 평균세율	차이
인쇄	4.6	-0.2	2.4	-0.2	3.1	-
기록매체출판 및 복제	3.8	-1.5	3.4	-1.7	1.4	-0.4
전자기기용기록매체	0.9	-4.5	-6.0	-8.8	3.8	-0.1
산업용 유리제품	7.8	-0.2	8.2	-0.2	2.5	-
엔진 및 터빈	6.4	-	5.8	0.1	3.8	-0.1
산업용 운반기계	5.5	-0.1	3.9	-0.1	3.5	-0.1
공기조절장치 및 냉장냉동장비	8.0	-	8.7	0.2	4.0	-0.1
펌프 및 압축기	7.9	-	9.5	0.6	3.8	-0.2
공기 및 액체여과청정기	6.4	-0.3	5.5	-0.5	3.5	-0.1
금속절삭가공기계	7.7	-0.1	8.0	-0.1	3.9	-0.1
금속성형처리기계	7.6	-0.2	8.3	-0.1	4.0	-0.1
금형 및 주형	7.2	-0.4	7.2	-0.7	3.6	-0.1
기타 특수목적용기계	6.2	-0.5	4.5	-1.0	4.2	-0.1
발전기 및 전동기	6.9	-	7.2	0.4	3.5	-0.2
변압기	8.0	-	8.7	0.3	3.5	-0.1
기타 전기변환장치	4.2	-2.0	2.5	-3.2	2.7	-0.3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6.7	-0.7	6.9	-1.0	3.5	-0.3
전선 및 케이블	5.5	-1.4	4.7	-3.4	3.5	-
전구 및 조명장치	7.9	-	8.6	0.3	3.6	-0.1
기타 전기장비	6.7	-0.3	6.7	-0.2	3.1	-0.2
전자관	8.0	-	8.8	0.3	4.4	-0.1
기타 전자표시장치	6.0	-1.0	4.4	-1.9	3.7	-0.1
개별소자	0.0	-	-5.0	0.3	1.8	-0.1
집적회로(IC)	0.0	-0.2	-1.4	-0.3	0.8	-0.1

〈표 VII-8〉의 계속

(단위: %)

기본부문(402부문)	명목	차이	실효	차이	중간재 평균세율	차이
저항기 및 축전기	-	-3.8	-5.0	-6.1	2.5	-0.4
전자코일 및 변성기	8.0	-	11.8	1.4	3.5	-0.4
인쇄회로기판	3.4	-1.8	1.4	-2.6	2.7	-0.6
기타 전자부품	7.0	-0.6	8.8	-0.6	2.9	-0.3
TV	8.0	-	13.1	0.7	4.5	-0.2
VTR	8.0	-	14.0	1.0	2.9	-0.3
음향기기	8.0	-	15.7	1.9	3.4	-0.5
기타 영상음향기기	4.8	-2.4	2.0	-5.8	3.8	-0.3
유선통신기기	2.7	-3.3	1.5	-5.5	1.8	-0.8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5.8	-1.4	7.7	-2.3	2.3	-0.4
컴퓨터 및 주변기기	1.5	-3.0	-3.8	-7.9	2.5	-0.8
사무용기기	3.3	-2.3	1.2	-3.8	2.3	-0.5
냉장고	8.0	-	10.0	0.4	3.4	-0.2
세탁기	8.0	-	10.8	0.6	3.7	-0.2
선풍기	8.0	-	9.4	0.4	4.0	-0.1
가정용전열기기	8.1	-	11.0	0.5	3.7	-0.2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8.0	-	11.0	0.7	3.8	-0.2
의료기기	7.6	-	8.6	0.3	2.4	-0.1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6.6	-0.1	7.7	0.2	1.8	-0.1
측정 및 분석기기	5.5	-0.8	5.3	-1.4	2.6	-0.2
기타 광학기기	7.4	-0.3	7.5	-0.4	2.4	-0.1
시계	7.8	-	8.7	0.1	3.1	-0.1
강철제 선박	0.9	-	-5.8	0.1	3.8	-0.1
철도차량	4.0	-	-0.4	0.3	4.1	-0.1
장난감 및 오락용품	8.0	-	8.7	0.2	2.9	-0.1
약기	7.9	-	9.3	0.2	2.7	-0.1

주: 2000년 ITA 품목의 관세율 인하로 인한 실효관세율의 변화로서 2000년 세율개편안이 반영됨(1999년 단순실행관세율 기준).

자료: 재경부 및 한국은행 전산자료.

### 3. ITA 협정으로 인한 파급효과 : 2004년

2004년 386개 ITA 품목의 무세화로 인한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전과 같이 1999년의 가중평균 실행세율과 1995년 산업연관표상의 투입계수가 유용한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물론 2004년에는 실행세율도 1999년과 다를 것이고 투입계수도 상당히 변화할 것이나, 1999년 현재 ITA로 인한 파급효과를 감안한 세율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성격의 모의실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관세율 변화를 기준으로 파급효과를 정리한 <표 VII-9>에 의거하여 보면 이미 2000년 당시 상당수의 ITA 품목에 관한 무세화가 이루어져 2000년과 비교할 때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2004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보기술협정에 따른 관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면 가급적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예외적으로 가중평균 관세율을 기준할 때 2000년에 이은 추가적 세율 인하로 인하여 2004년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산업은 <표 VII-9>의 마지막 열에 제시된 인쇄회로기판과 유선통신기기 그리고 컴퓨터 주변기기이다.

인쇄회로기판에서는 ITA 품목에 관한 약 4.2%에 달하는 세율인하로 명목 평균세율이 0.2%에 불과하고 실효세율은 2.9%에서 역관세인 -3.2%로 떨어지는데 참고로 1999년과 대비하면 명목 및 실효세율은 각각 7.1% 포인트, 10.3% 포인트 감소한다(<표 IV-10> 참조). 유선통신기기의 경우 2000년에 이어 명목세율이 2.7% 포인트 정도 인하되어, 완전 무세화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실효세율은 약 4.7% 포인트 인하되어 역관세인 -3.3%가 된다. 1999년에 비하면 유선통신기기의 명목 및 실효세율이 각각 6.0%, 10.3% 포인트 감소한다. 한편, 컴퓨터 주변기기의 명목세율도 2000년에 이어 추가적으로 1.8% 인하됨으로써 완전 무세화되어 실효세율이 -7.4%에

〈표 VII-9〉 ITA에 따른 2004년도 명목·실효관세율의 변화  
(가중평균 실행관세율 기준)

(단위: %)

명목 관세율	0	0 ~ -1	-1 ~ -3	-3 ~
실효 관세율				
-3 ~			기타전자부품 (4.5, 3.5) 사무용기기 (4.1, 2.8)	저항기및 축 전기(0,-49) 인쇄회로기 판(02, -32) 유선통신기 기(0,-33)컴 퓨터 및 주변 기기(0,-74)
-1 ~ -3		전자기기용기목 매체(0, -7.2) 기타화학제품 (5.1, 3.4) 기타 특수목적용기계 (4.2, -) 전기 공급 및 제어장 치(6.2, 5.8)	측정 및 분석 기기(5.0, 4.4)	
0 ~ -1		사진용화학제품 (7.1, 7.2) 금속성 형처리기계(7.4, 7.7) 금형 및 주 형(7.5, 7.9) 기타 전기변환장치(7.0, 8.0) 전선 및 케이 블(7.5, 10.1) 기타 전기장비(6.4, 6.2) 무선통신 및 방송 장비(5.6, 7.7)		
0 ~ 1	엔진 및 터빈(7.0, 6.9) 공기조 절장치 및 냉간냉동장비(8.0, 8.7) 난방및조리기기(8.0, 8.7) 펌프 및 압축기(7.7, 9.1) 금속 철삭가공기계(7.8, 8.2) 섬유기 계(6.9, 6.3) 발전기 및 전동기 (7.0, 7.2) 변압기(8.0, 8.6) 전 구및조명장치(7.6, 8.1) 전자관 (8.0, 9.1) 기타전자표시장치 (8.0, 9.0) 개별소자(0, -4.5) TV(8.0, 13.3) 냉장고(8.0, 10.1) 세탁기(8.0, 10.7) 선풍 기(8.0, 9.3) 가정용전열기 (8.0, 10.8) 기타가정용전기 기(8.0, 11.2) 의료기기(6.9, 7.4)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7.6, 9.4) 촬영기 및 영상기(2.3, 0.1) 기타 광학기기(7.8, 8.5) 시계(7.4, 8.3) 강철제선박(0.3, -7.0) 철도차량 (5.0, 1.8) 장난감 및 오락용품 (7.4, 7.7) 악기(7.9, 9.5)	기타영상용기기 (7.7, 10.5)		
1 ~ 3	전자코일 및 변성기(8.0, 12.2) VTR(8.0, 14.7)			
3 ~	음향기기(8.0, 18.4)			

주: ( ) 안의 앞의 수치는 명목관세율, 뒤의 수치는 실효관세율을 나타냄.

〈표 Ⅷ-10〉 ITA에 따른 2004년도 명목·실효관세율의 변화  
(가중평균 실행관세율 기준)

(단위: %)

기본부문(402부문)	명목	차이	실효	차이	중간재 평균세율	차이
전자기기용 기록매체	0.0	-0.9	-7.2	-1.7	3.6	-
사진용 화학제품	7.1	-0.3	7.2	-0.3	3.7	-0.1
기타 화학제품	5.1	-0.6	3.4	-1.5	3.6	-
엔진 및 터빈	7.0	-	6.9	0.1	3.9	-0.1
공기조절장치 및 냉장냉동장비	8.0	-	8.7	0.2	4.0	-0.1
난방 및 조리기기	8.0	-	8.7	0.1	3.8	-0.1
펌프 및 압축기	7.7	-	9.1	0.6	3.9	-0.2
금속절삭가공기계	7.8	-	8.2	0.2	3.9	-0.1
금속성형처리기계	7.4	-0.3	7.7	-0.3	4.0	-0.2
섬유기계	6.9	-	6.3	0.1	3.3	-0.1
금형 및 주형	7.5	-0.3	7.9	-0.5	3.6	-
기타 특수목적용기계	4.2	-0.9	-	-1.9	4.1	-0.1
발전기 및 전동기	7.0	-	7.2	0.3	3.6	-0.1
변압기	8.0	-	8.6	0.2	3.6	-0.1
기타 전기변환장치	7.0	-0.6	8.0	-0.5	2.7	-0.4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6.2	-1.0	5.8	-1.6	3.4	-0.3
전선 및 케이블	7.5	-0.3	10.1	-0.6	3.4	-
전구 및 조명장치	7.6	-	8.1	0.2	3.6	-0.1
기타 전기장비	6.4	-0.3	6.2	-0.2	3.1	-0.2
전자관	8.0	-	9.1	0.3	4.3	-0.1
기타 전자표시장치	8.0	-	9.0	0.3	3.6	-0.1
개별소자	0.0	-	-4.5	0.3	1.6	-0.1
저항기 및 축전기	0.0	-3.7	-4.9	-5.9	2.5	-0.4
전자코일 및 변성기	8.0	-	12.2	1.8	3.4	-0.6

<표 VII-10>의 계속

(단위: %)

기본부문(402부문)	명목	차이	실효	차이	중간재 평균세율	차이
인쇄회로기판	0.2	-7.1	-3.2	-10.3	1.6	-2.2
기타 전자부품	4.5	-2.2	3.5	-3.9	2.7	-0.4
TV	8.0	-	13.3	0.8	4.4	-0.2
VTR	8.0	-	14.7	1.6	2.6	-0.5
음향기기	8.0	-	18.4	3.9	2.8	-0.9
기타 영상음향기기	7.7	-0.2	10.5	0.4	3.8	-0.3
유선통신기기	0.0	-6.0	-3.3	-10.3	1.4	-1.1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5.6	-0.7	7.7	-0.6	2.1	-0.4
컴퓨터 및 주변기기	0.0	-4.8	-7.4	-12.1	2.1	-1.2
사무용 기기	4.1	-2.1	2.8	-3.4	2.4	-0.5
냉장고	8.0	-	10.1	0.5	3.4	-0.2
세탁기	8.0	-	10.7	0.7	3.8	-0.2
선풍기	8.0	-	9.3	0.4	4.1	-0.1
가정용 전열기기	8.0	-	10.8	0.6	3.6	-0.2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8.0	-	11.2	0.9	3.7	-0.3
의료기기	6.9	-	7.4	0.3	2.3	-0.1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7.6	-	9.4	0.3	1.7	-0.2
측정 및 분석기기	5.0	-1.3	4.4	-2.3	2.6	-0.2
촬영기 및 영사기	2.3	-	0.1	0.1	1.9	-0.1
기타 광학기기	7.8	-	8.5	0.1	2.2	-0.1
시계	7.4	-	8.3	0.2	3.0	-0.1
강철제 선박	0.3	-	-7.0	0.1	3.8	-0.1
철도차량	5.0	-	1.8	0.3	4.3	-0.1
장난감 및 오락용품	7.4	-	7.7	0.3	2.9	-0.1
약기	7.9	-	9.5	0.2	2.7	-0.1

주: 2004년 ITA 품목의 관세율 인하로 인한 기중평균 실효관세율의 변화로서  
1995년 산업연관표를 사용한 모의실험임.

자료: 재경부 및 한국은행 전산자료.

이르는 역관세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1999년과 비교할 때 약 12%에 달하는 실효세율의 하락이다. 이들 세 품목의 경우 중간재 세율이 1~2% 포인트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무세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품목이다.

이 밖에도 2004년에는 2000년에 이어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그리고 측정 및 분석기기에서도 약 1% 포인트를 전후한 실효세율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199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전자기기용 기록매체, 기타 화학제품, 기타 특수용목적기계,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저항기 및 축전기, 기타 전자부품, 사무용기기 등에서 1~2%에 이르는 실효세율의 인하가 발생한다.

후방산업의 경우 <표 VIII-11>의 첫 번째 열에 제시된 전자코일 및 변성기, VTR, 음향기기 등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을 포함하여 엔진 및 터빈, 난방 및 조리기기, 시계 등 6개 산업의 보호율이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하지만 엔진 및 터빈 등 후자의 경우 그 효과는 미미하고 전자코일 및 변성기, TV, VTR, 음향기기,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에서 약 1% 포인트를 전후한 실효세율 인상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효과는 이미 2000년 정보기술협정에 의한 관세율 조정으로 그 효과의 대부분이 2001년에 가시화된다. 이 밖에도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는 2000년과 반대로 2004년에는 0.6% 포인트에 이르는 명목관세 인하로 실효세율이 인하되며 기타 영상·음향기기는 명목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간재 세율인하로 실효관세율이 10.5%로 인상된다.

한편 단순평균 관세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2000년에 이어 2004년에 변화가 두드러진 품목은 가중평균 관세율과 마찬가지로 인쇄회로기판과 유선통신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이다. 인쇄회로기판에서는 약 1.6% 포인트에 달하는 세율인하로 명목세율이 1.8%에 불과하고 실효세율은 1.4%에서 역관세인 -0.9%로 감소한다. 유선통신기기의 경우 2000년에 이어 명목세율이 2.7% 포인트

〈표 Ⅶ-11〉 ITA에 따른 2004년도 명목·실효관세율의 변화  
(단순평균 실행관세율 기준)

(단위: %)

명목 관세율	0	0 ~ -1	-1 ~ -3	-3 ~
실효 관세율				
-3 ~		기타전기변환장치 (38, 20)	전선및케이블 (5.5, 4.7) 기타영상용향 기기(4.8, 2.1) 사무용기기 (3.3, 1.3)	전자기기용 기록매체 (0.9, -6.0) 저항기 및 축전기(0, -4.9) 인 쇄회로기판 (1.8, -0.9) 유선통신기 기(0, -3.3)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39, 37) 컴퓨터 및 주변기기 (0, -7.6)
-1 ~ -3		기타특수목적용 기계(6.2, 4.5) 전 기공급및제어장 치(6.7, 6.9) 측정 및분석기기(5.5, 5.3)	기록매체출판및 복제(3.8, 3.4) 기 타전자표시장치 (6.0, 4.5)	
0 ~ -1		인쇄(4.6, 2.4) 산업용유리제품 (7.8, 8.2) 산업용운 반기계(5.5, 4.0) 공 기 및 액체여과청 정기(6.4, 5.5) 급 속절삭가공기계 (7.7, 8.1) 급속 성형처리기계 (7.6, 8.3) 금형 및 주형(7.2, 7.2) 기타 전기장비(6.7, 6.8) 집적회로(0, -1.3) 기타전자부품(7.0, 8.9) 기타광학기기 (7.4, 7.5)		
0 ~ 1	엔진 및 터빈(6.4, 5.8) 공기조절 장치 및 냉장냉동장비(8.0, 8.7) 펌프 및 압축기(7.9, 9.5) 발전기 및 전동기(6.9, 7.2) 변압기 (8.0, 8.7) 전구 및 조명장치 (7.9, 8.6) 전자관(8.0, 8.9) 개별소자(0, -5.0) TV(8.0, 13.1) 냉장고(8.0, 10.1) 세탁기 (8.0, 10.8) 선풍기(8.0, 9.4) 가정용전 열기기(8.1, 11.1) 기타가정용전기 기기(8.0, 11.1) 의료기기(7.6, 8.7) 시 계(7.8, 8.7) 장철제선반(0.9, -5.8) 철도차량(4.0, -0.4) 장난감 및 오 락용품(8.0, 8.7) 악기(7.9, 9.3)	자동차정 및 제어 기기(6.6, 7.7) 촬영 기 및 영상기(6.8, 7.0)		
1 ~ 3	전자코일 및 변성기(8.0, 12.0) VTR(8.0, 14.1) 음향기기(8.0, 15. 9)			
3 ~				

주: ( ) 안의 앞의 수치는 명목관세율, 뒤의 수치는 실효관세율을 나타냄.

〈표 VII-12〉 ITA에 따른 2004년도 명목·실효관세율의 변화  
(단순평균 실행관세율 기준)

(단위: %)

기본부문(402부문)	명목	차이	실효	차이	중간재 평균세율	차이
인쇄	4.6	-0.2	2.4	-0.2	3.1	-
기록매체출판 및 복제	3.8	-1.5	3.4	-1.6	1.4	-0.4
전자기기용 기록매체	0.9	-4.5	-6.0	-8.8	3.8	-0.1
산업용 유리제품	7.8	-0.2	8.2	-0.2	2.5	-
엔진 및 터빈	6.4	-	5.8	0.1	3.8	-0.1
산업용 운반기계	5.5	-0.1	4.0	-0.1	3.5	-0.1
공기조절장치 및 냉장냉동장비	8.0	-	8.7	0.2	4.0	-0.1
펌프 및 압축기	7.9	-	9.5	0.6	3.8	-0.2
공기 및 액체여과청정기	6.4	-0.3	5.5	-0.5	3.5	-0.1
금속절삭가공기계	7.7	-0.1	8.1	-0.1	3.9	-0.1
금속성형처리기계	7.6	-0.2	8.3	-0.1	4.0	-0.1
금형 및 주형	7.2	-0.4	7.2	-0.7	3.6	-0.1
기타 특수목적용기계	6.2	-0.5	4.5	-1.0	4.2	-0.1
발전기 및 전동기	6.9	-	7.2	0.5	3.5	-0.2
변압기	8.0	-	8.7	0.3	3.5	-0.1
기타 전기변환장치	3.8	-2.3	2.0	-3.7	2.7	-0.4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6.7	-0.7	6.9	-1.0	3.4	-0.3
전선 및 케이블	5.5	-1.4	4.7	-3.4	3.5	-
전구 및 조명장치	7.9	-	8.6	0.3	3.6	-0.1
기타 전기장비	6.7	-0.3	6.8	-0.2	3.1	-0.2
전자관	8.0	-	8.9	0.3	4.4	-0.1
기타 전자표시장치	6.0	-1.0	4.5	-1.9	3.7	-0.1
개별소자	0.0	-	-5.0	0.4	1.8	-0.1
집적회로(IC)	0.0	-0.2	-1.3	-0.2	0.8	-0.1
저항기 및 축전기	0.0	-3.8	-4.9	-6.0	2.5	-0.4

〈표 VII-12〉의 계속

(단위: %)

기본부문(402부문)	명목	차이	실효	차이	중간재 평균세율	차이
전자코일 및 변성기	8.0	-	12.0	1.5	3.4	-0.5
인쇄회로기판	1.8	-3.4	-0.9	-4.9	2.2	-1.1
기타 전자부품	7.0	-0.6	8.9	-0.5	2.8	-0.3
TV	8.0	-	13.1	0.8	4.4	-0.2
VTR	8.0	-	14.1	1.2	2.8	-0.4
음향기기	8.0	-	15.9	2.1	3.4	-0.5
기타 영상음향기기	4.8	-2.4	2.1	-5.7	3.8	-0.3
유선통신기기	0.0	-6.0	-3.3	-10.3	1.4	-1.1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3.9	-3.3	3.7	-6.2	2.0	-0.6
컴퓨터 및 주변기기	0.0	-4.6	-7.6	-11.7	2.2	-1.1
사무용 기기	3.3	-2.3	1.3	-3.7	2.3	-0.5
냉장고	8.0	-	10.1	0.5	3.4	-0.2
세탁기	8.0	-	10.8	0.7	3.7	-0.2
선풍기	8.0	-	9.4	0.4	4.0	-0.1
가정용 전열기기	8.1	-	11.1	0.6	3.7	-0.2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8.0	-	11.1	0.8	3.8	-0.3
의료기기	7.6	-	8.7	0.3	2.4	-0.1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6.6	-0.1	7.7	0.3	1.7	-0.2
측정 및 분석기기	5.5	-0.9	5.3	-1.4	2.6	-0.2
촬영기 및 영사기	6.8	-0.1	7.0	0.1	2.0	-0.1
기타 광학기기	7.4	-0.3	7.5	-0.3	2.4	-0.1
시계	7.8	-	8.7	0.2	3.1	-0.1
강철제선박	0.9	-	-5.8	0.1	3.8	-0.1
철도차량	4.0	-	-0.4	0.4	4.1	-0.1
장난감 및 오락용품	8.0	-	8.7	0.2	2.9	-0.1
약기	7.9	-	9.3	0.2	2.7	-0.1

주: 2004년 ITA 품목의 관세율 인하로 인한 단순평균 실효관세율의 변화로서  
1995년 산업연관표를 사용한 모의실험임.

자료: 재경부 및 한국은행 전산자료.

정도 인하되어 완전 무세화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실효세율은 약 5.5% 포인트 인하되어 역관세인 -3.3%가 된다. 1999년에 비하면 유선통신기기의 명목 및 실효세율이 각각 6.0% 포인트, 10.3% 포인트 감소하여 가중평균 때와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컴퓨터 주변기기의 명목세율도 2000년에 이어 추가적으로 1.5% 포인트 인하됨으로써 무세화되어 실효세율이 -7.6%로 역관세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1999년과 비교할 때 약 12% 포인트에 이르는 실효세율의 하락이다. 이외에도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의 명목세율이 1.9% 포인트 하락하여 실효세율이 4% 포인트 감소하여, 3.7%가 되는데 이는 1999년과 비교하면 약 6%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 VIII. 차기 라운드와 관세율정책

### 1. 차기 라운드의 관세율 관련 협상전망

#### 가. 예상 협상주제 및 관련현황

1999년 12월초 시애틀에서 열린 WTO 제 3차 각료회의가 결렬됨으로써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가 언제부터, 어떤 협상대상을 놓고, 어떤 원칙하에 진전될 것인가는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 협상과 서비스 협상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정해진 '기설정 의제'(built-in agenda)로 2000년초부터 협상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국의 무역 확대를 통해 경제발전을 꾀한다는 기본원칙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라운드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차기 라운드에서 관세율정책과 관련하여 협상의 대상이 될 주제와 관련 현황을 간단히 정리한다.

#### 1) 양허의 범위

관세양허는 적용관세율의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무역관련 경제주체들에게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므로 시장접근성의 개선과 관련하여 기본적 관심사항이 된다. 선진국들의 경우 UR을 통해 양허의 수준이 거의 100 %에 가까워졌다(〈표 VIII-1〉참조). 일본의 경우 농산물 및 식품(HS 01,02,04부)에 약간의 미양허 품목이 있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모두 광물성 생산품(HS 05부)에 약간의 미양허 품목들이 존재한다. 그외 미국은 플라스틱과 고무(HS 07부), 일본은 목재제품군(HS 09부), 캐나다는 수송장비(HS 17

〈표 VIII-1〉 UR 전후 양허품목 비중

(단위: %)

	미 국		일 본		캐 나 다		E U		호 주		한국
	1993	1996	1993	1996	1993	1996	1993	1996	1993	1996	
1부	93.8	100.0	60.2	92.1	97.7	100.0	65.5	100.0	46.3	100.0	58.5
2부	85.6	100.0	64.8	98.1	94.4	100.0	67.6	100.0	25.3	100.0	88.0
3부	88.7	100.0	83.0	100.0	97.1	100.0	66.9	100.0	22.6	100.0	100.0
4부	91.6	100.0	62.2	99.8	93.6	100.0	72.1	100.0	44.6	100.0	91.5
5부	98.4	98.9	79.5	85.8	92.6	93.5	99.6	100.0	13.8	100.0	88.6
6부	99.8	100.0	98.5	100.0	99.2	100.0	98.2	100.0	13.8	100.0	94.8
7부	100.0	99.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9	93.6	98.6
8부	100.0	100.0	82.6	100.0	99.0	100.0	100.0	100.0	6.7	91.6	78.7
9부	100.0	100.0	65.3	85.1	100.0	100.0	100.0	100.0	33.7	100.0	74.9
10부	100.0	100.0	100.0	100.0	99.2	100.0	100.0	100.0	10.8	100.0	99.6
11부	99.1	100.0	99.5	100.0	99.9	100.0	99.2	100.0	4.0	93.4	99.7
12부	100.0	100.0	71.3	100.0	100.0	100.0	97.4	100.0	19.8	93.5	100.0
13부	100.0	100.0	100.0	100.0	99.1	100.0	100.0	100.0	22.4	92.1	82.2
14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2.1	100.0	100.0
15부	100.0	100.0	100.0	100.0	99.9	100.0	99.5	100.0	15.6	94.4	99.4
16부	100.0	100.0	100.0	100.0	99.9	100.0	99.9	100.0	34.0	95.6	85.0
17부	93.5	100.0	98.7	100.0	93.3	94.2	100.0	100.0	47.0	94.2	79.4
18부	100.0	100.0	100.0	100.0	99.0	99.8	100.0	100.0	40.4	94.8	96.1
19부	100.0	100.0	61.9	100.0	100.0	100.0	100.0	100.0	23.5	100.0	100.0
20부	98.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5	97.3	98.1
21부	100.0	100.0	100.0	100.0	77.8	77.8	100.0	100.0	0.0	100.0	100.0
계	98.1	100.0	90.5	98.8	98.6	99.6	92.7	100.0	20.2	96.0	90.6

부)에 미양허 품목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UR 이후 양허수준이 91.3%에 달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선진국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표 VIII-2〉에서 보듯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HS 01부 특히 수산물(HS 03류)), 수산물 조제품(HS 04부의 16류), 화학공업 및 연관공업 생산품(HS 06부 특히 의약품(HS 30류)), 가죽 및 모피제품(HS 08부의 42류, 43류), 섬유판 및 합판(HS 44류), 기계류(HS 16부), 화물차(HS 17부의 87류) 등에 미양허 품목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 2) 관세율 인하의 폭

관세율의 인하는 시장접근의 개선을 나타내주는 가장 가시적인 효과로서 케네디 라운드에서 그 이전의 2국간 교섭방식을 벗어난 관세의 일률적 인하방식이 도입된 이래 관세의 총량적 인하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가 협상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케네디 라운드(1964년 개시, 1967년 종료)에서는 50% 일률적 선형 인하를 원칙으로 하였다. 도쿄 라운드(1973년 개시, 1979년 종료)에서는 고세율에 대해 더 큰 인하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여 가중평균 40% 인하를 원칙으로 하였다. 우루과이 라운드(1986년 개시 1994년 종료)에서는 공산품에 대해 수입액 가중평균의 1/3 인하를 원칙으로 하였다. 차기 라운드와 관련해서는 일부 국가들이 ‘우루과이 라운드의 인하보다 더 큰 폭의 인하’를 목표로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현재 관세율의 수준이 기본적으로 낮으므로 전반적인 관세율 인하의 목표가 높게 잡히더라도 시장개방의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산품의 경우는 관세율의 수준이 양허관세기준으로 보나 기본관세율 기준으로 보나 높지 않으므로 시장의 개방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sup>1)</sup>.

1) 양허세율의 전반적 인하가 우리나라의 실행세율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후술함.

## 〈표 VIII-2〉 우리나라의 미양허품목

(단위: 개, %, 천달러)

	미양허품목수	실행세율		실적세율		1998년도 수입실적
		단순	가중	단순	가중	
1부	228(41.53)	17.3	13.9	20.0	22.3	256,806
2부	70(12.05)	23.0	16.4	31.8	23.0	41,935
3부	0( 0.00)	0	0	0	0	0
4부	42( 8.48)	19.2	14.9	20.8	27.7	64,746
5부	37(11.38)	4.7	4.9	4.9	4.6	11,816,165
6부	117( 5.22)	8.0	7.6	9.0	7.5	390,610
7부	5( 1.35)	8.0	8.0	9.1	8.9	80,435
8부	53(21.29)	14.1	15.6	11.8	15.3	11,000
9부	56(25.11)	6.7	4.3	8.3	4.5	504,344
10부	1( 0.44)	2.0	2.0	1.9	1.9	24
11부	4( 0.31)	8.0	8.0	9.7	15.4	2,685
12부	0( 0.00)	0	0	0	0	0
13부	51(17.77)	8.0	8.0	7.8	8.2	235,577
14부	0( 0.00)	0	0	0	0	0
15부	5( 0.55)	8.0	8.0	8.3	8.1	7,407
16부	278(14.98)	8.0	8.1	7.3	7.4	2,773,215
17부	70(20.65)	6.4	1.4	4.4	1.1	156,216
18부	23( 3.91)	8.0	8.0	6.1	5.0	228,397
19부	0( 0.00)	0	0	0	0	0
20부	5( 1.86)	8.0	8.0	7.5	7.9	12,887
21부	0( 0.00)	0	0	0	0	0

### 3) 고율관세

다수에 걸친 GATT 협상을 통해 관세율의 전반적 수준이 인하되어 왔으나 각국의 민감품목들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평균적 관세율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고율관세들은 자원의 배분과 무역을 크게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므로 차기 라운드에서 관세를 인하공식을 통해서, 혹은 별도의 방식을 통해서 집중적인 감축논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OECD의 논의에서는 15%를 넘는 관세율을 '국제적 기준'의 고율관세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을 QUAD국의 MFN 세율에 적용해 보면 미국이 전 품목 중 8.5%에서 고율관세를 보여주며, 그 외의 나라들은 12%를 넘는 품목에 고율관세가 존재하고 있다. 고율관세가 존재하는 품목군을 보면 EU에서는 농산물에 15%를 넘는 고율관세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 그 외의 나라들에서는 섬유, 신발류에 집중되어 있다(〈표 VIII-3〉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선진국의 경우 농산물 및 식품, 섬유류 및 의류 품목에 집중적으로 고율관세가 존재한다. 낙농품(4류)에는 QUAD국 모두가 고율관세를 두고 있으며 EU는 곡물(10류)에 대해 광범위한 고율관세를 두고 있다. 제분공업 생산품과 맥아(11류)에는 EU, 일본, 캐나다 모두 고율관세가 존재한다. 그 밖에 동물성 유지, 채소과실과 견과류, 담배 등의 품목군에도 고율관세가 상당한 정도로 존재한다. 섬유류와 의류에 대한 고율관세는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 두드러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행세율 기준으로 볼 때 고율관세가 존재하는 품목은 전체의 8.1%로 선진국보다 오히려 낮다. 고율관세가 집중되어 있는 품목군은 육류, 어류, 낙농, 채소, 과실 등 거의 전적으로 농산물 분야이다. 공산품 중 고율관세가 존재하는 품목은 모피제품 등 극소수이다.

〈표 VIII-3〉 QUAD 국과 우리나라의 고율관세<sup>2)</sup> 품목수

(단위: 개)

	미국	EU	일본	캐나다	한국
1. 산 동물	0	21	3	4	6
2. 육과 식용설육	12	181	19	34	87
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0	61	0	0	157
4. 낙농품, 조란, 천연꿀 등	39	102	86	47	46
5. 기타 동물성 생산품	0	0	0	1	10
6. 산 수목과 기타 식물	0	7	0	2	10
7. 식용채소	28	37	4	11	115
8. 식용 과실 및 견과류	14	67	29	1	72
9. 커피, 차 및 향신료	0	6	10	0	8
10. 곡물	1	46	7	4	4
11.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3	62	57	9	8
12.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6	2	2	1	65
13. 락, 검 수지 및 기타 식물성 액즙	0	1	2	1	8
15. 동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물	5	22	10	13	18
16. 육류, 어류 갑각류의 조제품	2	66	29	20	89
17. 당류와 설탕과자	0	16	36	4	7
18. 코코아와 그조제품	0	3	21	2	4
19. 곡물, 분, 밀크의 조제품 등	15	27	131	14	5
20. 채소과실 견과류 및 기타조제품	69	334	199	8	99
21. 각종의 조제식품	5	18	57	12	10
22. 음료, 알코올 및 식초	10	74	63	17	39
23. 식품공업의 잔재물 및 조제사료	0	25	0	3	0
24.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품	19	20	2	1	11
27.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증류물 등	0	0	0	0	0
28.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 등	2	0	0	0	0
29. 유기화학품	28	7	2	0	0
30. 의료용품	1	0	0	0	0
32. 유연 또는 염색엑스	15	0	0	0	0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항료	0	2	1	1	5
34.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조제세제	0	0	0	1	0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0	8	4	2	3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2	8	1	0	0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0	0	0	17	0
40. 고무와 그제품	0	0	0	3	0
41.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0	0	26	0	0
42. 가죽제품 및 이와 유사한 동물거트	14	0	13	3	0
43.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0	0	9	3	23

2) 고율관세는 15% 이상으로 정의함.

〈표 VIII-3〉의 계속

	미국	EU	일본	캐나다	한국
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4	0	1	0	0
45. 코르크와 그 제품	1	0	0	0	0
46. 짚, 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	1	0	0	0	0
49. 인쇄서적, 신문, 기타의 인쇄물	0	0	0	3	0
51. 양모, 섬수도 및 이들의 직물	6	0	0	13	0
52. 면	14	0	0	83	0
53.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3	0	6	4	0
54. 인조필라멘트	56	0	4	41	0
55. 인조스테이플섬유	56	0	10	69	0
56. 워팅, 펠트 및 부직포	9	3	0	44	0
57.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섬유계의 바닥갈래	0	0	0	22	0
58.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17	0	9	44	0
59.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	1	0	0	29	0
60.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7	0	12	25	0
61.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148	0	90	125	0
62.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제외)	122	0	86	122	0
63.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물품	7	0	1	58	0
64. 신발류, 각반 및 이와 유사한 제품	52	31	86	55	0
65. 모자류와 그 부분품	1	0	0	6	0
67. 조제우모와 그 솜털 및 그 제품	1	0	0	5	0
68. 석, 플라스틱, 시멘트, 석면유사제품	1	0	0	1	0
69. 도자제품	12	0	0	0	0
70. 유리와 유리제품	11	0	0	7	0
71.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및 반귀석	5	0	0	0	0
82. 비금속제의 공구, 도구, 스푼, 포크	7	0	0	10	0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영상 및 음성기록기	2	0	0	24	0
86. 철도 또는 궤도용의 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7	0	0	0	0
87.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	6	20	0	1	0
88.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0	0	0	2	0
89. 선박과 수상 구조물	0	0	0	14	0
90.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등	2	0	0	0	0
91. 시계와 그 부품	5	0	1	15	0
94. 가구와 침구 등	0	0	0	6	0
95.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및 부속품	0	0	0	3	0
96. 잡품	6	0	0	9	0
합 계	860	1,277	1,129	1,069	909
비율	8.5	12.2	12.5	12.7	8.1

주 : 한국은 1999년 실행세율기준, 다른나라는 1996년 MFN 기준.

자료 : OECD 전산자료.

## 4) 미소관세 (nuisance tariff)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인하되어온 결과 각국의 관세율 체계내에 0%에 근접하였으나 무세로 되지는 않은 품목들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몇 개 국가들(호주, 일본 등)은 2 내지 2.5%이하의 관세율들을 0%로 내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선진국(QUAD국과 호주)에 대해서 OECD가 제시한 3%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미소관세가 분포를 살펴보면(표 <Ⅷ-4>참조), 캐나다와 일본에는 4 내지 5% 정도의 품목에 미소관세가 존재하고 있고 호주, EU, 미국에는 이보다 높아서 11%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미소관세가 주로 분포하는 품목을 보면, 식용채소, 과일, 무기화학품,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철강제품, 동제품,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등임을 알 수 있다.

&lt;표 Ⅷ-4&gt; 미소관세의 분포

(단위 : 개, 백만달러, 백만원)

	호주	캐나다	EU	일본	미국	한국		
						수입액	관세징수	
1. 산 동물	6	3	1	0	10	8	5	26
2. 육과 식용설육	3	13	2	9	22	0	-	-
3.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등	7	2	3	13	13	0	-	-
4. 낙농품, 조란, 천연꿀 등	13	1	0	0	7	0	-	-
5. 기타 동물성 생산품	14	0	1	4	6	3	0	0
6. 산 수목과 기타 식물	10	1	3	3	4	0	-	-
7. 식용채소	34	10	0	24	19	4	19	913
8. 식용 과일 및 견과류	20	2	9	12	22	0	-	-
9. 커피, 차 및 향신료	2	17	1	17	7	0	-	-
10. 곡물	12	5	1	3	10	10	914	6,531
11.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13	13	0	0	21	3	2	94
12.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일	34	3	8	2	19	19	59	0
13. 락, 검 수지 및 기타 식물성액즙	0	0	1	2	2	0	-	-

〈표 VIII-4〉의 계속

(단위: 개, 백만달러, 백만원)

	호주	캐나다	EU	일본	미국	한국	관세정수	
							수입액	관세정수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식물성생산물	7	0	0	0	4	0	-	-
15. 동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물	12	2	6	8	15	0	-	-
16. 육류, 어류 갑각류의 조제품	1	3	0	0	13	0	-	-
17. 당류와 설탕과자	1	0	0	0	3	0	-	-
18. 코코아와 그조제품	2	0	0	0	2	0	-	-
19. 곡물, 분, 밀크의 조제품 등	1	4	0	0	5	0	-	-
20. 채소과실 견과류 및 기타 조제품	0	4	0	0	6	0	-	-
21. 각종의 조제식료품	9	3	1	1	5	0	-	-
22. 음료, 알코올 및 식초	1	4	0	1	8	0	-	-
23. 식품공업의 잔재물 및 조제사료	13	3	2	2	14	0	-	-
24. 담배와 제한한 담배대용품	0	0	0	1	0	0	-	-
25.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 석회와 시멘트	37	9	10	8	8	5	94	258
26. 광, 슬랙 및 회	20	1	0	0	6	55	1,644	12,593
27. 광물성연료, 광물유와 증류물 등	24	2	18	9	3	12	2,170	332
28.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 등	0	17	10	23	65	18	308	351
29. 유기화학품	0	4	10	26	49	61	26	1,751
30. 의료용품	0	0	0	0	0	28	66	592
31. 비료	0	0	0	0	0	0	-	-
32. 유연 또는 염색액스	0	0	1	11	13	0	-	-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항료	0	3	9	3	6	0	-	-
34.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조제세제	0	0	0	0	3	0	-	-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1	0	0	2	5	0	-	-
36. 화학류 화공품 및 특정가연성 조제품	0	0	0	0	2	0	-	-
37.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0	1	2	0	3	3	1	0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물	1	1	4	29	9	4	460	27,067

## 〈표 VIII-4〉의 계속

(단위 : 개, 백만달러, 백만원)

	호주	캐나다	EU	일본	미국	한국	수입액	
							수입액	관세징수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0	0	0	17	20	0	-	-
40. 고무와 그 제품	11	1	22	11	21	12	229	84
41.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6	0	12	1	8	0	-	-
42. 가죽제품 및 이와 유사한 동물의 거트	3	0	9	0	6	0	-	-
43.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9	0	2	6	6	0	-	-
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2	1	10	24	16	35	108	445
45. 코르크와 그 제품	4	0	0	0	0	0	-	-
46. 짚, 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조물재료	4	0	3	2	4	0	-	-
47. 목재 또는 기타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0	0	0	0	0	16	678	19,434
48.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등	1	0	0	0	0	0	-	-
49. 인쇄서적, 신문, 기타의 인쇄물	0	0	0	0	0	27	88	6
50. 견	3	0	2	0	3	1	2	47
51. 양모, 섬유모 및 이들의 직물	10	4	5	9	9	0	-	-
52. 면	44	0	0	1	2	0	-	-
53. 기타 식물성 방직용섬유	9	0	0	2	3	0	-	-
54. 인조필라멘트	0	0	0	0	0	0	-	-
55. 인조스테이플섬유	0	1	0	0	2	0	-	-
56. 위팅, 펠트 및 부직포	2	1	0	2	3	0	-	-
57.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계의 바닥깔개	0	0	1	0	5	0	-	-
58.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0	0	0	0	1	0	-	-
59.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섬유	1	0	0	0	5	0	-	-
60.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0	0	0	0	0	0	-	-
61.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0	0	0	0	13	0	-	-

〈표 VIII-4〉의 계속

(단위 : 개, 백만달러, 백만원)

	호주	캐나다	EU	일본	미국	한국	관세징수	
							수입액	관세징수
62.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제외)	0	0	0	0	11	0	-	-
63.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물품	3	0	1	0	3	0	-	-
64. 신발류, 각반 및 이와 유사한 제품	0	0	4	0	2	0	-	-
65. 모자류와 그 부분품	3	0	8	0	1	0	-	-
66. 산류·지방이·스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1	0	2	0	2	0	-	-
67. 조제우모와 그 솜털 및 그 제품	5	0	6	0	0	0	-	-
68. 석, 플라스틱, 시멘트, 석면 유사제품	1	0	31	19	10	0	-	-
69. 도자제품	4	1	7	14	7	0	-	-
70. 유리와 유리제품	5	0	28	2	16	0	-	-
71.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	18	0	7	5	16	12	3	35
72. 철강	8	8	10	8	5	15	1,171	1,226
73. 철강의 제품	4	0	41	15	17	0	-	-
74. 동과 그제품	0	53	11	37	51	2	0	1
75. 니켈과 그제품	0	11	2	13	11	6	90	1,397
76. 알루미늄과 그제품	0	6	0	17	16	1	61	62
77. (유보)			0	-	-			
78. 연과 그제품	0	9	4	10	8	1	0	6
79. 아연과 그제품	0	6	5	9	8	1	0	2
80. 주석과 그제품	0	6	0	6	5	1	0	4
81. 기타 비금속, 세메트, 이들의 제품	0	35	12	20	9	4	0	1
82. 비금속계의 공구, 도구, 스푼, 포크	6	0	48	0	9	0	-	-
83. 비금속계의 각종 제품	1	0	32	15	9	0	-	-
84. 워자르·보일러와 기계류 및 부분품	51	20	384	0	130	75	245	9,109

〈표 VIII-4〉의 계속

(단위 : 개, 백만달러, 백만원)

	호주	캐나다	EU	일본	미국	한국	수입액	관세징수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영상 및 음성 기록기	25	9	187	4	140	57	11,936	359,417
86. 철도 또는 궤도용의 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0	0	23	0	3	8	0	0
87.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	6	0	13	0	36	8	58	488
88.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6	0	12	0	1	39	839	106
89. 선박과 수상 구조물	0	0	15	0	4	3	1	4
90.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등	28	52	74	0	84	21	387	19,204
91. 시계와 그 부품	34	4	12	0	8	0	-	-
92. 악김 및 그 부분품과 그 부속품	13	1	8	0	9	0	-	-
93.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과 부속	9	1	10	0	7	11	394	0
94. 기구와 침구 등	3	1	8	2	2	24	35	2,875
95. 원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및 부속품	0	0	23	0	6	0	-	-
96. 잡품	6	1	27	10	11	0	-	-
97.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2	1	0	0	0	13	15	0
합 계	649	364	1,224	494	1,193	626	22,109	464,460
비 율	11.2	4.3	11.7	5.5	11.8	5.6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소관세 품목이 광, 슬랙 및 회(HS 26류), 의료용품(HS 30류), 목재제품(HS 44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HS 84류), 전기기기(HS 85류), 항공기 및 부분품(HS 88류) 등에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들 미소관세 품목의 수입액 규모는 220억달러로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7%였고 관세수입 규모는 4,644억원으로 전체 관세수입에서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 미소관세 품목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5) 종량세

종가세는 수입가격의 변화나 환율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정도의 보호효과를 갖는 반면 종량세(혹은 선택세, 혼합세와 같은 종량세의 변형 형태)는 그러한 변화에 따라 보호효과와 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관세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종량세 축소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른 한편, 각국은 저가품으로부터의 자국 시장보호 등 여러 정책목표를 위해 종량세를 유지하기도 한다.

선진국에서는 종량세 혹은 그 변형 형태를 상당한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표 VIII-5〉 참조). QUAD국 중 미국의 비종가세 품목의 비중은 14.52%에 달하여 매우 높으며 EU도 10.70%에 달한다. 캐나다와 일본도 6%를 상회하여 QUAD국 평균은 9.6%에 이른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QUAD국 모두 폭넓게 종량세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HS 1부에서 4부까지 적용비율이 모두 40%를 넘는다. 공산품의 경우 섬유와 그 제품, 신발 및 모자류에 QUAD국 모두가 광범위하게 비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종가세가 지배적이며 소수의 종량세 품목은 농산품에 집중되어 있다(농산품의 종량세 분포에 대해서는 농산물 관세체계에 대한 장을 참조).

## 2. 차기 라운드 관세율 인하협상이 실효관세율 분포에 미칠 영향

이하에서는 차기 라운드에서 타결될 관세율 관련 협상의 결과에 대한 단순화된 가정하에서 그것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실효관세율을 통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 가. 관세율 인하에 대한 시나리오

미양허 품목의 양허와 관련하여서는 수산물의 양허범위가 중요한 변

〈표 VIII-5〉 비종가세의 분포

(단위: %, 개)

	한 국				캐나다	일 본	미 국	EU	QUAD mean					
	양 허		실 행						비 중	품 목 수	비 중	품 목 수		
	비 중	품 목 수	비 중	품 목 수	비 중	품 목 수	비 중	품 목 수	비 중	품 목 수				
1.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0.18	1	0.18	1	48.02	158	13.58	74	40.84	205	46.17	368	37.15	201
2. 식물성 생산품	8.61	50	4.13	24	26.43	129	10.45	58	45.51	223	35.05	252	29.36	165
3. 동물성 유지 및 분해생산물	1.03	1	1.03	1	6.25	4	43.90	36	46.97	31	7.81	10	26.23	20
4. 조제식품 등	1.62	8	0.20	1	35.08	187	15.65	118	43.83	316	51.74	430	36.58	263
5. 광물성 생산품	0.00	0	0.00	0	1.60	3	15.53	34	23.50	43	1.17	3	10.45	21
6. 화학 생산품	0.89	20	0.89	20	1.15	11	0.67	7	9.33	155	2.01	25	3.29	50
7. 플라스틱과 고무제품	0.00	0	0.00	0	0.00	0	1.75	5	5.95	21	0.00	0	1.93	6
8. 모피 및 가죽제품	0.00	0	0.00	0	0.00	0	0.00	0	1.28	2	0.00	0	0.32	0
9. 목재와 그 제품(코르크, 농제품물 등)	0.00	0	0.00	0	0.86	1	0.00	0	6.52	12	0.00	0	1.85	3
10. 목재 또는 펄프(판지 및 이들의 제품)	0.00	0	0.00	0	0.00	0	0.00	0	2.69	6	0.00	0	0.67	1
11. 방직용 섬유와 제품	0.62	8	0.39	5	1.54	16	10.63	226	9.30	144	0.22	3	5.42	97
12. 신발, 모자류	0.00	0	0.00	0	0.00	0	18.75	27	17.26	29	0.00	0	9.00	14
13. 석, 시멘트, 운모 제품	0.00	0	0.00	0	0.00	0	0.00	0	5.39	16	3.31	9	2.18	6
14. 귀금속 제품	0.00	0	0.00	0	1.52	1	0.00	0	0.99	1	0.00	0	0.63	1
15. 비금속과 그 제품	0.00	0	0.11	1	1.37	13	4.73	39	6.72	66	0.00	0	3.21	30
16. 기계류	0.05	1	0.00	0	0.06	1	0.20	2	0.87	12	0.00	0	0.28	4
17. 차량 및 수송기기 관련품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18. 정밀기기	0.00	0	0.00	0	0.00	0	0.00	0	29.92	155	5.90	23	8.96	44
19. 무기류	0.00	0	0.00	0	0.00	0	0.00	0	2.70	1	0.00	0	0.68	0
20. 잡품	0.00	0	0.00	0	0.00	0	0.97	2	10.11	28	0.00	0	2.77	8
21. 예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전 체	0.80	89	0.47	53	6.24	524	6.93	628	14.52	1466	10.70	1123	9.60	935

수가 된다. 과거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그 이전까지 예외분야였던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화와 더불어 전반적 양허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라운드에서 수산물 등 비양허 품목에 큰 폭으로 양허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정된다. 과거 라운드의 경험과 차기 라운드에 임하는 각국의 주장을 볼 때 공산품과 농산품 등 기존 양허품목에 대해서는 3분의 1 수준의 관세율 인하를 기준상황으로 삼을 수 있다. 농산물 중 관세할당이 있는 품목의 경우 할당량내 관세율이 대부분의 경우 실행관세율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할당량 내 관세율의 3분의 1이 인하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새로이 양허되는 품목의 경우에 대해서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농산품에 적용된 것보다 작은 폭의 관세율 인하를 상정할 수 있다. 요약하면, 기양허 품목의 양허 관세율의 3분의 1 이하, 미양허 품목의 양허와 양허관세율 24% 감축을 기본 시나리오로 생각할 수 있다.

#### 나. 시나리오에 입각한 실행세율의 변화

위의 시나리오에서 인하폭은 양허세율 기준이므로 양허세율의 변화가 실행세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미양허세율은 양허됨과 동시에 24% 인하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양허세율이 실행세율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양허세율의 인하가 바로 그만큼의 실행세율의 인하를 의미한다. 양허세율이 실행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양허세율의 인하폭 중 부분적으로만 실행세율의 인하로 이어지며 양허세율이 실행세율보다 충분히 높으면 실행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표 VIII-6〉이 보여주듯이 시나리오에서 가정한 양허세율의 인하는 전품목 중 3분의 1에 대해서 실제적인 실행세율 인하효과가 있다. 실행세율이 변화하는 품목의 비중이 높은 품목군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HS 1부), 식물성 생산품(2부), 차량 및 수송기기 관련품(17부), 정밀기기(18부), 예술품 및 수입품 등(21부)이

〈표 VIII-6〉 현행 양허세율과 실행세율

(단위: 개, %)

	미양허품목수 (10단위)	현 양허세율 = 현 실행세율	현 양허세율 > 현 실행세율		계
			실행세율 인하	실행세율 불변	
1부	228(41.53)	174( 31.69)	72(13.11)	75(13.66)	549(100)
2부	70(12.05)	220( 37.87)	69(11.90)	222(38.21)	581(100)
3부	0( 0.00)	9( 9.28)	15(15.46)	73(75.26)	97(100)
4부	42( 8.48)	77( 15.56)	61(12.32)	315(63.64)	495(100)
5부	37(11.38)	114( 35.08)	1( 0.31)	173(53.23)	325(100)
6부	117( 5.22)	250( 11.16)	44( 1.97)	1,830(81.66)	2,241(100)
7부	5( 1.35)	13( 3.51)	3( 0.81)	349(94.32)	370(100)
8부	53(21.29)	0( 0.00)	19( 7.63)	177(71.08)	249(100)
9부	56(25.11)	21( 9.42)	1( 0.45)	145(65.02)	223(100)
10부	1( 0.44)	29( 12.72)	31(13.60)	167(73.25)	228(100)
11부	4( 0.31)	5( 0.39)	0( 0.00)	1,289(99.31)	1,298(100)
12부	0( 0.00)	46( 43.40)	0( 0.00)	60(56.60)	106(100)
13부	51(17.77)	1( 0.35)	1( 0.35)	234(81.53)	287(100)
14부	0( 0.00)	27( 23.08)	1( 0.85)	89(76.07)	117(100)
15부	5( 0.55)	95( 10.45)	268(29.48)	541(59.52)	909(100)
16부	278(14.98)	484( 26.08)	91( 4.90)	1,003(54.04)	1,856(100)
17부	70(20.65)	167( 49.26)	0( 0.00)	102(30.09)	339(100)
18부	23( 3.91)	259( 44.05)	24( 4.08)	282(47.96)	588(100)
19부	0( 0.00)	11( 47.83)	0( 0.00)	12(52.17)	23(100)
20부	5( 1.86)	24( 8.92)	0( 0.00)	240(89.22)	269(100)
21부	0( 0.00)	13(100.00)	0( 0.00)	0( 0.00)	13(100)
총계	1,045( 9.36)	2,039(18.27)	701( 6.28)	7,378(66.09)	11,163(100)

다. 실행세율이 변화하는 품목의 비중이 낮은 품목군은 화학생산물(6부),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7부), 방직용 섬유와 제품(11부), 석, 시멘트, 운모(13부), 잡품(20부) 등이다.

위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실행세율의 단순평균은 8.87%에서 8.02%로, 가중평균은 4.97%에서 4.39%로 낮아진다(〈표 VIII-7〉 참조). 단순평균기준으로 실행세율의 변화가 현저한 품목군은 농수산물(1에서 4부)이외에 신발 및 모자류(12부), 정밀기기(18부) 등이다. 1998년 수입실적으로 가중한 가중평균기준으로 볼 때에는 농수산물의 실행세율 인하는 HS 1부를 제외하고는 매우 현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I-7〉 시나리오에 따른 실행관세율의 변화

(단위: %)

HS	단순평균(명목)		가중평균(명목)	
	현 실행세율	새 실행세율	현 실행세율	새 실행세율
1부	17.48	13.33	23.38	19.31
2부	18.37	15.57	7.08	6.77
3부	11.13	9.67	5.21	5.16
4부	18.32	15.68	10.67	9.46
5부	3.70	3.25	3.53	2.70
6부	7.31	7.07	6.59	6.10
7부	7.63	7.54	7.03	6.86
8부	7.85	6.94	3.73	3.66
9부	5.76	5.28	4.56	3.97
10부	6.32	6.20	3.33	3.11
11부	9.69	9.69	8.70	8.70
12부	10.17	8.25	10.10	8.24
13부	7.96	7.60	7.95	7.30
14부	5.32	5.06	3.07	3.06
15부	7.03	6.44	4.90	4.48
16부	6.80	6.11	3.99	3.50
17부	5.77	4.70	3.72	3.33
18부	7.11	6.03	6.49	5.09
19부	4.17	4.17	0.03	0.03
20부	7.28	7.24	7.40	7.35
21부	0.00	0.00	0.00	0.00
계	8.87	8.02	4.97	4.39

#### 다. 시나리오에 입각한 산업별 실효관세율

실효관세율이 넓게 분포하는 산업군은 IO 77 기준으로 작물, 조미료 및 유지, 섬유사, 가죽제품 및 모피 등이다. 그밖의 공산품제조 산업은 5~8%대 혹은 8~10%대에 집중되어 있다. 음(-)의 실효관세율을 보이는 산업은 축산, 금속광석, 조미료 및 유지 중 일부 산업, 출판, 복제, 전자기기부품, 자동차 중 일부 산업, 철도차량과 항공기 등이다. 반면, 실효관세율이 20% 수준을 초과하는 산업은 농산물(작물), 음·식료품에 집중되어 있다.

〈표 VIII-8〉 시나리오하에서의 실효관세율의 분포

	0이하	0~5	5~8	8~10	10~20	20이상
1. 농림수산물						
1. 작물	16. 종자 및 묘목	1. 벼 3. 밀 4. 잡곡 11. 기타식용작물 12. 섬유작물 15. 천연고무	7. 콩류	10. 약물작용 17. 기타 비식용작물	8. 감자류 14. 화훼작물	2. 보리 5. 채소 6. 과실 9. 유자작물 13. 앞담배
2. 축산	18. 낙농 19. 육우 20. 양돈 21. 가금	22. 기타축산				
3. 임산물		24. 원목 26. 기타 임산물		23. 육림	25. 식용임산물	
4. 수산물				27. 해면어획 28. 내수면어획 29. 해면양식 30. 내수면양식		
2. 광산물						
5. 석탄	31. 무연탄	32. 유연탄				
6. 원유 및 천연가스		33. 원유 34. 천연가스				
7. 금속광석	35. 철광석 36. 동광석 37. 연 및 이연광석 38. 기타비철 금속광석					
8. 비금속광물	44. 원염	39. 모래 및 자갈 40. 쇄석 41. 기타건설용 석재 42. 석회석 43. 요업원료 광물 45. 기타 비금속광물				

〈표 VIII-8〉의 계속

	0이하	0~5	5~8	8~10	10~20	20이상
3. 음식료품						
9. 유류 및 낙농품		51. 아이스크림				46. 도축육 47. 가공육 48. 육가공품 49. 우유 50. 유제품
10. 수산가공품		52. 어육및어묵		54. 수산생동품		53. 수산통조림 55. 수산지장품 56. 기타수산식품
11. 정곡및제분	58. 정맥	57. 정미		59. 제분		
12. 제당및전분		60. 원당 61. 정제당			62. 전분	63. 당류
13. 빵, 과자 및 곡수류		66. 곡수류	64. 빵 및 곡분과자 65. 설탕과자			
14. 조미료 및 유지	69. 기타조미료 71. 동물성유지 72. 식물성유지 및 식용유		70. 장류	67. 정제염	68. 발효조미료	
15. 과채가공품및 기타식료품			78. 기타식료품	77. 두부		73. 과일 및 채소가공품 74. 커피 및 차류 75. 인삼식품 76. 누룩 및 맥아
16. 음료품			79. 주정	85. 평천수 및 생수 86. 얼음		80. 소주 81. 탁주 및 약주 82. 맥주 83. 기타주류 84. 청량음료
17. 배합사료		87. 배합사료				
18. 담배	88. 담배					
4. 섬유, 가죽제품						
19. 섬유사	90. 모사	91. 면사	92. 마사	93. 재생섬유사 95. 재봉사 및 기타섬유사	89. 견사 94. 합성섬유사	
20. 섬유직물				104. 섬유포백 및 염색	99. 마직물 100. 재생섬유직물 101. 합성섬유직물 102. 기타섬유직물	96. 견직물 97. 모직물 98. 면직물 103. 편조원단

<표 VIII-8>의 계속

	0이하	0~5	5~8	8~10	10~20	20이상
21. 의류 및 장신품			108. 기타장신품		107. 직물제의류	105. 편직제의류 106. 편직제장신품 109. 가죽의류류 110. 모피의류
22. 기타섬유제품				112. 기타 섬유제품	111. 직물제품 113. 끈, 문양 및 어망	
23. 가죽제품 및 모피	114. 가죽		115. 모피	116. 가방 및 핸드백 118. 운동화 및 기타신발	117. 가죽신발 119. 기타 가죽제품	
5. 목재, 종이제품						
24. 목재 및 나무제품			122. 재생 및 강화복제	121. 합판 125. 기타목제품	120. 제재목 123. 건축용목 124. 목제품용기	
25. 펄프 및 종이	126. 펄프		134. 기타 종이제품	130. 골판지 및 기타 판지 131. 종이용기 132. 종이 및 사무용지	127. 신문용지 128. 인쇄용지 129. 기타 판지 133. 회생용 종이제품	
6. 인쇄, 출판 및 복제						
26. 인쇄, 출판 및 복제	135. 신문 136. 출판 138. 기록매체 출판 및 복제	137. 인쇄				
7. 석유, 석탄제품						
27. 석탄제품	139. 연탄			140. 기타석탄제품		
28. 석유제품	141. 나프타	142. 휘발유 143. 제트유 144. 등유 145. 경유 146. 중유 147. 석유가스	149. 기타석유 정제품	148. 윤활유제품		
8. 화학제품						
29. 유기화학 기초제품		152. 석탄화학물	150. 석유화학 기초제품	153. 기타기초 유기화학물	151. 석유화학 중간제품	
30. 무기화학 기초제품		155. 기초무기 화합물		154. 산업용가스		
31.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157. 합성고무	156. 합성수지	

〈표 VIII-8〉의 계속

	0이하	0~5	5~8	8~10	10~20	20이상
32. 화학섬유				159. 합성섬유	158. 재생섬유	
33. 비료 및 농약		160. 질소화합물 161. 비료		162. 농약		
34. 의약품 및 화장품			163. 의약품	164. 화장품 및 치약 165. 배누 및 세제		
35. 기타화학제품	171. 전자기용 기록매체	173. 기타화학 제품	172. 사진용 기록매체	166. 염료, 안료 민유연제 168. 이크 170. 화학 및 불꽃제품	167. 도료. 169. 접착제 및 클라탄	
36. 플라스틱제품				174. 플라스틱 1차제품 175. 산업용 플라스틱 제품 176. 가 플라스틱 제품		
37. 고무제품	179. 기타고무 제품			178. 산업용	177. 타이어 및 튜브	
9. 비금속광물제품						
38. 유리제품			181. 산업용 유리제품	180. 편유리 및 1차유리 182. 기타유리 제품		
39. 도자기 및 절토제품			183. 산업용 도자기 186. 건설용 절토제품	184. 가정용 도자기 185. 내화요업 제품		
40. 시멘트 및 콘크리트제품			187. 시멘트 188. 레미콘		189. 콘크리트 제품	
41.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190. 석회 및 석고제품	191. 석제품 및 192. 석면제품 193. 연마제 195. 기타트석 제품	194. 아스팔트 제품	
10. 제1차금속						
42. 선철 및 강반성품	196. 선철	197. 합금철	198. 강반성품 (조강)			
43. 철강1차제품		208. 기타철강 1차제품	199. 철강 204. 철강 연강재	203. 강판 (주철강판 제외)	200. 철강 201. 철강 제품	

〈표 VIII-8〉의 계속

	0이하	0~5	5~8	8~10	10~20	20이상
			207. 표면처리 장재		202. 열간압연 장재 205. 주철물 206. 단조물	
44. 비철금속과 및 1차제품		210. 알루미늄과 212. 금은과 213. 기타 비철금속과	211. 연 및 이연과	216. 기타 비철금속 1차제품	209. 동과 214. 동1차제품 215. 알루미늄 1차제품	
11. 금속제품						
45. 금속제품				218. 금속구조물 220. 금속포장 용기 222. 나사제품 223. 철선제품 224. 부착용 금속제품 225. 금속처리 226. 가정용 금속제품 227. 기타금속 제품	217. 건물용 금속제품 219.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221. 공구류	
12. 일반기계						
46.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		231. 산업용 운반기계	228. 엔진 및 터빈 232. 공기조절장치 및 냉장 냉동 장비 233. 보일러 236. 공기 및 액체여과 청정기 237. 기타일반 목적용기계	229. 밸브 230. 베어링, 기어 및 전동요소 234. 난방 및 조리기기 235. 펌프 및 압축기		
47. 특수목적용 기계 및 장비		240. 농업용기계 241. 건설 및 광물처리 기계 243. 섬유기계 246. 기타특수 목적용기계	238. 금속절삭 가공기계 245. 세지 및 인쇄용기계	239. 금속성형 처리기계 242. 음식품 가공기계 244. 금형 및 주형		

<표 VIII-8>의 계속

	0이하	0~5	5~8	8~10	10~20	20이상
13. 전기, 전자기기						
48. 전자기계 및 장치	252. 전지		247. 발전기 및 전동기 250. 전가공급 및 제어장치 253. 전구 및 조명장치 254. 기타전기 장비	248. 변압기 249. 기타전기 변환장치	251. 전선 및 케이블	
49. 전자기기 부분품	257. 개별소자 258. 집적회로(IC) 259. 저항기 및 축전기	261. 인쇄 회로기판	255. 전자관 262. 기타전자 부품	256. 기타 전자표시 장치	260. 전자코일 및 변성기	
50.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267. 유선통신 기기		264. VTR 268.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263. TV 265. 음향기기 266. 기타영상 음향기	
51. 컴퓨터 및 주변기기		269. 컴퓨터 및 주변기기 270. 사무용기기				
52. 가정용전기 기기			271. 냉장고 272. 세탁기	273. 선풍기	274. 가정용 전열기기	
14. 정밀기기						
53. 정밀기기		276. 의료기기 278. 측정 및 분석기기	277.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280. 기타광학 기기	281. 시계	275. 기타가정용 전기기기	
15. 수송장비						
54. 자동차 및 부분품	284. 화물차 288. 트레일러 및 컨테이너	282. 승용차 285. 특수차	283. 승합차	286. 지동차용 엔진 287. 자동차 부분품		
55. 선박	289. 강철제 선박 290. 기타 선박		291. 선박수리 및 부분품			
56. 기타수송 장비	292. 철도차량 293. 항공기		295. 자전거 및 기타수송 장비	294. 모터사이클		

〈표 VIII-8〉의 계속

	0이하	0~5	5~8	8~10	10~20	20이상
16.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57. 가구		296. 목재가구 297. 금속가구 298. 기타가구				
58. 기타제조업 제품			299. 장난감 및 오락용품 303. 귀금속 및 보석 304. 모형 및 장식용품	300. 운동 및 경기용품 301. 악기 302. 문방구 305. 기타 제조업제품		

주 : 음영표시 부분은 1999년대비 실효관세율이 인하되는 품목임.

## IX. 요약

### 1. 개요

지난 1984년 관세율인하예시제가 시행된 이래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변화와 도전 속에서 부침을 거듭해 왔다. 그 동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부 산업의 관세율 개편이 있었지만 정부는 균등관세율체제에 입각하여 시장 친화적인 관세율정책을 고수해 왔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서 정책의 중립성과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제 정보화와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2000년대에 들어와 1980년대에 수립된 관세율정책의 기본 원칙이 아직 유효한지를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 구체적으로 취약산업 보호나 다자간 협상의 결과로 일부 조정된 관세율구조가 합당한지 또는 보완할 점이 있는지 그리고 WTO 농산물협상과 공산품 시장접근 등 추가적 수입자유화에 앞서서 경제 및 통상정책적 입장에서 최적의 관세율정책은 무엇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향후 경제성장의 주된 견인차로 부각되고 있는 전자 및 정보산업에서 관세율정책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선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변화는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목적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연구 중 일부로서 작성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관세율체제의 변화를 상세히 분석하였고 연후 국제비교와 실효관세율을 바탕으로 관세율구조와 그 파급효과를 검토하였다. 산

업별로는 WTO 뉴라운드에 대비하여 농산물과 정보기술산업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이후 뉴라운드의 의미를 개괄적으로 다루었다. 본고에서는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율정책의 대안 제시는 가급적이면 절제하고 관세율정책의 종합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구체적 대안은 무역구조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이는 후속 연구에서 심도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전제로 본 연구의 핵심과 결론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 2. 요 약

### 가. 관세율구조 현황

이미 지적한 대로 우리나라는 관세율인하예시제의 실시 이후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왔다. 그 결과 기본관세율과 이보다 낮은 양허세율을 포함한 1999년 실행관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단순평균 관세율은 8.9%에 이르며 수입액 가중으로는 평균세율 5.0%에 달한다. 그러나 공산품을 기준하면 실행세율은 7.3%(가중평균 4.6%)로 떨어진다. 이에 비하여 농산품 관세율은 17.9%에 이르는데 특히 가중평균 세율(10.9%)은 단순평균 세율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관세율체계의 특징은 균등관세율체제라는 것이다. 즉, 실행관세율을 기준할 때 8%의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HS 10단위 기준 6,593개 품목으로 전체 품목의 62%에 이르며 미소관세(관세율 3% 이하)에 해당하는 품목도 1,143개(10.7%) 품목에 이른다. 반면 국제기준(관세율 15% 이상)에 의한 고관세 품목은 840개 품목(7.9%) 그리고 국내기준(관세율 24% 이상)에 의한 고관세 품목은 422개 품목(4.0%)에 불과하다. 특히 고관세 제품

은 농수산물에 집중되어 공산품의 경우 국제기준에 의한 고세율 제품이 27개 품목, 국내기준으로는 1개 품목으로 극히 미미하다. 공산품의 경우 전체 9,135개 품목 중에서 중간세율 구간(6~9%)에 있는 품목의 비율이 약 70%에 이르고 주로 경공업 제품으로 구성된 약 9.4%의 공산품이 9%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미소관세 품목은 약 10.8%에 이른다. 이에 비하여 농수산물은 전혀 다른 분포를 보여 전체 1,556개 품목 중 중간세율 품목의 비중이 25.3%, 9% 이상 세율이 부과되는 제품의 비중은 52.4%, 미소관세 품목은 10.2%에 이른다.

#### 1) 가공도별 관세율구조

한편 탄력관세 등 실제 적용된 실적관세율(관세징수액/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가공도별 관세율의 분포를 살펴보면 1998년 당시 소비자 가중평균 관세율은 8.2%, 원자재 등의 관세율은 4.5% 그리고 자본재는 5.0%에 이르러 소비자 세율이 월등히 높다. 원자재 중에는 기초원료 세율이 2.8%이고 유사 중간재는 6.6%로 유사 중간재 세율은 자본재보다 높은 편이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듯이 우리나라 소비재의 단순평균 세율은 13.5%, 원자재 등은 7.5%(기초원료 3.8%, 중간재 8.0%), 자본재는 6.6%로 가중평균보다 단순평균 세율이 높는데 특히 소비재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90년대에 수입이 급증한 소비재 중에서는 농수산물과 음·식료품을 포함한 직접소비재의 가중평균 세율이 매우 높아서 24.9%에 달하고 이는 단순평균(24.2%)보다 높은 세율이다. 의류 등 비내구 소비재의 가중평균 세율도 9.8%로 단순평균세율(10.4%)보다 약간 낮아 수입액과 상관없이 유사한 세율이 각 품목에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내구소비재의 경우 3%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평균세율은 7.1%이며 곡물의 가중평균 세율은 2.0%에 불과하여 단순평균(5.5%)과 차이가 크다.

기초원료 중에서는 관세율이 5%인 원유로 인하여 연료의 가중 평균 세율이 3.3%에 달하나 경공업 원료의 세율은 이보다 낮은 2.1%에 이른다. 탄력세율이 많이 적용되는 광물은 단순평균 세율(3.3%)보다 가중평균 세율이 매우 낮아 0.6%에 불과하다. 중간재 품목 중에서는 섬유류(9.2%), 화공품(7.3%), 기타(6.7%)의 세율은 다른 중간재인 철강재(5.5%), 비철금속(4.3%)의 세율보다 높다. 또한 섬유류의 단순평균 세율(8.8%)은 가중평균보다 낮으며 화공품의 단순평균 세율도 8.0%로 가중평균과 큰 차이가 없어 이들 품목군 내에서는 수입액과 세율 사이에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자본재의 경우 기계류와 정밀기기의 평균세율이 대략 6.6%로 가중과 단순평균이 거의 같으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전기·전자기기(4.5%)와 수송장비(3.5%)의 가중세율은 단순평균보다 1~2% 포인트 낮다. 기타 자본재 세율은 특히 가중평균세율(4.1%)이 단순평균 세율보다 3% 포인트 낮다. 이외에도 ITA 협정으로 인하여 전기·전자기기에 적용되는 실행세율은 1999년에 2.8%로 상당히 인하되었다.

이와 같은 관세율체계는 수입추이와 상호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0년대 균등관세율체제의 성립 이후 우리나라 수입은 1993년을 기점으로 증가하여 1990년에 대비한 1997년 수입은 약 1.8배 정도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소비재 수입이 2.4배 증가하여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8.3%에서 1997년 당시 10.5%로 늘었다(금 수입 제외). 대신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재와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53.8%에서 48.9%로 감소하였고 중간재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본재의 수입비중은 37.5%에서 변화가 없다.

소비재 가운데 곡물과 내구소비재를 제외한 음·식료품과 같은 직접소비재와 의류 등의 비내구소비재의 수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들 제품의 수입이 3.6배에 달하는 증가폭을 보였다. 원자재의 경우

연료와 비철금속이 평균 수입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입 실적을 보인 대신 광물, 경공업원료, 섬유, 화공품 그리고 철강재의 수입증가율은 평균치를 하회한다. 한편 자본재의 경우 전기·전자기기의 수출급증에 따라 그 수입이 약 2.7배 증가하였고 대신 기계류의 수입은 평균 수입증가율을 밑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입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절대액수로 보면 소비재보다는 아직도 연료와 화공품 그리고 전기·전자기기 그리고 기계류 등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관세율은 지난 10년간 계속 인하되어 가중평균세율로 보면 1990년 당시 평균세율이 7.4%에서 1998년에는 5.0%로 떨어졌고 그 결과 선진국 보다 약간 높은 세율 수준을 유지한다(단순평균세율 11.8%→8.3%). 특히 수입이 급증한 소비재의 경우 단순평균 세율은 1994년까지 14.5%에서 11.9%로 감소하였지만 그 이후 수입 증가로 관세율이 14.1%로 다시 인상되었다. 그러나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소비재 관세율은 세율이 낮은 품목의 수입 증가로 같은 기간에 10.1%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1998년 현재 8.1%에 이른다.

그러나 소비재의 관세율 변화는 품목별로 보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우선 수입이 많이 증가한 직접 소비재의 관세율은 단순과 가중세율이 공히 인상되어 가중평균 세율이 1990년 당시 17.6%에서 1998년에는 24.9%로 대폭 증가하였고 비내구소비재는 1.9% 인하되어 9.8%에 달한다. 내구소비재의 경우 세율이 같은 기간에 10.1%에서 4.4%로 상당히 인하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금을 제외하면 10.9%에서 7.1%로 떨어졌다. 이외 곡물의 세율은 단순평균세율이 많이 인하되었지만 가중세율은 1.8% 인하되어 2%에 이른다.

한편 원자재와 중간재 단순평균세율은 1990~1998년 사이에 10.6%에서 7.4%로 하락하여 지금은 소비재 관세율의 대략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이는 가중평균으로 비교하여도 마찬가지이다(6.4%→4.4%). 기초원료 중에는 경공업 원료의 가중평균 세율(3.5%→2.1%)이 가장 많이 인하되었고 광물의 세율도 1.2%나 인하되어

0.6%의 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연료의 세율(3.3%)은 0.9%만 인하되었고 세율 수준도 기초원료 중에서 제일 높다. 그러나 단순평균으로는 연료(8.5%→5.8%)와 경공업 원료(6.1%→3.3%)의 세율이 광물(4.5%→3.3%)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중간재에서는 1990년대에 이미 6~7%의 가중평균 세율을 적용받던 유지와 철강재 그리고 비철금속이 1998년에도 4~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 중에서 유지와 비철금속의 세율은 약 3% 포인트 인하된 반면 철강재 세율은 0.9% 포인트 인하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5.5%의 세율이 부과됨으로써 1990년과 달리 철강재 세율이 비철금속(4.3%)보다도 높다. 이들 제품에 비하여 약 7%대의 세율이 적용되는 섬유류(9.2%)나 화공품(7.3%) 그리고 중간재 기타(6.7%)는 세율이 약 2% 또는 그 이상 인하된 품목으로서 단순평균으로도 11%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다가 1998년에 세율이 8%로 인하된 품목들이다. 이에 비하여 유지의 단순평균 세율은 13.3%에서 10.5%로 하락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철강재와 비철금속은 9%에서 6~7%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중간재 세율은 1990년대 이후 기초원료보다도 세율이 더 많이 인하되었다.

자본재는 원래 원자재 및 중간재보다 관세율이 높았던 품목으로 1990년 당시 단순(가중)평균세율이 11.2%(8.2%)에 이르렀다. 그러나 1990년대에 와서 자본재 세율은 다른 품목보다도 더 많이 인하되어 1998년 당시 단순평균세율이 6.6% 그리고 가중평균세율은 5.0%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소비재와 원자재 등의 가중평균 세율이 약 1.9% 감소한 데 비하여 자본재의 가중평균 세율은 3.1%나 하락하여 1998년 당시 세율이 5.0%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간재 세율보다 1.6%나 낮은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자본재 기타의 관세율이 4% 포인트 인하되어 4.1%의 세율을 적용받고 기계류와 정밀기기 세율도 3.5% 포인트나 인하되었다. 그러나 기계류 등의 경우 세율이 6.6%로 자본재 세율 중에서는 제일 높은 경우에 해당

하며 수송장비는 이미 낮은 세율(4.0%)을 부과받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수송장비(8.0%)를 제외하면 자본재의 단순평균 세율은 11% 또는 그 이상이었지만 그 이후 세율은 6~7%대에 머물러 있다.

## 2) 산업별 관세율구조

본고에서는 HS 10단위 기준 관세율을 가공도별로 구분하여 관세율구조를 살펴본 후 한국은행의 IO 산업별 관세율 분포도 함께 검토하였다.

단순평균 실적관세율을 기준할 때 교역재의 평균관세율은 1990년 11.4%에서 1994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그 이후 1993년 수준인 8.9%로 회귀한다. 이는 중공업 제품의 세율인하(10.7%→7.0%)에도 불구하고 경공업 제품의 세율이 1994년 이후 증가하여 1998년 당시 11.9%에 달하기 때문인데 특히 경공업 제품 관세율의 표준편차는 1990~1998년 사이에 7.8에서 14.3으로 증가하여 경공업에서 균등관세율체제의 기초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중공업 관세율의 표준편차는 4.3에서 2.7로 감소하였다. 농림수산물에서도 경공업 제품과 유사하게 WTO 관세화(tariffication)로 인하여 평균 세율이 13.2%에서 15.0% 증가하였고 표준편차도 12.8에서 36.8로 증가한 데 비하여 광산품에서는 관세율(4.3%→2.8%)과 표준편차(2.5→1.5)가 감소하였다.

가중평균 세율을 기준으로 하여도 이러한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나 교역재 평균 관세율은 세율은 1990~1998년 사이에 7.3%에서 5.2%로 감소하였고 중공업 세율(7.8%→5.1%)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변화한 반면 경공업 세율은 같은 기간에 9.6%에서 8.9%로 감소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농림수산물 관세율은 4.1%에서 6.7%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광산품의 경우 4.1% 세율을 적용받다가 1.8%까지 관세율이 인하되었으나 그후 원유(5%)로 인하여 평균세율이 3.2%로 인상되었다.

한편 경공업 제품에서 음·식료품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1990년대에 들어와 다른 제품과 달리 9.5%에서 13.4%로 인상되었고 단순평균도 증가하여 20.7%의 높은 세율을 보인다. 또한 음·식료품의 표준편차도 13.8에서 25.4로 증가하였고 단순평균과 가중평균 세율이 큰 차이가 나는 등 차등적 세율체계가 음·식료품에서 돋보인다. 1997년 세율개편으로 단순평균 세율이 12%에서 약 8%로 인하되었다가 1998년 이후 9.7%로 증가한 섬유·가죽제품의 경우 가중평균 세율은 11.0%에서 계속 감소, 1998년 당시 7.9%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주로 원자재와 중간재가 수입되는 종이·나무제품은 단순(11.2%→7.3%)과 가중평균(7.2%→4.7%) 세율이 꾸준히 인하여 평균세율도 낮으나 세율수준이 원래 종이·나무제품과 비슷하던 기타 제조업의 경우 가구류의 신규 편입으로 1998년 평균세율이 가중과 단순 공히 7.8%를 유지한다. 이외 인쇄·출판 등의 경우 국제협상으로 3.6%의 낮은 단순평균 세율을 부과받았으나 ITA협정으로 무세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1% 이내의 가중평균세율을 적용받는다.

중공업의 경우 전술한 대로 예외없이 관세율이 인하되었고 품목간의 격차도 낮으며 또한 그 편차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중간재에 가까운 석유·석탄제품은 단순평균 세율(6.5%)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가중평균 세율(2.2%)을 적용받고 제1차금속(단순 6.3%, 가중 3.7%)도 이와 유사한데 이들 제품의 경우 1990년에 들어서 발생한 세율 인하의 폭은 1~2%에 불과하여 다른 중공업 제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다. 전기·전자기기(4.6%)의 가중평균 세율도 낮은 편이고 세율 인하도 2.4%(가중평균 기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송기기의 경우 특히 1998년 세율이 3.9%로 1990년(4.1%)과 차이가 거의 없는데 다만 단순평균 세율은 4.3% 포인트 인하여 1998년 현재 4.6%에 이른다.

이들 제품에 비하여 5%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다른 중공업 제품의 경우 가중평균 세율은 그 동안 대략 3% 포인트 또는 그 이상 인하되었고 단순평균 세율은 이보다 더 많이 인하되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중평균 세율(8.1%)이 제일 높은 요업·토석 제품은 2% 포인트의 인하폭을 보였지만 단순평균 세율(7.6%)은 무려 4.6% 포인트나 인하되었다. 요업·토석제품 이외에는 화학제품(6.9%), 금속제품(7.3%)의 세율이 제일 높고 일반기계(6.6%)와 정밀기기(5.7%)가 이보다 약간 낮다. 또한 이들 제품은 석유·석탄 제품 등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중공업 제품과 비교할 때 가중평균세율과 단순평균세율의 격차가 1% 포인트 이내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 3) 1990년대 말의 관세율 조정

1997년 당시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부 중간재에 대하여 세율을 인하하고 국제기준에 비추어 볼 때 세율이 낮은 일부 경공업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부분 인상하는 등 총 257개 품목에 달하는 수입 품목에 대하여 관세율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고무, 원목, 원피 등 원자재와 양식용 김과 종자용 굴 등 수산물과 커피두, 조주정 등 식품류 그리고 메탄올과 나프틸아민 등 화학제품과 철강재 외 총 182개 품목에 관하여 세율이 인하되었고 원면, 면·편직물과 그 의류, 합성직물과 텐트 등 섬유류와 신발 등 75개 품목에 대해서는 세율이 10~16%로 인상되었다. 따라서 1997년 세율 개편은 경공업에서 세율이 인상되고 관세율 격차가 증가하는 반면 중공업에서는 세율이 인하되고 그 격차 또한 감소하는 데 일조하였다.

이에 비하여 2000년 세율 개편은 대두유와 토마토 페이스트 등 일부 식료품 중간재에 대한 세율 인하와 함께 재생스테인플 섬유 그리고 ITA협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일부 중공업 제품의 세율을 인하하였다. 또한 고사리와 파, 그리고 들깨 등 몇몇 농림수산물

에 대해서는 종량세를 도입하는 등 총 42개 품목에 관하여 세율을 조정하였다. 2000년 관세율개편으로 실효세율이 변화하는 IO 402 산업을 살펴보면 가중평균 기준으로 15개 산업에서 명목세율 인하로 실효세율이 감소하며 이외 11개 산업의 실효세율이 증가한다. 특히 캐슈넛과 헤이즐넛의 세율 인하(8%→3%)로 식용임산물의 실효세율이 11%로 인하되는 데 비하여 설탕과자와 기타 식료품의 실효세율은 약간 증가하여 7%를 약간 초과한다. 그러나 유채유의 세율 하락(30%→10%)에도 불구하고 식물성 유지 및 식용유의 실효세율은 역관세인 -6.3%를 유지하며 두부의 실효세율(10.0%)은 증가하는데 비하여 토마토류 중간재의 세율 인하(50~8%→8~5%)는 기타 조미료의 역관세 현상(-2.5%)을 미미하게 약화시킨다.

2000년 관세율 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제품은 재생섬유로 수입의존도가 67%에 이르는 재생 스테이플 섬유의 세율 인하(8%→4%)로 스테이플 섬유의 실효세율이 약 7.1% 인하되어 7.7%가 되지만 재생 섬유사(11.1%)와 섬유직물(13.9%)의 실효세율은 각각 2.8%, 0.3% 포인트 증가한다. 이외 8% 관세율이 3%로 인하되는 ITA 관련 부자재의 경우 사진용 화학제품, 내화요업제품, 전구 및 조명장치,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등의 실효세율이 약간 감소하는데 이들 제품이 산업연관표에서 자본재로 간주되는 등의 이유로 관련 산업에 관한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

#### 나. 농산물 관세

우리나라의 현행 농산물 관세체계의 특징으로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시장접근물량(관세할당)의 존재로 인한 다중관세체계, 상대적인 고관세율, 높은 관세율 편차, 양허세율 우선 현상, 종가세 중심체계, 빈번한 탄력관세의 운용, 가공식품에 대한 역관세 존재의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농산물 관세율 정책의 전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정책환경은 차

기 WTO 라운드에서 농업협상의 추이,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수입증대 추세, 농업 및 농가소득 상황 및 농업생산구조의 변화, 자급률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차기 라운드 농업협상에서는 관세율 인하의 폭, 관세율의 인하방식, 시장접근물량의 증량과 관리방법, 특별긴급관세제도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두류, 박류, 사료, 육류, 낙농품 등의 수입증대가 현저하며 특히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품목들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루과이 라운드의 영향이 나타나는 가운데 1990년대 후반의 농업 및 농가소득은 1990년대 전반에 비해 정체되고 있으며 농업생산구조에 있어서도 1990년대 전반에는 식량작물의 비중 감소, 원예작물과 축산의 비중 증대로 요약될 수 있는 변화가 상당한 속도로 진전되었으나 후반에 와서는 그 변화의 속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자급률은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로 급속한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곡류와 두류의 경우 각각 30% 및 10% 수준으로 그 절대수준이 이미 낮은 수준이다. 정책목표는 국민경제적 효율성, 농업 종사자의 소득, 중요 농산물의 자급률 등을 들 수 있다.

#### 다. 탄력관세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된 탄력관세는 조정관세와 할당관세이다. 조정관세는 수산물, 일부 식료품 및 경공업제품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중 수산물과 일부 식료품에 적용되고 있는 조정관세율은 기본관세율에 비해 매우 높다. 할당관세는 일부 농업용 및 공업용 원자재 혹은 중간재와 고급 기계류에 적용되어 국내 농업 및 공업에 대한 실질 보호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할당관세의 적용으로 인해 보리, 기타 식용작물, 유제품 등의 실효관세율은 크게 인하되는 효과를 보고 있으며, 반면 정맥, 전분, 주정, 맥주 등의 실효관세율이 크게 인상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현행 탄력관세 적용

품목 중에는 모두 다년도에 걸쳐 지속적으로 거의 일정한 수준의 탄력관세가 적용되는 것이 많다.

#### 라. 관세율구조의 국제비교

관세는 한 나라의 경제규모나 발전단계 또는 교역구조 등에 따라 변화하는 경제적 변수이다. 선진국의 경우 특히 관세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소비자 효용 제고를 위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되 취약 산업의 보호를 위한 주된 수단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일인당 국민총생산(GDP)이 높을수록 그리고 GDP 대비 수출비중이 클수록 관세부담률은 낮고 그 대신 수입비중이 크면 관세부담률은 높다. 56 개국을 대상으로 한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적정 관세부담률은 GDP 대비 1.62%로서 실제 부담률 1.32%(1995년 기준)보다 약 0.3% 높고 이는 관세 환급액에 상당한 금액이다. 같은 방식으로 추정된 적정 관세율 수준도 약 6.3%로 평균 실적 관세율(4.5%)보다 약 1.8% 포인트 정도 높다.

또한 본고에서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가공도별 그리고 산업별 적정 관세율 수준도 추정하였다. 우선 일인당 GDP와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을 변수로 하여 가공도에 따른 품목별 적정 관세율을 살펴보았는데 추정 결과는 상기 분석과 마찬가지로 국민소득이 많을수록 관세율은 낮고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해당 품목의 관세율도 낮은 편이다. 그런데 OECD 국가의 경우 수입비중과 관세율의 상관관계는 품목에 따라 변화하여 광산물과 공산품 중간재는 수입비중이 클수록 관세율이 낮은 반면 농어업품의 경우 수입비중이 클수록 관세율이 높고 제조업 원자재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교역구조에 기초한 가공도별 적정 관세율(MFN 단순평균 기준, 관세할당치 포

함)을 살펴보면 우선 적정한 평균관세율은 약 9.2%로 OECD 평균 관세율 8.0%에 비하여 1.2% 포인트 정도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 관세율 수준은 OECD 국가에 비하여 평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가공도별 관세율구조는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매우 가파른 경사관세율체제가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광산물 적정 관세율은 1.0%, 제조업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의 적정 관세율은 각각 5.5%, 8.2%, 11.0%로 나타나 기초원료에 비하여 가공도가 높은 제품의 관세율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입의존도가 높은 광산물의 경우 OECD 평균세율 1.7%보다도 낮은 1%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이외에 제조업 제품은 OECD 평균세율보다도 대략 1~2% 포인트가 높은 세율이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제조업 원자재나 중간재의 경우 5% 이상의 높은 세율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배경에는 음·식료품과 섬유 등의 세율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광산물과 같이 수입비중이 높은 농·수산물도 OECD 평균세율보다 월등히 높은 10.9%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농어업품의 경우 농산품에 관한 예외없는 관세화로 인하여 QUAD 국가에서도 일본을 제외하면 관세율이 점차 인상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음·식료품의 관세율도 동반 상승하여 QUAD 국가의 평균 음·식료품 세율이 약 31%(1996년 기준)에 이르며 섬유·의류의 관세율도 각국이 공히 1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국내 부가가치 가중평균 기준). 이들 산업과 1% 이내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기초 원자재를 제외하면 QUAD 국가들은 제조업 제품에 관하여 2~3%(일본) 또는 4~6%(캐나다)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제조업 제품간의 세율격차가 크지 않다.

본고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산업별 적정 관세율구조도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도 음·식료품과 섬유제품은 일인당 소득과 연관성이 없으며 특히 음·식료품의 경우 사용된 외생변수의 설명력

이 낮아 경제외적인 요인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즉, 음·식료품에서는 수입이 많을수록 관세율이 높은 것 이외에 다른 변수로는 음·식료품의 관세율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조업 전체로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수입비중(국내생산 대비)이 클수록 관세율은 낮다. 또한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고용/경제활동인구)이 낮을수록 그리고 제조업이 노동집약적일수록(고용/국내생산) 관세율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다만 수출의 경우 수출비중이 클수록 관세율도 높은 기현상이 일부 제조업에서 나타난다.

수출을 제외한 제 경제변수와 관세율간의 이러한 상관관계는 제조업 전체뿐만 아니라 산업별 관세율에서도 나타나 섬유·의류, 종이·제지, 석유·화학, 비철금속, 조립금속 그리고 기타 제조업 등 대부분 산업에서 해당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으면 당해 산업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낮다(고용/경제활동인구 기준). 또한 생산액 1원당 고용자수를 기준할 때 섬유·의류, 나무·목제품, 석유·화학, 비철금속, 조립금속에서 노동집약적일수록 관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술한 대로 음·식료품의 경우 수입 제한적 관세율이 부과되는데 이와 달리 섬유·의류, 석유·화학, 비철금속, 조립금속 그리고 기타 제조업에서는 수입이 많을수록 관세율이 낮아 수입의 내생성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수출비중이 높으면 관세율이 낮은 것이 정상으로 기초금속과 기타 제조업이 이에 해당하는데 비철금속은 예외적으로 수출비중과 관세율이 정비례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업별 적정 관세율(부가가치 가중평균)을 추정해 보면 제조업 전체의 적정 관세율은 약 9.7%에 이르러 OECD 평균세율보다 약 2% 포인트 정도 높고 실제 제조업 평균세율 7.3%보다는 약 2.4% 포인트 높다. 물론 이와 같은 평균 관세율은 국내 부가가치를 가중한 수치로서 수입액으로 가중한 관세율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치를 갖는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한다.

산업별로는 음·식료품과 섬유·의류에서 OECD 평균세율보다 4% 포인트 정도 높은 19.5% 또는 그 이상의 세율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전자의 경우 수입이 많다는 점이,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노동집약적이며 교역구조상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점이 고려되어 적정 관세율이 높은 편이다. 상기 제품 이외에 경공업 제품으로 분류되는 목재 및 목제품과 기타 제조업 제품의 경우 적정세율이 각각 9.9%, 11.8%로 나타나 OECD 평균세율보다 3~4% 이상의 높은 세율 격차를 보인다. 이에 비하여 종이·제지제품과 중공업 제품의 경우에는 적정 세율이 7~8%로 우리나라 실행세율과 큰 차이가 없으며 OECD 평균세율보다 2% 포인트(기초급속 3% 포인트) 정도 높다.

이와 같이 산업별 관세율 구조로 보면 경공업에서 차등관세율체제가 뚜렷이 나타나 음·식료품과 섬유·의류에서 19%에 달하는 관세율이 적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종이·제지제품을 제외한 다른 경공업 제품도 상대적으로 10% 내외의 높은 세율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종이·제지와 중공업에서는 적정세율이 7~8% 사이에 있어 관세율 격차가 산업간에 명확하지 않으며 따라서 중공업에서는 균등관세율 구조가 합당한 세율체제로 나타난다. 또한 경공업 제품에 관한 높은 세율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소득수준과 교역 및 산업구조를 갖는 국가에서는 제조업에서의 평균세율(부가가치 가중)이 9.7%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공업에서의 높은 세율은 가공도별 관세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MFN 단순평균 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 수입의존도가 상당한 광산물의 경우 적정 관세율이 1%에 불과하지만 제조업 원자재의 적정 세율은 5.5% 그리고 중간재의 세율은 8%의 높은 세율을 나타낸다. 그러나 UR 이후 농산품의 관세화로 인하여 농어업품의 평균세율이 인상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음·식료품의 세율도 같이 인상되었으며 섬유·의류도 평균적으로 15% 이상의 세율이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경공업 제품을 제외하면 제

조업 원자재와 중간재 세율은 상당히 인하되리라고 판단된다. 여하튼 제조업 최종재의 적정 세율은 11%에 이르러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가공도에 따른 적정 세율구조는 가파른 경사관세율체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외에도 향후 예외없는 관세화로 인하여 세율이 계속 인상되겠지만 현 단계에서의 우리나라 농어업품 적정세율은 제조업 최종재와 마찬가지로 약 11%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까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가공도별 또는 산업별 적정 관세율체계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분석은 이론적으로 뒷받침된 연구는 아니며 자료의 한계상 완벽한 통계분석이라고도 할 수도 없다. 다만 본고에서는 경제발전단계나 교역 및 산업구조에 따라 OECD 국가가 평균적으로 선택한 관세율 구조가 제반 경제요인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고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환경에서 채택할 수 있는 관세율 구조를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최적의 관세율에 대한 이론적 그리고 실증적 분석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차선책으로 유용하며 이를 기초로 각 산업이 당면한 구체적 현황에 따라 관세율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마. 우리나라 실효관세율체계(1998년)

##### 1) 실효관세율의 개념과 분포(1998년)

특정 산업에 관한 보호효과가 아니라 전체적인 관세율 구조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투입-산출구조를 함께 고려한 실효관세율의 측정이 필요하다. 특히 사례별로 논의하겠지만 명목세율이 서로 유사하더라도 중간재로 사용된 제품의 관세율이나 중간재 비중이 다르면 개별 수입품의 실효세율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실효관세율의 추정을 통하여 균등관세율체제를 지향하였던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이 실질적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산업별 차등화가 이루어

어지고 있는지를 모색하였다.

물론 실효관세율이 비관세장벽을 고려하지 않고 비탄력적인 투입계수를 가정하는 등 일반균형적 효과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인 관세율 구조의 특징을 파악하고 관세율 조정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는 뜻에서 아직도 유용한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이 밖에도 사용된 관세율에 따라 그리고 수입품과 국내생산과 관세율의 상관관계에 따라 추정된 실효관세율이 실제치를 과대 또는 과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념하여 추정된 실효관세율을 해석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기존 연구에 기초하여 간접세의 경우 조세의 성격에 따라 중간투입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실효관세율의 오차를 교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연후 국내가격으로 표시된 투입계수를 사용하여 실효관세율을 구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한 후 Corden식에 따라 1998년 우리나라 실효관세율을 수입액 가중평균을 기준하여 추정하였다. 이외에 잠재세율에 가까운 단순평균 실효세율은 <부표 2>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실효관세율은 예상한 대로 명목관세율의 분포보다 더 많이 분산되어 있어 산업별 평균세율은 약 14%에 이르고 표준편차는 34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IO 교역재 305개 산업 중에서 중심세율 구간인 6~9%에 존재하는 품목은 명목관세율을 기준하면 147개 산업에 달하는 데 비하여 실효관세율로는 85개 산업에 불과하며 그 대신 실효세율이 9%를 초과하는 품목은 122개 산업으로 전체 산업의 약 40%에 이른다(명목세율 기준 54개 산업). 또한 실효세율이 6% 이하인 품목은 98개 산업으로 명목세율 기준 93개 산업과 유사하지만 이 가운데 역관세를 보이는 품목은 40개 산업에 이른다. 물론 모든 역관세 품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들 제품 가운데는 기초 원자재와 같이 국내생산이 어렵거나 또는 가공도에 따른 경사관세율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낮은 세율이 부과

되는 산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첨단산업이어서 관세율이 낮고 그 결과 역관세를 보이거나 ITA 등의 국제협정에 따라 무세화되어 불가피하게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는 산업도 있다.

추정된 산업별 실효관세율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산업별 관세율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차 산업의 경우 총 43개 품목 중에서 역관세 현상이 발생하는 품목이 15개 산업이 있으나 이들 제품은 주로 양돈, 밀, 원목, 연탄, 광석 등 기초원자재이며 특히 농수산품의 경우 관세할당 외에도 각종 비관세장벽이 있으므로 단순히 관세율로 수입장벽을 가늠하기 어렵다.

경공업에서는 명목세율의 분포가 다양하여 총 98개 산업 가운데 3% 이하의 저세율 품목이 8개 산업이 있는 반면 13%의 고세율 품목은 23개 산업에 달한다. 그 결과 역관세가 나타나는 경공업 산업은 10개 품목이 있고 13%(20%) 이상의 실효보호를 받는 품목은 38개(30개) 산업이 있다. 이에 비하여 중공업에서는 총 153개 산업 가운데 3% 이하의 저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은 15개 산업이 있지만 13% 이상 명목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은 없는 등 균등관세율체제의 영향으로 관세율 분포가 비교적 고른 편이다. 그 결과 역관세가 나타나는 중공업 산업은 15개 품목이 있지만 13%(20%) 이상의 실효관세율이 적용되는 산업은 13개(3개) 품목에 불과하다.

또한 추후에 자세히 논의되겠지만 명목세율과 실효세율간에 격차가 큰 품목은 농림수산물(8.8%)과 경공업에서 음·식료품(33.7%)이 있고 섬유·가죽제품과 목재·종이제품도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평균 3% 포인트 정도 높다. 이에 비하여 광산품과 인쇄, 출판 및 복제제품은 평균적으로 실효세율보다 명목세율이 높고 중공업에서는 수송장비(-3.7%)와 비록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일반기계(-0.6%)가 그러하다. 특히 중공업제품은 제1차 금속제품(5.7%)을 제외하면 세율간에 큰 차이가 없이 실효세율이 평균 1% 포인트 이내로 명목세율보다 높다.

## 2) 산업별 실효관세율 : 1차 산업

농림수산물에서는 중간재 관세율(0.8%)에 비하여 평균 명목관세율(31%)은 높은 반면 중간재 비중이 16%로 낮아 평균 실효관세율(40%)은 명목관세율을 많이 초과하지 못한다(수입액 가중평균 기준). 또한 낙농, 양돈, 밀, 잡곡, 원목 등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실효세율이 20%를 초과하는 품목도 채소, 과일, 유지작물, 식용임산물, 잎담배, 내수면 양식의 6개 산업이 존재하여 농림수산물에서 보호도가 양분화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농림수산물은 작물, 축산, 임산물 그리고 수산물로 구분되는데 우선 작물의 경우 중간재 세율이 1% 내외이지만 중간재 비중 또한 20% 내외로 낮아 명목세율과 실효세율간에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작물의 평균 실효세율이 약 47.6%에 달하지만 전체 18개 품목 가운데 20% 이상의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산업은 채소(97.0%), 과일(80.0%), 유지작물(37.6%)과 잎담배(24.0%), 4개 품목에 불과하다. 한편 콩과 감자류 그리고 화훼 및 약용작물이 약 10% 내외의 실질적 보호를 받는 데 비하여 벼, 보리, 기타 식용작물, 천연고무 등 다른 작물은 3% 또는 그 이내의 낮은 실효관세율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밀과 잡곡 이외에 종자 및 묘목은 -1% 내외의 역관세 현상을 보이는 품목이다.

축산은 기타 축산(2.1%)을 제외하면 명목세율에 비하여 중간재 세율이 높아 낙농, 육우, 양돈, 가금에서 역관세가 나타나는데 이들은 수입이 거의 없는 산업이다. 임산물의 경우 무세가 적용중인 원목을 제외하면 기타 임산물의 실효세율이 3%로 낮은 편이지만 식용임산물은 약 21.1%의 실질적 보호를 받는다. 한편 수산물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이 없는 대신 제품의 대체성에 비하여 산업별로 실질적 보호 정도가 급변하는 산업이다. 특히 내수면양식이 약 71.9%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데 비하면 해면양식은 실효세율이 6.1%에 불과하고 내수면어획도 큰 차이가 없다. 그 대신 해면

어획은 약 19.6%의 실질적 보호를 받아 제품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난다.

농림수산물에 비하여 광산품은 5%의 명목세율이 적용되는 원유를 제외하면 수입의존도(79%)가 높아 14개 제품 모두가 명목관세율이 3%를 초과하지 않고 실효세율도 2%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연탄, 원염, 철과 동광석, 연, 비철금속 광석 등이 역관세 품목에 해당하며 이외에도 쇠석, 석회석, 기타 건설용석재 등이 2% 이내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다.

### 3) 산업별 실효관세율: 경공업

음·식료품의 경우 명목관세율(15.9%)에 비하여 평균 실효관세율은 무려 50%에 이르는데 이는 중간재 비중이 57%로 높고 중간재 관세율(6.6%)도 명목세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매우 높은 실질적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음·식료품의 수입의존도는 농림수산물(15%)보다도 낮은 10%에 불과한데 다만 음·식료품에서는 산업간의 실효세율 격차가 그 어떤 산업보다도 커서 표준편차가 79.2에 이른다. 한 예로 음·식료품 43개 품목 가운데 각종 유지류와 담배 등 4개 제품이 역관세 품목인 데 비하여 20% 이상의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각종 육류, 우유 등의 유제품, 수산물, 정미류, 국수류, 커피류, 과일·채소가공품, 맥아, 각종 주류, 청량음료 등 21개 품목으로 다수가 상당한 보호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로 인하여 음·식료품에서는 약 22개 품목에 달하는 상당수 제품의 중간재 세율이 6% 또는 이상을 초과한다. 이로 말미암아 24개 품목의 명목세율도 10% 이상의 고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중간재 세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세율이 낮아 역관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품목에는 아이스크림(-0.8%), 동물성 유지(-17.2%), 식물성 유지와 식용유(-7.3%), 영세율이 적용중인 담배(-13.7%)가 있다. 이외에도

기타 조미료도 중간재 세율이 워낙 높아 실효세율이 2.4%에 불과하고 원당과 정제당은 명목세율이 약 3%로 실효세율이 이와 유사하다. 물론 중간재 세율과 상관없이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이 높은 품목도 도축육과 가금육, 우유, 전분, 커피와 차류, 누룩 및 맥아, 주정 및 각종 주류가 있다.

육류 및 낙농품의 경우 도축육과 가금육은 명목세율이 16%대에 이르지만 중간재 세율은 낮고 그 비중은 커서 100% 내외의 실효세율을 유지한다. 우유(441.7%)와 유제품(136.6%)도 실효세율이 상당히 높고 육가공품은 실효세율이 65.2%에 달하는데 역관세 품목인 아이스크림은 8%의 명목세율에도 불구하고 중간재 세율(10.2%)이 워낙 높다. 수산가공품의 경우 어육과 어묵을 제외하면 명목세율이 10% 이상으로 수산저장품과 기타 수산식품의 실효세율이 60% 내외에 달하며 대신 중간재 세율이 10.2%에 이르는 수산냉동품은 높은 명목세율(12.5%)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명목세율(평균 15%)이 높아 실효세율이 6.8%에 불과하다. 정곡과 제분에서는 명목세율이 낮으나 중간재 세율도 낮고 특히 정미의 경우 명목세율(6.0%)에 비하여 중간재 비중(92.6%)이 매우 높아 실효세율이 60.8%에 달하는데 정맥과 제분은 약 8%를 상회하는 보호를 받는다.

한편 전술한 대로 원당과 정제당은 3%대의 낮은 실효세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전분과 당류는 14% 내외의 명목세율을 적용받아 실효세율이 각각 50.5%, 20.8%에 달한다. 빵과 과자류는 중간재 세율이 약 5%에 이르러 7~8%대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데 비하여 국수류는 명목세율이 40.3%에 달하여 실효세율은 172.3%에 이른다. 3~4%의 낮은 세율로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는 유지류 이외에 기타 조미료는 중간재 세율(14.6%)에 비하여 명목세율(17.5%)이 낮아 실효세율도 약 2%에 불과하지만 명목세율(7.8%)이 오히려 낮은 발효 조미료는 약 10.8%의 실효세율을 보인다. 이외에도 장류 또한 명목세율(19.0%)이 높아 실효세율은 31.5%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과일 및 채소 등의 기타 식료품에서는 두부(8.2%)와 중간재 세율(9.3%)이 높은 기타 식료품(6.8%)을 제외하면 명목세율이 높아 실효세율도 30% 내외에 이른다. 그러나 과일 및 채소 가공품은 중간재 세율(28.1%)이 높아 명목세율(37.6%)보다 실효세율(30.8%)이 낮으며 인삼식품의 실효세율도 90%를 초과한다. 음료품의 경우 주정(13.5%), 광천수와 생수(5.9%)를 제외하면 명목세율이 20% 내외로 실효세율이 30% 또는 그 이상이 되어 맥주의 경우 그 세율이 100%를 초과한다.

경공업 제품 중에서 섬유·가죽제품은 중간재 세율이 4.2%로 약간 높지만 중간재 비중이 크며 10%의 명목관세율이 부과되어 평균 13%에 달하는 보호를 받고 있다. 이외 실효세율의 산업간 격차도 작은 편은 아니어서 모사와 가죽이 역관세 품목에 해당하고 면사도 3% 이내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각종 직물류는 20% 내외의 실질적 보호를 받는다. 특히 편직의류와 장식품, 가죽(모피)의류와 가죽신발도 20% 이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 등 다수 품목이 9% 이상의 실효보호를 받는다.

섬유제품의 경우 평균 명목세율이 섬유사(4.9%), 직물류(9.6%), 의류(12.1%)의 순서로 변하고 평균 실효세율도 각각 4.5%, 14.1%, 17.5%로 증가하여 가공도에 따른 차등세율체제가 뚜렷이 나타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섬유사에서 견사(11.6%)와 재생섬유사(11.1%)와 같이 실효세율이 높은 품목이 있는가 하면 면사(1.7%)는 낮은 실효세율을, 모사(-5.4%)는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외에 합성섬유사와 마시는 7%대 내외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다. 직물의 경우 견·모·면직물이 13~20%의 명목세율로 30% 이상의 실효세율을 유지하며 이외 직물류는 8% 내외의 명목세율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은 10%를 초과한다.

또한 중간재 섬유제품에 비하여 수입의존도(10% 이내)가 매우 낮은 의류에서는 명목세율도 10%를 초과하고 이에 따라 실효세율

도 20%를 넘는데 특히 모피의류는 중간재 비중(75.3%)이 높아 실효세율이 76.2%에 달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타 장신품은 수입의존도(43%)도 높고 실효세율(5.8%)은 낮다. 한편 가죽과 모피는 명목세율이 4%대로 유사하지만 가죽은 중간재 세율이 7.3%에 이르러 역관세 품목(-5.8%)에 해당하고 모피는 6.8%의 실효세율을 유지한다. 이외 가죽신발(26.6%)과 운동화(14.4%)도 실효세율이 가방과 핸드백(8.6%)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경공업에서 목재·종이제품도 명목관세율은 7.1%로 낮으나 중간재 세율(2.8%)이 낮아 평균 10%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데 펄프에서 낮은 세율(2.1%)로 역관세 현상(-0.7%)이 나타나며 골판지 등의 실효세율(1.7%)도 명목세율(4.8%)에 비하여 매우 낮다. 약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합판은 22% 이상의 실질 보호를 받으며 이외 다른 제품은 목제용기(5.5%)를 제외하면 7~8%의 명목세율이 부과되어 실효세율은 7~16%에 이른다. 특히 각종 목제품과 신문용지와 인쇄용지 그리고 기타 원지의 실효세율이 10%를 넘는데 이 중 제재목은 4.8%의 낮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중간재 비중(65%)이 높고 그 세율(0.7%)은 낮아 실효세율(12.7%)이 높다. 이외에 다른 제품은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이 서로 유사하다.

이에 비하여 인쇄·출판·복제제품은 인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무세화되어 신문, 출판, 기록매체와 복제 등에서 역관세 현상이 확연히 나타나 실효관세율이 -3% 이상에 이르는데 인쇄에서는 중간재 세율과 명목세율이 유사하여 실효세율은 1%에 불과하다. 이 밖에도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제품은 명목과 실효세율이 비슷하여 실질적 보호가 평균 7.9%에 달하는데 이에 따라서 서로 대체가 가능한 각종 가구류(기타 가구 제외)와 악기 등은 6~8%, 장난감과 운동용품 등은 9~10%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아 역관세 현상이나 13% 이상의 보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없다. 그러나 1999년 가중평균 실효세율을 기준하면 금속가구는 다른 가구와 달리 국제협정에 따른

세율 인하(3.8%)로 실효관세율이 음의 값(-0.6%)을 갖는다. 이외 문방구와 귀금속도 실효세율이 8% 내외로 서로 유사한데 기타 제조업제품의 명목세율이 9.5%로 실효세율이 11.3%에 이르며 장식품은 실효세율이 5.9%로 다른 제품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 4) 산업별 실효관세율 : 중공업

중공업에서는 수송장비(5.3%)와 석유·석탄제품(4.9%)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수송장비의 수입의존도는 13%로 금속제품(7%)을 제외한 다른 중공업 제품에 비하여 의존도가 매우 낮지만 높은 중간재 세율(4.7%)로 실질적 보호율이 1.7%에 미치지 못한다. 이외 대부분 산업에서는 균등관세율체제의 영향으로 평균 6~7%의 명목세율을 적용받고 실효세율은 이보다 높은 6~8%에 이른다. 예외적으로 일반기계와 금속제품의 경우 중간재 세율이 거의 4%대에 달하여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약간 낮지만 그래도 실효세율이 6~7%에 달한다. 이 밖에 제1차 금속은 6.3%의 명목세율에 비하여 중간재 세율(2.3%)은 낮고 중간재 비중(약 65%)은 높아 약 12%의 실질적 보호를 받는다.

평균 5%의 실효세율이 부과중인 석유·석탄제품에서 역관세가 나타나는 품목이 명목세율이 1%에 불과한 나프타(-9.5%), 액화석유가스(-7.7%), 연탄(-1.8%)이 있는 반면 기타 석탄제품은 5.1%의 명목세율에도 불구하고 중간재 세율(0.4%)이 낮고 그 비중(69.4%)은 높아 그 영향으로 실효세율이 18%를 상회한다. 이외 휘발유(5.2%)와 제트유(9.3%) 등의 석유제품은 명목세율보다 약간 높은 6~8%의 실효세율을 유지한다.

두 번째로 약 8.5%의 실효관세율을 나타내는 화학제품에서는 전체 30개 품목 가운데 22개 품목이 6~13%의 실효세율 구간에 있어 중공업에서도 비교적 고른 세율분포를 보인다. 또한 각각 1.9%와 3.1%의 명목세율이 적용되는 비료와 기타 고무제품이 -1%

이내의 역관세 품목에 해당하며 질소화합물이 1.4%의 낮은 보호를 받는 데 비하여 접착제와 젤라틴은 13.8%의 실효세율을 나타낸다. 중간재에 해당하는 화학기초제품 가운데 유기 화학품은 중간재 비중(60% 내외)이 높아 5~7%의 명목세율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은 9% 이상이며 예외적으로 석탄화합물의 실효세율이 4.7%에 이른다. 이에 비하여 무기화학품은 중간재 세율 2% 이하로 낮은 대신 그 비중(30% 내외)도 적어 명목 및 실효세율이 유사하다. 재생섬유(4.3%)와 합성고무(6.7%)도 명목, 실효세율이 서로 유사한데 8%의 명목세율이 부과되는 합성섬유와 합성수지는 실효세율이 10% 내외이다. 한편 비료는 전술한 대로 역관세 품목인 데 반하여 농약은 실효세율이 5.9%에 이른다.

의약품(6.4%)과 화장품 및 치약(9.1%) 그리고 비누와 세제(11.4%)는 의약품의 명목세율이 6.6%인 데 비하여 다른 제품의 명목세율은 8%에 이른다. 특히 비누의 경우 중간재 비중(59%)이 화장품 등(34%)보다 커서 실효세율도 높다. 중간재 비중이 대략 50% 내외인 염료, 도료, 잉크, 사진용 화학제품 등의 기타 화학제품에서는 접착제와 젤라틴을 제외하면 명목세율이 7% 내외에 이르고 이에 따라 실효세율이 8~9%에 달하며 품목간에 세율 차이가 미미한 제품이다. 그러나 전자기기용 기록매체는 실효세율이 1998년 현재 8.9%에 이르지만 ITA협정으로 2000년에는 실행 기준 실효세율이 역관세인 -7%에 달할 예정이며 사진용 화학제품의 실효세율도 3.4%로 인하된다. 이외 플라스틱 제품도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이 차이가 없어 7% 내외이며 고무제품에서는 역관세 품목인 기타 고무제품을 제외하면 중간재 세율이 3%대로 약간 낮아 실효세율이 9%에 달한다.

중공업에서 평균 8%의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비금속광물제품의 경우 몇몇 품목을 제외하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간에 큰 차이가 없다. 그 중 기초원료에 해당하는 시멘트와 레미콘은 명목세율과 차이

없이 약 5%의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석회 및 석고제품은 명목세율이 3.7%로 실질적 보호율도 이보다 낮은 3%에 달한다. 이외에 유리 및 도자기제품 그리고 콘크리트와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등 대다수 품목이 7~8%의 명목세율을 적용받아 실효세율도 이보다 약 1% 포인트 정도 높다. 하지만 내화요업제품과 기타 토석제품은 중간재 세율이 2% 내외로 그리고 아스팔트제품은 중간재 비중(62%)이 높아 실효세율이 10%를 초과한다. 이외 석제품은 특별히 명목세율이 10.4%에 이르고 중간재 세율(1.6%)도 낮아 실효세율도 약 13.4%에 달한다.

철과 비철금속으로 구성된 제1차 금속제품의 경우 평균 명목세율은 6.3%로 비금속광물제품보다 오히려 낮지만 중간재 비중이 64.6%로 비금속광물제품(42.9%)보다 높아 실효세율이 평균 12%에 달하는데 이는 비금속광물제품의 실효세율보다 약 4%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제1차 금속제품 중에서 기초 원자재에 해당하는 선철은 수입액(11.9억 달러)이 상당하지만 거의 영에 가까운 세율(0.2%)을 적용받아 실효세율이 -11%에 이르고 합금철과 조강의 실효세율도 낮은 편이다.

이에 비하여 가공도가 높은 철강 1차제품에서는 형강과 철물 등의 명목세율이 7~8%에 달하여 품목간에 세율 차이가 없다. 하지만 중간재 비중이 6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중간재 세율은 품목별로 크게 달라 실효세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구체적으로 강관, 연강재, 표면처리강재의 세율은 8% 내외로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이 서로 유사한데 중간재 세율이 1% 내외인 철근, 형강, 선재 그리고 주철물의 실효세율은 16% 또는 그 이상으로 명목세율의 2배에 이른다. 그러나 수입이 거의 없는 기타 철강 1차제품은 명목과 중간재 세율이 5%대로 실효세율(-0.7%)이 음의 값을 갖는다. 한편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에서는 알루미늄괴와 기타 비철금속괴가 각각 1% 이하의 낮은 실효세율을 유지하는 반면 동괴와 연괴 등은 특이하게도

3~4%대의 낮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중간재 세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여 실효세율은 8% 이상이다. 그러나 동, 알루미늄, 기타 비철 금속 1차제품의 실효세율은 2% 내외의 중간재 세율에 비한 명목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10% 내외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다.

금속제품의 수입의존도는 7%로 제1차 금속(23%)에 비하여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낮은 대신 평균 실효세율도 7.2%로 제1차 금속보다 4.7% 포인트나 낮으며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이 서로 유사하다. 이는 명목세율이 제1차 금속보다 약 1.2% 포인트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재 세율(4.0%)은 1.7% 포인트 높고 중간재 비중(53.1%)은 약 11.6% 포인트 정도 낮기 때문이다. 높은 중간재 세율로 인하여 대부분의 금속제품은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을 초과하지 못하고 낮은 실효세율을 유지하는 품목도 있다. 예외적으로 10%대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공구류와 철선제품을 제외하면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0.6%)는 실질적 피해를 입고 금속포장용기의 실효세율도 3%에 불과하다. 이보다 명목세율이 약간 높아 6%대를 유지하는 건물용, 부착용 금속제품 그리고 나사제품의 실효세율도 5%대를 유지하며 이외 제품은 8% 내외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다.

중간재 세율이 높아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을 초과하지 못하는 현상은 일반기계에서도 발견된다. 다만 일반기계의 경우 균등관세율체제가 확실히 반영되어 품목별로 7%대의 명목세율을 적용받아 평균 실효세율은 이보다 낮은 6~7%를 유지한다(기타 특수용 목적기계 제외). 일반목적용 기계는 특수목적용 기계에 비하여 명목과 실효세율이 평균 1% 정도 높아 7%를 상회하는데 예외적으로 엔진 및 터빈의 실효세율이 5.7%에 이르며 실효세율이 8%를 상회하는 품목은 베어링, 기어 및 전동기계(9.0%)와 난방 및 조리기기(8.6%)이다. 특수목적용 기계에서는 정보기술협정(ITA)와 관련된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의 명목세율(4.9%)과 중간재 세율(4.2%)이 유사하여 실효세율이 1.3%밖에 되지 않고 이외 금속 관련 기계, 섬유나 제지용 기

계가 5%대의 실효세율을 유지하는데 농업용, 음식품 가공기계 그리고 금형 및 주형은 7.5%를 초과하는 실효세율을 보인다.

전기·전자기기는 금속제품에 비하여 중간재 세율이 3% 이내로 명목세율(5.6%)보다 실효세율(6.3%)이 약간 높다. 전기·전자기기는 산업별로 실효세율이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ITA에 따라 무세화가 추진되면 그러한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완성품에 해당하는 전기기계 및 장치에서는 10%대의 실효세율을 보이는 전선 및 케이블과 전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제품의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이 서로 비슷하여 6~8%대에 머문다. 그러나 ITA가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자기기 부분품에서는 산업별로 세율격차가 심하게 난다. 우선 정보기술협정(ITA) 대상인 개별소자와 집적회로의 명목세율은 2%를 약간 초과하여 개별소자는 이미 역관세 품목(-1.3%)에 해당하고 집적회로의 실효세율도 1.2%에 불과하다. 또한 1999년에 이들 두 품목은 이미 무세화되어 실행세율을 기준으로 한 실효관세율이 각각 -4.9%, -1.3%에 이르게 되었다. 이외에 명목세율이 10% 또는 그 이상인 기타 전자표시장치(16.8%)와 기타 전자부품(13.3%)은 예외적으로 실효세율이 높다.

한편 명목세율이 이와 유사한 TV와 음향기기의 실효세율도 각각 23.4%, 14.7%로 전기·전자기기에서는 예외적인 품목이다. 이외에 VTR, 유무선 통신기기, 기타 영상음향기기의 실효세율도 8% 내외인데 이들 전자기기 완성품의 경우 비록 중간재 세율이 4%대로 높은 편이지만 정보기술협정으로 그 부분품이 무세화됨으로써 실효세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1998년 당시 아직 정보기술협정의 영향권에 들어서지 않았고 중간재 비중(70.2%)은 매우 높아 7.5%의 명목세율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이 10.6%에 이른다. 이외 사무용기기는 선풍기와 함께 실효세율이 7.5%에 달하는데 냉장고, 세탁기, 가정용 전용기기의 실효세율은 각각 8.5%, 9%, 11.1%에 이른다.

그러나 전기·전자기기는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2000년을 전후하여 대부분의 품목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므로 1998년 실적세율이 큰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실적세율이 아닌 기본세율 중심의 1999년 실행세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4년에 협정에 따른 무세화로 인하여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이 3% 포인트 이상 인하되어 역관세 현상을 나타낼 품목은 저항기 및 축전기(2004년 실효세율 -4.9%), 인쇄회로기판(-3.2%), 유선통신기기(-3.3%), 컴퓨터 및 주변기기(-7.4%)가 있다. 또한 전자기용 기록매체와 개별소자도 2004년 이전에 이미 무세화되어 실효세율이 -7.2%, -4.5%에 달하게 되며 실효세율이 1% 포인트 이상 감소할 품목은 기타 전자부품(2004년 실효세율 3.5%), 사무용기기(2.8%),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5.8%)가 있으며 1% 포인트 이내로 영향을 받는 품목은 기타 전기변환장치(8.0%), 전선 및 케이블(10.1%), 기타 전기장비(6.2%),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7%)가 있다.

반면 전자기기 완성품은 부분품의 무세화로 실효세율이 인상되는 데 이로써 전기·전자기기에서 품목별 세율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되고 그 결과 가공도에 따른 차등세율체제가 자동적으로 정착되게 된다. 2004년에 실효세율이 1% 포인트 이상 인상되는 산업은 전자코일 및 변성기(12.2%), VTR(14.7%), 음향기기(18.4%)가 있으며 이외 2004년 이전에 이미 실효세율이 인상되었거나 1% 포인트 이내로 실효세율이 인상되는 품목에는 발전기와 전동기(7.2%), 전자관(9.1%), TV(13.3%), 냉장고(10.1%), 세탁기(10.7%) 등 상당수 품목이 존재한다. 물론 다음 절에서 논의하겠지만 ITA로 인하여 실효세율 등이 변하는 산업은 전기·전자기기 이외에 정밀기기 등에서 여러 산업이 있다.

정밀기기는 전기·전자기기에 비하여 평균 명목세율이 6.6%로 약 1% 포인트 높지만 실효세율은 6.3%로 전기·전자기기와 같다. 특히 측정 및 분석기기와 촬영 및 영사기의 명목세율은 5%가 되지

않아 실효세율도 다른 정밀기기에 비하여 낮은 3%대를 유지하는데 명목세율이 6.1%에 달하는 의료기기는 이보다 약간 높은 5%대의 실효세율을 보인다. 이외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와 자동조정 및 제어 기기 그리고 기타 광학기기는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이 유사한 7~8%에 이른다. 정밀기기도 정보기술협정으로 영향을 받는데 특히 측정 및 분석기기는 실행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 2004년에 명목세율(5.0%)이 약 1.3% 포인트 인하되고 실효세율은 2.3% 포인트 떨어져 4.4%에 이르게 되며 또한 촬영기와 영사기의 명목세율도 2.3%에 불과하여 실효세율이 거의 영에 가깝게 된다. 이 밖에는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의 실효세율이 1% 포인트 정도 올라 11.2%가 되며 다른 정밀기기도 실효세율이 약간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수송장비는 4.7%에 이르는 높은 중간재 세율로 인하여 명목세율이 평균 5.3%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은 1.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서 품목간에 실효세율이 큰 차이가 나며 높은 중간재 비중(61.8%)은 이러한 경향을 강화한다. 중간재 세율이 5%에 이르는 자동차와 부분품에서는 오히려 부분품의 명목세율이 높아 약 8%에 달하며 실효세율도 이와 유사하다. 반면 자동차는 차종간에 명목세율의 격차가 심하여 승합차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승용차와 특장차는 5~6% 그리고 화물차는 9.9%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서 승합차(-15.5%)와 승용차(-0.2%)는 역관세 품목에 해당하지만 특장차와 화물차는 각각 3.5%, 15.1%의 실효세율을 유지하는 등 실효세율이 차종에 따라 급변한다. 이외에도 트레일러와 컨테이너도 중간재 세율에 비하여 낮은 명목세율(2.3%)로 실효세율(-5.9%)이 음의 값을 갖는다.

한편 강철제 선박(-7.2%)과 항공기(-3.7%)도 거의 무세화된 품목이며 철도차량(-3.3%)도 2.9%의 명목세율로 역관세 품목에 해당한다. 강철제 선박에 비하여 기타 선박의 세율은 4.7%에 이르지만 실효세율은 1%에 불과하며 오히려 선박수리 및 부분품이 완성

품인 선박에 비하여 8%대의 높은 실효세율을 유지한다. 또한 모터 사이클도 10.1%의 높은 실효세율을 적용받는데 자전거 및 기타 수송장비의 명목세율(7.1%)은 이보다 약간 낮아서 실효세율이 6.5%에 달한다.

#### 바. 정보기술협정(ITA)과 이에 따른 실효 관세율의 변화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 이후 총 40개 국가가 참여한 정보기술협정(ITA)으로 인하여 386개 품목(HS 10단위 기준)에 달하는 각종 전자·정보기기의 관세 등이 1997년부터 균등하게 인하되어 2000년까지 무세화된다. ITA 품목에는 CPU, 모니터, 프린터 등 컴퓨터와 관련부품, 전화, 팩스, 전자통신, 반도체 및 제조설비, 디스켓, CD-ROMs, 전자계산기, 저항기 등의 각종 전자·통신기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예조항을 달아 2000년에 193개 품목이 무세화되고 이후 2001년과 2004년까지 나머지 193개 품목이 무세화되어 정보기술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게 된다.

ITA 품목의 교역액은 1995년 협상체결 이전에 6,000억달러에 이르러 전체 교역액수의 10%에 달하였고 매년 그 교역액이 증가 추세에 있는 제품으로 1995년 당시 우리나라 수출액은 330억달러, 수입액은 165억달러로 각각 세계 제5위와 8위를 기록한 품목이었다. 이후 ITA 품목의 중요성은 계속 증가하여 1998년 우리나라 수입액 중에서 이들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18.9%, 금액으로는 무려 24조 7천억원에 이르게 되었고 수출액은 이보다 많은 37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정보기술협정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8년 당시 관세가 폐지된 기타 일반용 목적기계, 개별소자, 집적회로, 촬영기 및 영사기의 48개 품목 이외에 2000년에 무세화되는 품목으로 기록매체 및 출판(12개 품목), 화학과 유리제품(12개 품목), 기계류(31개 품목), 기타 광학기기(5개 품목)의 60개 제품 그리

고 각종 전기장치, 저항기 그리고 사무용기기 등 전기·전자기기의 88개 제품으로 총 196개 품목이 있다. 이후 연도별로 세율이 균일하게 인하되면서 2001년에 무세화되는 품목에는 인쇄회로기판, 유선통신기기,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63개 품목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2004년에 무세가 적용되는 품목에는 기타 전기변환장치,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전기·전자기기에 60개 제품 그리고 측정 및 분석기기에 60개 제품으로 총 183개 품목이 있다.

이와 같이 ITA 품목은 주로 전기·전자관련 산업(248개 품목)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외에도 정밀기기, 일반기계 그리고 화학제품과 인쇄·출판·복제 제품에도 비록 해당 산업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다수 품목이 존재한다. 또한 연도별로 세율이 균일하게 인하되기 때문에 2001년이 지나면 무세화가 되지 않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세율도 이미 1~2%로 낮아져 정보기술협정의 파급효과는 2001년에 상당 부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정보기술협정에 따른 역관세 시정 등 정책적 세율조정이 필요하다면 이는 2001년을 전후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ITA로 인하여 피해를 볼 품목은 전기·전자관련 부품산업이며 혜택을 입을 품목은 소비재관련 산업으로 보인다.

전술한 대로 1998년 당시 ITA 품목의 수입액은 24조 7천억원, 수출액은 37조원으로 우리나라 교역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또한 약 12조 3천억원의 무역흑자를 내는 산업이다.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379개 ITA 품목 중에서 무역특화지수가 양의 값을 갖는 품목은 112개 품목으로 이 부문에서 발생한 무역흑자가 27조 1천억원이며 무역특화지수가 음의 값을 갖는 품목은 268개 품목으로 무역적자가 16조 8천억원에 이른다. 또한 무역흑자는 주로 집적회로(8조원), 컴퓨터와 주변기기(4조 8천억원) 그리고 무선통신과 방송장비(2조원)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무역적자는 이외 상당수 품목에 소액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HS 10단위 기준으로

전자집적회로 기타의 기타, 기억소자, 무선전화용 송신기기 중 휴대용, 음극선관 모니터 그리고 음극선관 단말기의 5개 품목에서 총 21조원의 흑자를 창출하여 극히 소수의 품목에서 상당한 수출실적을 올렸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역흑자는 소수 품목에서 고액이, 무역적자는 다수 품목에서 소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정보기술산업의 특징이다. 물론 정보기술산업이 고도의 기술이나 상당한 설비투자를 요하는 속성으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어서 당해 산업의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기가 어려운 산업이다. 하지만 하드웨어일지언정 정보기술의 발달로 다품종, 소량생산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ITA 산업이 성장산업이며 일부 국내산업의 경우 성장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우선 ITA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연후 정책적 지원과 전문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386개 ITA 품목에 관한 무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산업별 파급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본관세율에 가까운 1999년 수입가중 평균실행세율을 기준으로 실효관세율의 변화를 IO 405개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물론 현재 유용한 자료가 1995년의 투입 - 산출계수뿐이어서 이를 기반으로 2004년의 실효관세율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으나 적어도 정보기술협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짐작할 수는 있을 것이며 이러한 뜻에서 실효세율이 0.2% 이하로 조정되는 산업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우선 정보기술 품목 가운데 1999년 당시 전 품목이 이미 무세화되어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는 산업에는 개별소자(-4.9%)와 집적회로(-1.3%)가 있으며 일부 품목이 무세화된 촬영기 및 영사기도 수입가중 실효세율의 값은 영에 가깝다. 한편 2000년에는 저항기 및 축전기(-4.9%), 기타 전자부품(3.5%), 사무용 기기(2.8%)에서 명목세율이 2% 포인트 이상 떨어져 실효세율은 3% 포인트

이상 인하된다. 연후 2001년 이후 세율이 무세화되면서 1999년에 비하여 명목세율이 5% 포인트 내외로 인하되어 역관세에 해당될 품목에는 인쇄회로기판(-3.2%), 유선통신기기(-3.3%), 컴퓨터 및 주변기기(-7.4%)가 있는데 이들 세 제품의 실효세율은 10% 포인트 이상 감소한다. 그러나 이들 제품 또한 2001년에 이미 명목세율이 1~2% 포인트로 인하된 품목이므로 정보기술협정 이행에 따른 파급효과는 2001년에 현실화될 것이다.

이외에 실효세율이 1~3% 이내로 감소하는 품목에는 전자기기용 기록매체(-7.2%), 기타 특수용 목적기계(0%), 기타 화학제품(3.4%), 측정 및 분석기기(4.4%),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5.8%)가 있으며 또한 1% 포인트 이하로 실효세율이 인하되는 품목에는 사진용 화학제품(7.2%),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7.7%), 기타 전기장비(6.2%) 등 7개 품목으로 총 18개 산업이 ITA로 피해를 입는다. 물론 이들 7개 품목은 실효세율이 6% 이상을 유지하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효세율 자체가 평균적인 개념이라는 의미에서 HS 10단위를 기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산업이다.

한편 정보기술협정으로 중간재 세율이 떨어져 실효세율이 인상되는 산업에는 주로 소비재 품목인 31개 산업이 있고 이외에도 15개 ITA 품목의 중간재 세율이 인하되는 등 총 46개 산업에 영향을 미쳐 전기·전자부품의 파급효과가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9년에 비하여 2004년에 실효세율이 1% 포인트 이상 인상되는 품목은 음향기기(18.4%), 전자코일 및 변성기(12.2%) 그리고 VTR(14.7%)에 불과하여 이들 세 품목을 제외하면 중간재 세율 인하로 인한 효과가 품목별로는 크지 않다. 즉, TV(13.3%), 냉장고(10.1%), 세탁기(10.7%), 가정용 전열기기(10.8%),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11.2%), 기타 영상음향기기(10.5%) 등 소비재 제품은 비록 실효세율이 10% 이상이지만 ITA로 인하여 실효세율이

1% 미만으로 인상되고 나머지 23개 품목 또한 실효세율이 1% 이하로 인상된다.

그런데 실효세율이 인하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난방 및 조리기기, 시계, 기타 광학기기 등 그 효과가 미미한 6개 품목을 제외하면 이들 제품의 실효세율도 이미 2000년에 인상되는 상황이므로 ITA에 따른 세율조정은 필요하다면 2000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18개 ITA 품목 가운데 15개 품목의 중간재 세율이 인하되어 무세화에 따른 실효세율의 인하효과가 약간이나마 중화되는 사례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인쇄회로기판, 유선통신기기 그리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중간재 세율이 1% 포인트 이상 인하되어 정보기술협정의 효과가 이들 세 제품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나머지 12개 제품의 중간재 세율은 1% 이내로 인하된다.

정보기술협정으로 인하여 혜택을 입는 산업은 주로 음향기기, VTR, TV 등 소비재 산업과 전자코일 변성기 등 일부 부품산업이다. 수출입이 집중되어 있는 집적회로를 제외하고 실효세율이 인하되는 산업을 대상으로 교역유형을 살펴보면 20개 산업 중 18개 산업의 무역특화지수가  $-0.5$ 를 넘고 15개 산업이  $-0.7$ 을 초과하여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경쟁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입의존도를 기준으로 하면  $0.5$ 를 초과하는 산업이 6개 산업(사진용 화학제품, 기타 특수용 목적기계, 개별소자, 측정 및 분석기기 등)으로 비록 수출경쟁력은 없어도 국내생산으로 수입품과 경쟁하여 내수를 충족시키는 산업이 다수이다. 따라서 전술한 대로 ITA산업이 유치산업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일부 산업에 관하여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최소한 전자기기용 기록매체, 저장기 및 축전기, 개별소자, 집적회로, 인쇄회로기판, 유선통신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역관세 현상이 발생하는 산업이나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기타 전자부품, 사무용기기, 촬영기 및 영사기 등 실효세율이 낮은 산업에 대해

서는 수입의존도와 성장 가능성 등 각종 경제적 변수를 감안하여 중간재나 관련 산업에 관한 세율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물론 정보기술산업 안팎으로 균등관세율정책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지만 ITA에 따른 무세화가 상당한 파급효과를 나타낸다면 부분적인 세율조정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뉴라운드에서 제2의 정보기술협정을 위한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정보기술산업에 관한 우리나라 입장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사. 차기 WTO 라운드와 관세율정책

1999년 12월초 시애틀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가 결렬됨으로써 새로운 라운드가 언제부터 어떤 협상의제를 놓고 진행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농업분야와 서비스 분야의 협상은 '기설정의제'로서 2000년부터 협상이 시작될 것이며 국제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의 추구를 각국이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므로 새로운 라운드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율정책과 관련하여 차기 라운드에서의 협상 주제는 양허의 범위, 관세율 인하의 폭, 고율관세의 처리, 미소관세 문제, 관세율 인하방식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수산물을 중심으로 미양허 품목이 존재하고 있고, 고율관세는 농산물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소관세는 의류, 목재제품, 원자로-보일러, 기계류, 전기기기, 항공기 및 부분품 등에 존재하는바 그 세수가 1998년 기준으로 4,600억원 규모로 상당한 수준이다. 관세율의 폭으로는 WTO 회원국간에 공산품의 경우 평균 3분의 1의 관세율 인하를 달성한 우루과이 라운드 수준의 인하가 논의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관세인하 방식에 대해서는 요청/제안(request/offer) 방식과 공식(formula) 방식을 선호하는 국가들이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공식방식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 X. 결 론

지난 1984년 관세율인하예시제가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는 균등 관세율체계에 입각하여 시장 친화적인 관세율정책을 운영하여 왔다. 관세정책이 갖는 정치·경제적 의미를 감안할 때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정책의 중립성과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8% 평균세율에 기초한 균등관세율체제는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을 가능케 하여 내수산업과 중간재 산업 등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개방화와 함께 정보화 및 지식화 등 탈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2000년대에 들어와 기존 관세율정책의 기본 원칙이 아직도 유효한지를 검토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중장기적 관세정책의 원칙을 수립하는 일은 선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밖에도 농산물협상 등 뉴라운드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정보기술협정 등 다자간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 조정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고에서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연후 국제비교와 실효관세율을 중심으로 관세율구조와 그 파급효과를 검토하였다. 산업별로는 WTO 뉴라운드에 대비하여 농산물과 정보기술산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뉴라운드의 의미를 개괄적으로 다루었다. 관세율정책이 갖는 중요성과 방대한 분석자료를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관세율정책의 대안 제시는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지난 10년간 관세율정책의 변화와 현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에서 교역구조와 경제성장을 관세율정책과 연계

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1990~1998년 사이에 내구소비재와 곡물의 세율은 각각 약 4%(금 제외), 2% 포인트 정도 인하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에 세율이 가장 많이 인하된 품목은 자본재(3.1% 포인트)이며 이외 중간재(2.7% 포인트), 소비재(1.9% 포인트), 기초 원료(0.8% 포인트)의 순으로 세율이 인하되었다. 이에 따라서 1990년 당시 소비재 세율의 약 3분의 2 수준이던 원자재와 중간재의 평균세율은 소비재의 약 절반 수준인 4%대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원자재와 중간재의 수입비중은 약 54%에서 49%로 감소하였는데 이에 비하여 세율이 가장 많이 인하된 자본재의 수입비중은 37.5%로 변화가 없다.

산업별로는 부분적인 관세화로 농림수산품의 세율이 인상되어 1998년 당시 6.7%에 이르는데 물론 농림수산품의 경우 비관세장벽이 감안되어야 한다(가중평균 기준). 이에 비하여 경공업 제품은 1994년 이후 세율이 인상되어 8.9%에 이르는 반면 중공업 제품의 세율은 꾸준히 인하되는 추세로 평균세율이 5.1%에 불과하다. 특히 중공업의 경우 예외없이 관세율이 인하되고 품목간의 세율격차도 작으며 그 편차(3 이내)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경공업(14)과 농림수산품(37)의 표준편차는 증가 추세로 경공업에서 균등세율체제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경공업에서도 유난히 음·식료품의 세율인상(13.4%)과 품목간의 세율격차(표준편차 25)가 상당한 반면 인쇄·출판 등은 정보기술협정으로 0.8%의 평균세율을 유지한다. 이외에도 종이·나무제품(4.7%)과 섬유·가죽제품 그리고 기타 제조업(8%)의 세율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섬유·가죽과 기타 제조업 제품은 다른 경공업 제품에 비해 단순과 가중평균 세율간의 격차가 작은 편이다. 중공업에서는 석유·석탄(2.2%), 제1차금속(3.7%), 전기·전자기기(4.6%) 그리고 수송기기(4.1%)의 세율은 낮은 편이고 수송기기를 제외하면 가중평균 세율이 단순평균 세율과 차이가 많이 난다.

이에 비하여 세율이 높은 화학, 요업·토석, 금속제품, 일반기계, 정밀기기는 단순평균세율과의 격차가 1% 포인트 내외로 수입액과 상관없이 품목별로 균등하게 세율이 적용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관세율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정 관세율체계에 관한 국제비교를 수행하였다. 우선 GDP 대비 관세부담률은 우리나라가 1.32%인데 이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소득 수준과 교역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 비하여 0.3% 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으로 약 1조 2천억원에 상당한 금액인데 이는 관세 환급액에 상당하는 액수이다(1995년 기준).

한편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한 가공도 관세율을 보면 소득과 수출비중이 높으면 관세율은 낮아야 한다. 그러나 수입은 산업에 따라 변화하여 농어업품과 제조업 원자재는 수입비중이 크면 관세율이 높아 수입제한적이고 광산품과 중간재는 수입비중이 크면 관세율이 낮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관세율체계를 산출하면 우선 평균세율은 9.2%로 우리나라 실행 평균세율 8.9%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지만 가공도에 따라 가파른 경사관세율체제가 나타난다. 즉, 수입의존도가 높은 광산물의 적정세율은 약 1%로 OECD 평균세율 1.7%보다 낮다. 반면 제조업 원자재와 중간재 그리고 최종재의 적정세율은 각각 5.5%, 8.2%, 11%로 OECD 평균세율에 비하여 1~2% 포인트 높다. 또한 농수산품의 적정세율은 제조업 최종재와 유사한 10.9%에 이른다.

한편 산업별로는 음·식료품과 섬유·의류제품의 세율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결정되는데 특히 음·식료품은 수입이 많으면 관세율이 높아 관세율이 수입 제한적이라는 사실 이외 다른 경제적 변수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음·식료품 이외에 각 산업별로 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국내생산에 대비한 수입비중이 클수록 적정 관세율은 낮다. 또한 해당 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고용/경제활동인구)이 클수록 그리고 해당 제조업이 노동집약적일수록(고

용/국내생산액) 적정 관세율은 높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 전체와 섬유·의류, 석유·화학, 비철금속 그리고 기타 제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종이·제지와 목제품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수출비중은 산업에 따라 그 비중이 높으면 관세율이 낮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상기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적정 세율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평균세율은 약 9.7%로 나타나 우리나라 단순평균 세율 7.3%보다 약 2.4% 포인트 높는데 이러한 세율수준은 부가가치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므로 실제 차이는 이보다 약간 작을 것이다. 산업별로는 음·식료품과 섬유·의류제품의 적정 세율이 거의 20%에 이르고 경공업 제품인 목제품과 기타 제조업 제품은 각각 10%, 12%의 적정세율을 보인다. 이에 비하여 제지와 다른 중공업 제품의 적정 세율은 7~8%로 우리나라 실행세율과 큰 차이가 없다.

요컨대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경사관세율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음·식료품과 섬유·의류제품에 대하여 고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국제비교에 기초한 적정관세율체제가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산업 및 고용구조라는 경제적 변수를 감안하여도 음·식료품 등을 포함한 경공업 제품의 적정세율이 OECD 평균보다 약 4% 포인트 정도 높은 반면 중공업 세율은 이보다 낮은 7~8% 수준으로 특히 중공업에서 산업간의 세율격차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은 특이하다. 또한 가공도별로는 광산품의 적정세율이 1%로 예외적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데 비하여 제조업 세율체제는 가파른 경사관세율체제로 나타나 우리나라 실제 관세율 구조와 차이가 난다.

물론 이러한 연구가 최적 관세율이론에 기초한 분석은 아니며 또한 관세율체제 자체가 각국의 고유한 정치·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에서 상기의 연구결과는 국제비교에 기초한 평균적 세율 체계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방법에 있어서 소득수준과 교역구조 그리고 노동집약도 등의 경제적 변수를 불완전하게나마 감안

하였고 근래에 이루어진 관세율 개편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관세율체제가 선진국과 어느 정도 유사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으며 소위 '관세의 조화'는 아니더라도 ITA 등 각종 국제협정에 따라 일부 관세율이 국제적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WTO 뉴라운드에서 농산물협상은 기설정 분야로서 이에 대비한 농산물 협상전략의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데 농산물 관세정책이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로는 크게 국민경제적 효율성, 농업생산자의 소득, 주요 농산물의 적정 식량자급률의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다수의 정책목표들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정책목표들 사이에 우선순위가 정립되어야 한다. 개념적으로 농업생산자의 소득과 주요 농산물의 식량자급률에 대한 최저수준을 설정하고 그 제약 아래에서 국민경제적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즉, 관세로 인한 보호가 초래하는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의 경제적 사중손실을 최소화하는 관세율체계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개념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농산품 품목군별의 공급과 수요의 탄력성을 정확하게 계측하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앞에서 언급된 정책목표들을 추구함에 있어서 관세정책과 관세 이외의 농업정책수단 및 일반경제정책수단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상의 결과인 예외없는 관세화로 인해 관세정책이 농업정책의 정책수단으로서 가지는 중요성이 대단히 커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관세에 의한 보호에 의지하여 농업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하거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는 것은 자원배분에 적지않은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농업생산자에 대한 직접소득보조, 농업구조개선정책, 적정 공적 재고유지정책, 일반재정 및 금융정책 등을 적절히 조합하고 정책들간의 모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단, 관세는 공공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 집행비용이 직접소득보조나 구조개선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 동안은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농산물 관세정책의 미시적 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역할이 미미한 종량세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과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탄력관세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산물에 대한 종량세는 저가품에 의한 시장교란을 막는 데 효과적이므로 선진국에서는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국제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 구조조정 기간 동안 국내시장을 저가품으로부터 일정하게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종량세는 일정한 품목에서 적절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단, 같은 품목으로 분류되는 저품질 제품과 고품질 제품이 있을 경우에 자원의 배분을 전자쪽으로 유도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품목의 정확한 분류와 혼합세 형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다른 제품에 비해 낮고 공급 불안정성이 크므로 탄력관세가 상대적으로 빈번히 발동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수년간에 걸쳐 일률적 탄력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들은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이나 잠정세율의 틀로 흡수하고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자원배분을 왜곡할 가능성 있거나 보호의 실익이 없는 품목들에 대한 탄력세율은 인하하거나 탄력관세 적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조정관세의 경우 수산품에 대한 고율의 조정관세는 국내생산 비중이 크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인하 내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할당관세의 경우 장기적용품목 중 국내대체의 가능성이 적고 기본세율과의 격차도 크지 않은 품목들은 기본관세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산업별 균등관세율체제를 지향하는 관세율인하에시제가 종료되고 난 이후 현행 관세율체제로 인하여 실효관세율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1998년 실적관세율 기준). 이 밖에도 본고에서는 간접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효관세율을 추정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실효관세율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관세

율체제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도구이다. 특히 특정 산업의 명목세율이 동일하더라도 중간재의 세율과 그 비중에 따라 산업별로 실질적 보호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효관세율의 추정을 통하여 보호도가 명목세율 이외에 어떤 요인으로 품목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다.

추정 결과를 요약하면 IO 교역재 305개 산업 중에서 6~9%의 중심 실효세율 구간에 존재하는 품목은 85개 산업에 불과하며 그 대신 9%를 초과하는 품목은 122개 산업으로 전체 산업의 약 40%에 이른다. 또한 실효세율이 6% 이하인 품목은 98개 산업으로 명목세율 기준과 유사하지만 이 가운데 역관세를 보이는 품목은 40개 산업에 달한다. 이들 제품 가운데는 기초 원자재나 또는 첨단산업이어서 관세율이 낮고 그 결과 역관세를 보이거나 ITA와 같이 국제협정에 따라 무세화되어 불가피하게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는 산업이 있다.

1차 산업의 경우 총 43개 품목 중에서 역관세 현상이 발생하는 품목이 15개 산업이 있으나 이들 제품은 기초 원자재이며 특히 농수산품의 경우 관세할당 외에도 각종 비관세장벽이 있으므로 단순히 관세율로 수입장벽을 가늠할 수 없다. 경공업에서 역관세가 나타나는 산업은 10개 품목이 있고 20% 이상의 실효보호를 받는 품목은 30개나 있다. 이에 비하여 중공업에서는 역관세가 나타나는 산업은 15개 품목이 있지만 20% 이상의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산업은 3개 품목에 불과하다. 또한 명목과 실효세율간에 격차가 큰 품목은 농림수산품과 음·식료품이 있는데 광산품과 인쇄, 출판 및 복제제품은 평균적으로 실효세율보다 명목세율이 높고 중공업에서는 수송장비와 비록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일반기계와 금속제품이 그러하다. 특히 중공업제품은 균등관세율체제의 영향으로 중간재 비중(65%)이 높은 제1차 금속제품을 제외하면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약간 높을 뿐이다.

농림수산품은 평균 실효세율(40%)은 높지만 낙농, 양돈, 밀, 잡

곡, 원목 등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실효세율이 20%를 초과하는 품목도 채소, 식용임산물, 내수면 양식 등 6개 산업이 존재하여 보호도가 양극화되고 수산물은 제품의 대체성에 비하여 산업별로 실질적 보호도가 급변한다. 그러나 광산품은 원유를 제외하면 수입의존도(79%)가 높아 실효세율이 낮거나 역관세 품목이 많다.

음·식료품의 경우 대체로 중간재 세율(6.6%)이 높지만 중간재 비중이 57%로 높아 명목세율(15.9%)과 실효세율(50%)간에 차이가 크며 따라서 그 수입의존도(10%)가 매우 낮다. 음·식료품은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장벽으로 명목세율이 불가피하게 높은 측면이 있지만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20% 이상의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각종 육류, 유제품, 수산저장품, 전분과 당류, 곡수류, 커피·차류, 과일·채소가공품, 각종 주류, 청량음료 등 21개 품목으로 전체 품목의 절반에 달한다. 예외적으로 명목세율이 낮아 역관세 현상이 발생하는 품목에는 아이스크림, 각종 유지류와 식용유, 담배가 있고 이외에 기타 조미료, 원당과 정제당, 팥천수 및 생수는 실효세율이 낮다.

섬유·가죽제품도 중간재 비중이 커서 실효세율이 평균 13%에 달한다. 그러나 모사와 가죽은 역관세 품목에 해당하고 면사와 기타 장신품도 각각 2%, 6% 이내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각종 직물류, 특히 편직의류와 장식품, 가죽(모피)의류와 가죽신발은 20% 내외의 실질적 보호를 받는 등 대다수 품목이 9% 이상의 실효보호를 받는다. 섬유제품의 경우 섬유사, 직물류, 의류의 실효세율이 평균적으로 각각 4.5%, 14.1%, 17.5%로 증가하여 가공도에 따른 차등세율체제가 현저하게 드러난다.

목재·종이제품의 경우 펄프와 골판지 등의 실효세율이 낮지만 합판은 22% 이상의 실질보호를 받으며 이외 다른 제품은 목재용기를 제외하면 실효세율은 7~16%에 이른다. 이에 비하여 인쇄·출판·

복제제품은 대부분이 무세화되어 신문, 출판, 기록매체와 복제 등에서 역관세 현상이 확연히 나타난다. 이 밖에도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제품은 실효세율이 명목세율과 비슷한 평균 7.9%에 달하고 고세율이나 역관세 품목이 없다. 그러나 1999년을 기준으로 하면 금속가구는 다른 가구와 달리 국제협정에 따른 세율인하(3.8%)로 실효세율이 영(0) 이하이다.

중공업 중에서 석유·석탄제품 가운데 역관세가 나타나는 품목은 나프타 등이 있는 반면 기타 석탄제품의 실효세율은 18%를 상회한다. 화학제품에서는 전체 30개 품목 가운데 22개 품목이 6~13%의 실효세율 구간에 있어 중공업에서도 비교적 고른 세율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비료와 기타 고무제품이 -1% 이내의 역관세 품목에 해당하며 질소화합물의 실효세율이 낮다. 화장품 및 치약, 비누와 세제, 고무제품, 유기 화학품의 실효세율은 9% 이상이다. 한편 전자기기용 기록매체는 ITA 협정으로 2000년에 역관세 품목에 속하고 사진용 화학제품의 실효세율도 3.4%로 인하된다.

비금속광물제품의 경우 기초원료에 해당하는 시멘트와 레미콘, 내화요업제품 등의 실효세율은 낮고 이외에 유리 및 도자기제품, 콘크리트, 아스팔트 제품과 석제품 등의 대다수 품목이 8~10%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다. 제1차 금속제품의 경우 명목세율은 낮지만 중간재 세율이 낮고 그 비중이 높아 실효세율이 평균 12%에 달한다. 그러나 선철, 합금철, 조강과 같이 원자재에 가까운 제품의 실효세율은 낮다. 특히 가공도가 높은 철강 1차제품에서는 품목간의 세율 차이가 없지만 중간재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간재 세율에 따라 실효세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구체적으로 강관, 연강재 등의 실효세율은 8% 내외인데 철근, 형강 등의 실효세율은 16% 이상으로 명목세율의 2배에 이른다. 한편 각종 비철금속괴의 실효세율도 품목에 따라 차이가 커서 1% 또는 8% 이상의 실효세율이 적용된다.

금속제품은 명목세율이 제1차 금속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재 세율은 높아 평균 실효세율이 7%로 내외로 명목세율과 유사하거나 이보다 낮다.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는 실질적 피해를 입고 공구류와 철선제품을 제외하면 다른 제품은 5~8% 내외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다. 중간재 세율이 높아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을 초과하지 못하는 현상은 일반기계에서도 발견되는데 다만 일반기계의 경우 균등관세율체제가 확실히 반영되어 있어 실효세율은 6~7%를 유지한다. 일반목적용 기계는 대체로 특수목적용 기계에 비하여 세율이 평균 1% 포인트 정도 높는데 특히 정보기술협정과 관련된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의 실효세율이 1%에 불과하고 금속 관련 기계, 섬유나 제지용 기계가 5%대의 실효세율을 유지한다.

전기·전자기기는 산업별로 실효세율이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ITA에 따라 무세화가 추진되면 그러한 경향이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완성품에 해당하는 전기기계 및 장치에서는 전선 및 케이블과 전지를 제외하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6~8%)이 서로 비슷하다. 그러나 ITA가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자기기 부분품에서는 산업별로 세율 격차가 심하게 난다. 우선 정보기술협정(ITA) 대상인 개별소자와 집적회로는 1999년에 이미 무세화되어 실효관세율이 0%의 값을 지닌다. 그러나 기타 전자표시장치와 기타 전자부품 등의 실효세율이 8%대 내외이다.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전기·전자기기는 대부분 품목이 직·간접적으로 그 영향권에 들어서게 된다. 기본세율 중심의 실행세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4년 협정에 따른 무세화로 인하여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이 3% 포인트 이상 인하되어 역관세 현상이 확실히 나타날 품목은 저항기 및 축전기, 인쇄회로기판, 유선통신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이다. 또한 실효세율이 1~3% 포인트 이상 감소할 품목은 기타 전자부품, 사무용기기,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가 있고 이외에도 기타 전기변환장치,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등 다수 품목이 ITA의 영향으로 실효세율이 인하된다.

한편 TV와 음향기기의 실효세율도 15%를 초과하고 이외 VTR, 냉장고, 기타 영상음향기기 등 완성품의 실효세율도 10% 이상으로 높는데 이들은 부분품의 무세화로 혜택을 입게 된다. 이로써 전기·전자기기에서 품목별 세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되고 그 결과 가공도에 따른 차등세율체제가 자동적으로 정착되게 된다. 2004년에 실효세율이 1% 포인트 이상 인상되는 산업은 전자코일 및 변성기, VTR, 음향기기가 있으며 이외에 발전기와 전동기, 전자관, TV, 냉장고, 세탁기 등 다수 품목의 세율이 약간 인상된다. 물론 ITA로 인하여 실효세율 등이 변하는 산업은 정밀기기도 포함된다. 특히 측정 및 분석기기와 촬영 및 영사기의 실효세율은 3%대를 유지하는데 ITA로 이들 제품의 실효세율은 더욱 인하될 예정이며 이외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와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그리고 기타 광학기기는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이 유사한 7~8%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수송장비는 4.7%에 이르는 높은 중간재 세율로 인하여 실효세율은 1.7%에 불과하다. 또한 품목간에 실효세율이 큰 차이가 있는데 중간재 세율이 5%에 이르는 자동차에서는 오히려 부분품의 명목세율이 높고 실효세율도 그러하다. 특히 자동차는 차종간에 명목세율의 격차가 심하여 승합차(-15.5%)와 승용차(-0.2%)는 역관세 품목에 해당하지만 특장차와 화물차는 각각 3.5%, 15.1%의 실효세율을 유지한다. 이외 트레일러와 컨테이너, 철도차량과 함께 무세화로 인하여 강철제 선박(-7.2%)과 항공기(-3.7%)도 역관세 품목이다. 그러나 완성품에 비하여 선박수리 및 부분품은 8%대의 높은 실효세율을 유지한다.

이와 같은 실효관세율의 분포로 볼 때 향후 관세율 개편에서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우선 의도하지 않았던 산업에서의 역관세 현상을 방지하지 위한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며 이 밖에도 ITA협정 등 각종 국제협정에 따른 세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좀더 거시적으로는 제품간의 대체성 내지는 소비형태를 감안하여 실효세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산업들이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품목들에서 세율 조화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본고에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생산 및 교역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일부 세율조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평균세율의 적정성, 원자재의 무세화와 가공도별 세율체계의 적정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세율조정과 함께 성장산업에 관한 선별적인 지원 등 선진형 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적인 세율개편이 필요하다.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 이후 총 40개 국가가 참여한 정보기술 협정(ITA)으로 인하여 386개 품목(HS 10단위 기준)에 달하는 각종 전자·정보기기의 관세 등이 1997년부터 균등하게 인하되어 2000년까지 무세화된다. 우리나라는 유예조항을 달아 2000년에 193개 품목이 무세화되고 이후 2001~2004년 사이에 나머지 193개 품목이 무세화된다. ITA 품목의 교역액은 1998년 우리나라 수입액 중에서 이들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18.9%, 금액으로는 무려 24조 7천억 원에 이르게 되었고 수출액은 이보다 많은 37조원에 달한다.

ITA 품목은 주로 전기·전자관련 산업(248개 품목)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외 정밀기기, 일반기계 그리고 화학제품과 인쇄·출판·복제 제품에도 다수 품목이 존재한다. 또한 연도별로 세율이 균일하게 인하되기 때문에 2001년이 지나면 무세화가 되지 않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세율도 이미 1~2%로 낮아져 정보기술협정의 파급효과는 2001년에 상당 부분 가시화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정보기술협정에 따른 역관세 시정 등 정책적 세율조정이 필요하다면 이는 2001년을 전후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ITA로 인하여 피해를 볼 품목은 전기·전자관련 부품산업이며 혜택을 입을 품목은 소비재 관련 산업으로 보인다.

ITA 품목은 우리나라가 무역흑자를 내는 산업이지만 379개 품목 중에서 무역특화지수가 양의 값을 갖는 품목은 112개 품목이고 음의 값을 갖는 품목은 268개 품목에 이른다. 특히 대규모 무역흑

자는 소수 품목에서 발생하는 반면 무역적자는 상당수 품목에 소액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정보기술산업이 고도의 기술이나 상당한 설비투자를 요하는 속성으로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기가 어려운 산업이다. 하지만 정보기술의 발달로 다품종, 소액생산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일부 국내산업의 경우 성장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우선 ITA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향후 정책적 지원과 전문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전자기기용 기록매체, 저항기 및 축전기, 개별소자, 집적회로, 인쇄회로기판, 유선통신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역관세 현상이 발생하는 산업이나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기타 전자부품, 사무용기기, 촬영기 및 영상기 등 실효세율이 낮은 산업에 대해서는 각종 경제적 요인을 감안하여 중간재와 관련 산업에 관한 세율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물론 정보기술산업 안팎으로 균등 관세율정책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지만 ITA에 따른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부분적인 세율조정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WTO 차기 라운드에서 제2의 정보기술협정을 위한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우리나라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차기 라운드가 우리 관세율 구조와 산업별 실효관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준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기양허품목의 양허관세율 3분의 1 인하, 미양허 품목의 전반적 양허와 현행세율 기준 24% 관세율 인하'로 설정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면 전체 품목 중 33%의 실행세율 인하, 실행세율의 단순평균 8.87%에서 8.02%로의 인하, 가중평균의 4.97%에서 4.39%로의 인하가 예측된다. 실효관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축산, 금속광석, 조미료 및 유지 중 일부 산업, 출판, 복제, 전자기기부품, 화물차, 철도차량과 항공기 등이 음의 실효세율을 보인다. 이 중 축산 및 화물차, 철도차량, 항공기 등은 부가가치 규모로 볼 때 국민경제상 비중이 상

당한 산업이므로 관세율 구조의 실제 운용과 다른 경제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실제로 이들 산업에 대해 불리한 자원의 배분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출판, 복제 등은 관세율정책보다는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정책에 더 민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농산물(작물), 음·식료품에서 20%를 넘는 실효관세율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농산물에 대한 높은 실효관세율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농업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농업종사자의 소득을 지지할 수 있는 다른 정책수단이 정착될 때까지는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장기적으로 지양해 가야 할 상황이라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關稅廳 評價協力局, 「세계무역기구 협정문」, 1995.
- 金珍洙·安鍾錫, 『경제여건의 변화와 관세율구조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94-03, 1994.
- 金昌男, 『일본의 산업 및 무역구조의 변화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2-29, 1992.
- 大宇經濟研究所,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 산업별 최종 협정 내용과 대응전략』, 1994.
- 對外經濟政策研究院, 『UR 협정이행의 평가와 뉴라운드에의 대응』, 1999.
- 朴相泰, 『관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정책보고서 96-04, 1996.
- 배종하, 「WTO 차기 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망」, 농정연구포럼 정기월례 세미나 발표문, 1999.
- 柳在元, 『전환기의 대만경제 - 산업구조조정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자료 94-05, 1994.
- 兪正鎬, 『한·대·일의 수입의존구조 비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5-02, 1995.
- 兪正鎬·洪聖薰·李在鎬, 『산업보호와 유인체계의 왜곡 - 1990년 명목 및 실효보호율 추정』,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3-02, 1993.
- 外交通商部, 「WTO 뉴라운드협상 연찬회 발표자료」, 1999.
- 李元暎, 『한국경제의 산업무역모형』,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2-08. 1992.

- 李明憲, 『농산물관세체계의 현황과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내부자료, 1999.
- 李俊求, 「수출촉진을 위한 최적관세의 이론」, 『경제학연구』, pp. 47~56.
- 張權鎬·金珍洙, 『관세 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97-13, 1997.
- 張權鎬, 『열린 시대의 관세율정책 : 수입구조의 변화와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의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97-17, 1997.
- 張權鎬, 『반덤핑제도의 운영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98-07, 1998.
- 財務部 關稅局, 「관세율정책 운용실적 및 방향」, 1991.
- 최세균·이재욱·이명균, 『농산물 및 식품관련 관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1998.
- 韓國關稅研究所, 「HS 종합편람」, 1999.
- 韓國關稅研究所, 「수출입동향품목 분류체계개편」, 1998.
- 韓國國際通商學會 外, 「뉴라운드와 21세기 한국의 통상정책」, 1999.
- 韓國銀行, 「1995년 산업연관표(II)」, 1998.
- 韓國銀行, 「1995년 산업연관표작성보고서」, 1998.
- 韓國海洋水産開發院, 「WTO 뉴라운드 대응 수산부문 심포지움」, 1999.
- 洪性德, 「산업별 명목과 실효 보호율의 연장추정(1975~1995)」,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자료 97-06, 1997.
- Basevi, G., "Aggregation Problems in the Measurement of Effective Protection," *Effective Tariff Protection*, 1971, pp. 115~134.

- Basevi, G., "The United States Tariff Structure : Estimates of Effective Rates of Protection of the United States Industries and Industrial Labor," *E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66, May, pp. 147~160.
- Cassen, Robert and Sanjaya Lall, "Lessons of East Asian Development,"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Vol. 10, 1996, pp. 326~334.
- Ciccone, Antonio and Kiminori Matsuyana, "Start-up Costs and Pecuniary Externalities as Barriers to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49, 1996, pp. 33~59.
- Daly, Michael and Kuwahara Hiroaki, "The Impact of the Uruguay Round on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to Trade in the 'QUAD',"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998, pp. 207~234.
- Corden, W. M., *The Theory of Protection*, Clarendon Press, Oxford, 1971.
- De Long, J. Bradford and Lawrence H. Summers, "Equipment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6, May 1991, pp. 445~502.
- Grubel, Herbert G. and Harry G. Johnson, *Effective Tariff Protection*, Geneva, 1971.
- Harberger, Arnold C., "Reflections on Uniform Taxation," *Reflections of Uniform Taxation*, pp. 75~89.
- Jackson, J. H., *The World Trading system, 2nd Edition* The MIT Press, Cambridge., 1998.
- Lane, Philip R., "Trade Specialization, Endogenous Innovation and Growth,"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 Vol. 11, No. 4, 1996. pp. 492~509.
- Lee, Jong-Wha, "Capital Goods Import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48, 1995, pp. 91~110.
- Leith, J. C., "Tariffs, Indirect Taxes and Protection," *Effective Tariff Protection*, pp. 135~145, 1971.
- Lucas, Jr., Robert E., "Making a Miracle," *Econometrica*, Vol. 61, No. 2, March, 1993, pp. 251~272.
- McKinnon, R. I., "Protection and Value Added Tax," *Effective Tariff Protection*, pp. 287~293, 1971.
- Osang, Thomas and Alfredo Pereira, "Import Tariffs and Growth in a Small Open Econom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60, 1996, pp. 45~71.
- OECD, *Indicators of Tariff & Non-Tariff Trade Barriers, Update 1997*, 1997.
- \_\_\_\_\_, "Review of Tariff & Non-Tariff Trade Barriers, Tariff Regimes of the QUAD Countries," TD/TC(97) 11/REV1, 1998.
- \_\_\_\_\_, "Tariff Escalation and Environment," OECD Working Papers No. 10, 1998.
- \_\_\_\_\_, "The OECD Stan Database for industrial Analysis, 1978~1997," 1998 edition, 1999.
- \_\_\_\_\_, Tariff Review-Synthesis Report, Annex, 1999.
- Succar, Patricia, "The Need for Industrial Policy in LDC's - A Re - Statement of The Infant Industry Argument,"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28, No. 2, June 1987.
- United Nations, *Handbook of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Statistics. 1995. 1997.*

## 〈부표 1〉 QUAD국의 HS 4단위별 고율관세 분포(1996년, MFN기준)

(단위:개, %)

	HS	미 국		E U		일 본		캐 나 다	
		품목수	비 율	품목수	비 율	품목수	비 율	품목수	비 율
1. 산 동물	0101			5	20.00	7	28.57		
	0102			15	73.33	4	25.00		
	0103			6	50.00				
	0104			5	60.00				
	1005			13	23.08			18	22.22
2. 육과 식용설육	0201	17	35.29	6	100.00	7	100.00	6	50.00
	0202	17	35.29	8	100.00	7	100.00	6	50.00
	0203			22	68.18				
	0204			27	100.00	22	18.18		
	0206			26	7.69				
	0207			128	74.22			51	43.14
	0209			4	100.00			6	33.33
	0210			35	68.57	11	9.09	13	30.77
	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0301			11	9.09			
0302				67	22.39				
0303				91	31.87				
0304				60	8.33				
0305				32	12.50				
0306				27	25.93				
4. 낙농품, 조란, 천연꿀 등	0401	9	33.33	12	75.00	11	63.64	6	66.67
	0402	30	13.33	28	46.43	38	47.37	14	50.00
	0403	24	25.00	30	36.67	26	76.92	6	50.00
	0404			30	43.33	38	44.74	6	50.00
	0405			10	80.00	13	61.54	6	66.67
	0406	154	16.23	53	75.47	10	90.00	34	50.00
	0407			4	50.00	3	66.67	5	40.00
	0408	4	25.00	9	55.56	4	100.00	8	75.00
	0409			1	100.00	1	100.00		
0410							1	100.00	
5. 기타 동물성 생산물	0503							2	50.00
6. 산식물과 기타식물	0603			13	53.85			9	22.22
7. 식용채소	0701			5	40.00				
	0702			8	37.50				
	0703	5	20.00						
	0704	6	33.33	6	16.67			14	7.14
	0705							8	25.00
	0706	7	14.29	6	66.67			14	7.14
	0707			8	25.00				
	0708			7	28.57				

## 〈부표 1〉의 계속

(단위: 개, %)

	HS	미 국		E U		일 본		캐 나 다	
		품목수	비 율	품목수	비 율	품목수	비 율	품목수	비 율
7. 식용채소	0709	21	47.62	30	3.33			25	8.00
	0710	29	31.03	16	93.75			16	31.25
	0711			11	18.18				
	0712	25	16.00						
	0714	10	10.00	8	62.50	12	33.33		
8. 식용 과실 및 견과류	0802			3	100.00	14	7.14		
	0803					3	66.67		
	0804	14	7.14			10	10.00		
	0805	8	25.00	50	52.00	8	50.00		
	0806			16	50.00	3	33.33		
	0807	9	55.56						
	0808					2	50.00		
	0809			34	44.12				
	0811	14	21.43	20	75.00	15	46.67	5	20.00
	0812	7	14.29			13	84.62		
0813	12	16.67			10	10.00			
9. 커피, 차 및 향신료	0901			8	25.00	8	50.00		
	0902					8	62.50		
	0903					1	100.00		
	0909			12	8.33				
	0910			16	18.75				
10. 곡물	1001			4	100.00	8	12.50	4	50.00
	1002			1	100.00				
	1003			2	100.00			4	50.00
	1004			1	100.00				
	1005			6	16.67	10	60.00		
	1006	6	16.67	34	97.06				
	1007			2	50.00				
	1008			5	60.00				
11.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1101		33.33	3	100.00	5	20.00	2	50.00
	1102	6	14.29	7	57.14	8	75.00		
	1103	7		16	68.75	20	70.00	16	6.25
	1104			38	73.68	22	68.18		
	1105			2	100.00	2	100.00		
	1106			5	20.00	7	71.43		
	1107			5	100.00	6	100.00	8	50.00
	1108			7	100.00	19	36.84	9	22.22
	1109			1	100.00	1	100.00	2	50.00
12.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1202	6	83.33						
	1212	6	16.67	10	20.00	19	10.53	6	16.67

## 〈부표 1〉의 계속

(단위: 개, %)

	HS	미 국		E U		일 본		캐 나 다	
		품목수	비 율	품목수	비 율	품목수	비 율	품목수	비 율
13. 락 겐 수지 및 기타 식물성액즙	1301					6	16.67		
	1302			45	2.22	22	4.55	14	7.14
15. 동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물	1501			3	66.67				
	1507	3	66.67			3	33.33		
	1509			3	100.00				
	1510			2	50.00				
	1511			6	16.67			2	50.00
	1512	4	50.00			10	30.00	6	16.67
	1513			18	33.33			4	50.00
	1514					3	66.67	2	50.00
	1515			27	7.41	17	11.76	14	14.29
	1516			7	28.57			2	100.00
	1517	7	14.29	6	66.67	6	33.33	7	57.14
1522			5	20.00					
16. 육류, 어류 갑각류의 조제품	1601			3	100.00			9	22.22
	1602			42	57.14	50	58.00	47	38.30
	1603			3	33.33				
	1604	42	4.76	35	82.86				
	1605			10	90.00				
17. 당류와 설탕과자	1701			7	85.71	8	62.50	8	12.50
	1702			23	39.13	28	82.14	21	4.76
	1703					8	50.00	7	28.57
	1704			14	7.14	5	80.00		
18.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3					2	50.00		
	1805					1	100.00		
	1806			21	14.29	25	76.00	12	16.67
19. 곡물, 분, 밀크의 조제품	1901	100	13.00	30	10.00	102	79.41	33	24.24
	1902			11	81.82	19	73.68	18	11.11
	1903		5.26	1	100.00				
	1904	38		25	32.00	36	72.22	31	6.45
	1905			21	28.57	14	71.43	43	4.65
20. 채소과실 견과류 및 기타 조제품	2001	13	7.69	14	85.71	14	21.43		
	2002			8	100.00	7	42.86		
	2003			4	50.00	6	33.33	2	50.00
	2004	12	33.33	14	85.71	14	71.43	12	33.33
	2005	93	31.18	67	85.07	70	67.14	41	7.32
	2006	7	42.86	6	83.33	3	100.00		
	2007	20	10.00	18	100.00	16	100.00		
	2008	79	30.38	159	86.16	122	61.48		
	2009	20	30.00	85	97.65	46	86.96		

## 〈부표 1〉의 계속

(단위: 개, %)

	HS	미 국		E U		일 본		캐 나 다	
		품목수	비 율	품목수	비 율	품목수	비 율	품목수	비 율
21. 각종의 조제식료품	2101			11	36.36	24	70.83		
	2102			8	37.50				
	2103					11	18.18	8	12.50
	2104			3	100.00			2	50.00
	2105	7	71.43			8	100.00	3	33.33
	2106			18	44.44	58	51.72	29	31.03
22. 음료, 알코올 및 식초	2202	10	30.00	5	60.00	4	50.00	10	70.00
	2203			3	100.00				
	2204	11	27.27	94	37.23	10	100.00		
	2205			4	75.00	3	66.67	4	50.00
	2206	5	20.00	7	28.57	4	100.00	17	5.88
	2207			2	100.00	5	80.00		
	2208	78	3.85	61	40.98	70	58.57	40	17.50
	2209			4	25.00				
23. 식품공업의 잔재물 및 조제사료	2302			9	77.78			8	12.50
	2303			7	14.29				
	2309			27	62.96			12	16.67
24.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품	2401	37	29.73	21	52.38				
	2402	7	42.86	4	100.00	3	33.33	4	25.00
	2403	12	41.67	5	100.00	5	20.00		
27. 광물성 연료	2716								
28. 무기화학품	2831	3	66.67						
29. 유기화학품	2903	46	10.87						
	2905	34	2.94	36	13.89	22	4.55		
	2907	21	9.52						
	2909	31	19.35						
	2912	24	8.33	12	8.33				
	2913	3	33.33						
	2915	39	5.13						
	2917	33	9.09						
	2918					17	5.88		
	2921	61	1.64						
	2926	18	11.11						
	2927	8	12.50						
	2931	10	10.00						
	2932	27	3.70						
2940			2	50.00					
30. 의료용품	3003	7	14.29						
32. 유연 또는 염색액스	3204	52	26.92						
	3205	4	25.00						

## 〈부표 1〉의 계속

(단위: 개, %)

	HS	미 국		E U		일 본		캐나다	
		품목수	비 율	품목수	비 율	품목수	비 율	품목수	비 율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	3301 3302			7	28.57	30	3.33	3	33.33
34. 비누 등	3402							7	14.29
35. 단백질계 동물성천분	3501 3502 3503 3005			10 7	20.00 85.71	5 3	40.00 66.67	2 6	50.00 16.67
38.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3809 3823	34	5.88	7 29	57.14 13.79	5	20.00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18 3919 3921 3926							7 10 15 23	57.14 40.00 20.00 26.09
40. 고무와 그 제품	4015							4	75.00
41. 원피(모피 제외)와 가죽	4104 4105 4106 4108 4109					32 7 7 1 2	59.38 28.57 28.57 100.00 100.00		
42. 가죽제품 및 이와 유사한 동물의 거트	4202 4203 4204	45	31.11			27 12 2	22.22 50.00 50.00	7	42.86
43.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4303 4304					9	100.00	4 1	50.00 100.00
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4412 4420	49	8.16			3	33.33		
45. 코르크와 그 제품	4503	7	14.29						
46. 짚, 에스페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	4602	18	5.56						
49. 인쇄서적, 신문, 기타의 인쇄물	4910 4911							3 13	33.33 15.38
51. 양모·섬수모 및 이들의 칩물	5111 5112 5113	16 14	18.75 21.43					12 15 1	50.00 40.00 100.00

## 〈부표 1〉의 계속

(단위: 개, %)

	HS	미 국		E U		일 본		캐 나 다	
		품목수	비 율	품목수	비 율	품목수	비 율	품목수	비 율
52. 면	5208							25	64.00
	3209							17	82.35
	5210	40	10.00					15	100.00
	5211							17	100.00
	5212	20	50.00					31	67.74
53. 기타 식물성 방직용섬유	5309	8	25.00			4	100.00	4	50.00
	5310							4	50.00
	5311	4	25.00			4	50.00		
54. 인조펠라멘트	5407	63	66.67			109	3.67	29	100.00
	5408	26	53.85					12	100.00
55. 인조 스테인플섬유	5512	6	100.00					6	100.00
	5513	16	100.00			52	7.69	16	100.00
	5514	16	87.50			52	7.69	17	100.00
	5515	13	38.46			32	6.25	10	100.00
	5516	24	62.50					20	100.00
56. 워팅, 펠트 및 부직포	5601							11	45.45
	5602	7	28.57					6	83.33
	5603							36	66.67
	5607	15	13.33	14	21.43			14	42.86
	5608	7	71.43					4	75.00
	5609							1	100.00
57.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체의 바닥깔개	5701							4	50.00
	5702							16	81.25
	5703							8	50.00
	5704							2	100.00
	5705							1	100.00
58.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5801	16	75.00					18	77.78
	5802	4	25.00					5	80.00
	5803	6	16.67					5	60.00
	5804	6	16.67			12	16.67	6	50.00
	5805							2	50.00
	5806							14	64.29
	5807							3	33.33
	5808							2	100.00
	5809	1	100.00					1	100.00
	5810	6	16.67			7	100.00	5	60.00
	5811							3	100.00

## 〈부표 1〉의 계속

(단위: 개, %)

	HS	미 국		E U		일 본		캐 나 다	
		품목수	비 율	품목수	비 율	품목수	비 율	품목수	비 율
59.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섬유 착색한 방직용	5901							3	66.67
	5903	18	5.56					8	87.50
	5904							4	50.00
	5905							3	33.33
	5906							6	100.00
	5907							5	60.00
	5908							2	50.00
	5909							2	100.00
	5910							2	50.00
	5911							10	40.00
60. 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 편물	6001	9	44.44			27	14.81	7	100.00
	6002	18	16.67			81	9.88	25	72.00
61. 의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6101	7	57.14			10	50.00	4	100.00
	6102	7	57.14			10	50.00	4	100.00
	6103	31	67.74			30	33.33	17	100.00
	6104	44	63.64			56	33.93	28	100.00
	6105	6	66.67			13	38.46	3	100.00
	6106	7	57.14			13	23.08	3	100.00
	6107	14	35.71					9	100.00
	6108	18	33.33			22	22.73	11	100.00
	6109	5	60.00			13	38.46	2	100.00
	6110	10	40.00			20	50.00	5	100.00
	6111	19	78.95			39	15.38	4	100.00
	6112	11	72.73			18	38.89	8	100.00
	6113							2	100.00
	6114	7	57.14					4	100.00
	6115	19	52.63					8	100.00
	6116	69	37.68					9	100.00
	6117	10	20.00			26	38.46	7	71.43
62. 의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제외)	6201	20	40.00			16	50.00	9	100.00
	6202	20	40.00			16	50.00	8	100.00
	6203	42	47.62			30	50.00	17	100.00
	6204	69	43.48			50	50.00	28	100.00
	6205	10	30.00					4	100.00
	6206	12	33.33			15	33.33	5	100.00
	6207	15	20.00			14	21.43	8	100.00
	6208	15	26.67			14	21.43	8	100.00
	6209	13	69.23			16	25.00	4	100.00
	6210	20	10.00			11	45.45	5	100.00
	6211	31	58.06			29	34.48	13	84.62

## 〈부표 1〉의 계속

(단위: 개, %)

	HS	미 국		E U		일 본		캐나다	
		품목수	비 율	품목수	비 율	품목수	비 율	품목수	비 율
62. 의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편물 제외)	6212	7	71.43					4	100.00
	6213							3	33.33
	6214							5	80.00
	6215							3	100.00
	6216	20	30.00					1	100.00
	6217	4	50.00					2	100.00
63.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가타물품	6301							5	100.00
	6302							17	94.12
	6303	32	18.75					7	100.00
	6304	17	5.88			14	7.14	6	100.00
	6305							7	71.43
	6306							12	83.33
	6307							10	70.00
	6308							1	100.00
	6309							1	100.00
	64. 신발류, 각반 및 이와 유사한 제품	6401	9	66.67	8	100.00	7	28.57	13
6402		31	64.52	16	100.00	11	18.18	13	84.62
6403						58	100.00	19	89.47
6404		28	75.00	6	100.00	21	57.14	11	100.00
6405				7	14.29	14	64.29	4	100.00
6406		22	22.73			8	37.50	10	20.00
65. 모자류와 그 부분품	6503							1	100.00
	6504	3	33.33					1	100.00
	6505							3	100.00
	6506							6	16.67
67. 조제우모와 그 솜털 및 제품	6702	5	20.00						
	6704							5	100.00
68. 석, 플라스틱, 시멘트 등	6810	7	14.29						
	6812							9	11.11
69. 도자제품	6907	2	100.00						
	6908	4	100.00						
	6911	13	38.46						
	6912	10	10.00						
70. 유리 유리제품	7013	41	26.83						
	7019							20	35.00
71.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	7103	5	40.00						
	7111	1	100.00						
	7113	15	6.67						
	7116	13	7.69						

## 〈부표 1〉의 계속

(단위: 개, %)

	HS	미 국		E U		일 본		캐 나 다	
		품목수	비 율	품목수	비 율	품목수	비 율	품목수	비 율
82. 비금속 공구, 도구, 등	8211 8213 8215	24 3 18	12.50 33.33 16.67						
85. 전기기기와 그 부품, 영상 및 기록기	8513 8517 8525 8528	4	50.00					51 14 36	35.29 14.29 11.11
86. 철도 또는 궤도의 차량의 부분품	8605 8606	1 6	100.00 100.00						
87. 철도 또는 궤도의 차량의 부분품	8701 8702 8704 8706 8708 8712	9	66.67	14 9 23 4 3	14.29 44.44 43.48 25.00 100.00			67	1.49
88. 항공기와 및 이들의 부분품	8801 8804							3 4	33.33 25.00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8901 8902 8904 8905 8906 8907 8908							5 2 1 5 2 3 2	80.00 50.00 100.00 100.00 50.00 33.33 50.00
90. 광학기기 등	9013	9	22.22						
91. 시계와 그 부품	9102 9103 9105 9106 9108 9113	59 27	3.39 11.11			8	12.5	4 17 4	100.00 58.82 25.00
94. 가구와 침구 등	9401 9404 9406							25 7 4	4.00 57.14 25.00
95. 완구, 유희용기구 및 부속품	9506							52	5.77
96. 잡품	9603 9607 9608 9612 9616	18 3 13	22.22 33.33 7.69					16 5 4 3	18.75 40.00 50.00 66.67

〈부표 2〉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농림수산물)

(단위: %, 천만달러)

	수입액	수입 의존도	단순실적			
			명목	실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중
<b>1. 농림수산물</b>	<b>374.9</b>	<b>0.15</b>	<b>20.17</b>	<b>23.99</b>	<b>1.15</b>	<b>16.09</b>
1. 작물	284.9	0.14	22.30	26.65	0.86	12.19
1. 벼	0.0	0.00	3.30	2.99	0.47	7.16
2. 보리	1.4	0.22	2.50	1.21	1.53	24.92
3. 밀	66.3	0.97	1.58	-0.95	1.92	33.54
4. 잡곡	91.6	0.89	4.02	3.07	1.75	28.77
5. 채소	5.3	0.01	38.75	46.55	0.92	13.99
6. 과일	8.6	0.03	34.74	43.28	1.17	17.47
7. 콩류	39.6	0.47	83.07	111.14	3.13	16.83
8. 감자류	5.2	0.06	15.69	16.90	1.99	17.95
9. 유지작물	6.2	0.15	13.38	13.93	0.72	8.79
10. 약용작물	3.7	0.08	9.50	9.93	0.74	11.71
11. 기타 식용작물	16.0	0.99	10.57	11.83	1.43	22.06
12. 섬유작물	0.2	1.05	1.96	1.55	0.52	9.89
13. 잎담배	8.6	0.12	13.88	15.57	1.16	17.18
14. 화훼작물	0.9	0.03	10.34	10.95	1.15	15.64
15. 천연 고무	22.8	0.97	0.46	0.46	0.00	0.00
16. 종자 및 묘목	6.4	0.29	3.99	3.53	0.99	20.17
17. 기타 비식용작물	2.2	0.80	3.13	2.53	0.20	3.14
2. 축산	14.4	0.08	5.80	7.05	4.25	59.21
18. 낙농	0.0	0.00	0.00	-5.91	3.24	48.41
19. 육우	0.1	0.00	8.78	12.58	4.87	64.28
20. 양돈	0.0	0.00	8.86	17.02	5.30	75.08
21. 가금	0.5	0.01	8.24	15.80	4.56	74.38
22. 기타 축산	13.8	0.67	7.17	6.60	3.60	39.91
3. 임산물	41.3	0.53	16.20	16.53	0.47	6.71
23. 육립	0.0	0.00	8.00	8.51	2.31	33.57
24. 원목	35.0	0.93	0.00	-0.68	0.15	1.97
25. 식용임산물	3.0	0.17	27.30	28.17	0.24	2.89
26. 기타 임산물	3.3	0.08	5.02	4.80	0.68	10.25
4. 수산물	34.3	0.11	14.58	17.34	1.78	23.17
27. 해면 어획	33.2	0.13	15.31	18.33	1.81	23.35
28. 내수면 어획	0.1	0.09	10.62	11.47	1.23	17.70
29. 해면 양식	0.3	0.02	10.26	11.20	1.52	21.60
30. 내수면 양식	0.7	0.06	22.66	30.39	2.98	30.61

〈부표 3〉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광산품)

(단위: %, 천만달러)

	수입액	수입 의존도	단순실적			
			명목	실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중
<b>2. 광산품</b>	<b>1,705.9</b>	<b>0.79</b>	<b>2.95</b>	<b>2.14</b>	<b>0.71</b>	<b>10.64</b>
5. 석탄	220.6	0.88	1.01	-0.63	1.01	16.93
31. 무연탄	6.0	0.18	1.01	-0.62	1.01	16.93
32. 유연탄	214.7	1.01	0.00	0.00	0.00	0.00
6. 원유 및 천연가스	1,279.0	0.99				
33. 원유	1,124.1	0.99	4.47	4.47	0.00	0.00
34. 천연가스	154.9	0.98	1.05	1.05	0.00	0.00
7. 금속광석	170.3	0.96	0.72	-0.75	1.04	15.37
35. 철광석	83.0	0.97	0.98	-0.01	0.77	11.61
36. 동광석	48.9	1.01	0.00	-3.39	1.10	13.74
37. 연 및 아연광석	27.8	0.91	0.00	-2.26	1.39	19.66
38. 기타 비철금속광석	10.6	0.81	0.79	-0.65	1.05	15.64
8. 비금속광물	36.0	0.12	3.09	2.35	0.69	10.19
39. 모래 및 자갈	0.1	0.00	3.03	2.50	0.41	5.89
40. 쇄석	0.0	0.00	3.00	2.19	0.76	12.41
41. 기타 건설용석재	0.9	0.17	3.21	1.95	1.48	22.94
42. 석회석	0.2	0.01	3.24	2.22	1.05	14.94
43. 요업원료광물	7.1	0.30	3.07	2.16	0.86	11.84
44. 원염	5.8	0.38	3.65	2.83	0.83	12.33
45. 기타 비금속광물	21.9	0.93	3.31	2.16	1.23	20.22

## 〈부표 4〉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음·식료품)

(단위 : %, 천만달러)

	수입액	수입 의존도	단순실적			
			명목	실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중
<b>3. 음·식료품</b>	<b>344.7</b>	<b>0.10</b>	<b>17.47</b>	<b>43.99</b>	<b>7.30</b>	<b>57.13</b>
9. 육류 및 낙농품	114.6	0.17	27.13	133.65	6.40	62.99
46. 도축육	97.7	0.27	13.52	46.92	6.92	81.71
47. 가금육	4.5	0.11	21.72	92.51	5.91	71.95
48. 육가공품	3.1	0.04	29.96	69.10	7.32	56.48
49. 우유	0.0	0.04	40.00	440.36	1.05	62.54
50. 유제품	9.0	0.08	43.55	165.04	6.03	54.27
51. 아이스크림	0.4	0.04	8.18	-1.97	10.97	50.94
10. 수산가공품	23.7	0.14	17.54	25.94	8.55	61.85
52. 어육 및 어묵	9.7	0.41	16.45	22.73	8.15	59.85
53. 수산통조림	0.1	0.09	16.11	23.49	8.16	62.64
54. 수산생동품	6.6	0.03	18.01	25.00	9.07	61.34
55. 수산저장품	3.7	0.11	19.64	30.91	8.67	60.67
56. 기타 수산식품	3.6	0.29	16.48	28.98	7.93	67.01
11. 정곡 및 제분	8.5	0.01	5.60	19.80	2.66	84.55
57. 정미	2.2	0.01	4.25	17.66	3.09	92.60
58. 정맥	0.3	0.01	5.22	16.42	2.27	79.21
59. 제분	5.9	0.10	9.10	25.63	1.61	64.69
12. 제당 및 전분	49.4	0.30	11.29	11.29	9.60	62.60
60. 원당	37.5	1.00	24.16	24.16	0.00	0.00
61. 정제당	7.5	0.11	6.06	-16.78	14.37	65.94
62. 전분	3.1	0.08	18.04	55.56	3.55	62.93
63. 당류	1.3	0.05	12.15	8.70	8.71	57.98
13. 빵, 과자 및 곡수류	10.8	0.04	8.61	4.51	7.25	54.21
64. 빵 및 곡분과자	0.7	0.03	8.23	3.26	7.62	53.01
65. 설탕과자	7.8	0.09	7.90	4.66	6.04	52.86
66. 곡수류	2.4	0.02	10.58	7.61	7.90	59.21

## 〈부표 4〉의 계속

(단위: %, 천만달러)

	수입액	수입 의존도	단 순 실 적			
			명 목	실 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 중
14. 조미료 및 유지	68.0	0.20	17.80	14.53	14.82	57.62
67. 정제염	0.1	0.03	8.10	10.75	1.89	40.90
68. 발효조미료	0.1	0.01	7.89	0.90	7.80	53.87
69. 기타 조미료	4.9	0.06	21.36	23.78	12.84	57.11
70. 장류	0.2	0.02	27.18	37.44	15.54	56.80
71. 동물성유지	2.7	0.38	5.25	-9.09	8.79	66.72
72. 식물성유지 및 식용유	60.1	0.39	11.29	-9.07	21.90	62.44
15. 과채가공품 및 기타 식료품	33.2	0.14	25.21	48.02	11.43	54.84
73. 과실 및 채소가공품	21.3	0.24	36.82	51.53	16.81	55.58
74. 커피 및 차류	2.2	0.09	23.88	45.98	5.29	47.69
75. 인삼식품	0.1	0.00	45.31	215.26	7.99	61.83
76. 누룩 및 맥아	2.6	0.14	9.51	28.96	1.86	68.10
77. 두부	0.6	0.02	7.63	-20.07	31.77	52.91
78. 기타 식료품	6.4	0.11	17.06	18.69	10.80	56.97
16. 음료품	25.7	0.05	27.46	72.45	6.34	54.19
79. 주정	8.4	0.09	18.08	28.93	6.66	55.99
80. 소주	0.0	0.00	20.00	36.99	10.97	70.74
81. 탁주 및 약주	0.0	0.00	15.00	25.97	3.99	52.21
82. 맥주	0.1	0.01	28.90	100.38	5.00	59.33
83. 기타 주류	12.2	0.32	17.78	22.41	6.02	39.22
84. 청량음료	5.1	0.03	33.14	61.62	7.62	46.24
85. 광천수 및 생수	0.0	0.01	7.20	7.17	2.49	34.82
86. 얼음	0.0	0.00	8.00	8.00	0.30	4.37
17. 배합사료	2.7	0.01	5.74	-0.39	6.97	64.25
87. 배합사료	2.7	0.01	5.74	-0.39	6.96	64.25
18. 담배	8.0	0.08	5.28	-1.60	6.33	50.55
88. 담배	8.0	0.08	5.28	-1.60	6.33	50.55

## 〈부표 5〉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섬유·가죽제품)

(단위: %, 천만달러)

	수입액	수 입 의존도	단 순 실 적			
			명 목	실 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 중
<b>4. 섬유·가죽제품</b>	<b>389.2</b>	<b>0.23</b>	<b>10.14</b>	<b>13.22</b>	<b>4.31</b>	<b>52.14</b>
19. 섬유사	161.1	0.45	7.31	11.12	3.58	61.92
89. 견사	3.9	0.86	7.22	7.20	3.59	50.09
90. 모사	8.5	0.24	5.43	1.63	4.89	68.32
91. 면사	78.4	0.27	7.52	21.47	1.94	69.49
92. 마사	1.2	0.87	5.18	5.16	2.97	57.93
93. 재생섬유사	29.7	0.69	7.98	9.77	3.51	53.44
94. 합성섬유사	38.5	0.97	8.01	9.04	5.14	67.32
95. 재봉사 및 기타 섬유사	0.9	0.03	8.01	8.41	3.59	47.90
20. 섬유직물	92.8	0.22	9.18	11.61	4.09	52.96
96. 견직물	11.8	0.45	18.11	33.62	4.97	54.92
97. 모직물	5.0	0.25	12.84	25.96	3.72	60.47
98. 면직물	15.8	0.34	10.65	15.87	4.55	59.49
99. 마직물	3.1	0.98	7.61	13.29	3.81	69.17
100. 재생섬유직물	13.5	0.53	9.64	13.85	6.58	77.13
101. 합성섬유직물	32.6	0.29	8.72	10.06	4.55	58.69
102. 기타 섬유직물	5.6	0.45	10.12	12.65	3.94	49.96
103. 편조원단	5.6	0.09	8.57	10.63	4.95	65.36
104. 섬유표백 및 염색	0.0	0.00	8.00	8.19	2.55	33.49
21. 의류 및 장신품	49.7	0.10	12.05	16.86	4.49	49.89
105. 편직제의류	17.3	0.11	12.36	17.94	3.75	48.77
106. 편직제장신품	1.7	0.10	11.32	17.36	4.25	56.24
107. 직물제의류	26.9	0.10	12.14	14.30	4.97	47.85
108. 기타 장신품	2.7	0.43	8.82	8.41	4.62	49.71
109. 가죽의류	0.1	0.08	9.96	21.99	3.25	64.99
110. 모피의류	1.0	0.07	14.67	62.20	4.03	75.34
22. 기타 섬유제품	29.1	0.23	9.93	11.89	4.37	51.61
111. 직물제품	8.4	0.17	11.01	14.09	4.71	53.95
112. 기타 섬유제품	19.4	0.71	7.93	7.75	3.71	46.57
113. 끈, 로프 및 어망	1.3	0.08	9.17	10.39	4.24	52.34
23. 가죽제품 및 모피	56.6	0.33	8.53	9.50	4.53	53.28
114. 가죽	28.4	0.37	4.36	-3.63	6.27	53.01
115. 모피	5.1	0.61	5.08	-0.88	5.26	72.50
116. 가방 및 핸드백	5.9	0.43	7.78	8.94	3.10	47.22
117. 가죽신발	2.0	0.12	13.49	25.68	3.83	56.77
118. 운동화 및 기타 신발	14.0	0.22	10.87	15.17	4.48	55.80
119. 기타 가죽제품	1.2	0.05	8.07	11.05	2.87	51.49

〈부표 6〉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목재·종이제품)

(단위: %, 천만달러)

	수입액	수입 의존도	단순실적			
			명목	실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중
<b>5. 목재·종이제품</b>	<b>189.2</b>	<b>0.22</b>	<b>7.18</b>	<b>10.26</b>	<b>2.79</b>	<b>54.73</b>
24. 목재 및 나무제품	56.1	0.26	7.43	12.42	2.21	54.44
120. 제재목	24.6	0.29	4.89	13.19	0.69	64.59
121. 합판	20.6	0.45	8.24	16.62	1.79	56.86
122. 재생 및 강화목재	3.5	0.22	8.11	9.60	2.44	40.04
123. 건축용목제품	4.0	0.09	8.93	12.38	3.54	54.93
124. 목제용기	0.2	0.02	7.61	9.72	3.24	54.57
125. 기타 목제품	3.1	0.16	8.08	9.96	2.68	44.78
25. 펄프 및 종이	133.8	0.20	7.10	9.55	2.99	54.83
126. 펄프	97.4	0.86	1.93	-1.11	2.30	42.90
127. 신문용지	0.0	0.15	6.71	12.17	1.57	53.84
128. 인쇄용지	1.1	0.05	8.06	15.17	1.89	55.80
129. 기타 원지 및 판지	11.9	0.11	8.13	14.36	2.07	54.05
130.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0.3	0.00	4.75	1.64	4.01	59.01
131. 종이용기	1.2	0.02	8.04	7.91	4.31	53.35
132. 종이문구 및 사무용지	0.7	0.03	7.57	7.51	4.28	56.65
133. 위생용종이제품	1.9	0.02	7.82	9.58	3.27	51.23
134. 기타 종이제품	19.4	0.28	8.14	10.15	3.65	54.40

〈부표 7〉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인쇄·출판 및 복제)

(단위: %, 천만달러)

	수입액	수입 의존도	단순실적			
			명목	실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중
<b>6. 인쇄·출판 및 복제</b>	<b>33.7</b>	<b>0.05</b>	<b>1.92</b>	<b>-1.81</b>	<b>2.75</b>	<b>39.46</b>
26. 인쇄·출판 및 복제	33.7	0.05	1.92	-1.81	2.75	39.46
135. 신문	0.2	0.01	0.00	-4.38	2.30	35.18
136. 출판	6.1	0.11	0.00	-5.37	2.82	41.14
137. 인쇄	4.3	0.01	4.89	2.75	3.17	42.65
138. 기록매체출판 및 복제	23.1	0.26	5.30	4.50	2.14	33.58

## 〈부표 8〉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석유·석탄제품)

(단위: %, 천만달러)

	수입액	수 입 의존도	단 순 실 적			
			명 목	실 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 중
7. 석유·석탄제품	324.6	0.23	4.94	5.89	3.23	71.35
27. 석탄제품	2.6	0.02	4.05	13.65	0.37	69.35
139. 연탄	0.0	0.01	1.00	-1.66	0.82	71.11
140. 기타 석탄제품	2.6	0.02	4.05	13.65	0.37	69.35
28. 석유제품	322.0	0.24	4.98	5.59	3.34	71.64
141. 나프타	171.8	0.47	1.04	-9.16	3.43	75.66
142. 휘발유	6.8	0.07	4.92	5.68	3.41	73.76
143. 제트유	2.6	0.65	6.04	9.59	3.23	69.98
144. 등유	12.2	0.28	5.40	7.43	3.46	74.01
145. 경유	3.7	0.15	5.25	6.84	3.21	70.20
146. 중유	18.8	0.19	5.19	6.44	3.09	67.66
147. 액화석유가스	76.3	0.55	3.07	-1.08	3.31	71.45
148. 윤활유제품	26.1	0.32	7.46	8.74	4.32	63.66
149. 기타 석유정제품	3.6	0.13	7.11	9.14	3.15	56.07

〈부표 9〉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화학제품)

(단위: %, 천만달러)

	수입액	수 입 의존도	단 순 실 적			
			명 목	실 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 중
<b>8. 화학제품</b>	<b>1,060.8</b>	<b>0.21</b>	<b>7.36</b>	<b>8.35</b>	<b>3.49</b>	<b>51.47</b>
29. 유기화학기초제품	346.6	0.37	6.74	11.46	2.56	61.21
150. 석유화학기초제품	51.7	0.19	4.94	11.86	1.17	65.57
151. 석유화학중간제품	131.9	0.35	7.79	11.55	3.42	60.29
152. 석탄화합물	14.1	0.49	5.65	5.95	2.45	49.03
153.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148.9	0.72	8.91	11.25	3.85	53.53
30. 무기화학기초제품	98.4	0.28	7.51	8.46	2.02	33.69
154. 산업용가스	1.1	0.02	7.54	7.66	1.50	20.96
155. 기초무기화합물	97.3	0.34	7.50	8.80	2.24	39.07
31.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109.7	0.22	8.21	10.79	4.32	63.07
156. 합성수지	92.5	0.21	8.24	10.85	4.37	63.52
157. 합성고무	17.2	0.39	7.71	9.65	3.46	55.15
32. 화학섬유	16.3	0.07	7.79	7.65	5.08	64.32
158. 재생섬유	7.1	0.67	6.38	10.34	1.90	54.72
159. 합섬섬유	9.2	0.04	7.83	7.58	5.16	64.56
33. 비료 및 농약	28.5	0.14	7.24	7.92	3.93	59.15
160. 질소화합물	12.5	0.35	6.82	12.11	1.19	50.20
161. 비료	12.1	0.15	7.16	7.72	3.94	59.05
162. 농약	3.9	0.05	7.54	6.33	5.14	63.31
34. 의약품 및 화장품	86.7	0.10	7.08	6.89	2.79	36.18
163. 의약품	63.1	0.10	6.54	5.98	2.55	33.63
164. 화장품 및 치약	14.5	0.08	8.20	8.81	2.92	37.25
165. 비누 및 세제	9.1	0.11	8.10	8.46	4.73	58.96
35. 기타 화학제품	291.8	0.39	8.10	8.89	4.03	53.77
166. 염료, 안료 및 유연제	64.9	0.52	8.17	8.97	3.86	51.47
167. 도료	8.2	0.08	8.13	8.94	4.01	53.76
168. 잉크	3.9	0.13	7.78	7.52	4.27	54.01
169. 접착제 및 젤라틴	14.2	0.25	9.58	12.23	4.39	56.17
170. 화학 및 불꽃제품	0.3	0.01	7.69	7.84	3.36	45.09
171. 전자기기용기록매체	18.1	0.29	7.96	8.38	3.98	52.15
172. 사진용화학제품	43.3	0.84	7.97	8.14	4.16	53.22
173. 기타 화학제품	138.9	0.53	7.78	8.69	4.22	58.63
36. 플라스틱제품	63.8	0.07	7.48	6.73	4.59	57.66
174. 플라스틱1차제품	38.8	0.19	7.90	7.70	4.42	54.84
175. 산업용 플라스틱제품	23.4	0.03	7.37	6.47	4.66	58.80
176. 가정용 플라스틱제품	1.5	0.05	6.74	4.91	4.63	58.53
37. 고무제품	19.1	0.09	6.78	7.11	3.26	50.51
177. 티이어 및 튜브	5.5	0.04	6.25	6.35	3.09	50.55
178. 산업용 고무제품	11.6	0.16	7.89	8.69	3.63	50.71
179. 기타 고무제품	2.1	0.09	7.34	8.01	3.28	49.06

## 〈부표 10〉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비금속광물제품)

(단위 : %, 천만달러)

	수입액	수입 의존도	단순실적			
			명목	실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중
<b>9. 비금속광물제품</b>	<b>80.3</b>	<b>0.07</b>	<b>6.66</b>	<b>7.58</b>	<b>2.27</b>	<b>42.94</b>
38. 유리제품	44.6	0.21	7.82	8.41	2.51	36.72
180. 판유리 및 1차유리	13.8	0.41	7.83	8.62	2.56	38.95
181. 산업용 유리제품	23.4	0.14	7.82	8.35	2.51	36.28
182. 기타 유리제품	7.4	0.44	7.78	8.74	2.48	38.38
39. 도자기 및 점토제품	21.7	0.11	7.74	8.80	2.05	34.21
183. 산업용도자기	11.5	0.12	7.55	8.12	2.35	35.78
184. 가정용도자기	2.1	0.11	8.07	9.26	1.90	32.72
185. 내화요업제품	6.9	0.15	8.00	10.06	2.36	42.90
186. 건설용 점토제품	1.2	0.04	7.50	8.19	1.62	27.34
40. 시멘트 및 콘크리트제품	1.2	0.01	5.55	6.43	2.25	48.76
187. 시멘트	0.9	0.03	5.13	5.84	1.52	37.53
188. 레미콘	0.0	0.00	5.00	5.45	2.62	57.46
189. 콘크리트제품	0.3	0.00	7.67	9.92	2.80	49.82
41.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12.6	0.09	7.59	8.93	2.26	41.97
190. 석회 및 석고제품	0.5	0.03	4.21	4.01	2.31	56.38
191. 석제품	3.2	0.08	8.58	10.39	1.67	32.70
192. 석면 및 암면제품	1.9	0.17	7.36	8.69	2.37	42.63
193. 연마제	2.6	0.23	8.06	7.95	3.76	46.22
194. 아스팔트제품	1.3	0.04	6.27	7.18	3.55	62.34
195. 기타 토석제품	3.2	0.15	7.70	9.59	1.93	38.74

〈부표 11〉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제1차금속)

(단위 : %, 천만달러)

	수입액	수입 의존도	단순실적			
			명부	실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중
<b>10. 제1차금속</b>	<b>1,173.6</b>	<b>0.23</b>	<b>6.48</b>	<b>10.85</b>	<b>2.80</b>	<b>64.61</b>
42. 선철 및 강반성품	205.3	0.18	2.84	3.16	1.82	71.09
196. 선철	119.6	0.29	1.63	-4.20	2.50	74.90
197. 합금철	46.9	0.72	5.16	7.26	1.19	42.08
198. 강반성품(조강)	38.8	0.09	3.00	4.41	1.72	71.09
43. 철강1차제품	157.4	0.15	7.52	13.11	3.12	63.50
199. 철근 및 봉강	15.1	0.07	6.36	16.27	2.33	72.33
200. 형강	10.1	0.23	8.00	16.36	2.14	60.46
201. 선재 및 제조	3.2	0.21	7.42	15.36	2.09	62.43
202. 열간압연강재	59.0	0.22	7.21	16.29	2.15	65.82
203. 강관(주철강관제외)	28.0	0.20	8.12	9.62	5.00	67.30
204. 냉간압연강재	16.8	0.11	8.01	9.40	4.41	60.98
205. 주철물	4.0	0.04	7.74	14.66	2.44	60.35
206. 단조물	2.2	0.05	7.91	12.32	1.81	47.88
207. 표면처리강재	18.9	0.11	7.96	8.58	4.44	58.75
208. 기타 철강1차제품	0.1	0.00	5.18	-0.34	5.14	68.43
44.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810.9	0.46	6.57	10.79	2.65	61.72
209. 동괴	114.8	0.67	4.63	13.65	0.69	67.21
210. 알루미늄괴	95.2	0.82	4.62	4.04	2.92	61.17
211. 연 및 아연괴	15.9	0.25	4.53	7.54	1.08	52.05
212. 금은괴	461.9	0.76	3.20	2.60	2.03	64.50
213. 기타 비철금속괴	35.7	0.68	4.90	4.58	2.90	60.67
214. 동1차제품	27.8	0.16	7.61	12.42	2.92	60.37
215. 알루미늄1차제품	39.5	0.21	7.68	13.01	3.24	63.77
216. 기타 비철금속1차제품	20.2	0.38	6.54	9.43	3.29	64.73

〈부표 12〉 402기준 단순명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금속제품)  
(단위 : %, 천만달러)

	수입액	수 입 의존도	단 순 실 적			
			명 목	실 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 중
11. 금속제품	86.2	0.07	7.47	7.37	3.93	53.06
45. 금속제품	86.2	0.07	7.47	7.37	3.93	53.06
217. 건물용 금속제품	1.5	0.01	7.38	7.04	4.66	62.22
218. 금속구조물	16.1	0.02	7.33	6.80	4.34	56.95
219.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4.8	0.09	5.35	1.89	4.50	60.97
220. 금속포장용기	4.3	0.06	6.69	5.08	4.48	57.90
221. 공구류	19.1	0.41	8.00	9.87	3.62	55.30
222. 나사제품	6.2	0.06	7.15	6.62	3.44	46.77
223. 철선제품	3.6	0.05	9.50	12.10	4.13	54.33
224. 부착용 금속제품	4.0	0.11	6.93	6.36	3.64	49.29
225. 금속처리	0.0	0.00	8.00	9.52	1.94	35.13
226. 가정용 금속제품	2.9	0.09	7.72	7.89	3.84	51.01
227. 기타 금속제품	23.9	0.16	6.85	6.05	3.71	49.11

## 〈부표 13〉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분 77부분으로 분류한 것(일반기계)

(단위: %, 천만달러)

	수입액	수입 의존도	단순실적			
			명목	실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중
<b>12. 일반기계</b>	<b>775.9</b>	<b>0.37</b>	<b>6.91</b>	<b>6.44</b>	<b>3.81</b>	<b>53.00</b>
46. 일반목적용기계 및 장비	418.4	0.30	7.11	6.85	3.77	52.08
228. 엔진 및 터빈	75.7	0.45	6.23	5.41	3.75	55.40
229. 밸브	50.4	0.42	8.02	8.58	3.56	48.15
230. 베어링, 기어 및 전동요소	51.5	0.42	7.93	8.30	3.53	47.10
231. 산업용운반기계	44.5	0.24	6.89	6.39	3.75	52.01
232. 공기조절장치 및 냉장냉동장비	31.3	0.13	6.89	6.41	3.87	53.67
233. 보일러	17.2	0.12	7.34	7.32	3.77	51.78
234. 난방 및 조리기기	1.5	0.07	7.90	8.53	3.73	50.75
235. 펌프 및 압축기	78.5	0.59	7.21	7.09	4.11	56.75
236. 공기 및 액체여과청정기	21.4	0.27	6.84	6.30	3.50	48.40
237. 기타 일반목적용기계	46.5	0.41	7.21	6.96	3.86	52.71
47. 특수목적용기계 및 장비	357.5	0.46	6.60	5.80	3.87	54.43
238. 금속절삭가공기계	31.1	0.40	6.94	6.76	3.70	52.60
239. 금속성형처리기계	33.2	0.53	6.74	6.03	4.02	55.98
240. 농업용기기	5.9	0.10	7.51	7.85	4.60	63.39
241. 건설 및 광물처리기계	17.4	0.21	5.38	3.36	3.83	56.27
242. 음식품가공기계	8.3	0.36	7.79	8.05	4.49	59.54
243. 섬유기계	27.4	0.58	7.12	6.70	3.37	45.96
244. 금형 및 주형	7.3	0.05	6.93	6.74	3.53	50.24
245. 제지 및 인쇄용기계	22.1	0.69	6.87	6.37	3.78	52.72
246. 기타 특수목적용기계	204.8	0.67	6.34	4.86	4.20	58.01

〈부표 14〉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분으로 분류한 것(전기·전자기기)

(단위: %, 천만달러)

	수입액	수입 의존도	단순실적			
			명목	실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중
<b>13. 전기·전자기기</b>	<b>2,064.4</b>	<b>0.32</b>	<b>5.42</b>	<b>5.63</b>	<b>2.85</b>	<b>47.97</b>
48. 전기기계 및 장치	314.5	0.23	7.27	7.69	3.63	52.36
247. 발전기 및 전동기	60.0	0.35	6.57	5.84	3.74	52.64
248. 변압기	12.2	0.44	6.92	6.40	3.54	48.81
249. 기타 전기변환장치	30.1	0.17	7.11	7.02	3.29	46.22
250.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93.9	0.24	7.39	7.53	3.81	53.10
251. 전선 및 케이블	22.7	0.07	7.76	10.15	3.63	58.68
252. 전지	39.6	0.33	8.11	9.52	3.13	46.73
253. 전구 및 조명장치	13.4	0.12	7.59	7.75	3.71	50.09
254. 기타 전기장비	42.6	0.39	6.23	5.31	3.36	48.00
<b>49. 전자기기부분품</b>	<b>1,420.6</b>	<b>0.53</b>	<b>3.75</b>	<b>3.09</b>	<b>2.04</b>	<b>40.35</b>
255. 전자관	77.9	0.29	7.67	7.72	4.49	58.76
256. 기타 전자표시장치	18.3	0.47	8.57	9.70	3.88	50.57
257. 개별소자	127.2	0.84	2.83	-0.47	2.85	61.77
258. 집적회로(IC)	1,057.2	0.75	2.59	1.66	1.47	36.07
259. 저항기 및 축전기	42.7	0.35	7.64	7.67	3.35	44.95
260. 전자코일 및 변성기	0.0	0.04	8.00	9.05	4.40	60.13
261. 인쇄회로기판	29.6	0.11	7.38	7.19	3.88	51.72
262. 기타 전자부품	67.7	0.37	8.66	10.77	3.58	51.58
<b>50.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b>	<b>153.1</b>	<b>0.17</b>	<b>7.58</b>	<b>9.67</b>	<b>3.85</b>	<b>58.98</b>
263. TV	10.7	0.07	7.94	10.93	4.86	70.46
264. VTR	1.7	0.05	7.58	9.83	3.77	60.11
265. 음향기기	13.5	0.17	8.76	13.52	4.64	67.11
266. 기타 영상음향기기	8.5	0.12	7.88	9.10	4.32	60.19
267. 유선통신기기	48.5	0.15	7.38	8.57	3.21	50.65
268.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70.2	0.36	6.64	7.48	3.12	52.45
<b>51. 컴퓨터 및 주변기기</b>	<b>167.6</b>	<b>0.37</b>	<b>6.88</b>	<b>8.85</b>	<b>4.15</b>	<b>67.36</b>
269. 컴퓨터 및 주변기기	150.4	0.37	6.95	9.23	4.30	70.17
270. 사무용기기	17.3	0.35	6.43	6.19	3.10	47.72
<b>52. 가정용전기기기</b>	<b>8.6</b>	<b>0.05</b>	<b>7.44</b>	<b>8.22</b>	<b>3.87</b>	<b>55.82</b>
271. 냉장고	2.7	0.04	7.33	7.90	3.60	52.19
272. 세탁기	0.7	0.01	7.70	8.91	4.07	58.35
273. 선풍기	0.6	0.02	6.98	6.87	4.00	56.40
274. 가정용전열기기	4.7	0.08	7.44	8.31	3.98	57.93

## 〈부표 15〉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정밀기기)

(단위: %, 천만달러)

	수입액	수 입 의존도	단 순 실 적			
			명 목	실 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 중
<b>14. 정밀기기</b>	<b>363.0</b>	<b>0.60</b>	<b>6.52</b>	<b>6.40</b>	<b>2.69</b>	<b>40.23</b>
53. 정밀기기	363.0	0.60	6.52	6.40	2.69	40.23
275. 기타가정용전기기기	7.2	0.14	8.07	9.75	4.27	59.84
276. 의료기기	39.7	0.62	6.66	6.41	2.62	38.23
277.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27.2	0.25	5.47	5.01	2.10	35.75
278. 측정 및 분석기기	180.3	0.73	5.86	5.20	2.99	47.64
279. 촬영기 및 영상기	48.3	0.31	6.61	6.34	2.16	31.14
280. 기타광학기기	44.9	0.72	6.83	6.51	2.39	33.05
281. 시계	15.3	0.78	8.15	8.86	3.35	44.72

## 〈부표 16〉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수송장비)

(단위: %, 천만달러)

	수입액	수 입 의존도	단 순 실 적			
			명 목	실 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 중
<b>15. 수송장비</b>	<b>282.1</b>	<b>0.13</b>	<b>4.57</b>	<b>-0.02</b>	<b>4.56</b>	<b>61.83</b>
54. 자동차 및 부분품	109.1	0.06	5.25	0.91	4.78	63.84
282. 승용차	1.4	0.02	3.64	-3.63	4.93	66.04
283. 승합차	0.0	0.00	0.00	-14.80	5.10	69.04
284. 화물차	1.1	0.03	8.17	10.12	4.98	67.75
285. 특장차	1.9	0.09	6.16	3.53	4.91	67.26
286. 자동차용엔진	16.6	0.09	6.52	4.27	5.02	66.70
287. 자동차부분품	85.0	0.10	7.86	8.15	4.45	58.28
288. 트레일러 및 컨테이너	3.1	0.13	3.38	-2.99	4.45	62.68
55. 선박	40.2	0.34	1.36	-4.90	3.81	52.53
289. 강철체선박	11.4	0.40	0.49	-6.59	3.82	52.88
290. 기타선박	25.5	0.29	3.80	-0.87	4.07	58.13
291. 선박수리 및 부분품	3.2	0.06	8.21	8.69	3.66	48.43
56. 기타 수송장비	132.8	0.55	3.34	0.07	3.14	57.49
292. 철도차량	17.0	0.22	3.52	-1.74	4.11	62.68
293. 항공기	112.3	0.75	0.52	-3.13	1.73	55.44
294. 모터사이클	2.4	0.11	7.43	7.50	3.99	54.08
295. 자전거 및 기타수송장비	1.1	0.18	6.36	5.28	3.84	53.57

〈부표 17〉 402기준 단순평균세율을 28부문 77부문으로 분류한 것(가구 및 기타 제조업 제품)

(단위: %, 천만달러)

	수입액	수입 의존도	단순실적			
			명목	실효	중간재 관세율	중간재 비중
<b>1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b>	<b>61.1</b>	<b>0.15</b>	<b>7.61</b>	<b>7.93</b>	<b>3.10</b>	<b>42.86</b>
57. 가구	11.1	0.05	7.14	7.05	3.28	44.51
296. 목재가구	6.8	0.05	7.57	8.11	3.69	51.31
297. 금속가구	1.0	0.06	6.56	5.39	3.97	53.11
298. 기타 가구	3.3	0.04	6.69	6.01	2.61	34.03
58. 기타 제조업제품	50.0	0.27	8.02	8.71	2.94	41.40
299. 장난감 및 오락용품	9.1	0.36	8.34	8.90	3.14	41.37
300. 운동 및 경기용품	13.1	0.46	8.25	9.38	2.58	39.07
301. 약기	4.3	0.17	7.50	8.07	2.94	43.32
302. 문방구	3.6	0.19	8.01	8.55	2.58	35.84
303. 귀금속 및 보석	6.8	0.50	6.11	8.66	2.66	59.53
304. 모형 및 장식용품	5.9	0.15	7.39	7.01	3.45	44.49
305. 기타 제조업제품	7.2	0.20	9.22	10.59	2.84	37.46

## WTO 뉴라운드에 대비한 관세율정책의 개편방향

張槿鎬·李明憲

지난 1984년 이래 우리나라는 균등관세율체계에 입각하여 시장 친화적인 관세율정책을 운영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정책의 중립성과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며 그 동안 내수산업과 중간재 등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개방화와 함께 우리 경제가 선진형 경제체제로 변모하면서 관세율체제도 음·식료품과 섬유제품에서 차등적인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ITA 산업의 무세화로 균등세율체제의 기조가 점차 흔들리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도 8%의 완제품 세율을 중심으로 가공도에 따른 차등세율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생산 및 수입구조의 변화와 같은 대내적 요인과 ITA를 비롯한 각종 WTO협상 등의 대외적 요인에 따라 기존 관세율체계를 계속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선진국 세율체계를 답습하여 기초원료의 무세화 등 가공도에 따른 경사세율체제와 함께 일부 경공업 제품에는 고세율을, 그리고 중공업은 균등세율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율체제가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경제에서 바람직한지 또는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WTO 농산물협상에 대비하여 정책목표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이에 합당한 정책 수단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예외없는 관세화와 정책수단의 편의성 등 관세정책이 보유한 여러 장점으로 인

해 농업부문에서 관세율정책이 상당 기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각종 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요구된다. 또한 불균형한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종량세의 활용과 함께 정책의 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한 탄력관세제도의 축소 내지는 기본관세화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실효관세율의 분포로 볼 때 일부 역관세 품목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는 품목간의 대체성, 국제협정에 따른 세율체계의 보완, 생산 및 교역구조의 변화 그리고 원자재의 무세화 등을 고려한 세율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기술협정의 과급효과는 2001년에 상당 부분 가시화될 전망이므로 고부가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도입이 시급하며 이 밖에도 뉴라운드에 대비하여 공식적용에 의한 일률적 세율인하와 고관세 철폐 등 우리나라에 유리한 통상협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 The Tariff Rate Policy of Korea and It's Reform in Preparation for the WTO New Round

Jang, Keun Ho and Myung Heon Lee

Since the year of 1984, Korea has adopted a pro—market tariff policy based on the uniform tariff rate system. The policy had won a high remark for maintaining consistency and impartiality and must have enhanced the competitiveness of both import substitute industries and intermediate goods industries. However, as the Korean economy faces a greater competition from abroad and as its production structure becomes more like developed economies, a differential tariff system began to take its root in foods and drinking industry and, to some extent, textile industry. In addition, the Information and Technology Agreement had an effect of seriously undermining the uniform tariff rate system.

While Korea still maintains 8% tariff rate on most of its final output and an escalated tariff system with tariff rate varying in accordance with production stage, it will need to update and adjust its current tariff policy, when faced with such domestic needs as its production and import structure changes, not to mention the need for implementing recent tariff negotiations including ITA. Specifically, Korea may follow the path of other developed economies by adopting an escalated tariff system

with zero tariff on raw materials and by applying high tariff on some light industries but continues to impose an equal tariff rate on heavy industries. However, such a policy may not be optimal for a small economy like Korea's and, therefore, tariff reform calls for a discreet consideration.

In preparation for the WTO agriculture negotiation, the government should first set a priority among various policy objectives and pursue different objectives with appropriate policy instruments. Tariff policy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agriculture for some time to come because of tariffication and other considerations like easy implementation. Nevertheless, in the long run, agricultural reform needs a combination of many policy instruments in order to minimize the distortion in resource allocation. In addition, specific tariff may be utilized to prevent unbalanced imports and the temporary tariff system should be either merged into the MFN tariffs or less frequently used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future tariff policy.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of effective tariff rates indicates that some products experience either negative or low protection and, eventually, tariff reform may be necessary to internalize industry wide effects resulting from past tariff negotiations and changes in production and trade structure. In the process, considerations need to be taken are substitutability among different products, zero tariff on raw material import, potential for growth and etc. Especially, since the significant portion of the impact of the ITA is expected to materialize in year 2001, the government must soon adopt policies aiming at achieving a greater value added in these industries and must also prepare market access negotiation strategies for the WTO

New Round, with due weight on formula approach and the reduction of high tariffs.

〈著者略歷〉

張 槿 鎬

美國 Maryland大 經濟學科 卒業

美國 Chicago大 經濟學 博士

現, 韓國租稅研究院 專門研究委員

李 明 憲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卒業

獨逸 Göttingen大 農業經濟學 博士

現, 韓國租稅研究院 專門研究委員

研究報告書 99-02

WTO 뉴라운드에 대비한  
관세율정책의 현황과 개편방향

---

1999年 12月 28日 印刷

1999年 12月 31日 發行

著 者 張槿鎬·李明憲

發行人 柳 一 鎬

發行處 韓國租稅研究院

11381-1310 서울特別市 松坡區 可樂洞 79-6番地

電話: 2186-2114(代), 팩시밀리: 2186-2179

登 錄 1993年 7月 15日 第21-466號

組版 및 一 志 社

印 刷

© 韓國租稅研究院 1999

ISBN 89-8191-173-8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11,000원